

2018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V 기 타 신 興 국



REPUBLIC OF SOUTH AFRICA
RUSSIA · INDIA · KAZAKHSTAN

목 차

2018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V

남아프리카공화국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5
제2장 통관제도	6
제3장 검역제도	16
제4장 라벨링 제도	30
제5장 부록	37

러시아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45
제2장 검역제도	57
제3장 관세제도	115
제4장 라벨링 제도	128
제5장 출처	139
제6장 수출연안	141

인도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153
제2장 통관제도	154
제3장 검역제도	177
제4장 FSSAI 라이선스	189
제5장 라벨링 제도	197

카자흐스탄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233
제2장 통관제도	234
제3장 인증제도	244
제4장 검역제도	248
제5장 라벨링 제도	262

2018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V

남아프리카공화국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제2장 통관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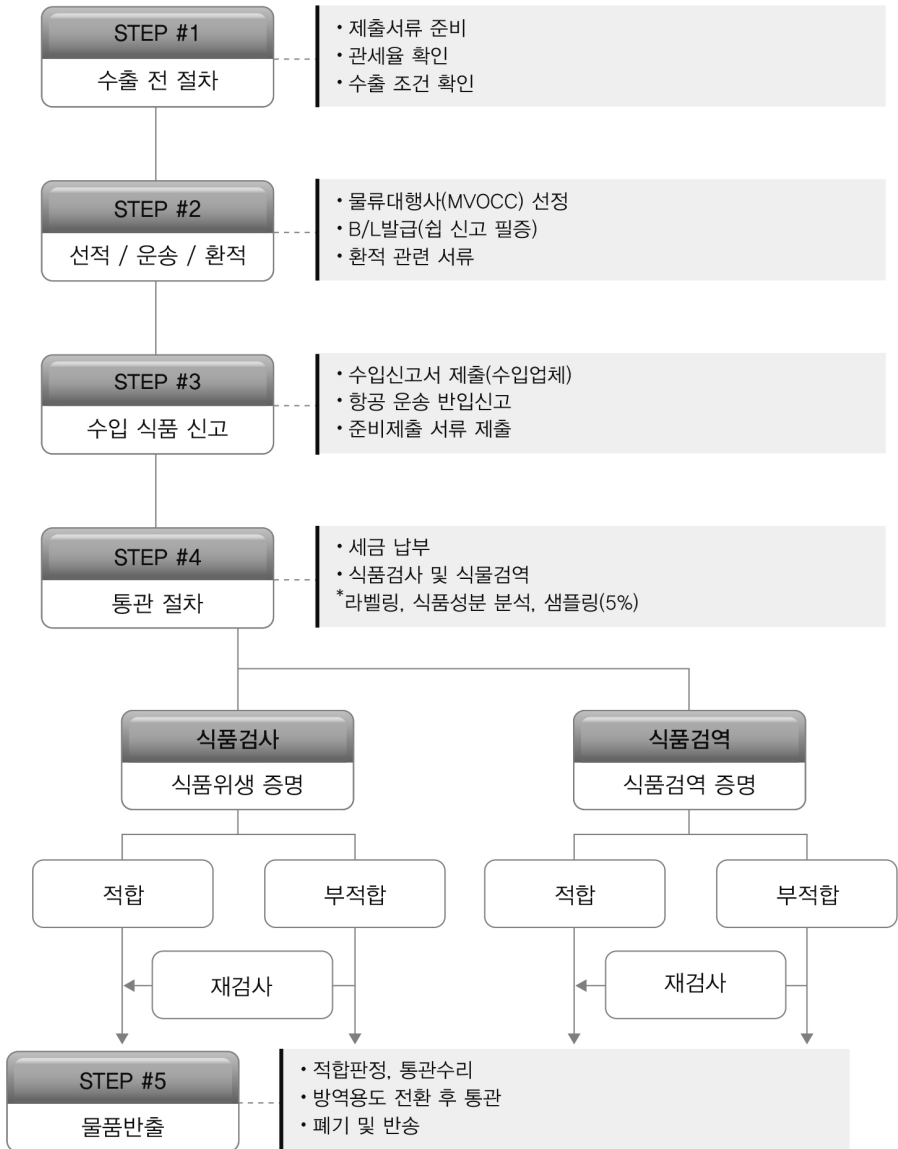
제3장 검역제도

제4장 라벨링 제도

제5장 부록

목 차		
	제1장 농식품 수출프로세스	5
	제2장 통관제도	6
	1. 관리·법률체계	6
	2. 수입통관 절차와 제출서류	9
	3. 관세제도	13
	4. 진입장벽	14
	제3장 검역제도	16
	1. 신선농산물 검역제도	16
	2. 식품 인증제도	20
	3. 식품첨가물, 유해물질 규정	22
	4. 건강기능식품 효능 등록제도	26
	제4장 라벨링 제도	30
	1. 라벨링 개요	30
	2. 라벨링 규정	31
	3. GMO 식품 라벨링 사항	35
	4. 기타 사항	36
	제5장 부록	37
	1. 남아프리카공화국 관련 기관 및 협회	37
	2. 참고문헌 및 사이트	38

제 1 장 |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1. 관리 · 법률체계

가. 통관 관련 정부기관

1) 재무부(Ministry of Finance)¹⁾

- 재무부는 정부 재정 관리, 예산 책정, 경제 정책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함
- 관세는 재무부에 의해 결정되며, 하위기관인 조세청(SARS)에서 운영

2) 조세청(SARS; South African Revenue Service)²⁾

- 조세청은 재무부 산하 기관으로 다음의 업무를 실시
 - ① 남아공의 자유무역협정 관련 협상 및 관리 업무
 - ② 무역법 및 관세법의 집행, 관세 등 세금 징수, 수출입 금지 및 제한상품의 통제를 통한 자국민 보호, 남아공 국경을 이동하는 여객 및 물품 처리 실시
 - 수출입품의 통제, 산업계획, 무역조치, 국제 프로토콜 및 규약 관리감독, 밀 수입 및 기타 위반행위 제거, 수출입 금지 및 제한된 물품 통제
- 관세 및 국경관리(Customs & Border Management) 부서를 통한 관세전략 및 정책(Customs Strategy & Policy), 관세운영(Customs Operation) 업무
 - 세관(Customs Office)은 지역별로 항구, 공항, 내륙 국경지역에 분포하여 통관 업무를 담당
- 이외 산업개발구역(IDZs; Industrial Development Zones) 지역 및 세관 통제 구역을 관리하여 남아공 제조업 관련분야 수출 경쟁력 확보

3) 국제무역위원회(ITAC;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Commission of South Africa)³⁾

- 국제 무역 위원회는 남아프리카 관세동맹(SACU;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협정에 근거하여 국제 무역시스템을 도입하고 남아공 및 공동 관세구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설립
- 관세심사(tariff investigations), 무역구제(trade remedies), 수출입규제(import/export control) 업무를 담당

1) www.treasury.gov.za/ministry

2) www.sars.gov.za/Pages/default.aspx

3) www.itac.org.za

- ① 관세심사 업무는 관세에 대한 인상, 삭감, 감면 및 환급에 대한 업무를 포함
- ② 보건, 환경, 안전, 기술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수출입 규제 조치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입규제 품목은 ITAC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 통관을 진행 가능

나. 식품 관련 정부기관

1)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 DOH)⁴⁾

- 남아공 보건부는 식품·화장품·살균제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담당. 식품·화장품·살균제법은 1972년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음식, 화장품, 살균제의 안전과 순도를 확인하기 위해 제54호 법령으로 공포되어 이후 몇 차례의 개정 작업 진행
- 보건부는 국내 제조, 수입 또는 수출에 관계없이 모든 제품이 남아공 표준에 규정된 대로 보건 및 안전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세부설명과 법적 기준을 제시
- 수입자는 식품첨가물의 배치 생산에 사용된 미량원소의 증명서 보유 필요. 보건부에 등록하지 않고 미량 원소 혼합물을 수입하는 것은 불법이며, 미량 원소 혼합물 수입자는 그들의 영양소 혼합설명서를 등록 심의관에게 신청 필요
- 남아공 보건부는 주요 항구인 더반, 포트엘리자베스, 그리고 케이프타운에 Port Health 라는 별도의 검사검역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수입품이 입항되면, Port Health의 담당 직원들이 검사검역을 진행

2) 농림수산부(DAFF;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⁵⁾

- 남아공 농림수산부는 외국으로부터 육류 및 축산가공식품을 수입 시 국제표준 및 기타요건을 바탕으로 수입축산식품의 수입 및 유통관리로 남아공 국내 관련 식품업계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식품안전 확보
- 냉동 및 냉장육류는 남아공 농림수산부의 수의사무국에서 승인한 도축장에서만 수입할 수 있으며, 수의사무국은 승인시설목록을 보유함
- 이러한 냉동 및 냉장 육류의 수입 승인 사본을 수령하기 위해 신규 수입자는 회사명 및 도축장명을 제출하여 2년에 한 번씩 갱신되는 목록에 추가되도록 조치

4) www.health.gov.za

5) www.daff.gov.za

- 시설목록에 등록되었다고 해서 해당시설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식품이 수입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며, 수출국가의 수의검사관은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 시설검사를 수행하고 남아공 당국에 통지
- 남아공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도축장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수의기관에 연락을 취해야 하며 검사관은 시설을 분석하고 남아공 당국에 서면으로 확인서를 제출
- 수입자는 육류식품이 원산지 국가를 출발하기 전에 남아공의 수의 수입허가를 필수로 받아야 하며, 상업적 용도로 수입되는 육류식품에 대한 수입허가는 남아공에 입주한 회사나 다국적 기업이 지정한 남아공 대리점에게만 발급되며 제3국을 통한 수입은 불가함
- 육류식품은 더반, 케이프타운, 엘리자베스 항구(특별 허가의 경우에만)와 같은 규정된 수입 검사장소에서 검사를 거쳐야만 함

3) 남아공 표준협회 (South African Bureau of Standards; SABS)⁶⁾

- 남아공표준협회(SABS)는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된 수산물 및 어류 통조림의 식품안전상태를 확인하는 식품검사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식품·화장품·상균제 법령에 따라 수산물 제품에 대한 위생증명서를 발급함
- 식품선적에는 정확한 주소, 보관시설, 정확한 상품수량 등의 정보를 제시하는 선하증권 서류를 동봉해야 하며, 코드목록은 다양한 코드와 등급, 화물에 각 수량 등을 표시해야 함. 이러한 규제는 SABS에서 담당함

다. 식품관련 제도 및 법규

- 남아공은 1992년 이래 수입 제한제도를 폐지 중임. 현행 남아 있는 수입허가제는 제한의 목적이 아니라 통계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임
 - 수입 허가와 환전 절차는 간단하여 무역산업부(DTI)의 허가를 획득한 후 승인 도장이 찍힌 송장(Invoice)을 은행에 제출하면 바로 환전 가능함
-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으로는 육류(육류생산물), 식물(식물생산물) 등이며,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음. 그러나 남아프리카 관세동맹(SACU)내 국가에서 생산된 제조품의 경우 수입통제를 받지 않고 있음

6) www.sabs.co.za

2. 수입통관 절차와 제출서류

가. 수출 전 절차

□ 수출자

- 수입신고 서류를 준비
 - 기본서류 : B/L, 운송서류, 수입계약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
 - 추가서류 : 수입허가서, 원산지증명서, Rebate Permit 등
- 남아공 조세청(SARS; Soututh African Revenue Service)⁷⁾을 통해 해당 물품의 정확한 HS Code⁸⁾와 관세율을 확인가능
- SARS에 수입업자로 등록한 후 통관 절차에 사용되는 세관 번호 취득 필요
 - DA185⁹⁾/DA185 4A1 등의 등록 서류를 SARS에 제출해야 하며, 승인까지는 영업일 기준 약 60일이 소요됨

〈필요 서류 검색 방법〉

The screenshot shows the SARS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categories: Individuals, Businesses and Employers, Tax Practitioners, and Customs and Excise. Below this is a 'What's New' section with news items about 'Trusts enhancements' and 'Disputes enhancements'. To the right of 'What's New' is a sidebar with links for 'Login', 'Register Now', 'Forgot Password?', and 'Forgot Username?'. Below the main content area, there are sections for 'I keep up to date with SARS through:', 'Important Dates', 'Useful Tools', and 'Fighting Tax Crime'. The 'Useful Tools' section contains several buttons: 'FIND A FORM', 'FIND A TAX RATE', 'FIND A BRANCH / MOBILE UNIT', and 'FIND A PUBLICATION'. A red box highlights the 'FIND A FORM' button, and a red arrow points from it to a text box on the right that says '클릭 후 문서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양식을 찾을 수 있다.' (After clicking, you can find the form by entering the document number).

* 출처 : www.sars.gov.za/Pages/default.aspx

7) www.sars.gov.za/ClientSegments/Customs-Excise/Pages/Tariff.aspx 참조

8) HS code (Tariff code) 조회 : <http://www.ftwonline.co.za/customs/tariffs>

9) DA 185 양식 : Registration and Licensing of Customs and Excise Clients – External Form (세관 및 소비세 납부 고객 등록 및 라이선스 발행 등록 양식)

□ 수입자

- 수입제한 품목에 대한 허가서 발급 및 물품별 표준 인증 요건을 구비해야 함
 - 남아공 조세청 홈페이지에서 수입 규제 및 금지에 해당하는 물품인지를 파악하고¹⁰⁾ 필요한 경우, SARS 및 관련 기관에서 요구하는 수출입 허가 및 인증 요건을 파악하여 수입 허가를 ITAC(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Commission)에 신청해야 함¹¹⁾

〈농식품 품목별 수입 허가 요건〉

품목	수입 허가 요건	관련기관
낙농제품	수입허가(Import Permit)	무역산업부 (Development of Trade and Industry)
동물 및 동물관련 제품 수입	수입허가(Import Permit) 및 수의검역증명서(Veterinary Health Certificate)	농림수산부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식물 및 식물관련 제품 수입	수입허가(Import Permit) 및 식물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국립식물보호기구 (National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 출처 : www.gov.za/taxonomy/term/777

- 남아공 정부는 식품 및 농산물에 대한 수입 가능여부를 수출국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여 주요한 수입규제의 원칙으로 활용함
- 남아공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이 원산지 국가를 출발하기 전에 남아공 보건부 또는 농림수산부의 식품수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함
 - 이 외에도 수의검역증명서, 식물위생증명서, 식품보건증명서를 준비해야 함
- 남아공의 수입식품 관리당국은 남아공 내의 수입대행업체 및 수입식품업체를 지정하여 수입검사절차 진행 또는 유통과정 중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권고함

10) <http://www.sars.gov.za/ClientSegments/Customs-Excise/Pages/Prohibited-and-Restricted-goods.aspx>, 이 링크로 접속하여 'Consolidated list of prohibited and restricted exports and imports'를 클릭하면 엑셀 파일 다운로드 가능함. 이것을 통해 규제되거나 혹은 금지되는 품목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면 됨

11) 수입허가신청서의 경우, ITAC 홈페이지에 (<http://www.itac.org.za>) 접속한 다음, 중앙 상단의 메뉴 바에서 Services의 하위 항목 중 Import Control에서 Application Form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가능

나. 선적/환적/운송

- 남아공 직항선이 없어 해상 편이 많은 중국의 상하이 또는 홍콩에서 환적통관이 이루어지므로 환적에 필요한 T/S신고필증 등을 준비하여야 함
- 운송업자는 선하증권 상 목적지까지 책임지며, 인코텀스(INCOTERMS)2010 조건에 따라 수출자나 수입자가 포워딩 업체를 지정함
 - 운송을 의뢰받은 포워딩 업체는 해상운송 및 내륙운송을 통해 목적지까지의 운송 전 과정, 혹은 일부과정을 책임짐

다. 수입식품 신고

- 수입신고서인 SAD 500 form¹²⁾을 이용하여 수입신고를 실시해야 한다.
 - 수입신고서는 서류, 디스크 저장본, CAPE 시스템¹³⁾을 통한 EDI¹⁴⁾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EDI 등록 기업을 대상으로 전자 통관을 진행함
 - SAD 500의 경우 수입신고자의 서명이 기재된 원본 및 Notification Copy라고 표시된 사본을 준비해야 함
 - 남아공과의 관세동맹 국가인 SACU 국가는 CCA1 form 이용하게 되는데, 이는 SACU 영내 물품 이동을 신고하기 위함임
- 수입규제 물품은 반드시 지정된 통관지를 통해 수입되어야 함
 - 상품 도착 1주 전까지 해당 세관에 물품 도착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통관 진행 전에 모든 수입관련 서류가 세관에 기 제출되어야 함
- 수입신고 후에는 신고서 번호(bill of entry number)가 발급되며 해당 날짜를 표시한 스탬프를 찍어줌

라. 통관 절차

□ 식품검사

① 서류검사

- 해당지역의 식품관리국, 수의사무국 또는 품질관리국 risk profiling에서 수입 신고서 및 각종 수입신고 서류를 검사함

12) <http://www.sars.gov.za/Pages/Forms.aspx?pageid=J6>에서 양식 참조

13) CAPE 시스템 : Customs Automated Processing of Entries System(세관자동통관시스템)

14)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 전자문서교환 방식

② 정밀검사

- 수입화물은 육안 검사나 무작위 X-Ray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실험실 수준의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 분석 실시 가능함

일반식품	해당지역 남아공 보건부 식품검사국에서 분석
육류식품	해당지역 수의검역소에서 분석
농산물	해당지역 품질관리국에서 분석

③ 검사증명서 교부

- 검사결과에 따라 남아공으로의 반입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식품은 즉시 검사 증명서가 교부됨 또한 정밀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판정된 식품도 통관이 가능함
- 항공화물 통관에는 약 1일, 해운화물 통관에는 약 2~3일이 소요되며 수입 물품의 남아공 표준기준에 부합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해당 수입물품을 반출 대기시킬 수 있음
- 수입화물 적체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으며, 특정 화물에 대한 추가조사가 진행 되는 경우에도 수입통관이 지연됨

④ 통관 조치

- 남아공 세관은 서류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통관 조치함
- 통관 시 제출서류 미비 또는 부정적인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남아공으로 반입이 허락되지 않은 식품은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함

〈통관 시 제출서류〉

제출 서류	부수	비고
수입신고서	1부	
식품수입허가서	1부	
식품보건증명서	1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급
식물위생증명서	1부	· 식물관련 제품 수입 시 제출 · 농림축산검역본부 발급
수의검역증명서	1부	· 육류 관련 제품 수입 시 제출 · 남아공정부가 인정한 도축시설에서 생산한 제품만 수입 가능

마. 물품 반출

- 세관은 EDI를 통해 관세 납부 사실을 통보받은 후 물품을 반출함
 - 전산으로 발급되는 세관의 물품 반출 통지는 SARS 로고와 “South African Revenue Service”라는 문구를 포함
- 해운 화물의 경우 통관이 완료되면 수입자가 항만 세입처에서 요구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부두사용증서(W/F order)를 발급
- 항만 비용의 경우 National Ports Authority Tariff Book¹⁵⁾을 참조

3. 관세제도

가. 관세제도 현황

- 남아공은 과거 인종차별정책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아왔음. 이 때문에 높은 관세장벽으로 섬유, 자동차 등 주요 국내 산업을 보호해 왔으나 1994년 흑인정권 수립, 1995년 WTO 가입 이후 지속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고 있음
- 남아공은 WTO 가입 당시 전체 수입상품의 95.1%에 대해 관세 양허안을 제출하였고, 1995년도에 40%에 달하던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2015년 8.5%까지, 15% 수준이던 비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7.5% 수준까지 인하함

나. 관세 납부

- 세관은 수입신고 서류를 기반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를 부과하고 지급통지서를 발급함
 - 세관 검토 후 수입신고서에 해당 물품의 반출/역류 여부를 표시
- 수입물품에 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물품별 특별세가 부과됨
 - 관세 지불은 지정 은행 및 SARS Branch Office를 통해 전자결제 가능
- 관세가 지불될 경우 수입신고서에 통관 스탬프를 발급
- SARS 홈페이지에서 수입물품별 관세·내국세 적용 기준 확인 가능

15) <https://www.transnetnationalportsauthority.net/Finance/Pages/Port-Tariffs.aspx>의 〈2018-19 Tariff Book〉 참조

〈관세 검색 방법〉

On this day in 1976, black pupils began boycotting classes in defiance of the use of Afrikaans in their schools.

Individuals · Businesses and Employers · Tax Practitioners · Customs and Excise ·

Special Voluntary Disclosure

A reminder that non-compliant taxpayers with unauthorised offshore assets can apply before 31 August 2017...

More information

What's New

Trusts enhancements
SARS introduces enhancements to the Income Tax Return for a Trust (ITR12T) from Monday, 15 May 2017. [read more](#)

Disputes enhancements
From 15 May 2017 SARS introduces changes to the current dispute management process. [read more](#)

SARS eFILING

- Login
- Register Now
- Forgot Password?
- Forgot Username?
- eSoyfile

I keep up to date with SARS through:

- What's New on Homepage
- Navigating to the webpages
- RSS feeds
- Search engine

Cast Vote & See Results

Important Dates

- 25-05-2017 - VAT manual submissions and payments
- 30-05-2017 - Excise Duty payments
- 31-05-2017 - VAT electronic submissions and payments
- 31-05-2017 - CIT Provisional Tax Payments
- 07-06-2017 - PAVE submissions and payments

Useful Tools

- FIND A FORM
- FIND A TAX RATE
- FIND A BRANCH / MOBILE UNIT
- FIND A PUBLICATION

Fighting Tax Crime

There is a steady increase in email scams and phishing attacks in which the SARS brand is being abused.

Tax Crime & Corruption

클릭 후 관련 세금 항목을 클릭하면 찾을 수 있다.

* 출처 : www.sars.gov.za/Pages/default.aspx

4. 진입장벽

가. 제도상의 장벽

인보이스 초과 가격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사례 발생

- 세관신고 과정에서 송장¹⁶⁾ 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음
- 남아공 SARS(조세청)에서는 Price Reference List를 관리하고 있어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 Reference Price를 통해 제품 가격을 추측한 뒤 관세를 부과하며, 이에 따라 인보이스 가격보다 높은 관세가 산정될 가능성 있음

관세 쿼터제도에 따라 기존 수입자에게 물량이 배정되는 것은 신규 진입장벽

- 남아공은 수입쿼터(Import Quota) 제도는 없지만 관세쿼터(Tariff Quota) 제도를 농산물과 섬유류에 적용 중임. 농산물의 경우 70%의 쿼터는 이전 수입자에게, 20%는 중소기업 및 신규자에게, 나머지 10%는 BEE(흑인 경제

16) <http://www.sars.gov.za/ClientSegments/Businesses/Government/Pages/Tax-Invoices.aspx> 참조

활성화 정책) 관련자에게 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관세쿼터를 받는 품목의 관세율이 일반 관세율보다 오히려 높은 경우가 있어 관세쿼터 사용률은 높지 않음

나. 관습상의 장벽

세관 공무원의 부정통관 사례 발생

- 남아공의 높은 범죄율은 부패나 정치 스캔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높은 모든 사법기관이 범죄율 해소에 집중함에 따라 부패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통관에 따른 리베이트 요구가 있음

제 3 장 | 검역제도

1. 신선농산물 검역제도

가. 국내검역

한국의 신선농산물 수출 가능 품목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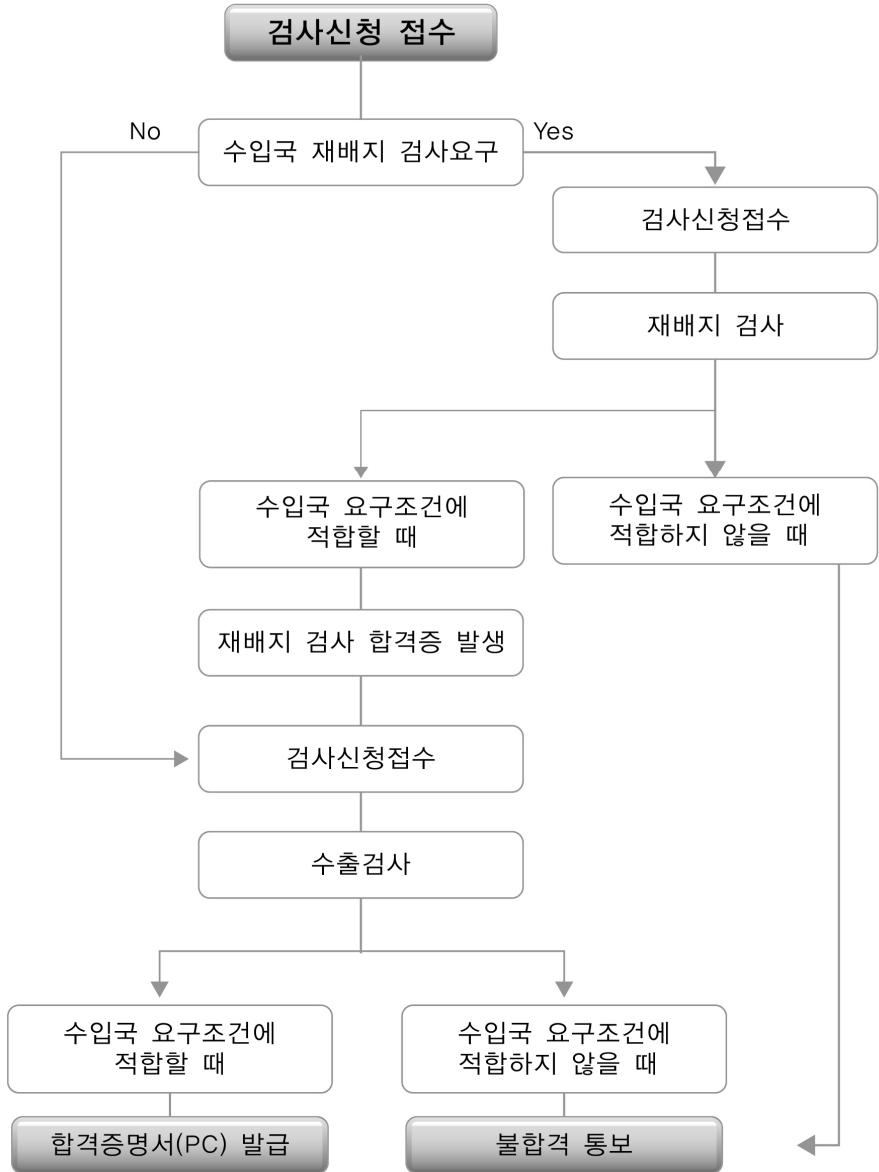
- 과실류 : 사과, 배
 - 재배지검사와 수출 검사를 받은 후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 기록
- 종자류 : 고추, 당근, 대파, 무, 부추, 브로콜리, 상추, 양배추, 양파, 시금치, 치커리, 토마토, 피망, 호박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재배지검사와 수출검사를 받은 후 수출식물 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식물 검역 후 검역확인서 및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아 세관 당국에 사전 제출

- 수출식물 등의 검사 실시(식물방역법 제28조)
 - 식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입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식물검역관에게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수출 불가
 - 검사신청은 인터넷, 우편, FAX, 방문접수, 전화로 가능함
 - 검사인력 가동이 가능하고 검사장소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수출자가 원하는 일시,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
- 검사결과 수입국의 요구조건에 부합할 경우 검사합격증(식물위생증명서, Phytosanitary Certificate)을 발급

17) 해당 품목 외는 수출가능 여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가 있는 품목도 없어 수출 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함

〈국내 식물검역 절차〉



*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3.3.23>

수출식물 검역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기관	처리기간	5일
수 출 자 (보내는 자)	성 명	생년월일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수 입 자 (받는 자)	성 명	상 호		
	주 소			
운송수단			선 적 항	
출 항 일			도 착 항	
품목 수	품 목 명	단 위	수 량	학 명
원 산 지		포장의 수와 종류	수 입 국(수출 상대국)	
검역 희망일시		검역장소	식별표시(Distinguishing Marks)	
신청인 요구사항				

「식물방역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검역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사무소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입허가서(수입국이 수입허가서를 발행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2. 수출국이 발행하는 식물검역증명서(재수출하는 경우만 첨부하며, 신청인이 되돌려 주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확인 후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 3.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입) 검역 대상 식물 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4. 수입국의 요구사항(수입국이 식물검역증명서에 추가 기재사항을 요구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기재사항은 영문으로 적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위 서식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나. 식물검역

1) 개요

- 남아공에서 식물 및 그 생산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립식물보호기구 (NPPOZA; National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가 발급한 수입허가를 신청한 뒤 수입요건이 충족되면 발급되는 식물위생증서가 필요
- 수입을 하고자 하는 품목은 농산물 법(1983년 Act 36), 국립식물보호기구(NPPOZA)의 식물위생법(Phytosanitary import conditions) 충족 필요

2) 절차

① 수입허가를 위한 신청서 작성

〈식물수입허가 신청서〉

APPLICATION FOR A PERMIT FOR THE IMPORTATION OF CONTROLLED GOODS IN TERMS OF THE PROVISIONS OF THE AGRICULTURAL PESTS ACT, 1983 (ACT No. 36 OF 1983)

STANDARD APPLICATION: **Must be submitted at least 30 days prior to the date of arrival of the goods concerned in South Africa to:**
 OTHER APPLICATIONS: **Applicant will be notified of handling procedures.**

DIRECTOR: DIRECTORATE: PLANT HEALTH, P.O. BOX 40024, ARCADIA, PRETORIA, 0007; OR
FAX: 27 12 319 6370 / E-MAIL: PlantHealthPermits@daff.gov.za / TEL: 27 12 319 6102/ 6207/ 6383/ 6130/ 6366

I, the undersigned, hereby apply for a permit in terms of section 3(1) of the Agricultural Pests Act, 1983 (Act No 36 of 1983), to import the controlled goods of which the particulars appear hereunder, into South Africa. I hereby declare that the goods concerned do not contain any genetically manipulated organisms.

* Description of controlled goods	Name of variety of plants (where applicable)	Quantity (number or mass)	Full name and address of foreign supplier	Port of entry	Purpose of which Imported

Country of origin Name of company/applicant

Postal Address of applicant

Code Telephone / Cell phone no. Fax no.

E-mail address

SIGNATURE OF APPLICANT PRINTED: NAME AND SURNAME OF APPLICANT DATE

* In the case of a plant (including seed), pathogen, insect or exotic animal, the scientific as well as the common name thereof shall be specified.

PH 02/2015

- 작성한 신청서는 다음의 주소로 송부함
: National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DAFF), Private Bag X258, Pretoria, 0001 또는 Harvest House, 30 Hamilton Street, Arcadia, Pretoria 0083
- ② 수입요건이 충족된다면 수입허가가 나며, 국립식물보호기구(NPPOZA)에서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
 - 수입 허기는 1년간 유효
- ③ 신청자는 작성한 수입허가서 사본을 수출자와 공급자에게 송부
- ④ 이후 실제 제품이 남아공 항구에 도착하면 국립 식물보호기구(NPPOZA) 검사관은 제품 및 식물위생증명서를 검사
 - 신청서 발급은 최장 한 달 이내 발급
 - 발급비용은 각 품목에 따라 다르며 품목별 관세율에 의해 결정

2. 식품 인증제도

가. 식품 인증 개요

- 남아공에서 생산하는 식품은 SABS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수입식품의 경우는 SABS 인증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소비자들의 구매 요인으로 작용 가능
-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유기농 인증을 받으면 주요 구매 요인이 될 수 있음
 - 남아공에는 아직 국가 차원의 유기농 인증은 없으며, IFOAM(세계유기농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유기농 인증기관은 2개 기관임¹⁸⁾

〈유기농 인증기관〉

이름	위치	인증마크	웹사이트
SAOSO (South African Organic Sector Organisation)	요하네스버그		www.saoso.org
Ecocert Southern Africa	케이프타운		www.southafrica.ecocert.com

18) 출처 : 세계유기농협회(IFOAM)(www.maps.ifoam.bio/affiliates/map?region=africa)

나. SABS 인증

1) SABS 인증 개요 및 기관

□ 인증 개요

- SABS 제품인증제도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품의 품질, 안정성 및 신뢰성을 보증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인증은 자유선택이나 안전 및 EMI¹⁹⁾에 관련된 규격은 강제 적용
 - 안전 인증을 위해서는 공인된 시험소의 3자 시험이 요구되며 필요시 공장 검사가 요구됨
- 인증마크 표시의 강제적 의무는 없지만, 표시제도의 전반적 관리를 SABS(남아공 규격협회)가 담당하여 품질검사 등의 감독을 실시하고 “공인허가서”를 발행
- SABS 마크의 제품 보증정보
 - ① 모든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
 - ② 품질/적합성 적정 기준 충족
 - ③ 배상 책임(소비자를 대신하여 SABS가 개입하여 대리인으로서의 역할 실시)

□ 인증기관

- 남아공규격협회(SABS)는 1945년 표준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 기관임
 - 남아공의 국가 표준화 기관으로 약 6,500개의 국가 표준 데이터베이스를 7개 산업 클러스터로 구분하여 유지·관리하고,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며 필요에 따라 기존 표준을 수정, 개정 또는 삭제함

2) 인증 절차

□ 인증획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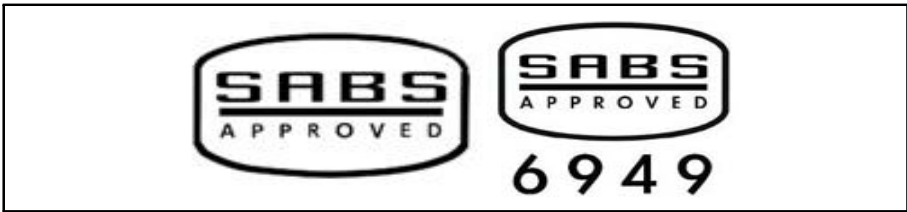
①	○ 제품이 남아공의 국가 표준에 맞는 제품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SABS 인증 신청
②	○ 제품 테스트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분야에서 SABS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제품 테스트를 실시함- 미네랄 함유량, 탄수화물, 지방산, 비타민 등의 영양소 분석, 살충제와 다양한 종류의 유해물질 관련 테스트, 미생물과 식품산업에서 이용되는 항균 소독제에 대한 효능 시험 등 시험 항목이 다양 ○ 품질 시스템의 경우 ISO 9000 인증, 또는 특정 허가 조건에 따라서 테스트
③	○ 제품 및 제품을 생산/평가하는 품질 시스템이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SABS 마크의 적용 허가
④	○ 1년간 제품에 대한 테스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피드백 제공
⑤	○ 품질 시스템의 경우 매년 2회 평가가 진행

19) EMI(Electro Magnetic Interference) : 전자기기에서 발행하는 노이즈에 의해 다른 전자기기를 방해하는 상태

- SANAS(South African National Accreditation Systems)는 SABS 제품인증제도 (SABS 마크)의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인증제품을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수시로 모니터링, 평가 및 운영함

□ 인증마크

- 제품에 브랜드명이나 제조업체에 대한 별도의 표시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 제조업체의 허가번호가 마크 아래 추가됨.



- 제품 표준번호를 추가하기 위한 규제 요건이 있거나 규격의 작은 하위 집합만이 테스트되는 경우에는 SABS 마크에 제품 표준 번호가 추가됨.

〈제품 표준 번호가 추가된 SABS 마크〉



3. 식품첨가물, 유해물질 규정

가. 식품첨가물 규정²⁰⁾

1) 규정 개요

- 가공식품에 산화제, 감미료, 색소, 경화제, 향미제, 방부제 등으로 사용된 식품 첨가물은 표지에 명시해야 함. 모든 사전 포장 식품첨가물 또는 식품첨가물 혼합물 표지는 “식료품 사용용”, “식품 사용용” 또는 “식품 첨가물 혼합”이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함

20) 남아공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http://www.health.gov.za/index.php/2014-03-17-09-09-38/legislation/joomla-split-menu>, 참조

- 제품의 일반 화학명을 표지에 사용해야 하며, ‘식품 색소’, ‘식품 착색제’ 및 일반 화학명, 그리고 색소 색인 번호가 표지에 명시되어야 함
- 첨가물이 이산화황인 경우에는 최대/최소 백분율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 보관수명이 18개월 이하인 식품 첨가물의 최대 보관일자는 ‘X전까지 사용’이라는 문구를 사용함(X는 최장 권고일자를 나타냄)
- 식료품 표지 및 광고에 적용하는 규제는 1972년 식품·화장품·살균제 법령(1972년 제54호 법령)에 포함됨. 보건부는 허용 첨가물 목록을 고지하지 않고 식품첨가물 규제대상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고지함

2) 식품첨가물 규제내역

- 해당 식품에 들어간 식품첨가물은 모두 라벨에 나열되어야 하며, 그 명칭은 “R146 of 2010” 별표1에 기재된 대로 식품첨가물 명칭만으로 명기 필요
- 맛과 향만 첨가되고 해당 성분 자체가 들어가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Flavoring” 혹은 “Flavored”라는 문구를 명시하여 맛과 향만이 첨가되고 해당 성분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해야 함

〈별표1. R146 of 2010〉

Acids	Anticaking agents	Acidity regulators
Antifoaming agents	Bulking agents	Camier solvents
Chewing-gum bases	Clouding agents	Colour retention agents
Colourants(except tartrazine)	Chemically modified starches	Emulsifiers
Emulsifying salts	Enzymes	Firming agents
Flavourings	Flavour enhancers(except MSG and sodium chloride)	Flour improvers(flour treatment agent)
Foaming agents	Gelling agents	Glazing agents
Herbs or mixed herbs and spices or mixed spices, as appropriate	Humectants	Propellants
Rasing agents	Sequestrants	Stabilisers
Starches	Thickeners	

3) 식품보존제 표기

- 식품보존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반드시 “Preservative”라고 표시하고, 그 뒤에 반드시 화학물질의 명칭을 표시 필요
- 상온에서 유통·판매되는 육류 등에 사용되는 경화제는 “curing agent”라고 표시하고 그 뒤에 반드시 사용된 경화제의 화학물질 즉, 나트륨, 칼륨, 아질산 칼륨 등의 명칭을 표기함
- 인스턴트 음식이나 포장음식 1kg당 10mg 이하의 다음 물질이 보존제로 포함된 경우에는 표기의무가 없음
 - 이산화황 또는 아황산수소나트륨, 아황산나트륨(중아), 메타중아황산나트륨, 칼륨, 메타중아칼슘, 아황산칼슘, 아황산수소, 중아황산칼슘과 관련된 보존제

4) MSG 표기

- MSG가 포함된 경우에는 “글루탐산나트륨” 혹은 “MSG”라 표기한 후, “flavor enhancer”라고 표기

나. 유해물질 규정

1) 규정 개요

- 남아공 보건부는 주요 식품관리규제기관으로서 수출입 식료품에 함유된 살충제, 기타 화학물 및 금속의 한계허용치(MRL)를 승인함
 - 농림수산부는 살충제 사용에 대한 안내문을 제공하며, 살충제 MRL 분석은 보건부 검사서비스 부서의 책임 하에 진행
- 수입식품 한계허용치 규제는 농무부, 남아공표준협회(SABS), 부패성 제품 수출 관리위원회(PPECB), 산업 실무단체, 농업 화학 회사 및 기술 전문가들에 의해 제정되어 모두 약 14개 법률에 따라 시행됨
 - PPECB는 수출 MRL 분석을 담당함. 또 다른 MRL 자문기관으로는 기술 전문성을 갖춘 농업연구위원회(ARC) 있음
- 수입식품 살충제 한계허용치 규제는 1972년 FCD 법령에 따라 시행되며(1972년 제54호 법령), 식품 수입 관리는 법령에 따라 항구위생서비스 부서 및 지방보건 부처에서 수행함
- 신선농산물 수입은 국내 식품규격을 적용하고 있음

2) 검사방법 및 절차

- 항구에서 적송물 내에 서로 다른 상자에서 무작위로 견본을 추출함.(과일의 경우에는 보통 2~5kg 또는 한 상자를 추출함)
 - 시험은 적송물이 항구에 도착하는 즉시 절차에 들어가며, 견본 크기는 상품별 표준절차 지침에 따라 규정되며, 그 후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을 위해 연구소로 보냄
 - 정부는 식품에 화학물질 검출에 관한 자세한 방법과 종합적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 관련 지침은 국제규격에 따라 제정되며, 지침은 가능한 즉시 수입자나 대리점으로 통보되는데 일반적으로 부패성 식품의 경우 2일, 곡물의 경우 최소 2~5일 정도가 소요
- 항구 위생 서비스는 수입자에게 어떤 요금 부과도 없이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나 규제를 어겼을 경우에는 수입자가 비용을 부담함
- 남아공 국내 연구소(케이프타운, 이스트런던, 프리토리아, 더반)는 밀과 옥수수의 살충제 MRL에 대한 적절한 시험방법이 협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신선 농산물의 경우 MRL이 자주 검사됨
- 국제 식품규격수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남아공 MRL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함

3) 국제기준의 적용

- 남아공은 WTO 회원국이며 SPS 및 TBT 협약의 이행에 대한 국제 기준으로서 식품규격 지침과 표준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제 식품 규격위원회로부터 남아공의 위생 지침 및 표준 제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받고 있음
- 부적합 제품은 추가 분석을 위해 적송물을 그대로 보관하거나 폐기, 또는 반송함. 연구소는 항구 위생기관에 보고하고 이 기관은 보건부에 결과를 통지함. 해당 정보는 수입자, 수출자, 정부 간에 기밀로 유지되며, 위반에 대한 최종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함. 항구 위생검사관은 세부 시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유지·관리함
- 부패성 및 비부패성 식품 적송물은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항구에서 수용되거나 도소매 판매점이 위치한 목적지로 보내나 방출되기 전 검사를 위해 얼마간의 검사 보관 기간을 거쳐야 함

4) 잔류농약의 최대허용치 기준

관리·법률체계

- 남아공에서는 잔류 농약의 최대허용치(MRL)에 대해 법령 “GNR,246 of 11 February 1994 : Regulations governing the maximum limits for pesticide residues that may be present in foodstuffs”을 통해 규정함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입 농산물 MRL 기준고시

- 남아공의 수입 농산물은 상위 법령 및 수정고시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주요 농산물의 잔류 농약 최대 허용치는 남아공 농림수산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음²¹⁾

〈MRL 게시 주요 농산물 항목〉

채소류	파인애플	아보카도	감귤류
땅콩	키위	포도	배
복숭아	바나나	리치	구아바
체리	파파야	망고	딸기
자두	사과		

4. 건강기능식품 효능 등록제도

관리·법률체계

-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광고 혹은 외부에 사용하기 위해 국가기관에 등록해야 함

제도 관리기관(SAHPRA)

- SAHPRA에 제품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시중 유통이 불가하며 남아공에서 건강제품의 효능을 명시하고 홍보하기를 희망한다면 반드시 등록 제도와 SAHPRA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음

21) <http://www.daff.gov.za/daffweb3/Branches/Agricultural-Production-Health-Food-Safety/Food-Safety-Quality-Assurance/Maximum-Residue-Limits> 참조

○ SAHPRA 개요

기관명	South Africa Health Products Regulatory Authority(SAHPRA)
상위기관	본래 남아공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 소속이었으나, 확대개편과 함께 별도의 기관으로 분리 독립.
전신	Medicines Control Council(MCC)
발족연도	2018
위치	Civitas Building, 42 Thabo Sehume Street(formerly Andries), Pretoria
주 업무	<input type="checkbox"/> 본래 의약품만이 등록 대상이었으나, 2013년 법령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김 : ① 보조의약품(건강기능식품도 이에 해당) 등록의 의무화 ② SAHPRA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 <input type="checkbox"/> 보조의약품 검사 및 등록 업무는 소비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 사안으로 떠오름
관련법령	<input type="checkbox"/> Medicines and Related Substances Act(1965년 제 101호 법령 - 의약품 및 관련된 물질에 관한 법) ☞ 2013년 11월 15일에 부분개정을 통해 보조의약품의 등록을 법제 및 의무화, SAHPRA 설립의 근거로 작용 <input type="checkbox"/> Allied Health Professions Act,(1982년 제 63호 법령 - 건강관련 직군에 관한 법) ☞ 보조의약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법적 정의를 내림

□ SAHPRA 관련 제도의 변천사

1965년	Medicines and Related Substance Act 제정. 의약품의 국가 기관에 의한 등록을 최초로 법제화. MCC의 설립
1982년	Allied Health Professions Act 제정. 건강관련 직군에 대한 기준의 법제화와 더불어 보조 의약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최초의 법적 정의
2013년	<input type="checkbox"/> Medicines and Related Substances Act의 부분개정 ① 등록 의무가 없던 보조 의약품도 등록이 되어야만 시중 유통을 가능케 함 ② 기존에 유통 중인 제품들은 약 6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짐 ③ 이를 관장하기 위한 신설 부서의 설립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함
2016년	<input type="checkbox"/> SAHPRA 설립 및 보조의약품 관련 신설부서 마련을 위한 사전 준비 : ① 기존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량 발생이 예상됨 ② 회의를 통해 인력 및 예산 보강 확정 ③ 기존 MCC의 지도부가 그대로 SAHPRA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정
2018년	2018년 2월 SAHPRA의 발족
2019년	2019년 12월 말까지 시장에 이미 나와 있는 보조 의약품의 등록 마무리 규정화

□ SAHPRA 규정하는 보조의약품의 정의

보조 의약품이란?

- ① 원료는 식물성, 광물성, 그리고 동물성이어야 (자연발생적 원료) 함.
- ② 인간의 내재적 치유력을 보조함
- ③ 또는 특정 질병, 질환, 그리고 통증 등의 '치료'성 효능을 가지게끔 설계 및 제작된 것들
- ④ 동시에 남아공의 Allied Health Professions Act (1982년 제 63호 법령- 건강관련 직군에 관한 법)에 명기된 조항에 부합하는 것들

□ SAHPRA의 등록절차 과정

STEP #1

스크리닝 검사. 적격 시 최종원서지원으로, 부적격 시 다시 스크리닝

STEP #2

최종원서 지원 후 해당 검사관들에게 송부

STEP #3

검사관들이 해당 위원회에 보고

STEP #4

위원회가 판단 후 적격 시 SAHPRA로 송부. 부적격 시 다시 검사관들에게 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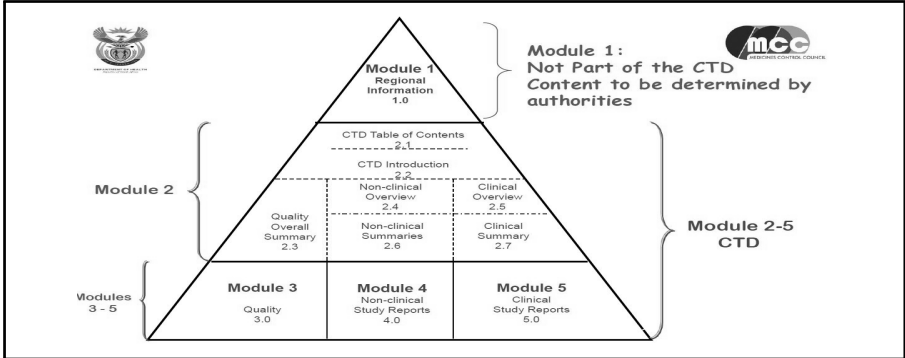
STEP #5

SAHPRA가 최종 승인을 하게 되면 그 때 등록이 완료되는 것. 단, SAHPRA에서 등록 승인을 거부하게 되면 해당 하위 위원회에 돌아갈 수도 있고, 완전히 등록 자체를 거부당하게 될 수 있음

□ SAHPRA 등록절차 시 필요문서

- 모든 등록 절차는 CTD(Common Technical Document) 형식의 원서로 진행됨. SAHPRA(구 MCC)가 원하는 형식은 총 5가지의 모듈로 구성

- ① 제 1모듈 - 지역정보 (CTD 형식이 아니며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은 SAHPRA 관계자들이 정함)
- ② 제 2모듈 - 3,4,5 모듈의 요약정보 (본격적인 CTD형식의 시작점)
- ③ 제 3모듈 - 품질 보증 실험보고서
- ④ 제 4모듈 - 임상 전 실험보고서
- ⑤ 제 5모듈 - 임상실험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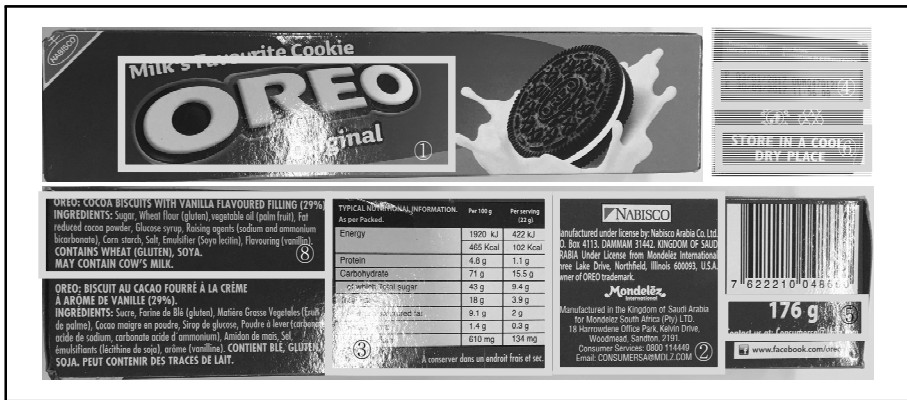


※ 구 MCC에서 사용하던 지원서 양식의 도식으로, SAHPRA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제 4 장 라벨링 제도

1. 라벨링 개요

- 남아공 내로 수입되는 식품은 식품 라벨링 및 광고와 관련된 법률인 “Proposed Regulation R429(Labelling and advertising of Foods)”²²⁾에 의거하여 라벨링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식품 라벨링 상의 정보는 영어 또는 남아공 공식 언어 중 하나로 기재되어야 하고, 쉽게 인식이 가능한 상태로 제시되어야 하며, 눈에 잘 띄고, 읽기 쉬워야 함. 잘 지워지지 않아야 하고, 그림이나 기타 프린트 등으로 가독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표지 글자색은 배경색과 구별되는 색상이어야 함
-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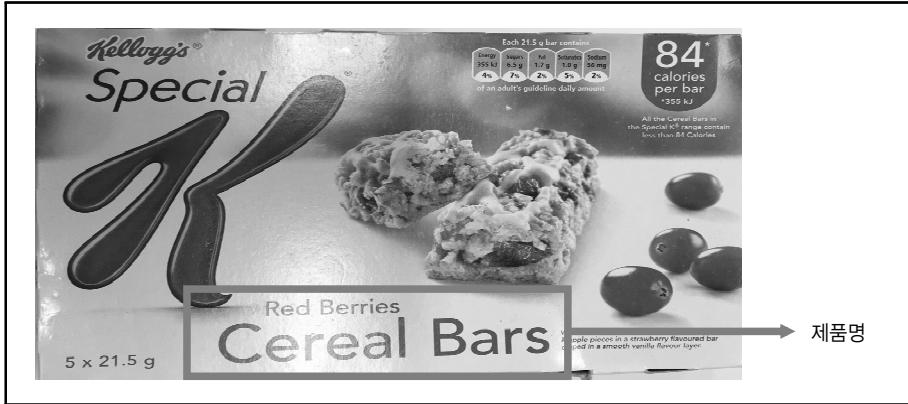
- | | |
|-------------------------|----------|
| ① 제품명 | ⑤ 용량 |
| ② 제조자, 생산자, 판매자의 이름과 주소 | ⑥ 보관 방법 |
| ③ 영양 정보 | ⑦ 원산지 표시 |
| ④ 제품 유통기한 | ⑧ 식품 성분 |

- 이외 추가적으로 포함되는 정보
 - GMO 식품 관련 라벨링 사항

22) 남아공 식품데이터시스템(SAFOODS; South Africa Food Data System; <http://www.saafood.org.za/Legislation/index.asp>) 참조.

2. 라벨링 규정

- ① 제품명 : 제품의 내용을 조제, 건조, 포장 등을 포함하여 사실적으로 묘사해야 함. 이름은 높이 4mm 이상으로 주요 부분에 볼드체로 표기하며 설명의 핵심 문구를 제품명 바로 옆에 기재하는 경우에도 제품명의 1/3 크기 정도로 눈에 잘 띄도록 표기해야 함



- ② 제조자, 생산자, 사업자 : 회사의 이름, 전체 주소를 기재하고 다른 회사가 대행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글자 크기는 높이가 1mm 이상이어야 함



- ③ 영양 정보 : 식품표지나 동반 표지에 부착해야 함. 이 표지에는 '영양정보'라는 표제로 제시하고, 섭취량, 100g 또는 100ml당 에너지 함량 또는 1개당 질량으로 명시하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및 식이섬유(그램으로 표기, 중량), 나트륨(밀리그램), 섭취량당 RDA 단백질을 총량을 명시해야 함

- 성분 목록을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식료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 제품들은 타당한 설명 없이 식료품에 함유되지 않은 성분을 나타내거나 소비자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림을 사용하면 안 됨
 - i) 탄산가스가 첨가된 제품
 - ii) 단일 성분만으로 초절임한 제품
 - iii) 우유만을 함유한 유제품이나 효소 배양균 또는 레닛이 첨가된 제품
 - iv) 1962년 Sorghum Beer Act에 따른 음료
 - v) 1989년 주류 법에 기술된 맥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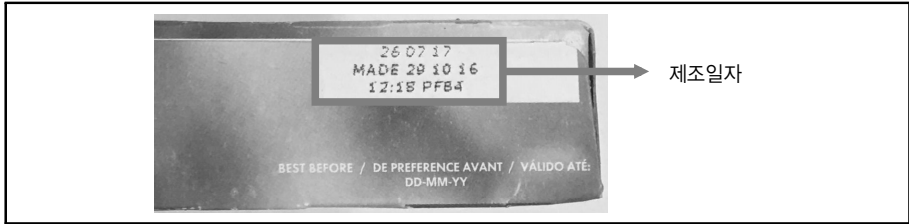
〈영양정보 표 규정〉

	Per 100 g/ml	Per single serving
Energy (kJ)		
Protein (g)		
Glycaemic Carbohydrate(g) of which total sugar(g)		
Total fat(g)		
of which Saturated fat(g)		
*		
**		
**		

Dietary Fibre#(g)		
Total Sodium(mg)		
Any other nutrient or food component to be declared in accordance with these Regulations in alphabetical order, in the order : vitamins, minerals, others.	Indicated in grams(g), milligrams(mg), micrograms(mcg/µg), or appropriate unit of measurement)	

※ 영양정보 표에서 필수적으로 기입하는 항목의 경우 위의 규정과 같게 작성해야 하며, 순서 또한 변경해서는 안 됨

- ④ 제조일자 : 제조일자는 제품 포장에 읽기 쉽게 표시. 용기에 스탬프로 찍거나 유리병의 경우, 뚜껑이나 표지에 기재



- ⑤ 용량 : 내용물의 용량은 킬로그램(kg)이나 그램(g)과 같은 관련 단위로 표시해야 하며, 글자 크기는 “g”의 머리부가 제품명, 브랜드, 또는 상표 크기의 최소 1/4 또는 1.5mm 중 더 큰 것으로 통일해서 표기



- 용량은 배경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해야 하며,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되지 않을 경우, 진한 선으로 테두리를 그려 표기해야 함

- ⑥ 보관 방법 : 보관 안내문을 최소 3mm 이상 크기 글자로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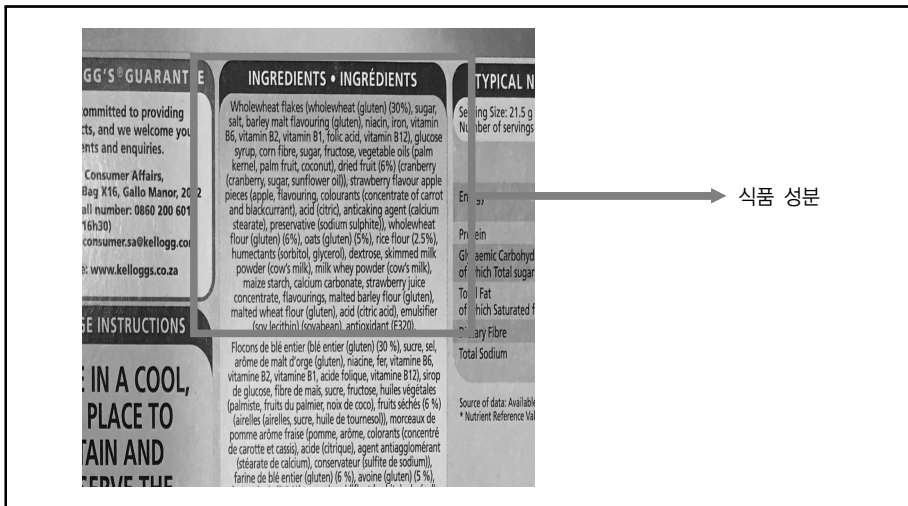


- ⑦ 원산지 : 원산지 국가를 표시하는 문구가 표지에 명시되어야 하며 제품명이나 상표의 1/2 크기 중 큰 것을 선택하여 해당 크기로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함



⑧ 식품의 성분

- 식품의 성분 목록은 내림차순으로 제시하여야 함
- 방부제의 유무는 해당 방부제의 일반 화학명으로 성분 목록에 포함시키거나 “방부제”라는 글자 뒤에 표기해야 함. 산화방지제로 사용되는 방부제 또한 일반 화학명으로 성분 목록에 넣거나 산화방지제라는 문구 뒤에 표기하여야 함
- 인공색소인 황색4호, 글루탐산나트륨(MSG)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성분목록에 황색4호 또는 MSG라고 정확히 표기해야 함



3. GMO 식품 라벨링 사항

가. 개요

- 1999년부터 유전자 조작 농작물이 상업화되었지만, 유전자 조작 식품의 라벨링 규제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4년 “Foodstuffs, Cosmetics and Disinfectants Act(FCDA) 1972”에 유전자 조작 식품 관련 규제가 등장한 이후임
- 일반 식품 및 GMO 식품 라벨링 규제 차이점
 - 알려지 유발 식품(땅콩, 해산물, 글루텐, 우유, 달걀 등)으로부터 추출된 유전자 사용 시 라벨링에 반드시 기재
 - 사람 및 동물의 기관으로부터 추출된 유전자 사용 시 라벨링에 반드시 기재
 - 배합, 영양적 가치, 보관 방법 및 조리방법 상의 차이점이 있을 시 라벨링에 반드시 기재

나. 필수 포함 문구

- GMO 식품 라벨링 필수 정보
 - 해당 GMO 식품의 경우 규정에서 정한 적절한 라벨링(legible labels) 관련 문구 없이는 생산, 공급, 수입, 포장 금지

구분	라벨링 표기 문구
5% 이상 GMO 식품을 포함한 경우	Contains GMO
해당 식품이 유전자 변형 식품에서 직접 추출, 생산되었고, 어떠한 테스트도 필요가 없는 경우	Produced using genetic modification
해당 GMO 물질의 실험분석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May contain GMOs

다. 선택 포함 문구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GMO 식품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선택하여 기재 가능
 - GMO 함유물질이 전체의 1% 이상 5% 미만일 때(GMO 표기는 해야 하나 규정에서 정한 라벨에 표기되지 않아도 상관없음)
 - GMO 함유물질이 전체의 1% 미만일 때(GMO 관련 표기 필요 없음)

<GMO 식품의 라벨링 표시>



GMO 식품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기타 사항

- 식품 정보는 겉포장 또는 패키지에 부착된 표지에 인쇄되어야 함. 패키지에 부착된 표지는 깨끗하고 떨어지지 않아야 함
- 표지가 다른 표지에 겹쳐지거나 패키지에 직접 인쇄한 것이어서는 안 됨. 제품의 보관 조건에 따라 자칫 변질될 우려가 있는 표지나 밀봉 접착제는 사용 불가
- 각각의 컨테이너에는 패키지의 수량 및 순 질량은 앞서 기술된 요건에 따른 정보²³⁾를 인쇄하거나 등사해야 함. 포장일자 및 묶음 번호(해당 되는 경우는)는 스탬프로 찍거나 컨테이너에 표기, 또는 표지에 작성하여 컨테이너에 단단히 부착

23) 번지 제외, 제조자의 상세주소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목적 식별에 있어 부족해서는 안 된다.

제 5 장 부록

1. 남아프리카 공화국 관련 기관 및 협회

가. 남아프리카공화국 기관

기관명	홈페이지	비고
남아공 정부	www.gov.za	정부 홈페이지, 남아공 각종 정보 제공
농림수산부	www.daff.gov.za	농업, 임업, 수산업 관련 업무 실시, 식품관련 각종 정보 제공
내무부	www.home-affairs.gov.za	인구, 시민권, 내정 관련 업무 실시, 정보 제공
무역산업부	www.dti.gov.za	무역 및 산업 관련 업무 실시, 정보 제공
재무부	www.treasury.gov.za	국가 재정, 재무 관련 업무 실시, 정보 제공
경제개발부	www.economic.go.za	국가 경제, 개발 관련 업무 실시, 정보 제공
농촌개발 & 토지개혁부	www.drdir.gov.za	국가 농업, 토지 관련 업무 실시, 정보 제공
보건부	www.health.gov.za	국민 건강관련 업무 실시, 정보 제공
통계청	www.statssa.gov.za	통계 정보 제공
조세청	www.sars.gov.za	세금관련 업무 실시, 양식 및 정보 제공
표준청	www.sabs.co.za	국가 표준, 인증 관련 업무 실시, 정보 제공
상공회의소	www.sacci.org.za	국가 무역, 산업 관련 정보 제공
남아공 중앙은행	www.resbank.co.za	국가 화폐, 재정, 환율 관련 업무 실시, 정보 제공
회사 및 지적재산권 위원회	www.zaip.org	회사등록, 지적재산권 등록 업무 실시, 정보 제공
국제무역관리위원회	www.itac.org.za	관세 조사, 무역 구제, 수출입 관리 업무 실시
식품과학기술협회	http://www.saafof.org.za	식품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 실시, 정보 제공
국립항구협회	www.transnetnationalportsauthority.net/OurPorts/Pages/default.aspx	해양, 운송 관련 서비스 제공, 조정
신선농산물 수입협회	www.fpia.co.za	신선농산물 수입관련 서비스 및 정보 제공
조브마켓(신선농산물도매시장)	www.joburgmarket.co.za	신선농산물 도매시장, 가격, 에이전트 정보 제공
남아프리카공화국 공항 공사	www.airports.co.za	항공 관련 서비스, 정보 제공
남아프리카공화국 건강 뉴스 서비스	www.health-e.org.za	건강 관련 정보 제공
주한 남아공 대사관	www.southafrica-embassy.or.kr	남아공 기본 정보 제공
주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대사관	www.zaf.mofa.go.kr/korean/af/zaf/information/life/index.jsp	남아공 기본 정보 제공
남아프리카공화국한인회	http://homepy.korean.net/~sakal/www	남아공 기본 정보 제공

2. 참고문헌 및 사이트

가. 참고문헌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농업현황과 정책, 농촌경제연구원, 2016
- 수출입통관제도 유의사항 남아프리카공화국, 관세청
-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 해외지적재산권 보호가이드북 남아공편, 2008
- South Africa Yearbook 15/16, Department of Government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ystem South Africa, 2016
- South Africa 2016 Article Consultation Staff Report,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6
- Community Survey 2016 Statistical Release, South Africa Statistics, 2016
- Province Glance Community Survey 2016, South Africa Statistics
- Our future—make it work, 2011, National Planning Commission
- Port Capacity and Utilisation Report 2015~16, Ports Regulator of South Africa, 2016
- National Policy on Food and Nutrition Security,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2013
- Quarterly Labour Force Survey 2016:4Q, South Africa Statistics, 2017
- Noncommunicable Diseases(NCD) Country Profiles, WHO, 2014
- Regulations relating to the reduction of sodium in certain foodstuffs and related matters, Department of Health, 2013
- Joburg Market Annual Report 2016, Joburg Market
- Food labelling Guidelines for R429, Department of Health, 2014
- Regulations relating to the labelling and advertising of foods, Department of Health, 2014
- Regulations relating to mayonnaise and other salad dressings, Department of Health, 2014
- Regulation: Preservatives and antioxidants, Department of Health, 2009
- Regulations relating to trans-fat in foodstuffs, 2011
- CIPC annual Report 2016, CIPC
- 2017 신흥시장 클로즈업 (남아프리카 공화국), aT, 2017

나. 참고사이트

- www.at.or.kr(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www.kati.net(aTkati 농식품수출정보)
- www.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fx
- shippersgate.kita.net
- WTO Statistics Database(www.stat.wto.org/TariffProfiles/ZA_e.htm)
-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GHO, www.who.int/gho)
- The City of Johannesburg(joburg.org.za)
- <http://softbev.com>
- <http://za.mondelezinternational.com>
- www.sars.gov.za/ClientSegments/Customs-Excise/Pages/Tariff.aspx
- www.itac.org.za/pages/services/import-control itac
- www.portsregulator.org/documents national ports authority
- www.saafofost.org.za/Legislation/index.asp
- www.health.gov.za/index.php/shortcodes/2015-03-29-10-42-47/2015-04-30-09-10-23/2015-04-30-09-11-35/category/182-regulations-addictives
- www.daff.gov.za/daffweb3/Branches/Agricultural-Production-Health-Food-Safety/Food-Safety-Quality-Assurance/Maximum-Residue-Limits
- www.cipc.co.za/index.php/access/trade-marks
- www.cipc.co.za/index.php/access/pate
- www.safmarine.com/where-we-ship/service-finder-routenet/far-east-east-middle-east/asas-1
- www.acsamedia.co.za/stats.htm?airport=ORTIA
- www.blondevoyager.wordpress.com/2015/02/13/south-africas-delicious-food
- www.gov.za/taxonomy/term/777
- www.saoso.org/organicstandardscertification
- www.southafrica.ecocert.com
- www.mofa.go.jp/region/africa/s_africa/data.html
- www.hst.org.za/news/more-south-african-adults-now-die-obesity-poverty
- www.saafofost.org.za/Legislation/index.asp
- www.home-affairs.gov.za/index.php/south-african-ports
- www.internetlivesstats.com/internet-users/south-africa/
- www.adsa.org.za
- www.sahpra.org.za/

2018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V

러시아

제1장 통관제도

제2장 검역제도

제3장 관세제도

제4장 라벨링 제도

제5장 출처

제6장 수출현안

목 차		
	제1장 통관제도	45
	제1절 통관제도 일반	45
	제2절 통관제도 특징	55
	제2장 검역제도	57
	제1절 검역제도 일반	57
	제2절 한국산 농산물 검역규정	96
	제3장 관세제도	115
	제1절 관세제도 일반	115
	제2절 관세제도 변동사항	119
	제4장 라벨링 제도	128
	제1절 라벨링 제도 일반	128
	제2절 품목별 라벨링 표기방법	135
	제5장 출처	139
	제6장 수출현안	141
	제1절 식품금수조치 현황	141

제1절 통관제도 일반**1. 관리·법률체계****가. 관리체계**

- 러시아 수입 관리체계는 관세조치와 비관세조치로 구분됨
 - 관세조치 : 수입관세를 통해 과도한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보호 및 국가재정 수입 확충을 도모하는 정책수단임
 - 비관세조치 : 수입허가, 안전증명, 수입품 표시의무 등
- 세관총서 : 러시아 연방세관
 - 러시아 세관기구는 1865년에 설립됨
 - 러시아 연방세관은 러시아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하에 있으며 러시아 통관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 직속세관
 - 러시아의 수입세관은 권역별로 크게 8개의 지방세관 아래 77개 관할세관이 있고, 481개의 분소가 있으며, 항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우 극동 세관아래 11개의 관할세관이 있으며, 47개의 세관 분소가 있음

-
- 중앙 세관(CTU) ots-geg@mtu.customs.ru
 - 시베리아 세관(STU) stu-kl@stu.zsttk.ru
 - 북서 세관(SZTU) kontakt_sztu@mail.customs.ru
 - 칼리닌그라드 세관 ovs@customs.kaliningrad.org
 - 남부 세관(JTU) jtu_kontakt@mail.customs.ru
 - 불가 세관(PTU) ptu_odo@ptu.customs.ru
 - 우랄 세관(UTU) UTU-KS-MTS@ural.customs.ru
 - 극동 세관(DVTU) dvtu@dvtu.vladivostok.ru
 - 북 코카서스 세관(SKTU) ssbsktu@mail.ru
-

나. 법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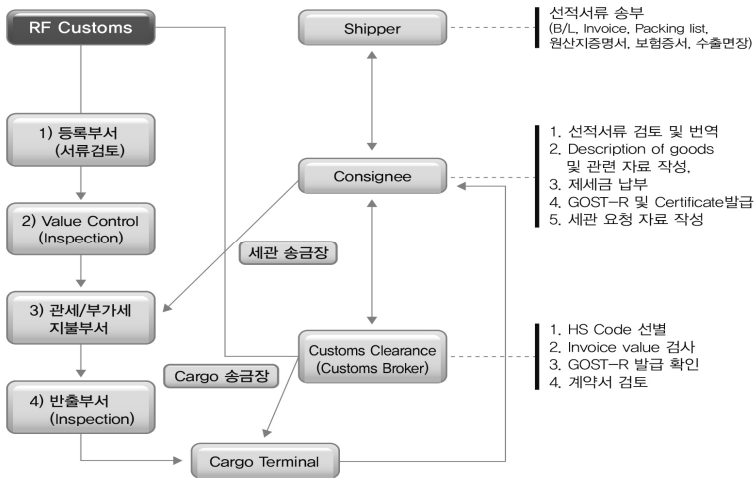
- 3국 관세동맹 발족에 따라 러시아의 통관/관세법 ‘Federal Law on customs regula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이 제정되어 2010.12.29일부터 시행됨. 이후 몇 차례 개정되어 2015.10.19일부터 개정본 발효 시행

□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관세법 협정

-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들이 2017년 4월 11일 모스크바에서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관세법에 관한 협정”에 서명함. 이로써 유라시아 경제연합 영토 내에 통합 통관 규정이 도입됨
- 협정서에서 확립된 내용
 -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관세 국경을 통한 상품의 이동 절차 및 조건,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관세영역 또는 역외에서의 사용
 -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관세영역으로의 상품 도착 및 임시보관, 세관 신고 및 통과, 기타 세관 업무 수행 절차 등
 - 관세, 특별·반덤핑·상계 관세 및 세관통제에 대한 지불 절차
 -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관세영역 또는 역외에서 상품 소유, 사용 및/또는 처분할 권리를 행사하는 자와 세관당국 간의 권력 관계 규제
-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들이 상호 동의하는 조건 하에 별도의 프로토콜을 통해 협정서 개정 및 보완이 가능함
- 관세법에 관한 협정은 회원국들이 협정 발효에 필요한 내부 절차를 이행한 것에 관한 최종 서면 통보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발효함.

2. 통관수속

가. 통관수속 개요



나. 수입허가

- 모든 수입허가는 경제개발통상부가 발급하고, 세관이 통제 및 관리하고 있음
 - 단, 예외적으로 무기류 수입허가는 내무부(Ministry of Internal Affairs)가 관장함
- 수입허가를 규율하는 법규는 ‘러시아연방의 재화(용역) 허가에 관한 절차 규정 제1299호(1996. 11. 3)’임
- 수입허가는 1회용 허가과 일반허가 등 2가지 종류가 있음
 - 일반허가는 1년 기간 이내에 단일계약에 의한 수 개의 위탁수입에 대한 허가임
- 수입허가가 필요한 품목 리스트는 ‘러시아연방 내 수출입 쿼터 부과 및 허가에 관한 정부법령 제854호(1992. 11. 6)’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정 품목에 대한 규제는 별도의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음
- 수입통관절차 - 출처 : 관세청 홈페이지

신고 전 서류준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관신고서, 선하증권(B/L), 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필수준비 - 안전증명서, 원산지증명서(C/O) 등을 품목별로 추가 제출 ② 관세납부 전 사전 예치 요건 충족 - 수입물품·운송수단, 해당금액 예치 등 ③ 관할 세관 수하인 업체 등록 및 등록 번호 취득 ④ 수입규제품목 관련 라이선스 취득/품질 인증마크 부착/품목별 인증서 획득 등의 수입 요건 충족
-----------	--

▽

수입신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입신고서는 서류 및 디스켓 제출 - EDI신고는 현재 도입 단계임 ② 수입물품 신고가격 입증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요구 ③ 지정품목은 러시아 연방 FEACC코드(관세코드)를 세관 신고서에 기재 - 해당 품목 : 육류, 포도주, 앨범, 직물, 컴프레서, 냉장고, 모니터, 컴퓨터, 자판기, 손목 시계, 약기 등
------	--

▽

심사·검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물품 검사 후 화물 검사서 작성 ② 보세운송 시, 국경검사대 송부 내용/보세운송명장과 수입신고서 내용 비교 ③ 계약서 내용 및 화물 반입 서류를 비교 검사
-------	--

▽

관세납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평균 수입관세 13%, CIF가격 기준 증가세 부과 ② 일부 상품은 종량세 및 수량세, 증가·종량혼합세 적용 ③ 관세 외 부가가치세(최고 18%), 소비세 부과
------	---

▽

신고수리 물품반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모든 관련 서류 사본을 러시아 연방관세위원회(Federal Customs Committee)에 송부 - 연방관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 통관 결정 → 물품반출
-----------	---

□ 수입통관 시 유의사항

신고 전 서류준비	<p>★ 러시아어 통관서류 준비 등</p> <p>① HS코드가 영문으로 공개 되지 않아 확인·적용이 어려움</p> <p>② 영문서류는 허용되지 않고 러시아어로 된 통관 서류만 인정 - 제품 설명서 및 라벨링도 러시아어 기재</p> <p>③ 서류상의 경미한 실수도 해당 세관의 자의적 해석과 규제 가능 - 통관서류 작성시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p> <p>④ 품질인증에 상당기간 소요되므로 수입자와 충분히 협의 필요</p>
--------------	--



수입신고	<p>★ 수입신고 시 가격신고에 주의</p> <p>① 통관 절차상 일선 세관장 및 담당자의 재량권이 상당함 - 통관 항구마다 세관 집행 방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불합리한 HS코드·관세율 적용 방지를 위해 신뢰도가 높은 통관사 선정 필요</p> <p>② 물품단가를 저가신고(Under Value) 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적발 시 압류조치, 매우 심각한 행정/형사 처벌을 받음</p> <p>③ 최저 준거가격제도 시행 중 - 세관신고 가격이 최저 준거가격에 미달될 경우 준거가격에 상응하는 관세/부가세 납부 후 행정심판을 통해 환급 받음 * 러시아 중앙세관의 최저 준거가격(reference price) 적용</p>
------	--



심사·검사	<p>★상대적으로 높은 화물검사 비율에 대비</p> <p>① 화물검사는 Random 방식의 표본 추출 검사 원칙을 적용 - 다양한 검사방식 및 까다로운 검사로 기업의 예측 가능성 저하</p> <p>② 수입이 증가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시로 전수검사 실시, 평균 화물의 44% 검사로 화물검사 비율이 높은 편임 * 화물검사 속도가 늦고 검사 시 제품파손 및 분실 우려</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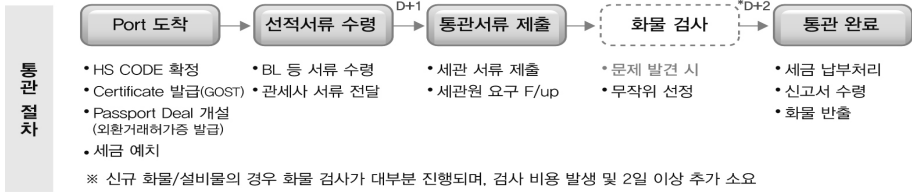


관세납부	<p>① 관세 및 부가세는 납부예치 계좌 충전 금액으로 납부 가능</p> <p>② 관세 외 사치품을 중심으로 10~400%의 소비세가 부과됨 - 해당 품목 : 에틸알코올, 주정용액, 알코올 제품, 맥주, 담배, 보석, 휘발유, 승용차, 등 8개 품목 중심</p>
------	--



신고수리 물품반출	<p>★ 관세위원회의 최종 서류 심사로 인해 추가 통관 시일 소요</p> <p>① 서류나 물품에 결함이 없을 시에도 통관의 지연 등으로 추가비용 발생가능</p> <p>② 보관료가 비싼 편으로 통관 지연 시 부대비용이 상당함</p>
--------------	--

□ 수입신고절차 - 출처 : 관세청 홈페이지



구비서류	수출자	수입자	관세사
	No. 서류명	No. 서류명	No. 서류명
	1 C/I	1 Bank Slip	1 통관 신고서(GTD)
	2 P/L	2 Certificate	2 DTS (Declaration of Customs Price)
	3 제품 설명서	3 외환거래허가증	3 Master B/L(Manifest) or Railway Bill
	* Price List	4 계약서	
	* 수출신고필증	5 통관 위임장	

- 주요 사항**
- HS CODE 확정을 위해 사진 자료 포함 제품 설명서 준비 필수 (Certificate 발급 여부 판단)
 - 세관 기준 보다 신고 단가가 낮을 경우 가격 증빙서류 제출 필요(Price List, 수출 면장 등)
 - 무게 정보가 매우 중요하며, Net Weight / Gross Weight 간 차이가 10% 이상 시 화물 검사
 - 전파 기능을 포함한 제품의 경우 무선전파인증서 취득 필요(최소 7일 소요)

다. 세관수입자 등록서류 및 통관 접수서류

□ 세관수입자 등록서류 목록

No.	등록서류
A-1	정관, 변경/개정정보포함(공증본)
A-2	입헌동의서(공증)
A-3	사업자등록증명서(세무서 발행 납세자등록증, 공증본)
A-4	RosStat 발행증명서(국가통계위원회증명서)
A-5	지불계좌 개설한은행의 Reference(러시아 classifier of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에 등록된 은행코드, 발행 후 1달 이내의 문서)
A-6	외환계좌를 개설한은행의 Reference(1달 이내 발행된 문서)
A-7	세무국등록증명서(세금납부번호, 산업기업체분류, 공증본)
A-8	러시아연방 법인등기부등재증명서(공증본)
A-9	회사 대차대조표(최근분기, 세무국의허가승인본)
A-10	최고경영자 임명에 관한 이행결의문
A-11	회계담당자 임명에 관한 이행결의문

No.	등록서류
A-12	최고경영자 여권사본(공증본)
A-13	회계담당자 여권사본(공증본)
A-14	회사의 법적 등록 주소에 대한 차용계약서
A-15	통관브로커 위임장
A-16	법인장이 외국인인 경우 노동허가증

※ 세관 수입자 등록은 해당세관에 처음 통관 접수 시 필요하며 통관서류와 동시 접수

통관 접수서류 목록

구분	No.	통관접수서류	언어
필수 접수 서류 항목	B-1	계약서, 부속협약서	러시아어/영어
	B-2	운송장(B/L, CMR, AWB)	러시아어/영어
	B-3	Invoice	
	B-4	Packing list(Detailed Packing list)	러시아어/영어
	B-5	제품설명서(사용목적, 기능, 동작원리, 사용절차, 구성품, 규격, 사진, 도면, 시험성적서 등)	러시아어
	B-6	원산지증명서	러시아어/영어
	B-7	보험증서(Certificate of Insurance)	러시아어/영어
	B-8	수출신고서(수출신고서의 경우 선적사의 자국어 사용)	러시아어/ 선적사 자국어
	B-9	Certificate(HS코드에 따른 관련 Certificate발행) ⇒ GOST-R, Declaration, Refusal Letter, Fire certificate 등	러시아어
	B-10	외환거래확인서(PassportSGELKI)	러시아어
	B-11	관세, 부가세, 수입인지세 예치금 송금장 은행확인서	러시아어
기타 접수 서류	C-1	제작사 상표(Trade Mark) 사용허가확인서	러시아어/영어
	C-2	매뉴얼 및 CD/DVD 저작권(License)이전확인서	러시아어/영어
	C-3	정품수입 확인서(일부 제한품목)-현지 해당법인에서 수령	러시아어
	C-4	MSDS(화학제품) 및 시험성적서(글루, 가향제)	러시아어
	C-5	식물검역증	러시아어/영어
	C-6	Technical Passport (전력변환기 통관 시)	러시아어/영어

□ 일반통관 시 필요서류 - 출처 : 관세청 홈페이지

주체	NO	서류명	작성/발급자	필수여부	사본/원본	표기 언어
수출자	1	C/(Commercial Invoice)	수출자		사본	영어
	2	P/L(Packing List)	수출자		사본	영어
	3	제품설명서 각 제품 또는 설비에 대한 자세한 기술 자료 준비 필요 (HS CODE 및 Certificate 발급여부 결정)	수출자		원본(사본)	러시아어
	4	Price List 선적지 상공회의소(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기관) 인증 가격 리스트	수출자	세관 요구 시	사본	영어
	5	수출신고필증 수출업자가 세관에 수출내용을 신고하는 서류	수출자/ 관세사	세관 요구 시	사본	영어
관세사	6	통관 신고서(GTD)	관세사		원본	러시아어
	7	DTS(Declaration of Customs Price) 관세율 산출 근거, GTD Attached 서류	관세사		원본	러시아어
	8	Master B/L(Manifest) or Railway Bill 하역 후 선사의 agent로부터 전달받는 선사의 stamp가 찍혀 있는 MBL. 원본(Moscow 통관 시는 Railway Bill 원본 제출)	선사		원본	-
수입자	9	Bank Slip 세관과 연결된 은행계좌로 송금된 통관 자금 송금 증명서, 통관과 함께 통관 금액이 차감됨	은행		원본	러시아어
	10	Certificate for Commodity(GOST) 제품 품질 증명서, 증명서 발급 브로커 회사를 통해 발급 받아 수입 시마다 제출함	증명서 발급 브로커		사본공증본	러시아어
	11	외환거래허가증(20,000불 이상 송금 시 발급 필요)	은행		사본	러시아어
	12	Contract(수출자/수입자 간의 계약서)	-		사본	영어/ 러시아어
	13	위임장(통관 업무를 위임 한다는 증명서)	-		사본	러시아어

※ Insurance Policy(보험증권) 및 Calculation of Transportation Cost 서류 세관 요구 시 제출해야 할 경우도 있음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특정 아이템 수출 시(ex. Lamp)에 세관에서 해당 서류를 제출 요구

□ 보세통관 시 필요서류 - 출처 : 관세청 홈페이지

주체	NO	서류명	작성/발급자	필수여부	사본/원본	표기 언어
수출자	1	C/(Commercial Invoice)	수출자	필수	사본	영어
	2	P/L(Packing List)	수출자	필수	사본	영어
	3	Railway Bill	통관브로커	필수	사본	러시아어
	4	보세운송신고서(VTT)	통관브로커	필수	사본	러시아어
	5	Master B/L(Manifest)	선사	필수	사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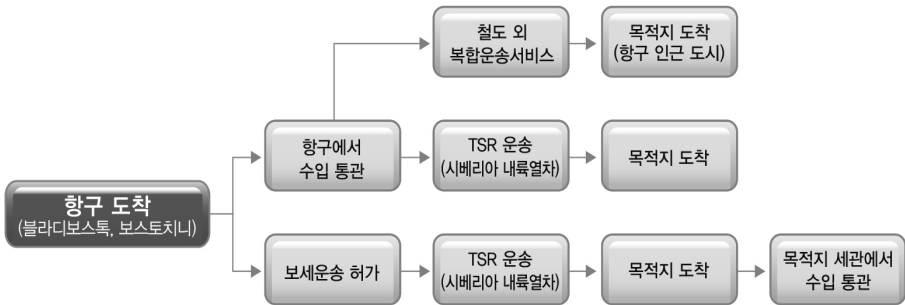
※ 보세통관이라 할지라도 Inspection 및 서류 검사, HS Code 기재 등을 세심하게 검사함

철도 위는 하나의 일종의 보세 자치 구역이라 할 수 있음

3. 화물의 운송

가. 극동 러시아 및 중부 러시아 화물 운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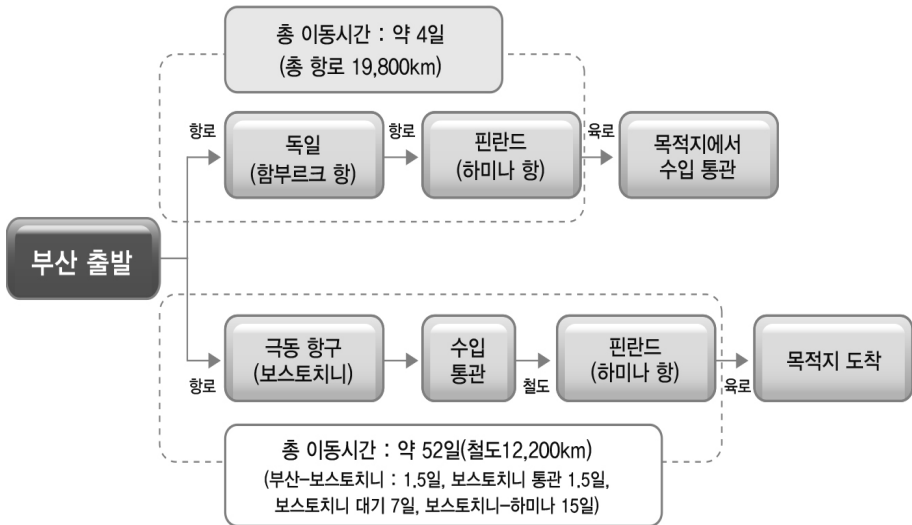
- 우리나라에서 보스토치니항과 블라디보스톡항까지 해상운송되어 내륙으로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을 통해 운송되거나 복합운송 서비스를 통해 운송됨
- 화물의 통관방법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수화주 통관방법 : 블라디보스톡/보스토치니항 도착 → 철도에 환적하기 전에 수화주 혹은 수화주 대리인이 직접 수입통관 → 러시아 내국화물 자격으로 TSR로 운송
 - 보세운송 통관방법 : 블라디보스톡/보스토치니항 도착 → 보세운송 허가를 받아 최종 목적지까지 TSR로 운송 → 목적지의 세관에서 통관절차 진행
 - 복합운송 통관방법 : 블라디보스톡/보스토치니항 도착 → 국내 운송업자들이 현지 협력자들과 제휴해서 제공하는 복합운송 서비스를 통해 내륙운송(하바롭스크 지역 등 항구 인근 지역으로의 운송에 주로 이용)
- 통관 시점에 따라 철도 운송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여부가 달라짐
 - 수입통관을 거친 화물은 부가가치세 18%가 면제되나 보세운송되어 목적지에서 통관이 예정되어있는 화물은 부가가치세를 더해서 철도운송료가 결정됨



나. 서부 러시아 화물 운송

- 모스크바를 목적지로 하는 화물이 주로 이용하는 운송경로이며 핀란드 하미나항을 경유함
- 서부 러시아 화물 운송은 2가지 경로가 있음

- 함부르크항 경유 : 독일 함부르크항 도착 → 선박으로 이동하여 핀란드 하미나항 도착 → 트럭으로 모스크바 이동
 - 보스토치니항 경유 : 보스토치니항 도착 → 기차로 이동하여 핀란드 하미나항 도착 → 트럭으로 모스크바 이동
- 극동 러시아 화물 운송 경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송기간이 길고 제3국 경유 등 복잡함
- 독일과 핀란드를 거치는 항로 운송의 경우, 목적지인 모스크바 세관(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서부 러시아 지역 세관)까지 별도 대기나 지체 없이 운송된 후 도착지에서 수입 통관이 이루어짐
 - 극동지역의 보스토치니항까지만 항로로 운송되는 경우, 도착지까지의 운송 수단이 TSR과 트럭이기 때문에 전체 운송기간이 매우 길고 제3국을 다시 경유해야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침



다. 항공화물운송

- 인천공항에서 모스크바 세르메체보 2공항으로 직송
 - 항공 이동 소요기간은 1일, 통관은 3~7일
- 주로 중량이나 부피가 작은 화물에 적합하며 정상통관을 거침

4. 비관세조치

가. 표준 및 인증

- 통관 시 수입품에는 지방 국세청이 발급한 안전인증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모든 수입식품의 라벨이나 포장지에는 러시아어로 제품명, 생산자, 중량, 성분, 유효일자, 기타 정보 등이 표기되어야 함
 - 비식품류에는 라벨이나 설명서 등에 제품명, 제조자, 원산지 등이 표시되어야 함
-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안정 및 품질 인증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인증이 요구되는 모든 제품은 국세청의 인가를 받은 검사소의 검사를 통과해야 함
 - 표준 및 인증제도를 규율하는 연방기술규제법(제184-FZ호, 2002.12.27)은 인증이 필요한 제품 범위를 줄였으며, 처음으로 자율검사제(Declaration of Conformity)를 도입하였음
 - 강제인증제도의 성격인 국가표준규격(GOST)을 도입
 - 특정상품의 수입 시 표준규격의 확인 및 이에 대한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 요구
 - 일부 품목은 품질, 안전, 보건, 환경 등 러시아 관련부처의 개별인증을 획득해야 하며 신청품목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에야 인증서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음
 - 러시아 국가표준위원회(Federal Agency on Technical Regulation and Metrology)는 자체 조직을 통해 동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위임 기관을 통해서도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음
 - 한국주재 인증기관으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있으며, 기타 인증 대행기관으로는 Sercons Korea, CTR Far East, GSI(범세검정),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이 있음
 - 해당항목이 이미 유럽의 인증(CE)등을 통과 했을시, GOST인증이 면제될 수 있음
 - 약 2주 정도의 인증시간 필요

나. 사전 예치조건

- 러시아 통관법은 수입물품 및 운송수단의 예치, 제3자 보증, 해당금액의 예치 등을 통해 관세납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외환 통제

- 수입거래는 러시아 외환법규의 규제를 받으며, 주된 법률은 외환법 제3615-1호(1992.10.9 제정, 2004.6.17 개정)와 ‘거주자에 의한 수입품 지급조정 통제에 관한 중앙은행 및 국세청 합동명령’ 제91-1/01-11/28644호(2000.10.4)임

라. 국내 대행자

- 통관법 제172조에 따라 러시아 법인만이 통관절차를 수행할 수 있으며, 수입 계약의 러시아측 당사자가 없는 경우 외국인 수입자는 수입물품을 세관 보세창고에 맡기든지 러시아 국적의 통관대행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대항료가 상당히 비싼 편임

5. 변동사항 및 이슈

가. 화물운송 지연발생

- 한국에서 러시아로 운송되는 화물은 대부분 극동지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데 겨울철에는 혹한으로 인해 터미널에서 수하작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안전상의 이유로 근무시간이 단축되기도 함
- 이로 인해 평소에 비해 2~3배 운송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운송 시기를 잘 선정해야 함

제2절 통관제도 특징

1. 복잡하고 어려운 통관제도

- 러시아는 자국 산업 보호, 외화유출 억제 및 정부 재정확보를 위해 수입관세 제도, 규격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다수의 정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외국상품의 통관이 어려운 실정
- 또한 사회주의적 관습, 전산시스템의 미구축, 일률적이지 못한 통관 관행, 관세법의 자율적 해석, 세계 공용 통관관습 불인정, 높은 보세창고료 등으로 특수한 통관 여건을 지니고 있음
- 한국에서 샘플을 러시아로 보낼 경우 UPS, DHL, TNT 등을 이용하더라도 세관 사무소에서 내용물을 검사하는 경우가 많아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음

2. 높은 통관비용

- 러시아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11%이며 부가가치세는 18%이나 그 외 특수품목세, 각종 수수료, 인증서 및 증명서 취득비용, 법인세 등 수출가격 외에 현지 판매 가격에 미치는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함
 - 또한, 통관 진행 중에 서류나 물품에 이상이 없더라도 통관기간의 고의적 지연, 관료의 횡포 등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불법적인 통관 발생
 - 복잡한 통관구조와 높은 통관비용으로 회색통관, 간이통관, 블랙통관 등으로 일컫는 이중통관방식이 통상적으로 이뤄짐
- 통관절차상 유의사항
 - 수입신고는 수입자와 관세사가 할 수 있음
 - 통관 관할지 세관에 수입업체 등록
 - HS코드는 영문 공개가 되지 않아 적용이 어려움
 - 각 제품 또는 설비에 대한 기술자료 준비
 - 러시아어로 된 통관 서류만 인정(영문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제품설명서, 라벨링 모두 러시아어 기재
 - 인보이스 상 Under value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
 - 라벨링 내역, 인증서 내역, 인보이스 상 명시된 물품 내역, 계약서 상 물품 내역 등은 모두 다 동일하게 기입되어 있어야 함
 - 실제 통관 제품과 서류 내역이 불일치하여 반송 조치되는 경우가 빈번함

제1절 검역제도 일반**1. 수입 검사기관**

- 러시아 연방보건부(Ministry of Healthcare of the Russian Federation)
 - 러시아 연방정부 중앙부처에 소속되어 있으며 산하기관인 보건사회개발감독국(Roszdravnadzor)에서 의요기기 등록증을 발급하고 의약품 등록을 담당함
 - 위생관리 및 보건의료 업무를 총괄
- 소비자권익보호 및 복지감독국(Federal Service for Surveillance on Consumer Rights Protection and Human Wellbeing; Rospotrebnadzor)
 - 러시아 연방 보건부의 위생관리 업무는 Rospotrebnadzor로 이관되어 위생증명서 발행, 관세동맹의 위생 감독, 제품 국가등록, CU국가등록 등의 업무 총괄
- 러시아 연방 기술표준청(Federal Agency on Technical Regulating and Metrology; ROSSTANDART)
 - 러시아 연방 산업통상부 산하 집행기관으로 수입 및 국내 제조 제품의 제품 인증서 표준 관리
- 러시아 연방 농업부(The Russian Federation Ministry of Agriculture)
 - 러시아 연방정부 중앙부처 소속으로 육류, 가금류, 곡류의 검역업무, 수입 및 국내 농수산물 및 축산물 관리
 - 산하 기관인 동식물검역국(Rosselkhozadzor)에서 수의, 식물 검역, 농약 사용, 토양, 육종, 농업식물 종자, 곡물 및 곡물가공제품 품질 및 안전 감독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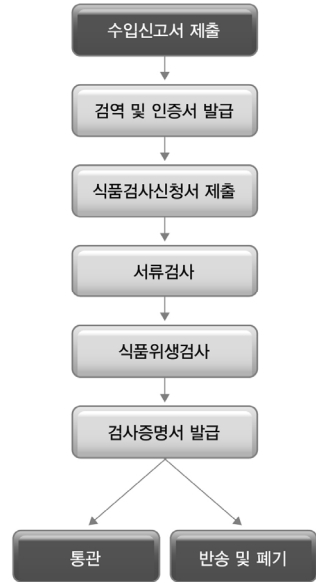
러시아 농업부 관련 조직

- 농업부 수의국(The Veterinary Department of the R.F. Ministry of Agriculture)
 - 동식물검역국(Federal Service for Veterinary and Phytosanitary Surveillance)
 - 곡물품질평가센터(Federal Centre of Quality and Safety Assurance for Grain and Grain products)
-

2. 식품검사 절차

가. 수입식품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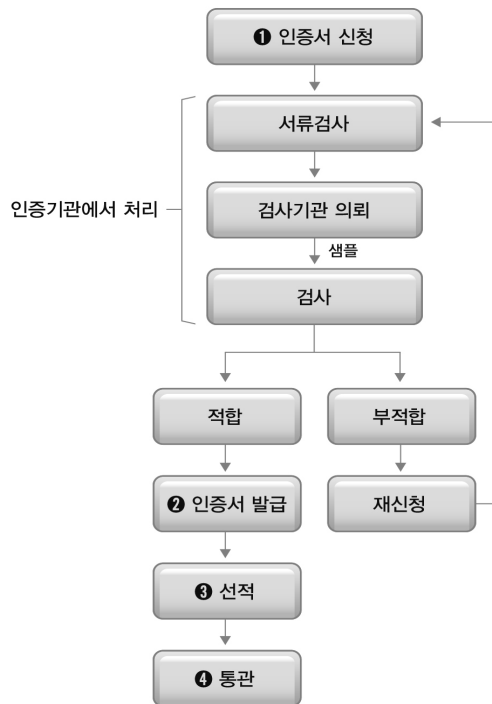
- 러시아 관할세관에 수입신고서를 제출
- 운송 계약, 착률 증서, Invoice, Packing List를 첨부하여 제출
 - 이 서류들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
 - 출하원산지, 용량, 도착일, 가격을 표시한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계약서
 - 각각의 물건이 저장될 장소
 - 가공공장이나 도매업자가 물건을 수령할 장소
 - 포장목록, 선적 방법을 표시한 화물 계획 (팔레트 등)
 - 세관에 화물 가격을 표시하는 신고서



나. 검역 및 관련 인증서 발급

- 수의증명서(Veterinary Certificate) : 동식물 검역국에서 육류 및 가공류 식품의 수입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수의증명서가 요구됨
- 국가등록증명서(State Registration Certificate) : 종전의 위생증명서가 강화된 형태로 2010년 7월부터 발효되어 시행중이며 일부 농식품의 경우 GOST-R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임. 사람이 직접 섭취하거나 접촉하는 제품에 대하여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위생검사로 샘플테스트가 필요함. 국가등록 대상 품목은 Rospotrebnadzor에 등록해야 함. 국가등록증명서는 인증서 유효기간이 없고 발급일부터 제품 공급 또는 생산 중단일까지 사용가능함. 국가등록증명서는 관세동맹국에서도 모두 사용이 가능함
 - 유라시아 경제위원회는 기술규정, 통합 위생규정과 같은 강제규범에 해당하는 제품의 국가등록증 단일양식을 승인함. 유라시아 경제연합(관세동맹)의 기술규정 요건 내에서 발행된 증서의 경우 동일한 양식이 적용됨. 새로운 형식의 국가등록증 양식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 예정임. 이전에 받은 증서는 재발행 필요 없으며 변경 없이 유효함

- 감정서(Expert Conclusion) : 국가등록 대상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은 국가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위생 감독을 받아야 함. 해당 그룹의 식품은 통합 위생요구에 제품이 적합한지 확인해주는 감정서(Expert Conclusion)를 발급받게 됨. 감정서는 Rospotrebnadzor 또는 그 산하 지역감독국에서 발급함. 감정서는 유효기간이 없고 발급일부터 제품 공급 또는 생산 중단일까지 관세 동맹 전 영토에서 사용가능함
- 안전인증서(Safety Certificate) : 러시아연방 기술표준청에서 발행하는 안전규격 인증서로, 강제인증과 자율인증으로 구분되는데 식품은 강제인증품목에 해당함. 러시아 연방 표준위원회는 해외에서 SGS, MERTCONTROL 등에 인증 업무를 위임하고 있음¹⁾
- 원산지인증서 : 이 인증서는 관세를 결정하는데 이용되며 인증서는 위생 인증서를 발급하는 국가 위생 역학 검사부처의 지역 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1) 대러 수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품목은 하루 만에 확인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나, 신규 진출품목은 통상 2주 정도 소요

다. 식품검사 신청서 제출

- 수입업자는 보건부 위생 및 전염병 검사국에 식품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서류검사 및 식품 위생검사

- 보건부 위생 및 전염병 검사국에서는 아래의 인증서를 확인하고 보건부 위생 및 전염병 검사센터에 식품 위생 검사를 요청
- 안전 인증서 : 이 인증서는 러시아연방 기술표준청(ROSTANDART)에서 발급하며 시험 완료를 위해서는 5kg의 샘플이 필요하며 5~7일 정도 소요되고 안전 인증서는 표준화 센터에 의해 수행된 시료검사 및 위생 인증서에 기초가 됨
- CU 인증서(TR CU Certificate) : 2015년 3월까지 GOST-R 인증이 유효하고 이후부터는 CU 인증으로 전면 교체됨

마. 검사증명서 발급

- 러시아 보건부 위생 및 전염병 검사국에서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관할 세관에 통보

바. 통관 조치

- 러시아 세관은 적합 판정된 검사증명서가 발급되면 출하가격에 따라 관세를 입금하였음을 증명하는 은행 서류 등을 확인하고 수입식품을 통관시킴
- 만약 수입식품이 부적합 판정된 경우는 반송, 폐기, 재처리 등의 조치를 취함

사. 변동사항 및 이슈

- 관세동맹(Customs Union) 출범에 따라 회원국은 인증제도를 CU 인증(TR CU Certificate)으로 통일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시로 구성된 관세동맹 회원국은 2013년 2월부터 회원국간 표준 인증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함
 - 각 국가별로 상이한 이전의 표준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유효기간을 줌
- 2011년 1월 28일 관세동맹 위원회는 ‘관세동맹 범주 내에서 강제요건이 확립되어 있는 제품 통합목록’을 발표
 - 대상제품 : 식품, 알코올제품, 사료 및 사료첨가물, 곡물, 담배제품 등 총 66개

○ 인증마크 변경

- 예전 GOST, TR 마크에서 EAC 마크로 변경²⁾
- 제품이 관세동맹 기술규정(TR CU) 요구사항에 적합하고 모든 평가 절차를 통과했음을 증명해주는 마크

【 관세동맹 CU인증 마크 】



○ GOST-R과 CU 인증 간 변경사항

- 인증비 상승, 공장심사 추가
- 러시아 바이어 또는 러시아 지사와의 계약서가 존재해야 CU 인증 신청 가능

변경사항	GOST-R	TR CU
신청자	제조사 또는 바이어	러시아 바이어, consignee
준비서류	부분적 영문 제출 가능	러시아어 서류 제출
공장심사	제외	공장심사+샘플 테스트
인증비	200-350만원	800만원-1100만원+공장심사비용
인증서 유효기간	3년	5년
인증서 발급기간	5-10일	공장심사 후 약3주

□ 식품 안전 기술규정(TR CU 021/2011) 개정

- 유라시아 경제위원회는 2015년 11월 ‘식품 안전 기술규정(TR CU 021/2011)’ 개정안에서 초콜릿, 코팅용 초콜릿 글레이즈, 초콜릿스프레드, 코코아제품에 대한 부가 요건을 확립함
- 주요 개정 내용
 -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초콜릿, 코팅용 초콜릿글레이즈, 초콜릿 스프레드, 코코아제품의 개념과 식별 특징 확립
 - 초콜릿 및 상기 제품들 생산 시의 유지제품과 동물성 지방 사용 요건

2) EAC는 유라시아 적합성(Eurasian Conformity)의 약자

- 초콜릿, 코팅용 초콜릿글레이즈, 초콜릿스프레드, 코코아제품 생산 시에 향미제 및 착색제 사용 요건
- 식품 안전 기술규정에 변경내용이 채택될 경우에 23개의 새로운 개념이 도입될 것임 : 초콜릿(다크, 일반, 스위트, 엑스트라밀크, 화이트 초콜릿 등), 코코아 제품(코코아버터, 코코아조분, 코코아가루 등), 초콜릿스프레드, 코팅용 초콜릿 글레이즈(일반, 밀크, 화이트, 디저트 초콜릿글레이즈) 등
- 기술규정의 신규 별첨 No.11 ‘초콜릿, 코팅용 초콜릿글레이즈, 초콜릿스프레드, 코코아제품의 식별특징’에는 식별특징에 관한 설명이 들어감
 - 다크 초콜릿은 설탕, 감미료, 코코아버터 없이 제조 허용
 - ‘초콜릿’ 정의 : 같은 코코아 및(또는) 코코아버터, 설탕 및(또는) 감미료로 제조된 식품으로, 유제품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기타 식품성분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함
- 유라시아 경제위원회는 2016년 6월 ‘식품 안전 기술규정(TR CU 021/2011)’을 재개정함으로써 오류 제거 등 기술규정의 개별 조항을 수정함
- 주요 개정 내용
 - 별첨 No.2 ‘미생물 안전기준’에 나오는 표1에서 제1.3항의 기존 명칭 ‘곡물(종자), 밀가루-곡물제품 및 베이커리제품’을 ‘밀가루-곡물제품 및 베이커리제품’으로 변경, 제1.6항의 기존 명칭 ‘기름원료 및 유지제품’을 ‘유지제품’으로 변경
 - ‘1.10. 임산부 및 수유여성을 위한 식품’과 ‘1.13. 어린이, 미숙아, 저체중 어린이를 위한 식이치료용 전문식품’ 부분 삭제
 - 밀가루·곡물제품 및 베이커리제품에 대한 위생안전요건은 별첨 No.3 제4항에 기술
 - 별첨 No.7의 제1.1항 ‘향정신성, 마약성의 강하거나 독성이 있는 물질을 함유하는 식품 및 식물가공품’을 위해 새로운 항목 도입
 - 행정명령 No.337을 통해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과 전구물질 목록’을 수정함

향정신성 물질 및 전구물질 명칭	함량
추가목록	
3-페닐프로필 아젠	10% 이상
페티디라민	15% 이상
N-페네틸-4-피페리돈	10% 이상
1-(2-페네틸)-4-아닐리노피페리딘	15% 이상

항정신성 물질 및 전구물질 명칭	함량
1-(4-플로로페닐)-2-니트로프로펜	10% 이상
2-프루오로-N- (1-페네틸-4-피페리디닐)	10% 이상
제외목록	
디페닐아세토니트릴	3% 이상
디페닐아세트산	15% 이상
메틸 아세트산 페닐 (페닐아세트산 메틸 에스테르)	15% 이상

□ 가금육 통조림 품질 규제 GOST 승인

- 2016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에서 국가 간 표준 GOST 28589-2014 ‘육류통조림. 그 자체 즙에 담겨있는 가금육 기술조건’이 도입
- 일상생활, 식이요법, 외식에서 사용하기 위한 고품질의 식품을 소비자들에게 보장해주기 위해 제정됨
- 신규 GOST는 ‘식품 안전 기술규정(TR CU 021/2011)’에 규정되어있는 생산 조직과 식품 안전 및 품질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에 부응하고 있음
- 러시아 표준기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 국가간기술위원회 No.116 ‘가금류 · 계란 가공품과 승화건조법’이 권장되고 있음. 닭, 오리, 거위, 칠면조의 고기로 제조된 제품의 영양 및 안전 평가기준과 조건을 규정함

□ 식품위생요구 개정

- 2015년 9월 1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결정 No.106을 통해 위생 감독을 받아야 하는 상품들에 대한 통합 위생 요구(Unified Sanitary-Epidemiological and Hygienic Requirements) 제2장 제22부를 개정함
- 주요 개정 내용
 - 식품 생산 시 사용 허가된 식품첨가물 목록 정정
 - 아스코르브산(E300)은 산화방지제와 밀가루 개량제(Flour treatment agent)로 사용 가능
 - 소시지를 포함하는 육류제품에서 인산(E338) 및 인산염의 최대허용치 정정 : 육류 원료 1kg당 첨가된 인산염 3g, 조제품 1kg당 전체(첨가된 것+자연의 것) 인산 8g
- 본 결정은 관세동맹 기술규정 ‘식품첨가물과 향미증진제 안전요건(TR CU 029/2012)’에 이와 유사한 변경이 도입되는 순간부터 발효 예정임

□ 적합성신고 필수 주스제품 목록 수정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결정 No.76('14.05.26) 개정
 - ‘과실 및 채소 주스제품 기술규정(TR CU 023/2011)’에 따라 세관신고 시 적합성평가(확인)서류 제출이 필요한 제품 목록 승인
- 해당 개정에 관한 결정 No.70은 2016년 6월 15일 발표되어 7월 15일 발효됨
- 주요 개정내용
 - ‘또는 그와 같은 서류에 관한 정보’라는 표현 추가 : 세관 관리 시, 적합성 평가서류 자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서류 정보를 제출해야 함이 명확해짐
 - 감귤류 세포(cells), 과실 및 채소 과육, 과실 및 채소 껍데의 경우, EAEU HS코드 수 증가
- 주스제품 적합성 평가 서류 형태는 변경되지 않음
- 주스제품 목록 : 과실 및(또는) 채소 주스(토마토 제외)(압착주스, 환원주스, 농축주스, 침출주스(농축침출주스 포함) 포함), 과실 및(또는) 채소 넥타, 과실 및(또는) 채소 주스함유음료, 모르스(Mors: non-carbonated Russian fruit drink), 농축 모르스, 과실 및(또는) 채소 껍데(토마토 제외), 농축 과실 및(또는) 채소 껍데(토마토 제외), 토마토주스, 토마토껍데, 농축토마토껍데(페이스트), 농축 천연향 과실 또는 채소 물질, 감귤류 cells, 과실 및(또는) 채소 과육, 과실 채소 혼합껍데
 - 유라시아 경제연합 영토 내 유통 과실 및 채소 주스제품은 적합성평가서류 제출이 필요하나 가정에서 개인 생산 주스제품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새로운 형태의 주스제품과 전문식품에 해당되는 주스제품은 국가등록(State Registration) 양식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함
 - 이와 같은 주스, 넥타, 모르스(Mors), 껍데의 경우, 전문식품 통합 등록부, 새로운 형태의 식품 통합 등록부에 충분한 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따로 적합성신고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음

□ 어류 및 어류제품 안전에 관한 기술규정

- 2016년 10월 18일자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 No.162에 의해 “어류 및 어류제품 안전에 관한 기술규정(TR EAEU 040/2016)”이 채택됨. 본 기술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발효됨

- 식용 어류제품의 안전 요건과 생산, 보관, 운송, 판매 및 폐기, 라벨링 및 포장에 대한 필수 요건이 확립됨. 기술규정의 대상이 무엇이고 어떤 과정 및 제품에 기술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규정함
- 식용 어류제품이 기술규정을 준수하고 적합성 평가를 통과하면 EAEU 영역에서 유통 가능함. EAEU 시장에서는 단일 유통마크가 표시되어야 함
- 유통기한이 만료된 제품,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 등 부적합 제품은 유통에서 철회될 수 있음
- 양식 식품에는 천연 또는 합성 호르몬 물질 및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포함되어서는 안 됨
- 동물용 의약품, 성장 촉진제, 의약품의 잔류 최대 허용 기준은 정해진 허용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됨
- 어떤 식용 어류제품의 유통이 허용되지 않는지 규정함. 특히 제품 두께에서 -18°C 이상 온도의 냉동제품, 저장 중에 해동된 제품, 인체 건강에 위험한 생물 독소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 등의 유통이 허용되지 않음
- 양식의 어류 및 식품에 기생충이 있는지 검사하여야 함
- 선박에서의 생산 과정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이 있음
- 이 기술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발효하나, 예외 조항이 있음. 예외는 제조업체의 정보를 근거로 한 식품 내 성장 촉진제,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 관리에 관한 규정임. 이 조항은 관련 국가 간 표준 및 방법론 개발 이후 발효될 것임
- 2017년 4월 24일자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결정 No.40 “어류 및 어류제품 안전에 관한 기술규정(TR EAEU 040/2016)의 과도기 조항”이 발표됨
- 과도기 조항 주요 내용
 - A) 적합성 평가서는 EAEU 법령 또는 회원국의 법률에 정해진 강제요건에 따라 제품이 적합한지 평가하는 문서로, “어류 및 어류제품 안전에 관한 기술규정 (TR EAEU 040/2016)”의 규제대상 제품에 대해 기술규정 발효일 이전에 발행되거나 채택된 적합성 평가서는 문서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함. 단, 2019년 9월 1일 이전까지 유효함
 - 기술규정의 발효일로부터는 EAEU의 법령 또는 회원국의 법률에 의해 이전에 정해진 강제요건에 따른 적합성 평가서 발행 또는 채택은 허용되지 않음
 - B) 기술규정의 발효일 이전까지 EAEU의 법령 또는 회원국의 법률에 정해진 강제요건에 따라 강제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는 제품의 경우, 제품의 강제 적합성 평가서와 국가 적합성 마크(시장에서의 유통 마크) 표시 없이도 제품의 생산 및 회원국 영토 내 유통이 2019년 3월 1일까지 허용됨

C) 기술규정의 발효일 이전에 발행되거나 채택된 문서 즉 강제요건에 따른 적합성 평가서가 있는 경우, EAEU의 법령 또는 회원국의 법률에 의해 이전에 정해진 강제요건에 따라 제품의 생산 및 회원국 영토 내 유통이 2019년 9월 1일까지 허용됨

- 제품에는 국가 적합성 마크를 표시함. EAEU 시장에서 통합 유통 마크로 제품을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D) 상기 “B”호와 “C”호에 언급된 제품의 유통은 회원국의 법률에 정해진 제품 유통기한 동안 허용됨

□ 포장 안전에 관한 기술규정

○ 유라시아 경제위원회는 개정된 ‘포장 안전에 관한’ 관세동맹 기술규정(TR CU 005/2011)의 효력 도입 절차를 결정함

○ 포장 안전 기술규정(TR CU 005/2011) 요건에 제품이 적합한지 평가하는 적합성 평가 서류는 그 서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함

○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 영내에서 제품(기술규정의 규제대상)의 생산 및 출하는 적합성 평가 서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허용됨

○ 이전에 발급된 적합성 평가 서류의 유효기간에 출하된 제품의 경우 이 제품의 보관기간(유효기간) 동안 유통이 허용됨

○ 포장 안전 기술규정 개정 주요내용

- 포장 안전 기술규정은 의료제품 · 의약품 · 담배제품 · 위험화물용의 클로저, 자동차 · 철도 · 해상운송 · 항공운송으로 화물 운송을 위한 팔레트, 화물컨테이너에는 적용되지 않음

- 복합재료, 첨부서류, 보관기간 등의 용어 정의

- 복합 클로저 요건 명시: 수축되는 후드의 접착접합부는 견고해야 하며 밀봉 개스킷은 박리가 생기지 않아야 함

- 중고 포장(클로저)은 본 기술규정의 요건에 대한 적합성 확인이 요구되지 않음

- 어린이식품을 포함하여 식품과 접촉하는 포장(클로저)의 관능 지표 요건 명시

- 2017년 5월 21일 발효됨

□ 포장 식수의 안전에 관한 기술규정


○ ‘천연광천수를 포함한 포장 식수의 안전에 관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기술규정 (TR EEU 044/2017)’에 관한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 No.45가 2017년 9월 5일 발표됨

- 이 문서는 2017년 10월 5일 발효됨
- 이 결정을 통해 포장 식수의 안전에 관한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기술규정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고 이 기술규정은 2019년 1월 1일에 발효되는 것으로 정해짐
 - 다만, 별첨 1, 2, 3의 특정 조항들(별첨1 제5항, 별첨2 표2,4, 별첨3 표4 등)의 경우 예외로 정해져, 이 요구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샘플 채취규정 등 검사(테스트) 및 측정 방법 및 규칙과 관련된 국가간 표준 개발 후 발효될 예정
- 문서는 또한 ‘포장 식수 안전에 관한 기술규정’ 발효일 이전에 유라시아경제 위원회가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정부와 함께 ‘식품 안전에 관한 기술규정 (TR CU 021/2011)’에 대한 변경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함
- 포장 식수의 안전에 관한 기술규정에서 규제하는 영역 : 천연 미네랄워터(천연 광천수), 혼합 식수, 처리된 식수, 천연 식수, 어린이용 식수, 인위적으로 미네랄을 첨가한 식수, 포장 식수의 생산, 운송, 보관, 판매 및 폐기 과정
- 어린이용 식수의 라벨링에는 연령그룹(3세까지 또는 3세부터), 광물질, 화학성분 요소, 그 최소값 및 최대값 등 주요성분, 보관조건, 개봉 후 유효기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함
- 생산자와 판매자는 화학, 미생물 및 방사선 안전에 관한 규범을 엄격히 준수 해야 함
 - 천연광천수 및 혼합식수에서 유해물질의 함량을 제한함. 납 0.01mg/dm³ 이하, 수은 0.001mg/dm³ 이하, 카드뮴 0.003mg/dm³ 이하 등
 - 미네랄 및 혼합 식수에서 특정 총 알파활동(specific total alpha activity)은 0.2-0.5Bq/kg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특정 총 베타활동(specific total beta activity)은 1.0Bq/kg을 초과해서는 안 됨
- 기술규정의 규제 대상에 대한 적합성 평가는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및 국가등록의 형태로 수행됨. 특히, 식탁용 약수, 어린이용 식수, 치유용 천연광천수에 대한 국가등록증을 수령해야 함. 식수와 관련된 경우 적합성 평가는 국가감독의 형태로 제공됨
- 포장 식수에 대한 적합성 선언(DoC)을 위해서는 출고방식(단일제품(Single production(One-shipment)) 혹은 시리얼 제품(Serial production)), 제조업체, 기타 요인에 따라 적합성 선언 인증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아래의 도식 1d, 2d, 3d, 4d, 6d에 따름. 관련 식수에 대한 국가등록은 “식품 안전에 관한 기술 규정” 제24조에 따라 수행됨

- 단, 음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천연 광천수나 긴급 상황에 중앙·비중앙 상수도를 통해 제공되는 식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번호	제품 테스트, 유형 검사	생산 평가	생산 관리	신청	적합성 확인 문서
1d	제품 샘플 테스트는 제조업체가 수행함	-	생산 관리는 제조업체가 수행함	시리얼로 출고된 제품의 경우, 신청자는 관세동맹 회원국의 제조업체 또는 관세동맹 영역 내에서 외국 제조업체의 전권을 위임받은 자	시리얼로 출고된 제품에 대한 적합성 선언
2d	제품 로트(단일제품) 테스트는 신청자가 수행함	-	-	제품 로트(단일제품)의 경우, 신청자는 관세동맹 회원국의 제조업체, 판매자(공급자) 또는 관세동맹 영역 내에서 외국 제조업체의 전권을 위임받은 자	제품 로트(단일제품)에 대한 적합성 선언
3d	공인된 테스트실험실(센터)에서 제품 샘플 테스트	-	생산 관리는 제조업체가 수행함	시리얼로 출고된 제품의 경우, 신청자는 관세동맹 회원국의 제조업체 또는 관세동맹 영역 내에서 외국 제조업체의 전권을 위임받은 자	시리얼로 출고된 제품에 대한 적합성 선언
4d	공인된 테스트실험실(센터)에서 제품 로트(단일제품) 테스트	-	-	제품 로트(단일제품)의 경우, 신청자는 관세동맹 회원국의 제조업체, 판매자(공급자) 또는 관세동맹 영역 내에서 외국 제조업체의 전권을 위임받은 자	제품 로트(단일제품)에 대한 적합성 선언
5d	유형 검사(테스트)	-	생산 관리는 제조업체가 수행함	시리얼로 출고된 제품의 경우, 신청자는 관세동맹 회원국의 제조업체 또는 관세동맹 영역 내에서 외국 제조업체의 전권을 위임받은 자	시리얼로 출고된 제품에 대한 적합성 선언
6d	공인된 테스트실험실(센터)에서 제품 샘플 테스트	관리시스템인증 기관에 의한 감독관리 및 관리시스템인증	생산 관리는 제조업체가 수행함	시리얼로 출고된 제품의 경우, 신청자는 관세동맹 회원국의 제조업체 또는 관세동맹 영역 내에서 외국 제조업체의 전권을 위임받은 자	시리얼로 출고된 제품에 대한 적합성 선언

┃ 관세동맹 CU인증서(TR CU Certificate) 예시 ┃

ТАМОЖЕННЫЙ СОЮЗ	
Eurasian	СЕРТИФИКАТ СООТВЕТСТВИЯ
	№ ТС <u>BY/</u>
	Серия ВУ № 0002905
ОРГАН ПО СЕРТИФИКАЦИИ	(Certification Body)
ЗАЯВИТЕЛЬ	(Applicant- in most cases must be company registered in Customs Union)
ИЗГОТОВИТЕЛЬ	(Manufacturer)
ПРОДУКЦИЯ	(Products)
КОД ТН ВЭД ТС	(HS Code)
СООТВЕТСТВУЕТ ТРЕБОВАНИЯМ	Technical regulations and standards applied to the product
СЕРТИФИКАТ ВЫДАН НА ОСНОВАНИИ	Certificate is issued on basis (Test reports, factory audits, ISO certificate)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Additional information)	
Valid date	ПО _____
СРОК ДЕЙСТВИЯ С	ПО _____
 М.П. _____ Руководитель (уполномоченное лицо) органа по сертификации Эксперт-аудитор (эксперт)	_____ _____
	_____ _____

3. 식품위생 검사기관

가. 검사대상

- 관세동맹에서 위생 감독의 대상이 되는 상품은 아래와 같음
 - 식품(자연 혹은 가공된 형태로 인간이 식용으로 섭취하는 제품; 유전자변형 생물체로 제조된 식품 포함)³⁾
 - 담배제품 및 담배원료(CU HS코드 24류)
- 국가등록(State Registration) 대상품목
 - 미네랄 워터(내추럴 테이블 워터, 메디컬 테이블 워터, 메디컬 워터), 병에 든 식수(용기 포장; 어린이용 식품에 이용되는 것 포함), 토닉음료, 알코올 제품(저알코올제품, 맥주 포함)
 - 전문식품(어린이용 식품, 임산부 및 모유수유 여성용 식품, 식이요법 제품(치료 및 예방, 운동선수를 위한 식품 포함), 생물학적 활성 식품첨가물, 생물학적 활성 식품첨가물 생산을 위한 원료, 유기농제품)
 -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제조된 식품(유전자 변형 미생물체 포함)
 - 식품첨가물, 복합식품첨가물, 향미제, 식물성 추출물(향미물질 및 원료성분으로 이용되는 것), 미생물 배양체 및 박테리아 스타터, 기술적 보조제(효소제 포함)
- 감정서(Expert Conclusion) 발급 대상품목
 -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함유하지 않는 식품
 - 특수 식품첨가물이 아닌 식품(자연 또는 가공된 형태로 인간이 식용으로 섭취하는 제품)

나. 수의검역

- 수의검역은 러시아 동식물검역국(Federal Service for Veterinary and Phytosanitary Surveillance)에서 담당하며, 아래와 같이 구성
 - 러시아 농업부 수의국
 - 수의국에서 직접 관할하는 기관
 - 각 주 및 지방자치공화국의 수의부처
 - 시 및 기타 행정조직 수의부처

3) CU HS코드 : 02-05류, 07-09류, 11-25류, 27-29류, 32-34류, 35류

- 각 지방의 동물질병연구소, 기타 수의연구소
- 지방 수의병원
- 국립 수의검사소 등 기타

□ 수의검역 대상제품은 아래와 같음

- 모든 종류의 동물
 - 수의 연방법에 따른 ‘동물’의 정의 : 가축과 기타 생산적(비생산적)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무척추 동물(꿀벌 포함), 어류, 어란, 수생 포유동물, 수생 무척추동물, 기타 양식 대상 및 수생 생물자원
- 고기 통조림, 소시지 등 가공육류
 - 수출국 위생 검사기관의 상시 통제를 받고 허가를 취득한 제조업체의 제품일 경우에 한해 러시아에서 수입 가능
 - 건강한 가축을 도살한 제품으로 제조해야 하며 유전자 변형된 사료로 사육되지 않은 가축이어야 함
 - 질병이 없는 가축으로 제조된 제품이어야 함
- 우유 및 유제품
 - 동물 전염병이 없는 지역에서 제조된 제품
 - 수출국 위생검사기관의 통제를 받고 허가를 취득한 제조업체의 제품
- 동물이 원료인 기타 제품
- 동물 사료
- 동물 의약품 등

□ 유전자 변형 동식물의 재배 및 번식 금지

- 유전 공학 분야 국가규제에 관한 연방법 No86-FZ('96.07.05)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의 환경방출 관리 도입
 - GMO 및 GMO 사용품 또는 GMO 함유제품의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
 - 러시아 내 유전자 변형 동식물⁴⁾의 재배 및 번식 금지
 - GMO 및 관련제품의 수입업체는 반드시 등록절차를 통과해야 함. 러시아 정부는 GMO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GMO 및 GMO 제품 반입을 금지할 수 있음

4) 감정 및 학술연구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제외

- 국가등록(State Registration)이 요구되는 경우 국가등록을 통과하지 못했거나 국가등록증명서(State Registration Certificate) 유효기간이 종료된 GMO 및 (또는) GMO 사용품 또는 GMO 함유제품에 대해 벌금 부과(공무원 1만~5만 루블, 업체(법인) 10만~50만 루블)
- 허가된 종과 사용 조건을 위반한 GMO 사용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제재가 있음
- 본 연방법 No358-FZ('16.07.03)은 2016년 7월 4일 발효됨
- 벌금에 관한 조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시사점 : 최근 아르헨티나(대두박), 브라질(대두박), 독일(대두박), 중국(식물성 사료)의 일부 업체들에서 생산된 사료 및 사료첨가물에 샘플 검사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GMO성분이 검출됨. 첨부서류에 GMO 함량에 관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한시적 수입제한조치

□ 동물용 사료에 대한 동물관련(veterinary)첨부서류 발급절차 변경

- 식물성 성분을 함유하는 사료 및 사료첨가물을 러시아로 반입할 시, 사료 사용을 허가하는 동물관련(veterinary)첨부서류는 GMO 존재여부 또는 GMO 품종식별에 대한 실험실검사 결과를 받은 후에만 통관 장소에서 작성 및 발급이 가능함
- 수출국의 동물관련 서류 없이 반입된 사료에 대한 첨부서류 작성 및 발급은 품질증명서, 실험실검사결과에 기초하며 수출국의 전염병상황과 동식물검역국의 제한조치를 고려해서 이루어짐
- 화학합성 및 미생물합성의 사료첨가물의 경우, 동물관련 첨부서류 작성이 요구되지 않음
- 시사점 : 사료에서의 GMO 검출 및 러시아 국가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GMO 품종 검출 경우가 빈번해져 동식물 검역국의 감독이 강화될 수 있음

□ 사료첨가물

- 2016년 7월 9일 수의관리(감독)를 받아야 하는 상품에 제기되는 통합수의(위생)요건 개정이 발효됨
- 주요 개정 내용
 - 사료첨가물 관련 조항 추가보완
 - HS코드 from 1518 00, from 2102, from 2309, from 2936, from 3002, from 3203 00, from 3302, from 3504 00, from 3507, from 3808, from 3824로 반입되는 동물성성분 함유 사료첨가물과 수의학용으로 사용되는 상품은 수의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HS코드	품명	첨부서류	반입허가	제3국의 업체명단
from 1518 00, from 2102, from 2309, from 2936, from 3002, from 3203 00, from 3302, from 3504 00, from 3507, from 3808, from 3824	사료 첨가물	동물성분 함유 상품과 수의학용 상품(동물용 사료에서도 포함)을 위한 수의증명서	YES	반입허가서와 수의 증명서에 관리대상상품을 출하하는 업체명 및(또는) 넘버를 기재해야 함

- 화학 및 미생물이 합성된 사료첨가물은 제조업체에 의해 발급되는 품질 안전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수의증명서 없이 반입 및 운송이 가능함
 - 이 조항은 상기 HS코드에도 해당함
- 러시아연방과 카자흐스탄공화국의 전권기관들은 관세동맹위원회 결정 No.317 ('10.06.18)에 의해 승인된 수의관리(감독)를 받아야 하는 통합상품목록에 포함 되어 있으나 상품에 명시된 HS코드(from 2102, from 29, from 3507 포함)로 제3국에서부터 러시아연방 및 카자흐스탄 영토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해 수의 관리를 실시하지 않음
 - 따라서 이러한 상품들은 관세동맹 회원국 전권기관들의 반입허가와 수의증명서 없이도 러시아연방 및 카자흐스탄으로 반입 가능함
- HS코드 from 2102, from 29, from 3507의 상품, 동물성, 화학합성 및 미생물 합성의 사료첨가물의 반입 절차는 변경되지 않음
- 식물성 사료첨가물의 유라시아 경제연합 반입 조건은 회원국의 전권 기관들과 함께 유라시아 경제위원회에서 논의 중임

다. 유라시아 경제연합 통합식물검역

유라시아 경제연합 식물검역 통합문서

-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에서 공통 적용되는 식물검역 관련 주요 규범문서 3개를 채택함. 이 문서들은 2017년 7월 1일부터 발효됨
 -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관세국경과 관세영역에서 규제제품 및 규제대상에 제기 되는 통합검역식물위생요건 승인” :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 No.157
 -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관세영역에서 통합식물검역규정·규범 승인” : 유라시아 경제연합 이사회 결정 No.159

- EAEU 회원국들의 식물위생 및 수의(동물) 관리 분야 관련 법률은 이각각 다른 시기에 개발되어 서로 차이가 있고 각 검역 기관들의 접근방식이 서로 달라서 통합규정을 제정함
- 통합 검역 식물위생요건(No.157)에는 식물의 종자재료 및 재식재료, 채소류와 감자, 곡물, 콩과작물 및 유지식물의 종자와 그 가공품, 과일 및 열매,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절화와 꽃봉오리, 제재목(침엽수류, 활엽수류), 기타 규제제품, 곡물 및 곡물가공품 가공업체,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 및 라벨링 종사업체 등에 대한 요건을 규정함
- 통합 식물 검역규정·규범(No.159)에는 검역식물위생조사, 규제제품 및 규제대상의 소독처리, 식물위생인증, 회원국 영토에서 검역대상 통합목록 편성 및 규제 등을 정함

□ 유라시아 경제연합 통합 검역 식물 위생요건

- 2017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관세국경과 관세영역에서 규제제품 및 규제대상에 제기되는 통합 검역 식물 위생요건”의 총칙에 따르면, 본 요건은 검역식물 위생관리(감독)를 받아야 하는 규제제품(규제화물, 규제물질, 규제상품) 및 규제대상에 적용됨
- EAEU 통합검역대상목록에 포함된 검역대상에 감염된 규제제품은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 및 연합의 관세영역 내에서 이동이 금지됨. 단, 본 요건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함
-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되고 연합의 관세영역 내에서 이동하는 규제제품 로트(로트의 일부)에서 통합목록에 포함되어있는 검역대상이 검출될 경우, 가공, 소독처리, 반송 또는 폐기(용기 포함)에 처하게 됨. 단, 본 요건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함
- 식물위생 위험이 높은 규제제품은 수출국 및(또는) 재수출국의 식물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 가능함
 - 식물위생 위험이 높은 규제제품에는 채소류(토마토, 오이, 가지, 호박 등), 과실류(사과, 배, 살구, 수박, 멜론, 복숭아 등), 베리(딸기, 라스베리, 체리, 빌베리 등), 버섯류(재배 및 야생 포함), 허브(상추, 파슬리, 딜 등), 견과류 및 기타 식물성산물 등이 해당됨⁵⁾

5) 해당 규제제품의 전체목록은 2010년 6월 18일자 관세동맹위원회 결정 No.318 참조

- 식물 위생 위험이 낮은 규제제품은 식물위생증명서 첨부 없이도 연합의 관세 영역으로 반입 및 이동이 가능함
- 식물위생증명서의 “부기사항” 란에는 “규제제품이 본 요건에 명시된 검역유해 생물체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야 함
 - 식물위생증명서 부기 요건은 해당 특별 검역식물 위생요건이 제기되는 개별 규제제품에만 적용됨. 개별 규제제품에 대한 특별 검역식물 위생요건은 표 No.1, 2, 3, 4, 5, 6, 7, 8에 명시됨
 - 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영문 부기문구는 다음과 같음 : “Regulated products are produced in pest-free area, places and (or) sites of production, according to the Unified requirements adopted by the Council Decision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as of 30.11. 2016 No. 157.”
 - 2017년 7월 1일 이전에 발송되고 해당 부기 문구를 기재하지 않은 식물위생 증명서를 첨부한 제품은 검역식물위생관리(감독) 결과에 따라 연합의 관세 영역으로 반입 허가 여부가 결정됨
-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승객, 선박·항공기·열차 승무원, 자동차 운전자의 핸드캐리, 동반 및 동반하지 않은 수하물로 연합의 관세국경을 통해 이동하는 꽃다발 3개 이하의 화훼류, 총 중량 5kg 이하의 식물위생 위험이 높은 규제 제품을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은 식물위생증명서 첨부 없이도 허가됨
 - 꽃다발 개수 제한, 규제제품의 중량 제한은 각 승객(1인당)에 적용되며 미성년자도 동일 적용됨
- 우편을 포함하여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승객, 선박·항공기·열차 식당칸 승무원의 핸드캐리, 동반 및 동반하지 않은 수하물로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되고 연합의 관세영역 내에서 이동하는 종자재료 및 재식재료(씨감자 및 식용감자, 종자개량용 및 학술연구 목적용의 재료 포함)는 수출국 및(또는) 재수출국의 식물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운송수단에 놓여있고 이 운송수단의 승무원 및 팀이 식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규제제품을 운송수단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금지됨. 식물검역기관의 공무원의 명령에 따라 검역대상에 의해 감염된 운송수단 내의 예비식량은 소독처리, 폐기되거나 연합의 관세영역 내에 운송수단이 체류하는 기간 동안 특수보관시설에 봉인되어야 함

- 규제제품을 포장재로서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할 시에 검역대상의 전파자가 될 수 없는 재료(두께가 6mm 이하의 얇은 나무로 완전히 제조된 목재포장재, 판지, 종이, 섬유, 중합의 재료)가 사용되어야 함
- 학술연구 목적을 위한 살아있는 검역대상을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은 반입 예정 회원국의 식물검역기관의 허가에 따라 과학기술기관에 의해 수행됨
- 본 요건은 규제제품의 생산, 수확, 가공, 운송, 보관, 판매, 사용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개인(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개인 포함), 법인, 회원국의 집행권력 기관, 식물검역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해야 하는 필수요건임

□ 식물의 종자재료 및 재식재료에 대한 검역식물위생요건

- 종자재료(종자 또는 과실의 형태) 및 재식재료(모종의 형태)는 검역잡초를 포함하여 검역대상이 없어야 함
 - EAEU 관세영역으로 반입되고 EAEU 관세영역 내에서 이동하는 종자재료는 *Ambrosia psilostachya*, *Ambrosia artemisiifolia*, *Ambrosia trifida*, *Iva axillaris*, *Acroptilon repens*, *Ipomoea hederacea*, *Ipomoea lacunose*, *Solanum carolinense*, *Solanum rostratum*, *Solanum elaeagnifolium*, *Solanum triflorum*, *Cuscuta* spp., *Helianthus ciliaris*, *Striga* spp., *Bidens pilosa*, *Cenchrus longispinus*가 없어야 함
 - 종자재료(종자 또는 과실 형태)는 *Striga* spp. 무발생 지역에서 수확되어야 함
 - 재식재료(모종 형태)는 *Cuscuta* spp.가 없어야 함
- EAEU 관세영역으로 반입되고 EAEU 관세영역 내에서 이동하는 종자재료 및 재식재료의 로트(로트의 일부)는 포장되어야 하며, 제품명, 생산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 수출업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라벨링이 있어야 함
 - 상기 명시된 라벨링 없이 반입 또는 이동하고(하거나) 포장되지 않은 종자재료 및 재식재료는 EAEU 관세영역 반입 또는 EAEU 관세영역 내 이동이 허용되지 않음
- 종자 및 육종을 목적으로 EAEU 관세영역으로 반입되는 감자는 종자, *Solanum* 속의 덩이뿌리를 형성하는 종의 괴경(주로 *Solanum tuberosum*종), 미니괴경(minituber)[양료배지에서 재배된 감자의 마이크로프랜즈(microplants)에서 파생된 괴경, 마이크로프랜즈미소괴경(microtuber) 포함한 조직배양에서 덩이뿌리를 형성하는 *Solanum* spp속을 함유하는 식물체를 포함함

- 상기 육종재료는 Solanum속의 기타 기는줄기를 형성하는 종 또는 덩이뿌리를 형성하는 종 또는 잡종을 포함할 수 있음
- 감자 괴경(Solanum tuberosum)과 Solanum속의 기타 덩이뿌리를 형성하는 종의 괴경(Solanum속의 덩이뿌리 및 순을 형성하는 야생종 포함)의 샘플을 중남미국가에서 EAEU 관세영역으로 반입은 학술연구 및 육종 목적으로만 허가되며 유입-검역 양묘장에 보내어야 함
- 토양 덩어리와 토양을 함유한 영양 혼합물이 있는 식물과 토양 기질이 있는 화분식물을 EAEU 관세영역으로 반입 및 EAEU 관세영역 내 이동은 검역대상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허용됨
- 검역대상이 검출된 수입 종자재료 및 재식재료의 로트(로트의 일부)는 소독 처리, 반송 또는 폐기하여야 함

No	규제제품 (EAEU HS코드)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종자재료		
1	곡물 및 콩과작물의 종자 (from 1209, 0708, from 1001, from 1002, from 1003, from 1004, from 1006, from 1007, from 1008, from 1201)	종자, 용기, 패키지, 운송수단은 본 요건의 16항에 명시된 검역 대상이 없어야 하며, 또한 Callosobruchus spp., Trogoderma granarium, Caulophilus latinasus가 없어야 함
2	밀속(Triticum spp.), 라이밀속(Triticosecale)의 종자 (from 1001, 1008 60 000 0)	본 표의 1항을 준수하여야 함 Rathayibacter tritici 무발생 지역 및(또는) 생산장소, Tilletia (Neovossia) indica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함
3	옥수수(Zea mays ssp.)의 종자 (from 0709 99 600 0)	본 표의 1항을 준수하여야 함 Pantoea stewartii subsp. stewartii, Stenocarpella macrospora와 Stenocarpella maydis, Cochliobolus carbonum 무발생 지역 및(또는) 생산장소에서 생산되어야 함
4	쌀(Oryza spp.)의 종자 (from 1006)	본 표의 1항을 준수하여야 함 벼흰잎마름병(Xanthomonas oryzae pv. oryzae), 벼세균성 줄무늬병(Xanthomonas oryzae pv. oryzicola)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함
5	해바라기(Helianthus spp.)의 종자 (from 1206 00 100 0)	본 표의 1항을 준수하여야 함 해바라기 포뭇시스(Diaporthe helianthi) 무발생 지역 및(또는) 생산장소에서 생산되어야 함
6	콩과작물의 종자 (0708, from 1201, from 1209)	본 표의 1항을 준수하여야 함 Tobacco ringspot nepovirus, Tomato ringspot nepovirus, Cercospora kikuchii 무발생 지역 및(또는) 생산장소에서 생산되어야 함

No	규제제품 (EAEU HS코드)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7	가지과식물, 열매식물, 박과식물의 종자 (from 1209 91, from 1209 99 990 0)	본 표의 1항을 준수하여야 함 Tobacco ringspot nepovirus, Tomato ringspot nepovirus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8	고추속(Capsicum spp.)의 종자 (from 1209)	본 표의 1항을 준수하여야 함 감자갈썩병(Potato spindle tuber viroid)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9	토마토의 종자 (from 1209)	본 표의 1항과 7항을 준수하여야 함 감자갈썩병(Potato spindle tuber viroid)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 감자풋마름병(Ralstonia solanacearum)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10	박과작물의 종자 (1207 70 000 0, from 1209)	본 표의 1항과 7항을 준수하여야 함 박과작물의 과실썩음병을 일으키는 Acidovorax citrulli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11	파속(Allium spp.)의 다양한 종의 종자 (from 1209)	본 표의 1항을 준수하여야 함 양파의 세균성잎마름병(Xanthomonas axonopodis pv. allii) 무발생 지역 및(또는) 생산장소에서 생산되어야 함
12	목화속(Gossypium spp.)의 종자 (1207 21 000 0)	본 표의 1항을 준수하여야 함 분홍솜벌레(Pectinophora gossypiella)와 Glomerella gossypii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함
씨감자		
13	감자(Solanum tuberosum)의 실제 종자 및 마이크로프랜츠 (시험관에 있는 것) (미소괴경 포함) (from 0602, from 0701)	본 요건의 18항, 19항과 본 표의 7항을 준수하여야 함 Potato yellowing alfamovirus, 감자구균(Potato Andean latent tymovirus), Potato Ahdeah mottie comovirus, 감자갈썩병 (Potato spindle tuber viroid), Potato T trichovirus가 없어야 함
14	종자용의 감자 괴경 (마이크로프랜츠와 미소괴경은 제외) (from 0701)	본 요건의 18항, 19항과 본 표의 7항을 준수하여야 함 종자는 Potato yellowing alfamovirus, Andean potato weevils (Premnotrypes spp.), Potato Andean mottle comovirus, 감자 구균(Potato Andean latent tymovirus), Potato smut(Thecaphora solani), Potato flea beetle(Epitrix cucumeris), Epitrix tuberis, Potato T trichovirus 무발생 지역과 감자흰시스트선충(Globodera pallida), 감자풋마름병(Ralstonia solanacearum), 감자갈썩병 (Potato spindle tuber viroid), 감자시스트선충(Globodera rostochiensis), 감자나방(Phthorimaea operculella); 콜롬비아 뿌리혹선충(Meloidogyne chitwoodi), Meloidogyne fallax, 감자 암종병(Synchytrium endobioticum), Impatiens necrotic spot virus 무발생 생산장소에서 생산되어야 함 씨감자는 식물잔여물이 없어야 함. 토양의 존재 허용량은 제품의 실제 중량의 1% 이하이어야 함

No	규제제품 (EAEU HS코드)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씨감자 로트에서 토양과 함께 확산되는 검역대상이 검출될 경우, 이후 공급 시에 토양의 존재 허용량은 제품의 실제 중량의 0.1% 이하로 정해짐
과수의 묘목, 대목, 삽수		
15	이과, 핵과, 각과류의 묘목, 대목, 삽수(관상형태 포함)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본 표의 1항을 준수하여야 함 벚초파리(<i>Drosophila suzukii</i>), 유리알락하늘소(<i>Anoplophora glabripennis</i>), 복숭아순나방(<i>Grapholita molesta</i>), <i>Numonia pyrivorella</i> , <i>Ceroplastes rusci</i> , 산호세각지벌레(<i>Quadraspidotus perniciosus</i>), <i>Anoplophora chinensis</i> , 복숭아심식나방(<i>Carposina niponensis</i>), 자두바구미(<i>Conotrachelus nenuphar</i>), 원두사과 나무하늘소(<i>Saperda candida</i>), 뽕나무깍지벌레(<i>Pseudaulacapsis pentagona</i>), 가루깍지벌레(<i>Pseudococcus comstocki</i>), 사과호리비단벌레(<i>Agrilus mali</i>), 사과과실파리(<i>Rhagoletis pomonella</i>), 거북밀깍지벌레(<i>Ceroplastes japonicas</i>), <i>Popillia japonica</i> , 배나무흰깍지벌레(<i>Lopholeucaspis japonica</i>)가 없어야 함 산호세각지벌레(<i>Quadraspidotus perniciosus</i>), 뽕나무깍지벌레(<i>Pseudaulacapsis pentagona</i>), 배나무흰깍지벌레(<i>Lopholeucaspis japonica</i>), <i>Ceroplastes rusci</i> , 가루깍지벌레(<i>Pseudococcus comstocki</i>) 확산지역에서의 반입은 수출국에서 식물을 소독 처리한 이후에만 허가되며 식물위생증명서에 소독처리에 관한 관련 기록을 기재하여야 함 감자흰시스트선충(<i>Globodera pallida</i>), 감자시스트선충(<i>Globodera rostochiensis</i>), 콜롬비아뿌리혹선충(<i>Meloidogyne chitwoodi</i>), <i>Meloidogyne fallax</i> , Tobacco ringspot nepovirus, 토마토 둥근무늬네포바이러스(<i>Tomato ringspot nepovirus</i>), 감자암종병(<i>Synchytrium endobioticum</i>), Texas root rot(<i>Phymatotrichopsis omnivore</i>)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16	사과나무(<i>Malus spp.</i>)의 묘목, 대목, 삽수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본 표의 15항, 19항, 21항을 준수하여야 함 잣빛무늬병(<i>Monilinia fructicola</i>), Cherry rasp leaf nepovirus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17	Prunus속의 핵과식물의 묘목, 대목, 삽수(관상형태 포함)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본 표의 15항을 준수하여야 함 잣빛무늬병(<i>Monilinia fructicola</i>), 자두곰보병(<i>Plum pox potyvirus</i>)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함
18	복숭아나무(<i>Prunus persica</i>)와 아몬드나무(<i>Prunus dulcis</i>)의 묘목, 대목, 삽수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본 표의 15항과 17항을 준수하여야 함 잣빛무늬병(<i>Monilinia fructicola</i>), Peach rosette nepovirus; 복숭아잠재자이크바이로이드(<i>Peach latent mosaic viroid</i>)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함

No	규제제품 (EAEU HS코드)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19	사과나무(Malus spp.), 배나무(Pyrus spp.), 풀명자나무(Chaenomeles japonica), 산사나무(Crataegus spp.), 마가목(Sorbus spp.), 채진목(Amelanchier spp.), 비파나무(Eriobotrya japonica), 섬개야광나무(Cotoneaster spp.), 피라칸사(Pyraacantha spp.), 스트란베시아(Stranvaesia spp.)의 묘목, 대목, 삽수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본 표의 15항을 준수하여야 함 과수화상병(Erwinia amylovora) 무발생 지역 및(또는) 생산장소에서 생산되어야 함
20	자두나무(Prunus domestica)와 살구나무(Armeniaca vulgaris)의 묘목, 대목, 삽수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본 표의 15항과 17항을 준수하여야 함 과수화상병(Erwinia amylovora) 무발생 지역 및(또는) 생산장소에서 생산되어야 함
21	사과나무(Malus spp.), 배나무, 퀴스(Cydonia spp.)의 묘목, 대목, 삽수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본 표의 15항과 19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과빛자루병(Apple proliferation phytoplasma), Pear decline phytoplasma 무발생 지역 및(또는) 생산장소에서 생산되어야 함
22	호두나무와 Juglans의 기타 종의 묘목, 대목, 삽수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Sirococcus clavigignenti-juglandacearum 무발생 지역 및(또는) 생산장소에서 생산되어야 함
23	피칸(Carya illinoensis)의 묘목, 대목, 삽수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Texas root rot(Phymatotrichopsis omnivore)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함
열매식물의 묘목, 대목, 삽수		
24	열매식물의 묘목, 삽수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벚초파리(Drosophila suzukii), 아메리카잎굴파리(Liriomyza trifolii), 담배거세미나방(Spodoptera litura), 꽃노랑총채벌레(Frankliniella occidentalis), Spodoptera littoralis, 산호세각지벌레(Quadraspidiotus perniciosus), 담배가루이(Bemisia tabaci), Liriomyza sativae, 뽕나무까지벌레(Pseudaulacaspis pentagona), 흑다리잎굴파리(Liriomyza huidobrensis), 사과과실파리(Rhagoletis pomonella), Popillia japonica가 없어야 함 감자흰시스트선충(Globodera pallida), 감자시스트선충(Globodera rostochiensis), 콜롬비아뿌리혹선충(Meloidogyne chitwoodi),

No	규제제품 (EAEU HS코드)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Meloidogyne fallax, Tobacco ringspot nepovirus, 토마토 동근무늬네포바이러스(Tomato ringspot nepovirus), 감자암종병(Synchytrium endobioticum), Texas root rot(Phymatotrichopsis omnivore)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산호세깍지벌레(Quadraspidotus perniciosus), 뽕나무깍지벌레(Pseudaulacaspis pentagona) 확산지역에서 열매식물 모목 및 삽수의 반입은 규제제품 로트를 소독처리하고 식물위생증명서에 소독처리에 관한 관련 기록을 기재한 경우에 허용됨
25	블랙베리(Rubus spp.)의 묘목, 삽수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본 표의 24항을 준수하여야 함 Phytophthora fragariae, Impatiens necrotic spot virus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26	딸기(Fragaria spp.), 라스베리(Rubus idaeus)의 묘목, 삽수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본 표의 24항을 준수하여야 함 딸기탄저병(Colletotrichum acutatum), Phytophthora fragariae 무발생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27	빌베리, 블루베리(Vaccinium spp.)의 묘목, 삽수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본 표의 23항을 준수하여야 함 Diaporthe vacciniae, Phytophthora ramorum 무발생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포도나무의 묘목, 대목, 삽수

28	포도나무(Vitis spp.)의 묘목, 대목, 삽수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필록세라(Dactylospheara (Viteus) vitifoliae), Margorodes vitis 무발생 지역과 Pseudococcus citriculus, Xylophilus ampelinus, Candidatus Phytoplasma vitis, fig wax scale(Ceroplastes rusci), Tobacco ringspot nepovirus, 토마토동근무늬네포바이러스(Tomato ringspot nepovirus), Peach rosette nepovirus, Texas root rot(Phymatotrichopsis omnivore), 가루깍지벌레(Pseudococcus comstocki), 거북밀깍지벌레(Ceroplastes japonicas) 무발생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Pseudococcus citriculus, Fig wax scale(Ceroplastes rusci), 가루깍지벌레(Pseudococcus comstocki), 거북밀깍지벌레(Ceroplastes japonicas) 확산지역에서의 반입은 규제제품 로트를 소독처리하고 식물위생증명서에 소독처리에 관한 관련 기록을 기재한 경우에 허용됨
----	--	---

관상식물의 인경, 구경, 근경

29	관상식물의 인경, 구경, 근경 (from 0601)	꽃노랑총채벌레(Frankliniella occidentalis), 오이총채벌레(Thrips palmi)가 없어야 함 감자흰시스트선충(Globodera pallida), 감자시스트선충(Globodera rostochiensis), 콜롬비아뿌리혹선충(Meloidogyne chitwoodi), Meloidogyne fallax, Tobacco ringspot nepovirus, 토마토동근무늬네포바이러스(Tomato ringspot nepovirus), Impatiens
----	---------------------------------	--

No	규제제품 (EAEU HS코드)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necrotic spot virus, 감자암증병(Synchytrium endobioticum), Texas root rot(Phymatotrichopsis omnivore),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30	Allium spp.속 식물의 인경 (from 0601, from 0703)	Xantomonas axonopodis pv. allii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관상식물의 수목 및 관목

31	모든 관상식물의 수목 및 관목 (산림관상식물은 제외)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미국흰불나방(Hyphantria cunea), 유리알락하늘소(Anoplophora glabripennis), Anoplophora chinensis, 담배거세미나방(Spodoptera litura), Spodoptera littoralis, 아메리카잎굴파리(Liriomyza trifolii), Liriomyza sativae, 흑다리잎굴파리(Liriomyza huidobrensis), Popillia japonica, 서울호리비단벌레(Agrilus planipennis), 원두사과나무하늘소(Saperda candida); 산호세깍지벌레(Quadraspidotus perniciosus), 뽕나무깍지벌레(Pseudaulacaspis pentagona), 배나무흰깍지벌레(Lopholeucaspis japonica), 가루깍지벌레(Pseudococcus comstocki), fig wax scale(Ceroplastes rusci), 거북말깍지벌레(Ceroplastes japonicas), Pseudococcus citriculus가 없어야 함 Texas root rot(Phymatotrichopsis omnivore), Phytophthora ramorum, Phytophthora kernoviae, 잣빛무늬병(Monilinia fructicola), Chalara fraxinea, Tobacco ringspot nepovirus, 토마토둥근무늬네포바이러스(Tomato ringspot nepovirus), 감자흰시스트선충(Globodera pallida), 감자시스트선충(Globodera rostochiensis), 콜롬비아뿌리혹선충(Meloidogyne chitwoodi), Meloidogyne fallax; 감자암증병(Synchytrium endobioticum)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산호세깍지벌레(Quadraspidotus perniciosus), 뽕나무깍지벌레(Pseudaulacaspis pentagona), 배나무흰깍지벌레(Lopholeucaspis japonica), 가루깍지벌레(Pseudococcus comstocki), fig wax scale(Ceroplastes rusci), 거북말깍지벌레(Ceroplastes japonicas), Pseudococcus citriculus 확산지역에서의 반입은 규제제품 로트를 소독처리하고 식물위생증명서에 소독처리에 관한 관련 기록을 기재한 경우에 허용됨
32	풀명자나무(Chaenomeles japonica), 산사나무(Crataegus), 섬개야광나무(Cotoneaster), 마가목(Sorbus), 채진목(Amelanchier), 피라칸사(Pyracantha), 스트란베시아(Stranvaesia), 비파나무(Eriobotrya japonica)의 묘목, 대목, 삽수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본 표의 31항을 준수하여야 함 과수화상병(Erwinia amylovora)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No	규제제품 (EAEU HS코드)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산림관상식물 및 산림식물의 묘목		
33	침엽수류(Coniferae)의 묘목(분재 포함) (단, Thuja속, Taxus속, Pinus속은 제외)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본 요건의 43항과 45항을 준수하여야 함 소나무허리노린재(Leptoglossus occidentalis), Western pine beetle(Dendroctonus brevicomis), 소나무좀(Dendroctonus ponderosae), Dendroctonus valens, Eastern Six-Spined ips (Ips calligraphus), Eastern fivespined ips(Ips grandicollis), Pine Engraver Beetle(Ips pini), Ips plastographus, 소나무 재선충(Bursaphelenchus xylophilus), Mycosphaerella dearnesii, 소나무 줄기암·가지암의 병원균 Atropellis piniphila와 Atropellis pinicola 무발생 지역과 감자흰시스트선충(Globodera pallida), 감자시스트선충(Globodera rostochiensis), 콜롬비아뿌리혹선충(Meloidogyne chitwoodi), Meloidogyne fallax; 감자암종병(Synchytrium endobioticum) 무발생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 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34	재식용의 Pinus속 소나무 식물(묘목, 분재) (from 0602 90 410 0)	본 요건의 43항과 45항을 준수하여야 함 소나무허리노린재(Leptoglossus occidentalis), Western pine beetle(Dendroctonus brevicomis), 소나무좀(Dendroctonus ponderosae), Dendroctonus valens, Eastern Six-Spined ips (Ips calligraphus), Eastern fivespined ips(Ips grandicollis), Pine Engraver Beetle(Ips pini), Ips plastographus, 소나무 재선충(Bursaphelenchus xylophilus), Mycosphaerella dearnesii, 소나무 줄기암·가지암의 병원균 Atropellis piniphila와 Atropellis pinicola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함
35	활엽수류의 묘목 [오크(Quercus spp.), 밤나무(Castanea spp.), 탄오크(Lithocarpus densiflorus), 자이언트밤나무(Castanopsis chrysophylla), 유럽너도밤나무(Fagus sylvatica), 몰푸레나무(Fraxinus spp.), 자작나무(Betula spp.), 오리나무(Alnus spp.), 장미과(Rosaceae)는 제외]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본 요건의 43항과 46항을 준수하여야 함 Phytophthora ramorum, Phytophthora kernoviae, Phytophthora alni, Sirococcus clavigignenti-juglandacearum, Tobacco ringspot nepovirus, 토마토통근무늬네포바이러스(Tomato ringspot nepovirus)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과 감자 흰시스트선충(Globodera pallida), 감자시스트선충(Globodera rostochiensis), 콜롬비아뿌리혹선충(Meloidogyne chitwoodi), Meloidogyne fallax; 감자암종병(Synchytrium endobioticum) 무발생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36	장미과(Rosaceae) 활엽수류의 묘목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본 요건의 43항, 46항과 본 표의 31항을 준수하여야 함 원두사과나무하늘소(Saperda candida) 무발생 지역과 과수 화상병(Erwinia amylovora)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 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37	오크(Quercus spp.), 밤나무(Castanea spp.), 탄오크(Lithocarpus densiflorus), 자이언트밤나무(Castanopsis	본 요건의 43항과 46항을 준수하여야 함 참나무시들음병 병원균(Ceratocystis fagacearum), Phytophthora ramorum, Phytophthora kernoviae 무발생 지역 및(또는) 생산 장소에서 생산되어야 함

No	규제제품 (EAEU HS코드)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chrysophylla), 유럽너도밤나무 (Fagus sylvatica)의 묘목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38	오크(Quercus), 밤나무(Castanea)의 과실 (0802 41 000 0, 0802 42 000 0, from 1209 99 109 0)	본 요건의 43항과 46항을 준수하여야 함 오크(Quercus), 밤나무(Castanea) 과실의 반입은 참나무시들음병 병원균(Ceratocystis fagacearum) 무발생 지역 및(또는) 생산 장소에서 허가됨
39	물푸레나무(Fraxinus)의 묘목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본 요건의 43항, 46항과 본 표의 31항을 준수하여야 함 서울호리비단벌레(Agrilus planipennis), Chalara fraxinea 무발생 지역 및(또는) 생산장소에서 생산되어야 함
40	자작나무(Betula)의 묘목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본 요건의 43항, 46항과 본 표의 31항을 준수하여야 함 Agrilus anxius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함
41	오리나무(Alnus)의 묘목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본 표의 31항을 준수하여야 함 Phytophthora alni 무발생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 되어야 함
42	활엽수류 및 침엽수류 관상식물의 묘목, 뿌리가까지 토양 덩어리가 있는 과수의 묘목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본 표의 31항, 33항, 36항을 준수하여야 함 Texas root rot(Phymatotrichopsis omnivore)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함

다양한 종류의 화분식물

43	다양한 종류의 화분식물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담배거세미나방(Spodoptera litura), Spodoptera littoralis, Popillia japonica, Ripersiella Rhizoecus hibisci, 산호세깍지벌레 (Quadraspidotus perniciosus), 뽕나무깍지벌레(Pseudaulacaspis pentagona), 배나무흰깍지벌레(Lopholeucaspis japonica), Fig wax scale(Ceroplastes rusci), 거북밀깍지벌레(Ceroplastes japonicas), Pseudococcus citriculus, 가루깍지벌레(Pseudococcus comstocki), 콜롬비아뿌리혹선충(Meloidogyne chitwoodi), Meloidogyne fallax, Tobacco ringspot nepovirus, 토마토동근 무늬네포바이러스(Tomato ringspot nepovirus), Impatiens necrotic spot virus, 감자흰시스트선충(Globodera pallida), 감자시스트 선충(Globodera rostochiensis), 담배가루이(Bemisia tabaci), Echinothrips americanus, 꽃노랑총채벌레(Frankliniella occidentalis), 오이총채벌레(Thrips palmi), Spodoptera frugiperda, Spodoptera eridania, Helicoverpa zea, Liriomyza langei, Liriomyza nietzkei, Amauromyza maculosa, 담배총채벌레 (Frankliniella fusca), Frankliniella insularis, Frankliniella schultzei, Frankliniella tritici, 볼록총채벌레(Scirtothrips dorsalis), 하와이총채벌레(Thrips hawaiiensis), Chrysodeixis chalcites,
----	---	--

No	규제제품 (EAEU HS코드)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붉은금무늬밤나방(<i>Chrysodeixis eriosoma</i>), Sunflower beetle (<i>Zygogramma exclamationis</i>), 흑다리잎굴파리(<i>Liriomyza huidobrensis</i>), <i>Liriomyza sativae</i> , 아메리카잎굴파리(<i>Liriomyza trifolii</i>), <i>Tetranychus evansi</i> 가 없어야 함
44	펠라르고늄(<i>Pelargonium</i>) 식물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본 표의 43항을 준수하여야 함 제라늄녹병(<i>Puccinia pelargonii-zonalis</i>), 감자꽃마름병(<i>Ralstonia solanacearum</i>)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45	카멜리아(<i>Camellia</i>) 식물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본 표의 43항을 준수하여야 함 동백균핵버섯(<i>Ciborinia camelliae</i>) 무발생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46	국화(<i>Chrysanthemum</i>) 식물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본 표의 43항을 준수하여야 함 국화화부병(<i>Didymella ligulicola</i>), 국화흰녹병(<i>Puccinia horiana</i>)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열매식물, 화훼류, 채소류의 모종

47	열매식물, 화훼류, 채소류의 모종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새삼속(<i>Cuscuta</i> spp.)의 식물, 담배가루이(<i>Bemisia tabaci</i>), 꽃노랑총채벌레(<i>Frankliniella occidentalis</i>), 오이총채벌레(<i>Thrips palmi</i>), 담배거세미나방(<i>Spodoptera litura</i>), <i>Spodoptera littoralis</i> , Potato flea beetle(<i>Epitrix cucumeris</i>), <i>Epitrix tuberis</i> , 남미 토마토나방(<i>Tuta absoluta</i>), 아메리카잎굴파리(<i>Liriomyza trifolii</i>), <i>Liriomyza sativae</i> , 흑다리잎굴파리(<i>Liriomyza huidobrensis</i>), 왜콩풍뎅이(<i>Popillia japonica</i>), 사과과실파리(<i>Rhagoletis pomonella</i>)가 없어야 함 Tobacco ringspot nepovirus, 토마토둥근무늬네포바이러스(<i>Tomato ringspot nepovirus</i>), Impatiens necrotic spot virus, 양파의 세균성 잎마름병(<i>Xanthomonas axonopodis</i> pv. <i>allii</i>), 박과작물 과실썩음병 병원균(<i>Acidovorax avenae</i> subsp. <i>Citrulli</i>), 감자암종병(<i>Synchytrium endobioticum</i>), 감자흰시스트선충(<i>Globodera pallida</i>), 감자시스트선충(<i>Globodera rostochiensis</i>), 콜롬비아뿌리혹선충(<i>Meloidogyne chitwoodi</i>), <i>Meloidogyne fallax</i>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48	딸기(<i>Fragaria</i>)와 라스베리(<i>Rubus idaeus</i>)의 모종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본 표의 47항을 준수하여야 함 <i>Phytophthora fragariae</i> , 딸기탄저병(<i>Colletotrichum acutatum</i>) 무발생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49	빌베리, 크랜베리, <i>Vaccinium</i> 속의 기타 종의 모종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본 표의 47항을 준수하여야 함 <i>Rhagoletis mendax</i> 가 없어야 함 <i>Phytophthora ramorum</i> , <i>Phytophthora kernoviae</i> , <i>Diaporthe vaccinia</i> 무발생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No	규제제품 (EAEU HS코드)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50	국화(<i>Chrysanthemum</i>)의 모종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본 표의 47항을 준수하여야 함 국화화부병(<i>Didymella ligulicola</i>), 국화흰녹병(<i>Puccinia horiana</i>)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51	페튜니아(<i>Petunia</i>)와 페퍼(<i>Piper spp</i>)의 모종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본 표의 47항을 준수하여야 함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i>Tomato yellow leaf curl begomovirus</i>), 감자갈쭉병(<i>Potato spindle tuber viroid</i>)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52	토마토(<i>Lycopersicon spp.</i>)의 모종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본 표의 47항을 준수하여야 함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i>Tomato yellow leaf curl begomovirus</i>), 감자갈쭉병(<i>Potato spindle tuber viroid</i>), 감자꽃마름병(<i>Ralstonia solanacearum</i>)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열대식물

53	열대식물 및 아열대식물(감귤류, 야자수, 무화과, 파인애플, 아보카도, 망고 등)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Anoplophora chinensis, 왜콩풍뎅이(<i>Popillia japonica</i>), 사과 과실파리(<i>Rhagoletis pomonella</i>), 담배거세미나방(<i>Spodoptera litura</i>), <i>Spodoptera littoralis</i> , 아메리카잎굴파리(<i>Liriomyza trifolii</i>), <i>Liriomyza sativae</i> , 흑다리잎굴파리(<i>Liriomyza huidobrensis</i>), 왜콩풍뎅이(<i>Popillia japonica</i>), 담배가루이(<i>Bemisia tabaci</i>), 꽃노랑총채벌레(<i>Frankliniella occidentalis</i>), 오이총채벌레(<i>Thrips palmi</i>), 뽕나무깍지벌레(<i>Pseudaulacaspis pentagona</i>), 배나무 흰깍지벌레(<i>Lopholeucaspis japonica</i>), 거북밀깍지벌레(<i>Ceroplastes japonicas</i>), Fig wax scale(<i>Ceroplastes rusci</i>), <i>Pseudococcus citriculus</i> , 가루깍지벌레(<i>Pseudococcus comstocki</i>), <i>Rhizococcus hibisci</i> , <i>Megaselia scalaris</i> , 지중해과실파리(<i>Ceratitis capitata</i>)가 없어야 함 <i>Impatiens necrotic spot virus</i> , 감자암종병(<i>Synchytrium endobioticum</i>), Potato smut(<i>Thecaphora solani</i>), 감자흰시스트 선충(<i>Globodera pallida</i>), 감자시스트선충(<i>Globodera rostochiensis</i>), 콜롬비아뿌리혹선충(<i>Meloidogyne chitwoodi</i>), <i>Meloidogyne fallax</i> 무발생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	---	--

☐ 채소류 및 감자에 대한 검역 식물 위생요건

- 감자와 기타 덩이 줄기채소 및 뿌리채소에서 토양의 혼합물은 제품의 실제 중량의 1%를 초과해서는 안 됨
- EAEU 관세영역으로 반입되고 EAEU 관세영역 내에서 이동되는 채소류 및 감자는 *Spodoptera litura*, *Liriomyza trifolii*, *Helicoverpa zea*, *Liriomyza nietzkei*, *Frankliniella fusca*, *Premnotrypes spp.*, Potato Andean latent tymovirus, *Bactrocera cucurbitae*, *Acidovorax citrulli*, Beet necrotic yellow

vein benyvirus, Globodera pallida, Ralstonia solanacearum, Potato spindle tuber viroid, Potato T virus, Frankliniella tritici, Thrips hawaiiensis, Tectia solanivora, Thecaphora solani, Myiopardalis pardalina, Spodoptera littoralis, Frankliniella occidentalis, Chrysodeixis eriosoma, Chrysodeixis chalcites, Globodera rostochiensis, Frankliniella insularis, Scirtothrips dorsalis, Liriomyza langei, Epilachna vigintioctomaculata, Phthorimaea operculella, Tetranychus evansi, Meloidogyne chitwoodi, Spodoptera frugiperda, Xanthomonas axonopodis pv. allii, Meloidogyne fallax, Liriomyza sativae, Potato Andean mottle comovirus, Synchytrium endobioticum, Bemisia tabaci, Frankliniella schultzei, Thrips palmi, Amauromyza maculosa, Echinothrips americanus, Liriomyza huidobrensis, Tuta absoluta, Spodoptera eridania가 없어야 함

- 규제제품의 각 패키지에는 제품명, 원산지국가, 수출국 및/또는 재수출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라벨링이 있어야 함

No	규제제품 (EAEU HS코드)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1	식용 및 공업용 감자(Solanum tuberosum) (신선 또는 냉장) (0701)	Andean potato weevils(Premnotrypes spp.), Guatemalan potato moth(Tectia solanivora), 감자나방(Phthorimaea operculella), Potato flea beetle(Epitrix cucumeris), Epitrix tuberis가 없어야 함. Potato Andean mottle comovirus, 감자구균(Potato Andean latent tymovirus), Potato T virus, Potato yellowing alfamovirus 무발생 생산지역과 감자흰시스트선충(Globodera pallida), 콜롬비아뿌리혹선충(Meloidogyne chitwoodi), Meloidogyne fallax, 감자시스트선충(Globodera rostochiensis), Potato smut (Thecaphora solani), 감자암종병(Synchytrium endobioticum); 감자뚫마름병(Ralstonia solanacearum), Impatiens necrotic spot virus, 감자갈썩병(Potato spindle tuber viroid) 무발생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2	토마토(Lycopersicon) (신선 또는 냉장) (0702 00 000)	담배거세미나방(Spodoptera litura Fabr.), Spodoptera littoralis Spodoptera littoralis, Guatemalan potato moth(Tectia solanivora), Tetranychus evansi, 남미토마토나방(Tuta absoluta)이 없어야 함.
3	양파(Allium cepa), 쪽파(Allium ascalonicum), 마늘(Allium sativum), 리크(Allium porrum)와 기타 파속의 채소 (신선 또는 냉장) (0703)	꽃노랑총채벌레(Frankliniella occidentalis), Liriomyza nietzkei, Spodoptera frugiperda, Spodoptera eridania, Helicoverpa zea, 콜롬비아뿌리혹선충(Meloidogyne chitwoodi), Meloidogyne fallax, 양파의 세균성잎마름병(Xanthomonas axonopodis pv. allii), 감자암종병(Synchytrium endobioticum)이 없어야 함. Potato smut(Thecaphora solani) 무발생 지역과 콜롬비아뿌리

No	규제제품 (EAEU HS코드)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p>흑선충(<i>Meloidogyne chitwoodi</i>), <i>Meloidogyne fallax</i>, 감자시스트선충(<i>Globodera rostochiensis</i>); 감자흰시스트선충(<i>Globodera pallida</i>) 무발생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함.</p>
4	<p>양배추, 꽃양배추, 구경양배추, 케일, Brassica속의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채소 (신선 또는 냉장) (0704)</p>	<p>꽃노랑총채벌레(<i>Frankliniella occidentalis</i>), 담배가루이(<i>Bemisia tabaci</i>), 담배거세미나방(<i>Spodoptera litura</i>), <i>Spodoptera littoralis</i>, <i>Chrysodeixis chalcites</i>가 없어야 함.</p>
5	<p>상추(<i>Lactuca sativa</i>) 및 치커리(<i>Cichorium spp.</i>) (신선 또는 냉장) (0705)</p>	<p>꽃노랑총채벌레(<i>Frankliniella occidentalis</i>), 오이총채벌레(<i>Thrips palmi</i>), 담배가루이(<i>Bemisia tabaci</i>), 담배거세미나방(<i>Spodoptera litura</i>), <i>Spodoptera littoralis</i>, 아메리카잎굴파리(<i>Liriomyza trifolii</i>), <i>Liriomyza sativae</i>, 흑다리잎굴파리(<i>Liriomyza huidobrensis</i>), 담배총채벌레(<i>Frankliniella fusca</i>), <i>Frankliniella insularis</i>, <i>Frankliniella schultzei</i>, <i>Frankliniella tritici</i>, 볼록총채벌레(<i>Scirtothrips dorsalis</i>), 하와이총채벌레(<i>Thrips hawaiiensis</i>)가 없어야 함.</p> <p>감자시스트선충(<i>Globodera rostochiensis</i>), 감자흰시스트선충(<i>Globodera pallida</i>), 콜롬비아뿌리흑선충(<i>Meloidogyne chitwoodi</i>) 무발생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함.</p>
6	<p>당근(<i>Daucus</i>), 순무(<i>Brassica rapa</i>), 샐러드용 사탕무뿌리(<i>Beta</i>), 선모(<i>Tragopogon</i>), 셀러리악(<i>Apium</i>), 무(<i>Raphanus sativus</i>)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 (신선 또는 냉장) (0706)</p>	<p>Potato smut(<i>Thecaphora solani</i>), Texas root rot(<i>Phymatotrichopsis omnivora</i>) 무발생 지역과 콜롬비아뿌리흑선충(<i>Meloidogyne chitwoodi</i>), <i>Meloidogyne fallax</i>, 감자흰시스트선충(<i>Globodera pallida</i>), 감자시스트선충(<i>Globodera rostochiensis</i>), Texas root rot(<i>Phymatotrichopsis omnivora</i>), Potato smut(<i>Thecaphora solani</i>), 감자암종병(<i>Synchytrium endobioticum</i>), Beet necrotic yellow vein benyvirus 무발생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함.</p>
7	<p>오이(<i>Cucumis sativus</i>) 및 작은 오이(gherkins) (신선 또는 냉장) (0707 00)</p>	<p>박과작물과실썩음병(<i>Acidovorax citrulli</i>)이 없어야 함.</p>
8	<p>스위드(<i>Brassica napobrassica</i>), 사료용 뿌리식물, 사료용 케일 (<i>Brassica aleracea</i> var. <i>acephata</i>), 맹골드(<i>Beta vulgaris</i>) (from 0709, from 1214)</p>	<p>Potato smut(<i>Thecaphora solani</i>) 무발생 지역과 콜롬비아뿌리흑선충(<i>Meloidogyne chitwoodi</i>), <i>Meloidogyne fallax</i>, 감자흰시스트선충(<i>Globodera pallida</i>), 감자시스트선충(<i>Globodera rostochiensis</i>), Potato smut(<i>Thecaphora solani</i>), 감자암종병(<i>Synchytrium endobioticum</i>), Beet necrotic yellow vein benyvirus 무발생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함.</p>
9	<p>사탕무(<i>Beta vulgaris</i>) (1212 91)</p>	<p>Potato smut(<i>Thecaphora solani</i>) 무발생 지역과 콜롬비아뿌리흑선충(<i>Meloidogyne chitwoodi</i>), <i>Meloidogyne fallax</i>, 감자흰시스트선충(<i>Globodera pallida</i>), 감자시스트선충(<i>Globodera</i></p>

No	규제제품 (EAEU HS코드)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rostochiensis), 감자암종병(Synchytrium endobioticum), Beet necrotic yellow vein benyvirus 무발생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 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10	채두류 (꼬투리 유무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냉장) (0708)	Callosobruchus spp.속의 콩바구미가 없어야 함.
11	기타 채소류 (신선 또는 냉장) (0709)	본 요건의 24항을 준수해야 함 : 규제제품의 각 패키지에는 제품명, 원산지국가, 수출국 및/또는 재수출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라벨링이 있어야 함
12	매니옥(Manihot esculenta), 칩뿌리(Maranta), 샬립, 국아 또는 돼지감자(Helianthus tuberosus), 고구마(Ipomoea batatas),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 (신선 또는 냉장) (0714)	Potato smut(Thecaphora solani), Texas root rot(Phymatotrichopsis omnivore) 무발생 지역과 콜롬비아뿌리혹선충(Meloidogyne chitwoodi), Meloidogyne fallax, 감자흰시스트선충(Globodera pallida), 감자시스트선충(Globodera rostochiensis), Texas root rot(Phymatotrichopsis omnivora), Potato smut(Thecaphora solani), 감자암종병(Synchytrium endobioticum) 무발생 생산 장소 및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13	멜론(수박 포함) (from 0807)	멜론파리(Myiopardalis pardalina), 오이과실파리(Bactrocera curcurbitae), 박과작물과실썩음병(Acidovorax citrulli), 대청가시풀(Cenhrus longispinus)이 없어야 함.

곡물, 콩과 작물 및 유지식물의 종자, 그 가공품에 대한 검역 식물 위생요건

- 스트리가속(Striga spp) 검역잡초의 종자에 오염된 곡물, 콩과 작물 및 유지 식물의 종자, 그 가공품 로트는 반송해야 함. 다른 검역잡초의 종자 또는 과실이 검출될 시에 그 로트는 반송, 폐기하거나 검역잡초의 종자 및 과실의 생존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기술로 검역식물위생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서 가공하여야 함
- 벌크 형태의 곡물, 콩과 작물 및 유지식물의 종자, 그 가공품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공해주는 선박의 선창, 컨테이너, 곡물운반화차, 자동차차량으로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이 허용됨
- 포장된 형태의 곡물, 콩과 작물 및 유지식물의 종자, 그 가공품은 오직 새 것의 기체 투과성 포장으로만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 및 연합의 관세영역 내에서 이동이 허용됨. 이 항목의 요건은 소비자 포장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 곡물, 콩과 작물 및 유지식물의 종자, 그 가공품을 선박의 선창에서 내릴 시에 수면과 부두에 유출되지 못하게 하는 기술적 수단을 사용해야 함

- 곡물, 콩과 작물 및 유지식물의 종자, 그 가공품을 운송수단에서 내리는 작업은 단단한 바닥표면(콘크리트, 아스팔트)으로 덮여있는 장소에서만 허용됨
- 하역장과 철로에서 생성되는 곡물, 콩과 작물 및 유지식물의 종자, 그 가공품의 유출물은 매일 제거하여야 함
- 식용, 사료용, 공업용으로 지정되어있는 곡물, 콩과 작물 및 유지식물의 종자를 파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됨
- *Trogoderma granarium* 및(또는) *Caulophilus latinasus* Say 확산국가에서 반입되는 곡물, 콩과 작물 및 유지식물의 종자, 그 가공품은 검역식물위생상태를 확인한 이후에 운송수단에서 내릴 수 있음
- 발아, 성장 및 향후 번식이 가능한 검역잡초의 종자 및 과실이 있는 곡물, 콩과 작물 및 유지식물의 종자, 그 가공품의 웨이스트는 검역잡초의 종자 및 과실의 생존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기술로 가공하여야 함
- 수출을 위해 곡물 및 곡물가공품 로트를 발송하는 경우 검역잡초의 종자 및 과실이 있는 곡물 및 곡물가공품을 가공하러 보내지 않아도 연합의 관세영역 내에서 이동이 허용됨

No	규제제품 (EAEU HS코드)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1	곡물, 콩과 작물 및 유지식물의 종자 (0713,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103, 1104, 1201, 1202, 1204 00, 1205, 1206 00, 1207, from 2302)	곡물, 콩과 작물 및 유지식물의 종자, 그 가공품은 스트리가속 (<i>Striga</i> spp)의 식물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 생산포장에서만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될 수 있음
2	곡물, 콩과 작물 및 유지식물의 종자, 그 가공품 (0713,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101 00, 1102, 1103, 1104, 1106 10 000 0, 1201, 1202, 1203 00 000 0, 1204 00, 1205, 1206 00, 1207, from 2302)	<i>Callosobruhus</i> 속의 콩바구미, <i>Caulophilus latinasus</i> , 곡식 수시령이(<i>Trogoderma granarium</i>)가 없어야 함 곡물 및 곡물가공품의 살아있는 저장해충이 검출될 시에 곡식수시령이의 활성유충에 대한 처리법에 따라 운송수단에서 소독 처리하여야 하며, 소독처리 실사가 불가능한 경우 반송 또는 폐기하여야 함
3	밀, 메슬린, 라이밀 (1001, 1008 60 000 0)	본 표의 1항과 2항을 준수하여야 함 <i>Tilletia indica</i>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함
4	옥수수 (1005)	본 표의 1항과 2항을 준수하여야 함 <i>Stenocarpella macrospora</i> 와 <i>Stenocarpella maydis</i> , <i>Cochliobolus heterostrophus</i> race T, <i>Pantoea stewartii</i> subsp. <i>stewartii</i>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No	규제제품 (EAEU HS코드)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5	콩작물 및 그 가공품 (0713, 1106 10 000 0, 1201, 1202)	본 표의 1항과 2항을 준수하여야 함 Callosobruchus spp.속의 콩바구미가 없어야 함
6	대두 (1201)	본 표의 1항과 2항을 준수하여야 함 콩자주무늬병(Cercospora kikuchii) 무발생 지역 및(또는) 생산장소에서 생산되어야 함
7	맥아 (1107)	본 표의 1항과 2항을 준수하여야 함
8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입상으로 만들지 않은 것에 한함) (from 2304 00 000)	본 표의 1항과 2항을 준수하여야 함
9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입상으로 만들지 않은 것에 한함) (from 2305 00 000 0)	본 표의 1항과 2항을 준수하여야 함
10	2304 00 000이나 2305 00 000 0의 유박을 제외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입상으로 만들지 않은 것에 한함) (from 2306)	본 표의 1항과 2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과실 및 열매에 대한 검역 식물 위생요건

- 통합목록에 포함되어있는 검역대상에 감염된 과실 및 열매는 EAEU 관세영역으로의 반입과 EAEU 관세영역 내에서의 이동이 금지됨. 단, Plum pox potyvirus, 각지벌레 검역 종들이 있는 과실 및 열매는 예외로 함
- 규제제품의 각 패키지에는 제품명, 원산지국가 및 원산지장소, 수출국 및/또는 재수출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라벨링이 있어야 함. 단, EAEU HS코드 0807호의 규제제품을 벌크 형태로 EAEU 관세영역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EAEU HS코드 0807호의 규제제품을 벌크 형태로 연합의 관세영역 내에서 이동하는 것은 허용됨

No	규제제품 (EAEU HS코드)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1	아보카도(<i>Persea americana</i>), 구아바(<i>Psidium guajava</i>), 망고 (<i>Mangifera</i>) (신선) (from 0804)	지중해과실파리(<i>Ceratitis capitata</i>)가 없어야 함
2	포도 (신선 또는 건조) (0806)	지중해과실파리(<i>Ceratitis capitata</i>), 새삼속(<i>Cuscuta spp.</i>)이 없어야 함
3	멜론(수박 포함) (신선) (from 0807)	박과작물과실씩음병(<i>Acidovorax citrulli</i>), 멜론파리(<i>Myiopardalis pardalina</i>), 오이과실파리(<i>Bactrocera cucurbitae</i>), 대청가시물(<i>Cenhrus longispinus</i>) 무발생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4	파파야(<i>Carica papaya</i>) (신선) (from 0807)	지중해과실파리(<i>Ceratitis capitata</i>)가 없어야 함
5	사과(<i>Malus ssp.</i>), 배(<i>Pyrus ssp.</i>), 퀸스(<i>Cydonia</i>) (신선) (0808)	복숭아순나방(<i>Grapholita molesta</i>), 복숭아심식나방(<i>Carposina niponensis</i>), 사과과실파리(<i>Rhagoletis pomonella</i>), 벚초파리(<i>Drosophila suzukii</i>), 지중해과실파리(<i>Ceratitis capitata</i>)가 없어야 함 젓빛무늬병(<i>Monilinia fructicola</i>) 무발생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6	살구, 체리, 단양벚, 복숭아(넥타 포함), 자두 및 슬로우(<i>Prunus spp.</i>) (신선) (0809)	복숭아순나방(<i>Grapholita molesta</i>), 복숭아심식나방(<i>Carposina niponensis</i>), 사과과실파리(<i>Rhagoletis pomonella</i>), 벚초파리(<i>Drosophila suzukii</i>), 지중해과실파리(<i>Ceratitis capitata</i>)가 없어야 함 젓빛무늬병(<i>Monilinia fructicola</i>) 무발생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7	석류(<i>Punica L.</i>) (신선) (from 0810)	지중해과실파리(<i>Ceratitis capitata</i>)가 없어야 함 가루깍지벌레(<i>Pseudococcus comstoki</i>) 무발생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8	빌베리, 블루베리, 월귤의 열매 (신선) (from 0810)	<i>Rhagoletis mendax</i> , 사과과실파리(<i>Rhagoletis pomonella</i>)가 없어야 함 <i>Diaporthe vaccinia</i> 무발생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9	딸기(<i>Fragaria</i>)의 열매 (신선) (from 0810)	딸기탄저병(<i>Colletotrichum acutatum</i>) 무발생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함
10	기타 과실 (신선) (신선 석류, 빌베리, 블루베리, 월귤의 열매, 딸기는 제외) (from 0810)	본 요건의 36항, 37항, 38항을 준수해야 함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절화와 꽃봉오리에 대한 검역 식물 위생요건

-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절화와 꽃봉오리에는 *Spodoptera litura*, *Liriomyza trifolii*, *Liriomyza nietzkei*, *Frankliniella fusca*, *Didymella ligulicola*, *Puccinia horiana*, *Xanthomonas axonopodis* pv. *allii*, *Puccinia pelargonii-zonalis*, *Ciborinia camelliae*, *Frankliniella tritici*, *Thrips hawaiiensis*, *Spodoptera littoralis*, *Frankliniella occidentalis*, *Chrysodeixis eriosoma*, *Chrysodeixis chalcites*, *Frankliniella insularis*, *Scirtothrips dorsalis*, *Liriomyza langei*, *Spodoptera frugiperda*, *Helicoverpa zea*, *Tetranychus evansi*, *Liriomyza sativae*, *Zygotogramma exclamationis*, *Bemisia tabaci*, *Frankliniella schultzei*, *Thrips palmi*, *Amauromyza maculosa*, *Echinothrips americanus*, *Liriomyza huidobrensis*, *Spodoptera eridania*가 없어야 함
- 규제제품의 각 패키지에는 제품명, 원산지국가, 수출국 및/또는 재수출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라벨링이 있어야 함
- 온실 및 온실에서 규제제품 생산에 종사하는 기타 업체들에서 사용하기 위한 절화와 꽃봉오리를 보관 및 선별의 목적으로 EAEU 관세영역으로 반입하는 것은 금지됨
- 상기 명시된 검역대상들이 절화 로트(로트의 일부)에서 검출될 시에 감염된 로트(로트의 일부)는 반송 또는 폐기하여야 함. 실험실 감정검사로 확인된 결과 그러한 검역대상들이 로트(로트의 일부)에 없을 시에 검역대상이 없는 로트의 부분은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됨

No	규제제품 (EAEU HS코드)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1.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절화와 꽃봉오리 (신선) (0603 11 000 0 - 0603 19 700 0)	본 요건의 39항에 명시된 검역대상들이 없어야 함. 국화화부병(<i>Didymella ligulicola</i>), 국화흰녹병(<i>Puccinia horiana</i>), 제라늄녹병(<i>Puccinia pelargonii-zonalis</i>), 동백균핵버섯(<i>Ciborinia camelliae</i>)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함.

기타 규제 제품에 대한 검역 식물 위생요건

-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되고 연합의 관세영역 내에서 이동하는 기타 규제 제품은 다음의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No	규제제품 (EAEU HS코드)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1	코코넛, 브라질넛 및 캐슈넛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함) (0801)	곡식수시렁이(Trogoderma granarium Ev.)가 없어야 함
2	기타의 견과류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함) (0802)	곡식수시렁이(Trogoderma granarium Ev.)가 없어야 함
3	건조한 과실(0801-0806호의 과실은 제외함),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0813)	곡식수시렁이(Trogoderma granarium), Dinoderus bifoveolatus가 없어야 함
4	주로 향료용, 의료용 또는 살충용, 살균용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전체의 것 또는 절단한 것, 잘게 부순 것 또는 가루로 된 것) (1211) (단, 1211 30 000 0, 1211 40 000 0은 제외함)	곡식수시렁이(Trogoderma granarium), 새삼속(Cuscuta spp.), 모든 검역잡초 종의 종자 및(또는) 과실이 없어야 함
5	로우커스트 나무의 과실 (종자를 포함함) (1212 92 00 0, 1212 99 410 0, 1212 99 490 0)	곡식수시렁이(Trogoderma granarium)가 없어야 함
6	살구·복숭아(벵타를 포함함) 또는 자두의 씨 및 핵, 치커리(Cichorium intybus var. sativum) 뿌리 (1212 94 000 0, from 1212 99 950 0)	곡식수시렁이(Trogoderma granarium)가 없어야 함
7	곡물의 껍질과 껍질(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압착한 것이며, 팰리트상으로 한 것은 제외함) (from 1213 00 000 0, from 1401 90 000 0)	새삼속(Cuscuta spp.), 모든 검역잡초 종의 종자 및(또는) 과실이 없어야 함
8	토양 (from 2530 90 000 9, from 3824 99 960 9)	학술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토양 샘플을 연합의 관세영역 으로 반입 및 연합의 관세영역 내에서 이동은 회원국의 법령에 따라 허용됨. 단, 본 요건의 20항에 명시된 경우는 제외함
9	토탄(토탄찌꺼기를 포함하며, 응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함) (2703 00 000 0)	모든 검역잡초 종의 종자 및(또는) 과실, 감자시스트선충 (Globodera rostochiensis), 감자흰시스트선충(Globodera pallida)이 없어야 함

No	규제제품 (EAEU HS코드)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10	동물성 또는 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함); 식물성 또는 동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3101 00 000 0)	모든 검역잡초 종의 종자 및(또는) 과실, 감자시스트선충 (<i>Globodera rostochiensis</i>), 감자흰시스트선충(<i>Globodera pallida</i>)이 없어야 함
11	동물학, 식물학에 관한 수집품과 표본 (from 9705 00 000 0)	모든 검역잡초 종의 종자 및(또는) 과실, 곡식수시령이 (<i>Trogoderma granarium</i> Ev.)가 없어야 함

-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협의회 결정 No24를 통해 관세영역 내로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을 강화함

대상품목	특별검역식물위생요건
콩류	콩 포낭 선충류, 딱정벌레 파리, 썩덩나무노린재, 콩자주머니병충이 없는 곳에서 재배되어야 함
옥수수	썩덩나무노린재, 옥수수 스투어트 시들음병이 없는 곳에서 재배되어야 함
견과류	썩덩나무노린재, 별수시령이(<i>Trogoderma granarium</i>)가 없어야 함
기타 곡물류	살아있는 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별수시령이(<i>Trogoderma granarium</i>)의 활동성 유충 처리 규정에 따라 살균을 실시하고, 불가능한 경우 반송 혹은 폐기함
포도	썩덩나무노린재, 지중해과실파리, 새삼속이 없어야 함
사과, 배	썩덩나무노린재, 얼룩점박이초파리, 복숭아순나방, 복숭아 심식나방, 지중해과실파리, 사과과실파리가 없는 곳에서 재배되어야 함
살구, 자두, 복숭아	썩덩나무노린재, 복숭아순나방, 복숭아 심식나방, 꿀과실파리, 사과과실파리, 얼룩점박이초파리, 지중해과실파리, 잣빛 무늬 병원균이 없는 곳에서 재배되어야 함
석류	썩덩나무노린재, 지중해과실파리가 없어야 함
블루베리, 딸기	썩덩나무노린재, 목화씨벌레, 사과과실파리, 콜레토티리쿰 아쿠타툼이 없는 곳에서 재배되어야 함
기타 과일류	썩덩나무노린재가 없는 곳에서 재배되어야 함

마. 생선, 해산물 및 가공품

- 신선/냉장/냉동 생선, 해산물 및 관련 가공제품은 적합한 온도에서 가공되어야 하며 수출국 검역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함

- 바다 및 민물생선은 수출국 검역기관에서 기생충, 박테리아,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받아야 하며, 기생충이 허용범위 내에 있을 경우 수출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을 통해 제거하면 수출 가능함
- 유전자 변형식품은 사료로 제공될 수 없음
- 제품 선적은 온도규정에 상응하지 않게 처리된 경우 러시아 검역당국의 허가를 받은 후 가능함

제2절 한국산 농산물 검역규정

1. 신선농산물 검역

가. 수출 가능품목⁶⁾

곡류	쌀(백미, 현미), 보리, 밀, 수수, 옥수수
과실류	감, 단감, 포도, 감귤, 참다래, 밤, 사과, 배, 복숭아, 자두, 살구
채소류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감자, 고구마
종자류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토마토, 가지, 파, 양파, 상추
버섯류	송이, 표고, 느타리, 팽이, 영지, 새송이, 양송이, 만가닥
절화류	장미, 카네이션, 심비디움, 팔레놉시스(호접란), 난초, 국화, 튜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화훼류 기타	튜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나. 수출 불가 품목⁷⁾

- 곡류 : 콩, 팥, 녹두
- 화훼류 기타 : 철쭉 속, 선인장(접목선인장 포함)

6) 버섯 및 화훼류 기타품목은 재배매체에 심겨진 상태로는 수출불가

7) '나. 수출 불가 품목'에 명시된 품목 외에는 수출가능 여부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가 있는 품목도 없어 품목별로 별도 확인이 필요함

2. 과실류 수출요건⁸⁾

가. 사과

- 복숭아 순나방이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 1일 부터 9월 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 복숭아 심식나방이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 1일 부터 9월 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 사과 과실파리가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 1일 부터 9월 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나. 배

- 복숭아 순나방이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 1일 부터 9월 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 복숭아 심식나방이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 1일 부터 9월 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 *Numonia pyrivorella*이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1일 부터 9월 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다. 복숭아, 자두, 살구

- 복숭아 순나방이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 1일 부터 9월 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 복숭아 심식나방이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 1일 부터 9월 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3. 축산물 수출요건

가. 수입제한 세부내역

제한사유	제한품목	Instruction No.	일자
조류독감 (avian influenza)	살아있는 가금류, 부화할 수 있는 알, 가금육과 모든 종류의 가금생산물, 가금류용 사료 및 사료첨가제, 가금류 사양·도살·절단용 중공 장비	13-8-01/799	'04.1.23.

8) 관련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제한사유	제한품목	Instruction No.	일자
구제역 (FMD)	2010년 2월 11일부터 구제역 감염 가능성이 있는 동물, 모든 종류의 가축생산물 (완제품, 원료, 구제역 감염 가능성이 있는 동물을 도살해서 생긴 부산물 포함), 가축사양·도살·가공용 중고 장비, 동물용 사료 및 사료첨가제	FS-GK-2/1204	'10.2.11.
	2014년 5월 30일부터 동물용 사료 생산에 이용되고 열처리 하지 않은 돼지피 제품(HS코드 3502에 의거)과 번식용 및 고기용 돼지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부터 공급이 한시적으로 제한됨 (*단, 2010년 6월 18일자 관세동맹위원회 결정 No317에 의해 승인된 수의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요구되는 단일 수의(수의-위생)요건을 준수할 시에, 동물용 사료 생산에 이용되고 열처리한 피 제품은 캐나다, 멕시코, 일본,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부터 러시아연방 영토로 공급이 가능함)	FS-AS-8/9066	'14.5.29
	2010년 2월 11일자 지시 NoFS-GK-2/1204에 의해 도입된 한국에서의 사료 및 사료첨가제 수입제한은 화학적 및 미생물적 합성의 사료첨가제에는 적용되지 않음	FS-EN-7/18926	'14.11.3
	2004년 1월 23일자 지시 No13-8-01/799, 2010년 2월 11일자 지시 FS-GK-2/1204, 2014년 5월 29일자 지시 FS-AS-8/9066, 2014년 11월 3일자 지시 FS-EN-7/18926에 의해 도입된 제한 조치들은 비생산적인 동물(non-productive animal)용의 조제 사료를 한국에서 러시아연방으로 반입하는 데에는 적용되지 않음. 단, 이 조제사료는 열처리(섭씨 70도 이상의 온도로 최소 20분)를 거친 것으로 소매포장된 것에 한함	FS-NV-8/3508	'15.3.6

나. 사료 및 사료첨가물 허가받은 한국업체 현황

No	업체 넘버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	6410000-502-2009-0002	Ere** Co., Ltd	사료 및 사료첨가물/ 비생식 관상용 동물, 조류, 어류용의 사료	'18.9.26 부터 한시적제한	FS-AR-7/2670-7 from11.09.2018
2	6300000-502-1987-0001	Je-** Feed Ltd	사료 및 사료첨가물/ 비생식 관상용 동물, 조류, 어류용의 사료	'15.2.13부터 수입허가	FS-NV-8/2189 from13.02.2015
3	409-81-43675	ECO*** INC.	사료 및 사료첨가물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from18.01.2017
4	613-81-65943	**F CO, LTD	사료 및 사료첨가물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from18.01.2017

※ 상기 업체 '제한 없음' 상태

4. 수산물 수출요건

어류 및 해산물 허가받은 한국업체 현황

No	업체 넘버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	KRF-0062	ASIA ****STORAGE CO., LTD SECOND FACTORY	어류 및 해산물	'18.5.24부터 수입허가	FS-NV-7/12457 from24.05.2018
2	KRF-0065	BLUE ***** CO., LTD	어류 및 해산물	'18.8.28부터 수입허가	FS-KS-7/21175 from28.08.2018
3	384-16	CO*** Co,LTD	어류 및 해산물	'09.5.1부터 수입허가	FS-NV-4/3316 from15.04.2009
4	KRF-0012	DAE*** MULSAN CO.,LTD	어류 및 해산물	'17.7.5부터 수입허가	FS-KS-7/13623 from05.07.2017
5	54-1	Daes*** Corporation	어류 및 해산물	'09.4.15부터 수입허가	FS-NV-4/3316 from15.04.2009
6	KRF-0013	DAI *** FOOD CO., LTD.	어류 및 해산물	'17.12.18부터 수입허가	FS-KS-7/27584 from18.12.2017
7	KRF-0058	Dai**** Mulsan Co.,Ltd	어류 및 해산물	'17.12.18부터 수입허가	FS-KS-7/27584 from18.12.2017
8	KRF-0058	Daihung ***** Co.,Ltd(Geoje Factory)	어류 및 해산물	'17.12.18부터 수입허가	FS-KS-7/27584 from18.12.2017
9	KRF-0001	DONG*** COLD STORAGE	어류 및 해산물	'12.11.28부터 수입허가	FS-EN-7/15841 from28.11.2012
10	KRF-0061	Dongwon **** Co., Ltd.	어류 및 해산물	'18.05.24부터 수입허가	FS-NV-7/12457 from24.05.2018
11	KRF-0002	DONGYEONG **** PLAZA CO., LTD	어류 및 해산물	'12.11.28부터 수입허가	FS-EN-7/15841 from28.11.2012; FS-EN-7/5845 from20.05.2013
12	KRF-0064	HAE **** INTL.CO.,LTD	어류 및 해산물	'18.08.28부터 수입허가	FS-KS-7/21175 from28.08.2018
13	KRF-0067	KOREA **** STORES Co., LTD GAMCHUN ***** FACTORY	어류 및 해산물	'18.08.28부터 수입허가	FS-KS-7/21175 from28.08.2018
14	KRF-0038	MS ****RIPARK CO., LTD.	어류 및 해산물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from18.01.2017

No	업체 넘버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5	KRF-0063	**** SEAFOOD CO.,LTD.	어류 및 해산물	'18.8.28부터 수입허가	FS-KS-7/21175 from28,08,2018
16	KRF-0066	**** SEAFOOD CO.,LTD. SECOND DISTRIBUTION CENTER	어류 및 해산물	'18.8.28부터 수입허가	FS-KS-7/21175 from28,08,2018
17	KRF-0004	SAM*** GLOBALNET CO., LTD.	어류 및 해산물	'12.11.28부터 수입허가	FS-EN-7/15841 from28,11,2012
18	KRF-0053	SE**** Co., LTD	어류 및 해산물	'17.12.18부터 수입허가	FS-KS-7/27584 from18,12,2017
19	KRF-0006	**** YOUNG FISHERIES Co., LTD	어류 및 해산물	'14.9.22부터 수입허가	FS-EN-7/15841 from28,11,2012
20	KRF-0048	***do Abalone Co., Ltd.	어류 및 해산물	'17.11.29부터 한시적 제한	FS-KS-7/25993 from29,11,2017
21	KRF-0008	*** SHIN COLD STORAGE CO., LTD	어류 및 해산물	'12.11.28부터 수입허가	FS-EN-7/15841 from28,11,2012
22	450-20	***il fisheries Co.,LTD	어류 및 해산물	'09.5.1부터 수입허가	FS-NV-4/3316 from15,04,2009
23	160-18	****ng mulsan co., Ltd	어류 및 해산물	'09.5.1부터 수입허가	FS-NV-4/3316 from15,04,2009

※ 상기 업체 '제한 없음' 상태

어류 조제품 및 통조림, 철갑상어알 및 어란으로 제조된 대용물 허가받은 한국
업체 현황

No	업체 넘버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	KRF-0005	*** GLOBAL CO.,LTD	어류조제품 및 통조림, 철갑상어알 및 대용물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2	KRF-0055	***il CF Co	어류조제품 및 통조림, 철갑상어알 및 대용물	'17.1.18부터 수입허가	FS-KS-7/27584
3	KRF-0025	****RIM FOOD	어류조제품 및 통조림, 철갑상어알 및 대용물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4	KRF-0011	****WON F&B CO., LTD	어류조제품 및 통조림, 철갑상어알 및 대용물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No	업체 넘버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5	KRS-0008	****WON FISHERIES CO.,LTD	어류조제품 및 통조림, 철갑상어알 및 대용물	'17.6.21부터 한시적 제한	FS-NV-7/11612
6	KRF-0034	** GLOBAL CO.,LTD.	어류조제품 및 통조림, 철갑상어알 및 대용물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7	KRF-0039	**** INDUSTRIES CO.,LTD.	어류조제품 및 통조림, 철갑상어알 및 대용물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8	KRF-00047	***JIN MULSAN Co., LTD	어류조제품 및 통조림, 철갑상어알 및 대용물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 1개 업체 '한시적 제한', 그 외 업체 '제한 없음' 상태

갑각류·연체동물·기타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통조림 허가받은 한국업체 현황

No	업체 넘버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	KRF-0057	****GSANBADA CO., LTD.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생무척추동물 조제품 및 통조림	'17.12.18부터 수입허가	FS-KS-7/27584
2	KRF-0055	***Il CF Co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생무척추동물 조제품 및 통조림	'17.12.18부터 수입허가	FS-KS-7/27584
3	KRF-0019	****pyo co., Ltd.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생무척추동물 조제품 및 통조림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4	KRF-0025	****RIM FOOD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생무척추동물 조제품 및 통조림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5	KRF-0011	****WON F&B CO., LTD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생무척추동물 조제품 및 통조림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6	KRF-0034	** GLOBAL CO.,LTD.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생무척추동물 조제품 및 통조림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7	KRF-0039	**** INDUSTRIES CO.,LTD.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생무척추동물 조제품 및 통조림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No	업체 넘버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8	KRF-0048	****oAbalone Co., Ltd.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생무척추동물 조제품 및 통조림	'17.11.29부터 한시적 제한	FS-KS-7/13623
9	KRF-0042	***** MULSAN CO.,LTD GOSEONG FACTORY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생무척추동물 조제품 및 통조림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 상기 업체 '제한 없음' 상태

활어 허가받은 한국업체 현황

No	업체 넘버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	KRF-0012	***JUN MULSAN CO.,LTD	활어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2	KRF-0058	***hung Mulsan Co.,Ltd	활어	'17.12.18부터 수입허가	FS-KS-7/27584
3	KRF-0059	***hung Mulsan Co.,Ltd(Geoje Factory)	활어	'17.12.18부터 수입허가	FS-KS-7/27584
4	KRF-0053	**YANG Co., LTD	활어	'17.12.18부터 수입허가	FS-KS-7/27584
5	KRF-0017	***EIL FOOD.,CO.LTD	활어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 상기 업체 '제한 없음' 상태

어류·갑각류·연체동물·기타수생무척추동물의 냉동·냉장제품 허가받은 한국업체 현황

No	업체 넘버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	KRF-0005	*** GLOBAL CO.,LTD	냉동·냉장제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2	KRF-0041	*****ONG A GOOD FOOD CO.	냉동·냉장제품	'18.5.24부터 한시적 제한	FS-NV-7/12457
3	KRF-0046	** Logistics Corporation	냉동·냉장제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4	KRF-0028	COLD ****AGE INTER-BURGO II CO., LTD	냉동·냉장제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5	KRF-0036	****hwa food.Co. Ltd	냉동·냉장제품	'17.8.23부터 한시적 제한	FS-NV-7/17776

No	업체 넘버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6	KRS-0008	****WON FISHERIES CO.,LTD	냉동·냉장제품	'17.6.21부터 한시적 제한	FS-NV-7/11612
7	KRF-0037	**** JEONG Seafood Co., Ltd.	냉동·냉장제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8	KRF-0040	***NIL COLD STORAGE CO.,LTD. SECOND FACTORY	냉동·냉장제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9	KRF-0007	*** CHANG TRADING Co., LTD	냉동·냉장제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0	KRF-0034	** GLOBAL CO.,LTD.	냉동·냉장제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1	KRS-0001	*** PYEONG FISHERIES CO.,LTD.	냉동·냉장제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2	KRS-0002	*** WOONG FISHERIES CO.,LTD.	냉동·냉장제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3	KRF-0035	**** Hyun Marine Co., LTD	냉동·냉장제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4	KRF-0003	**** JIN FISHERY CO.,LTD	냉동·냉장제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5	KRF-0045	****JI ENTERPRISE CO.,LTD.	냉동·냉장제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6	KRF-0044	*** WANG CO.,LTD	냉동·냉장제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 2개 업체 '한시적 제한', 그 외 업체 '제한 없음' 상태

어란(칠갑상어알, 연어알 제외) 허가받은 한국업체 현황

No	업체 넘버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	KRF-0041	***** A GOOD FOOD CO.	어란	'16.9.14부터 한시적 제한	FS-NV-7/12457
2	KRF-0036	****hwa food,Co, Ltd	어란	'17.8.23부터 한시적 제한	FS-NV-7/17776

※ 1개 업체 '한시적 제한', 그 외 업체 '제한 없음' 상태

□ 연체동물(산 것,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 허가받은 한국업체 현황

No	업체 넘버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	KRF-0005	*** GLOBAL CO.,LTD	연체동물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2	KRF-0014	***TRAL FISHERIES CO.,LTD	연체동물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3	KRF-0041	****NG A GOOD FOOD CO.	연체동물	'18.5.24부터 한시적 제한	FS-NV-7/12457
4	KRF-0057	****GSANBADA CO., LTD.	연체동물	'17.12.18부터 수입허가	FS-KS-7/27584
5	KRF-0046	** Logistics Corporation	연체동물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6	KRF-0055	***il CF Co	연체동물	'17.12.18부터 수입허가	FS-KS-7/27584
7	KRF-0012	***JUN MULSAN CO.,LTD	연체동물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8	KRF-0013	*** ONE FOOD CO., LTD.	연체동물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9	KRF-0058	***hung Mulsan Co.,Ltd	연체동물	'17.12.18부터 수입허가	FS-KS-7/27584
10	KRF-0059	****hung Mulsan Co.,Ltd(Geoje Factory)	연체동물	'17.12.18부터 수입허가	FS-KS-7/27584
11	KRS-0008	****WON FISHERIES CO.,LTD	연체동물	'17.6.21부터 한시적 제한	FS-NV-7/11612
12	KRF-0061	****,won Loex Co., Ltd.	연체동물	'18.5.24부터 수입허가	FS-NV-7/12457
13	KRF-0010	***OH KOREA CO., LTD	연체동물	'17.7.5부터 수입허가	FS-KS-7/13623
14	KRF-0037	**** JEONG Seafood Co., Ltd.	연체동물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5	KRF-0007	*** CHANG TRADING Co., LTD	연체동물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6	KRS-0003	***SUNG CORPORATION	연체동물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No	업체 넘버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7	KRS-0004	**SUNG CORPORATION	연체동물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8	KRS-0007	**SUNG CORPORATION	연체동물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9	KRF-0034	** GLOBAL CO.,LTD.	연체동물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20	KRF-0056	****NG HWA FOODS CO., LTD.	연체동물	'17.12.18부터 수입허가	FS-KS-7/27584
21	KRF-0038	** DISTRI PARK CO., LTD.	연체동물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22	KRF-0063	**JO SEAFOOD CO.,LTD.	연체동물	'18.8.28부터 수입허가	FS-KS-7/21175
23	KRF-0053	**YANG Co., LTD.	연체동물	'17.12.18부터 수입허가	FS-KS-7/27584
24	KRF-0003	**** JIN FISHERY CO.,LTD	연체동물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25	KRF-0017	***IL FOOD.,CO,LTD	연체동물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26	KRF-0048	****oAbalone Co., Ltd.	연체동물	'17.11.29부터 한시적제한	FS-KS-7/25993

※ 1개 업체 '한시적 제한', 그 외 업체 '제한 없음' 상태

어류 반가공품 허가받은 한국업체 현황

No	업체 넘버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	KRF-0005	** GLOBAL CO.,LTD	어류 반가공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2	KRF-0014	****RAL FISHERIES CO.,LTD	어류 반가공품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3	KRF-0012	***JUN MULSAN CO.,LTD	어류 반가공품	'17.7.05부터 수입허가	FS-KS-7/13623
4	KRF-0013	****ONE FOOD CO., LTD.	어류 반가공품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5	KRF-0025	****RIM FOOD	어류 반가공품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No	업체 넘버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6	KRF-0011	****WON F&B CO., LTD	어류 반가공품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7	KRS-0008	****WON FISHERIES CO.,LTD	어류 반가공품	'17.6.21부터 한시적 제한	FS-NV-7/11612
8	KRF-0010	***OH KOREA CO., LTD	어류 반가공품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9	KRF-0037	**** JEONG Seafood Co., Ltd.	어류 반가공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0	KRF-0018	***SUNG FOODS CO., LTD.	어류 반가공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1	KRF-0007	*** CHANG TRADING Co., LTD	어류 반가공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2	KRF-0034	** GLOBAL CO.,LTD.	어류 반가공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3	KRF-0056	***NG HWA FOODS CO., LTD.	어류 반가공품	'17.12.18부터 수입허가	FS-KS-7/27584
14	KRF-0038	** DISTRI PARK CO., LTD.	어류 반가공품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15	KRF-0032	***HOME Inc.	어류 반가공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6	KRF-0039	**JO INDUSTRIES CO.,LTD.	어류 반가공품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17	KRF-0053	**YANG Co., LTD	어류 반가공품	'17.12.18부터 수입허가	FS-KS-7/27584
18	KRF-0035	**** Hyun Marine Co., LTD	어류 반가공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9	KRF-0003	**** JIN FISHERY CO.,LTD	어류 반가공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20	KRF-0049	The ***** Factory of Everblueseas Co., LTD	어류 반가공품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21	KRF-0045	****JI ENTERPRISE CO.,LTD.	어류 반가공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22	KRF-0044	*** WANG CO.,LTD	어류 반가공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 1개 업체 '한시적 제한', 그 외 업체 '제한 없음' 상태

갑각류(산 것, 신선, 냉장, 냉동, 보일링) 허가받은 한국업체 현황

No	업체 번호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	KRF-0057	*****SANBADA CO., LTD.	갑각류	'18.12.18부터 수입허가	FS-KS-7/27584
2	KRS-0012	***JUN MULSAN CO.,LTD	갑각류	'17.7.5부터 수입허가	FS-KS-7/13623
3	KRF-0061	****won Loex Co., Ltd.	갑각류	'18.05.24부터 수입허가	FS-NV-7/12457
4	KRF-0007	*** CHANG TRADING Co., LTD	갑각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5	KRS-0003	**SUNG CORPORATION	갑각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6	KRS-0007	**SUNG CORPORATION	갑각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7	KRF-0034	** GLOBAL CO.,LTD.	갑각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8	KRF-0050	***YANG F1 CO., LTD	갑각류	'17.7.5부터 수입허가	FS-KS-7/13623
9	KRF-0063	**JO SEAFOOD CO.,LTD.	갑각류	'18.08.28부터 수입허가	FS-KS-7/21175
10	KRF-0053	**YANG Co., LTD	갑각류	'17.12.18부터 수입허가	FS-KS-7/27584
11	KRF-0003	**** JIN FISHERY CO.,LTD	갑각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 상기 업체 '제한 없음' 상태

갑각류(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 허가받은 한국업체 현황

No	업체 번호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	KRF-0007	*** CHANG TRADING Co., LTD	갑각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2	KRS-0003	**SUNG CORPORATION	갑각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3	KRS-0007	**SUNG CORPORATION	갑각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No	업체 번호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4	KRF-0034	** GLOBAL CO.,LTD.	갑각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5	KRF-0003	**** JIN FISHERY CO.,LTD	갑각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 상기 업체 '제한 없음' 상태

냉동 어류 허가받은 한국업체 현황

No	업체 번호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	KRF-0029	**** COLD STORAGE CO., LTD	냉동 어류	'15.1.27부터 수입허가	FS-EN-8/1020
2	KRF-0065	**** STORM CO.,LTD	냉동 어류	'18.8.28부터 수입허가	FS-KS-7/21175
3	KRF-0030	***IM LOGISTICS CO.,LTD. BUSAN COLD STORAGRE	냉동 어류	'15.1.27부터 수입허가	FS-EN-8/1020
4	KRF-0005	** GLOBAL CO.,LTD	냉동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5	KRF-0014	***TRAL FISHERIES CO.,LTD	냉동 어류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6	KRF-0041	****NG A GOOD FOOD CO.	냉동 어류	'18.5.24부터 한시적제한	FS-NV-7/12457
7	KRF-0046	** Logistics Corporation	냉동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8	KRF-0028	COLD ***RAGE INTER-BURGO II CO., LTD	냉동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9	KRF-0012	***JUN MULSAN CO.,LTD	냉동 어류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10	KRF-0013	*** ONE FOOD CO., LTD.	냉동 어류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11	KRF-0058	***hung Mulsan Co.,Ltd	냉동 어류	'17.12.18부터 수입허가	FS-KS-7/27584
12	KRF-0059	***hung Mulsan Co.,Ltd(Geoje Factory)	냉동 어류	'17.12.18부터 수입허가	FS-KS-7/27584
13	KRF-0025	****RIM FOOD	냉동 어류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No	업체 넘버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4	KRF-0011	****WON F&B CO., LTD	냉동 어류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15	KRS-0008	****WON FISHERIES CO.,LTD	냉동 어류	'17.6.21부터 한시적 제한	FS-NV-7/11612
16	KRF-0061	****won Loex Co., Ltd.	냉동 어류	'18.05.24부터 수입허가	FS-NV-7/12457
17	KRF-0040	***NIL COLD STORAGE CO.,LTD. SECOND FACTORY	냉동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8	KRF-0007	*** CHANG TRADING Co., LTD	냉동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9	KRF-0005	****JIN CORPORATION	냉동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20	KRF-0006	****JIN CORPORATION	냉동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21	KRS-0003	**SUNG CORPORATION	냉동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22	KRS-0004	**SUNG CORPORATION	냉동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23	KRS-0007	**SUNG CORPORATION	냉동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24	KRF-0033	**SUNG CORPORATION	냉동 어류	'15.1.27부터 수입허가	FS-EN-8/1020
25	KRF-0034	** GLOBAL CO.,LTD.	냉동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26	KRF-0056	***NG HWA FOODS CO., LTD.	냉동 어류	'17.12.18부터 수입허가	FS-KS-7/27584
27	KRS-0001	*** PYEONG FISHERIES CO.,LTD.	냉동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28	KRS-0002	*** WOONG FISHERIES CO.,LTD.	냉동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29	KRF-0038	** DISTRI PARK CO., LTD.	냉동 어류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30	KRF-0039	**JO INDUSTRIES CO.,LTD.	냉동 어류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31	KRF-0063	**JO SEAFOOD CO.,LTD.	냉동 어류	'18.8.28부터 수입허가	FS-KS-7/21175
32	KRF-0012	**YANG Co., LTD	냉동 어류	'17.12.18부터 수입허가	FS-KS-7/27584

No	업체 넘버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33	KRF-0035	**** Hyun Marine Co., LTD	냉동 어류	'15.7.27부터 수입허가	FS-NV-8/12788
34	KRF-0015	*** INTERNATIONAL CO.,LTD.	냉동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35	KRF-0003	**** JIN FISHERY CO.,LTD	냉동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36	KRF-0017	***IL FOOD.,CO.LTD	냉동 어류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37	KRF-0045	****JI ENTERPRISE CO.,LTD.	냉동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38	KRF-0044	*** WANG CO.,LTD	냉동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 1개 업체 '한시적 제한', 그 외 업체 '제한 없음' 상태

신선 또는 냉장 어류 허가받은 한국업체 현황

No	업체 넘버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	KRF-0012	***JUN MULSAN CO.,LTD	신선·냉장 어류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2	KRF-0058	****hung Mulsan Co.,Ltd	신선·냉장 어류	'17.12.18부터 수입허가	FS-KS-7/27584
3	KRF-0059	***hung Mulsan Co.,Ltd(Geoje Factory)	신선·냉장 어류	'17.12.18부터 수입허가	FS-KS-7/27584
4	KRF-0025	****RIM FOOD	신선·냉장 어류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5	KRF-0011	****WON F&B CO., LTD	신선·냉장 어류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6	KRF-0061	****won Loex Co., Ltd.	신선·냉장 어류	'18.05.24부터 수입허가	FS-NV-7/12457
7	KRF-0034	** GLOBAL CO.,LTD.	신선·냉장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8	KRF-0038	** DISTRI PARK CO., LTD.	신선·냉장 어류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9	KRF-0039	**JO INDUSTRIES CO.,LTD.	신선·냉장 어류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No	업체 넘버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0	KRF-0063	**JO SEAFOOD CO.,LTD.	신선·냉장 어류	'18.8.28부터 수입허가	FS-KS-7/21175
11	KRF-0012	**YANG Co., LTD	신선·냉장 어류	'17.12.18부터 수입허가	FS-KS-7/27584
12	KRF-0017	***IL FOOD.,CO.LTD	신선·냉장 어류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 상기 업체 '제한 없음' 상태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 훈제 어류 허가받은 한국업체 현황

No	업체 넘버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	KRF-0020	**da Myeongga	건조·염장· 훈제 어류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2	KRF-0060	****ONE CO., LTD.	건조·염장· 훈제 어류	'18.5.24부터 수입허가	FS-NV-7/12457
3	KRF-0005	** GLOBAL CO.,LTD	건조·염장· 훈제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4	KRF-0041	****NG A GOOD FOOD CO.	건조·염장· 훈제 어류	'18.5.24부터 한시적 제한	FS-NV-7/12457
5	KRF-0046	** Logistics Corporation	건조·염장· 훈제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6	KRF-0051	***CHANG FOOD., LTD	건조·염장· 훈제 어류	'17.12.18부터 수입허가	FS-KS-7/27584
7	KRF-0012	***JUN MULSAN CO.,LTD	건조·염장· 훈제 어류	'17.1.18부터 수입허가	FS-KS-7/13623
8	KRF-0036	****hwa food,Co. Ltd	건조·염장· 훈제 어류	'17.8.23부터 한시적 제한	FS-NV-7/17776
9	KRF-0061	****won Loex Co., Ltd.	건조·염장· 훈제 어류	'18.5.24부터 수입허가	FS-NV-7/12457
10	KRF-0010	***OH KOREA CO., LTD	건조·염장· 훈제 어류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11	KRF-0052	***HING CORPORATION K FOOD CO., LTD.	건조·염장· 훈제 어류	'17.12.18부터 수입허가	FS-KS-7/27584
12	KRF-0037	**** JEONG Seafood Co., Ltd.	건조·염장· 훈제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No	업체 번호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3	KRF-0007	*** CHANG TRADING Co., LTD	건조·염장· 훈제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4	KRF-0034	** GLOBAL CO.,LTD.	건조·염장· 훈제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5	KRF-0056	***NG HWA FOODS CO., LTD.	건조·염장· 훈제 어류	'17.12.18부터 수입허가	FS-KS-7/27584
16	KRF-0043	**arm CO.,LTD	건조·염장· 훈제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7	KRF-0063	**JO SEAFOOD CO.,LTD.	건조·염장· 훈제 어류	'18.8.28부터 수입허가	FS-KS-7/21175
18	KRF-0053	**yang Co., LTD.	건조·염장· 훈제 어류	'17.12.18부터 수입허가	FS-KS-7/27584
19	KRF-0016	***IL FISHERIES CO.,LTD.	건조·염장· 훈제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 1개 업체 '한시적 제한', 그 외 업체 '제한 없음' 상태

어류 식용설육(냉장, 냉동) 허가받은 한국업체 현황

No	업체 번호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	KRF-0041	****NG A GOOD FOOD CO.	건조·염장· 훈제 어류	'18.5.24부터 한시적 제한	FS-NV-7/12457
2	KRF-0046	** Logistics Corporation	건조·염장· 훈제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3	KRF-0012	***JUN MULSAN CO.,LTD	건조·염장· 훈제 어류	'17.1.18부터 수입허가	FS-KS-7/13623
4	KRF-0025	****RIM FOOD	어류 식용설육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5	KRF-0011	****WON F&B CO., LTD	어류 식용설육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6	KRS-0008	****WON FISHERIES CO.,LTD	어류 식용설육	'17.6.21부터 한시적 제한	FS-NV-7/11612
7	KRF-0007	*** CHANG TRADING Co., LTD	어류 식용설육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8	KRF-0038	*** DISTRI PARK CO., LTD.	어류 식용설육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No	업체 넘버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9	KRF-0039	**JO INDUSTRIES CO.,LTD.	어류 식용설육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10	KRF-0012	**YANG Co., LTD	어류 식용설육	'17.12.18부터 수입허가	FS-KS-7/27584
11	KRF-0035	**** Hyun Marine Co., LTD	어류 식용설육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 2개 업체 '한시적 제한', 그 외 업체 '제한 없음' 상태

신선·냉장·냉동 어류피레트 및 기타 어육 허가받은 한국업체 현황

No	업체 넘버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	KRF-0065	**** STORM CO.,LTD	냉동 어류	'18.8.28부터 수입허가	FS-KS-7/21175
2	KRF-0005	** GLOBAL CO.,LTD	어류 피레트, 기타 어육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3	KRF-0041	****NG A GOOD FOOD CO.	어류 피레트, 기타 어육	'18.5.24부터 한시적 제한	FS-NV-7/12457
4	KRF-0046	** Logistics Corporation	어류 피레트, 기타 어육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5	KRF-0012	***JUN MULSAN CO.,LTD	어류 피레트, 기타 어육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6	KRF-0058	***hung Mulsan Co.,Ltd	신선·냉장 어류	'17.12.18부터 수입허가	FS-KS-7/27584
7	KRF-0059	***hung Mulsan Co.,Ltd(Geoje Factory)	신선·냉장 어류	'17.12.18부터 수입허가	FS-KS-7/27584
8	KRF-0061	****won Loex Co., Ltd.	건조·염장· 훈제 어류	'18.5.24부터 수입허가	FS-NV-7/12457
9	KRF-0037	**** JEONG Seafood Co., Ltd.	어류 피레트, 기타 어육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0	KRF-0054	***Bo Tuna & Marlin Co., Ltd	어류 피레트, 기타 어육	'17.12.18부터 수입허가	FS-KS-7/27584
11	KRF-0007	**** CHANG TRADING Co., LTD	어류 피레트, 기타 어육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2	KRF-0034	** GLOBAL CO.,LTD.	어류 피레트, 기타 어육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3	KRF-0056	****NG HWA FOODS CO., LTD.	어류 피레트, 기타 어육	'17.12.18부터 수입허가	FS-KS-7/27584

No	업체 넘버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4	KRF-0038	** DISTRI PARK CO., LTD.	어류 피레트, 기타 어육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15	KRF-0063	**JO SEAFOOD CO.,LTD.	어류 피레트, 기타 어육	'18.8.28부터 수입허가	FS-KS-7/21175
16	KRF-0012	**YANG Co., LTD	어류 피레트, 기타 어육	'17.12.18부터 수입허가	FS-KS-7/27584
17	KRF-0035	**** Hyun Marine Co., LTD	어류 피레트, 기타 어육	'15.7.27부터 수입허가	FS-NV-8/12788
18	KRF-0015	*** INTERNATIONAL CO.,LTD.	어류 피레트, 기타 어육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9	KRF-0003	**** JIN FISHERY CO.,LTD	어류 피레트, 기타 어육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20	KRF-0017	***IL FOOD.,CO,LTD	어류 피레트, 기타 어육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21	KRF-0045	****JI ENTERPRISE CO.,LTD.	어류 피레트, 기타 어육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22	KRF-0044	*** WANG CO.,LTD	어류 피레트, 기타 어육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 1 업체 '한시적 제한', 그 외 업체 '제한 없음' 상태

- 동식물 검역국은 각 국가마다 품목별 수입허가여부 상태를 다섯 가지 색깔로 구분하고 있으며 녹색, 노란색, 붉은색, 보라색, 파란색으로 나뉨

색상	상태	세부 의미
녹색	제한 없음	해당 업체가 관리 대상 상품을 아무런 금지나 추가적 부담 없이 물품의 수출이 가능한 상태
노란색	실험실 관리 강화	수출은 가능하지만 각각의 수출상품 로트가 검사를 위한 샘플 채취가 요구되는 상태
붉은색	한시적 제한	해당 업체에서의 관리대상 상품 수출이 현재 한시적으로 중단된 상태
보라색	인증 중단	해당 업체에서의 관리대상 상품 수출이 현재 수출국의 주무부처의 보고에 따라 중단된 상태
파란색	샘플 채취 완료	실험실 관리 강화 상태에서 샘플 채취가 완료되었지만 현재 실험실에서 샘플 검사가 진행된 상태

제1절 관세제도 일반

가. 개요

- 러시아는 2015년 1월 유라시아 경제연합 출범과 함께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통관 시에는 제품에 따라 수입관세 및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도 함께 납부해야 함

나. 수입관세

- 수입관세는 종가세, 종량세, 종가-종량 혼합형으로 부과됨
- 기본 관세율은 4단계(5%, 10%, 15%, 20%)이며 평균관세율은 11% 수준
- 고관세 품목으로는 설탕(40%), 담배(30%), 자동차(25%), 가금류(25%) 등
- 통관시 수입관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관세 부과기준은 HS 상품분류에 의거한 러시아 연방 대외 경제상품 코드임
 - 2015년 1월 유라시아 경제연합 출범과 함께 유라시아 경제연합 대외 경제 상품 코드(EAEU HS코드)로 명칭이 변경됨
- 러시아는 수입 대상국을 5개로 구분하여 관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의 기준에 따른 103개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일반특혜관세(GSP)를 부여하고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는 국가를 원산지로서 하는 상품에는 최혜국 세율을 부과함
 - 단 CIS 회원국은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사탕, 알코올류, 담배 등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CIS 회원국 간의 상호협정에 따라 예외조치가 적용됨

구분	적용 관세율	비고
CIS 국가	면세	
최혜국 지위 국가	기본관세율	EU 회원국 포함 129개국
개발도상국	기본관세율의 75%	한국 포함 103개국
저개발국	면세	정부령 413, 414호
최혜국 비대상 국가	기본관세율의 200%	

- 2017년 1월 13일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이사회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관세 영역으로 반입 시에 특혜관세가 제공되는 개발도상국 또는 최빈개도국 원산지의 상품 목록을 승인함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관세영역 반입 시에 특혜관세가 제공되는 개발도상국 원산지 상품	
EAEU HS코드	품명
02 (0203, 0207 제외)	육과 식용설육
03 (0305 제외)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철갑상어 및 연어류, 그 어란은 제외함)
04	유제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05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06	살아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 뿌리와 이와 유사한 식물의 부분, 절화와 장식용 잎
07	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
08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및 멜론의 껍질
09	커피, 차, 마테, 또는 파라과이 차, 향신료
1006	쌀
11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텐
12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및 곡물, 공업용 및 의약품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3	천연 락(lac), 검, 수지, 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14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15 (1509, 1517 - 1522 00 제외)	동물성 및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 및 식물성 납
16	육류, 어류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801 00 000 0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함)

EAEU HS코드	품명
1802 00 000 0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
20 (2001 10 000 0, 2009 50, 2009 71, 2009 79 제외)	채소, 과일, 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가공품
2103	소스 조제용 제품과 조제한 소스, 가미제 및 혼합조미료, 겨자의 가루와 조제한 겨자
2104	수프 및 브로스, 수프 및 브로스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2401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25 (2501 00 91, 2529 21 000 0, 2529 22 000 0 제외)	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

다. 소비세(EXCISE TAX)

적용 세율 : 20%~570%

소비세는 사치품을 중심으로 소비감소 유도를 목적으로 부과함

- 적용품목 : 에틸알코올 주정, 주정 용액, 알코올제품, 맥주, 담배, 보석, 자동차용 벤진, 승용차 등
- 러시아연방 조세법 제193조에 따라 러시아로 수입되는 소비세 대상 상품들의 2018년도, 2019년도 소비세 확정

품명	소비세 (% 또는 루블)		
	2017년	2018년	2019년
식품 또는 비식품 원료로 제조된 에틸알코올 (변성 에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원료, 포도증류주, 과일 증류주, 코냑, 칼바도스, 위스키를 포함하며, 러시아연방으로 수입된 것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상품이 아닌 것에 한함)	107루블 /소비세 대상 상품에 함유된 에틸알코올 1L	107루블 /소비세 대상 상품에 함유된 에틸알코올 1L	107루블 /소비세 대상 상품에 함유된 에틸알코올 1L
알코올 함유 제품 에틸알코올 용량이 9%를 초과하는 용액, 유화액, 현탁액 및 기타 유형의 액체 형태의 제품 (금속성 에어로졸 용기의 알코올 함유 향수 및 화장품, 금속성 에어로졸 용기의 알코올 함유 가정용 화학제품을 제외함)	418루블 /소비세 대상 상품에 함유된 에틸알코올 1L	418루블 /소비세 대상 상품에 함유된 에틸알코올 1L	418루블 /소비세 대상 상품에 함유된 에틸알코올 1L

품명	소비세 (% 또는 루블)		
	2017년	2018년	2019년
에틸알코올 용량이 9% 이하인 알코올제품 (맥주, 맥주를 기저로 제조되는 음료, 와인, 과일와인, 스파클링 와인(샴페인), 사이다(cider), 페리, 메도부하(Medovukha), 식품 원료에서 생산된 정류 에틸알코올을 첨가하지 않고 만든 와인음료 및(또는) 알코올화된 포도즙 또는 다른 과일즙, 및(또는) 와인증류주 및(또는) 과일증류주를 제외함)	418루블 /소비세 대상 상품에 함유된 에틸알코올 1L	418루블 /소비세 대상 상품에 함유된 에틸알코올 1L	418루블 /소비세 대상 상품에 함유된 에틸알코올 1L
에틸알코올 용량이 9%를 초과하는 알코올제품 (맥주, 와인, 과일와인, 스파클링 와인(샴페인), 식품 원료에서 생산된 정류 에틸알코올을 첨가하지 않고 만든 와인음료 및(또는) 알코올화된 포도즙 또는 다른 과일즙, 및(또는) 와인증류주 및(또는) 과일증류주를 제외함)	523루블 /소비세 대상 상품에 함유된 에틸알코올 1L	523루블 /소비세 대상 상품에 함유된 에틸알코올 1L	523루블 /소비세 대상 상품에 함유된 에틸알코올 1L
와인(지리적 표시가 보호된 와인, 원산지명 보호 와인, 스파클링 와인(샴페인)을 제외함), 과일와인, 식품 원료 및(또는) 알코올화된 포도즙 또는 다른 과일즙, 및(또는) 와인증류주 및(또는) 과일증류주에서 생산된 정류 에틸알코올을 첨가하지 않고 만든 와인음료	18루블 /1L	18루블 /1L	18루블 /1L
사이다(cider), 페리, 메도부하(Medovukha)	21루블 /1L	21루블 /1L	21루블 /1L
스파클링 와인(샴페인) (지리적 표시 보호된 스파클링 와인(샴페인), 원산지명 보호된 스파클링 와인(샴페인)을 제외함)	36루블 /1L	36루블 /1L	36루블 /1L
맥주(에틸알코올 용량이 0.5% 이하인 것)	0루블 /1L	0루블 /1L	0루블 /1L
맥주(에틸알코올 용량이 0.5%를 초과하고 8.6% 이하인 것), 에틸알코올을 첨가하지 않고 생산된 것으로 맥주를 기저로 제조된 음료	21루블 /1L	21루블 /1L	21루블 /1L
맥주(에틸알코올 용량이 8.6% 초과하는 것)	39루블 /1L	39루블 /1L	39루블 /1L
담배(파이프 담배, 흡연용 담배, 씹는 담배, 코담배, 워터파이프) (담배제품 생산용 원료로 사용되는 담배를 제외함)	1kg당 2520루블	1kg당 2772루블	1kg당 3050루블
시가	1개당 171루블	1개당 188루블	1개당 207루블
시가릴로(퀄런), bidi, cretek	1000개당 2428루블	1000개당 2671루블	1000개당 2938루블

품명	소비세 (% 또는 루블)		
	2017년	2018년	2019년
궐련(cigarettes), 파피루스	1000개+최대 소매가의 14.5%당 1562루블 (단,1000개당 최소 2123루블)	1000개+최대 소매가의 14.5%당 1718루블 (단,1000개당 최소 2335루블)	1000개+최대 소매가의 14.5%당 1890루블 (단,1000개당 최소 2568루블)
가열방식으로 소비되는 담배(담배제품)	1kg당 4800루블	1kg당 5280루블	1kg당 5808루블

라.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 18%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식료품, 어린이용품, 의약품 등에 대해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 향후 부가세를 15% 수준까지 낮출 예정이나 정부의 재정 수입의 감소로 인해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일부 기술연구용 장비, 외국원조에 관련된 수입품목, 외국 기업이 지분 참여하는 러시아 기업에 대한 현물 출자용으로 수입된 품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적용세율 : 세관신고가격의 18%, 식품류 등 일부 품목은 10%
 - 일부 기술 연구용 장비, 외국 원조에 관련된 수입품목, 외국기업이 지분 참여하는 러시아 기업에 대한 현물출자용으로 수입된 품목 등에는 부가세 면제
 - 2002년 1월부터 부가세가 면제되던 의약품은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됨

제2절 관세제도 변동사항

가. WTO 양허세율 범위 내 수입관세율 조정

- 유라시아경제연합 HS코드 및 통합관세율 개정
 - 2015년 7월 15일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⁹⁾ 이사회는 WTO 양허세율 범위 내 일부 품목에 대한 유라시아 경제연합 통합관세율 및 통합 대외경제 상품 코드(EAEU HS코드) 개정

9)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 EEC) : 러시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3국 관세 동맹 체결 이후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EU)으로의 확대 추진을 위해 설립된 위원회

- 2015년 1월 EAEU 출범 이후 EAEU에 적용되는 관세율 등 조정 역할 수행
- 회원국 관련 기관은 EEC를 통해 반덤핑, 상계관계, 수출입금지조치, 세이프가드 등 규제 공동 시행
- 2015년 9월 1일부터 HS코드 10자리로 이루어져있는 세부품목 4,061개에 대해 관세율 인하(평균관세율 5%-5.3%, 식품 13.28%)
- 주요 개정 내용 :
 - 2015년 9월 1일부터 일부 세부품목들의 수입관세율 변경 : 어류, 낙농품, 새의 알, 기타의 산 식물, 채소류, 과일류, 쌀, 식물성기름, 당류와 설탕과자, 코코아, 조제품, 주스 등
 - 2015년 12월 31일부터 일부 세부품목들의 수입관세율 변경 : 일부 냉동 고등어와 땅콩조제품 등

HS코드	품목	'15.8.31 이전	'15.9.1 이후	'15.12.31 이후
0303541000	SCOMBER SCOMBRUS 또는 SCOMBER JAPONICUS종의 고등어, 냉동	5%, 최소 0.03유로/kg	4%, 최소 0.026유로/kg	3%, 최소 0.02유로/kg
0303549000	SCOMBER AUSTRALASICUS종의 고등어, 냉동	6%, 최소 0.036유로/kg	4%, 최소 0.026유로/kg	3%, 최소 0.02유로/kg
2008111000 2008119100 2008119600 2008119800	땅콩버터 기타 조제땅콩 볶은 땅콩 기타 땅콩(볶은 것 제외)	9.9%	7.3%	6%

□ 일부 품목 수입관세율 재조정

- 2015년 8월 21일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이사회는 WTO 양허세율 범위 내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율(EAEU 통합관세율) 재조정
- ‘기타 산 식물’ 수입관세율 조정
 - HS코드 0602904900과 0602909100으로 2015년 9월 20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관세율은 “5%”로 하향 조정

HS코드	품목	'15.9.20 이전	'15.9.20 이후
0602904900	기타	15%	5%
0602909100	선인장류를 제외한 꽃봉오리 또는 꽃을 가진 현화식물, 온실용	15%	5%

□ 쌀 관련 EAEU HS코드 및 공통관세율 개정

- 유라시아 경제위원회는 ‘장폭비 3이상의 장립종 정미쌀’에 대한 EAEU HS코드 및 공통관세율 개정 결정안을 승인함

HS코드	품명	변경사항
1006 30 670 0	장폭비 3 이상(장립종 정미쌀 반숙미)	- 유라시아 경제연합 통일상품분류체계에서 삭제 -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이사회에서 수입관세율 변경을 결정하는 민감품목 목록에서 삭제
1006 30 980 0	장폭비 3 이상(장립종 정미쌀, 반숙미가 아닌 것)	- 유라시아 경제연합 통일상품분류체계에서 삭제 -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이사회에서 수입관세율 변경을 결정하는 민감품목 목록에서 삭제
1006 30 670	장폭비 3 이상(장립종 정미쌀 반숙미)	- 유라시아 경제연합 통일상품분류체계에 포함
1006 30 670 1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해당 소호 부가해설 1에 따름	- 유라시아 경제연합 통일상품분류체계에 포함 -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이사회에서 수입관세율 변경을 결정하는 민감품목 목록에 포함 - 수입관세율 0% - 장폭비 3 이상의 장립종 정미쌀 포함 -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3자 간의 국제협약에 의해 할당관세 (tariff quota) 부과 *전권기관에서 발급한 라이선스가 있을 시에 한함
1006 30 670 9	기타	- 유라시아 경제연합 통일상품분류체계에 포함 -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이사회에서 수입관세율 변경을 결정하는 민감품목 목록에 포함 - 수입관세율 10%(최소 0.03유로/kg)
1006 30 980	장폭비 3 이상(장립종 정미쌀, 반숙미가 아닌 것)	- 유라시아 경제연합 통일상품분류체계에 포함
1006 30 980 1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해당 소호 부가해설 1에 따름	- 유라시아 경제연합 통일상품분류체계에 포함 -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이사회에서 수입관세율 변경을 결정하는 민감품목 목록에 포함 - 수입관세율 0% - 장폭비 3 이상의 장립종 정미쌀 포함 -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3자 간의 국제협약에 의해 할당관세 (tariff quota) 부과 *전권기관에서 발급한 라이선스가 있을 시에 한함
1006 30 980 9	기타	- 유라시아 경제연합 통일상품분류체계에 포함 -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이사회에서 수입관세율 변경을 결정하는 민감품목 목록에 포함 - 수입관세율 10%(최소 0.03유로/kg)

□ WTO 양허세율 내에서 유라시아 경제연합 특정 상품 관세율 변경

- 2018년 6월 5일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 No.94와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조례 No.107을 통해 WTO 양허세율과 러시아 의무이행 사항 기준에 맞춰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공동 관세율을 설정 및 변경함

통합 상품 코드	제품	관세율 (%)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 No.94		
0306 19 900 1	----- 남극 크릴새우 (Euphausiasuperba)	3 *
0307 43 190 0	----- 갑오징어 기타, 냉동	7 *
0307 43 380 0	----- LOLIGO 오징어 기타, 냉동	8 *
0307 43 900 0	----- 오징어 기타, 냉	7 *
0307 52 900 0	--- 문어 (OCTOPUS SPP.), 냉동, 기타	8 *
0806 20 300 0	-- 말린포도, 술타나	5 **
1602 10 009 0	-- 고기, 그 부산물 또는 피로 만든 기타 균질 가공품	17, kg당 0.43유로 이상
1605 40 000 1	-- 초기 가공 중량 2kg 이상의 조리된 크릴 새우	5, kg당 0.1유로 이상*
1605 53 900 0	--- 가공된 홍합 혹은 통조림 홍합 기	8*
1803 10 000 0	- 지방을 제거한 코코아페이스트	3*
1804 00 000 0	코코아 오일, 코코아 지방	5*
2001 90 100 0	-- 망고 처트니	10, kg당 0.05유로 이상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이사회 조례 No.107		
0303 89 900 7	----- 기타 생선, 냉동	6 *
0304 95 100 0	--- 생선연육	5 *
2007 99 500 3	----- 살구 퓨레	10 ***
2007 99 500 4	----- 서양배 퓨레	10 ***
2007 99 500 5	----- 복숭아 퓨레	10 ***
2007 99 500 7	----- 기타 잼, 젤리, 과일 퓨레	10 ***

* 2018.09.01.부터 2019.12.31.까지 수입관세율 0%

** 2018.09.01.부터 2019.05.31.까지 수입관세율 0%

*** 2018.09.01.부터 2018.12.31.까지 수입관세율 0%

일부 품목 HS코드 변경

○ 농산물 및 화훼류와 수산물에 대한 HS코드를 변경함

품목	변경 전 HS코드	변경 후 HS코드
토마토	0702 00	0702 00 000 0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0704 100	0704 10 000 0
딸기	0810 10	0810 10 000 0
패랭이꽃	603 12	0603 12 000 0
가재	0306 21	0306 33
상어지느러미로 만든 완제품 또는 통조림	1604 19 979 0	1604 18 000 0
철갑상어류	0303 89 108 0	0303 89 106 0
가다랑어류	0304 87 000 0	0304 88 900 0
이빨고기	0304 46 000 0	0304 48 000 0

일부 수산물 부가가치세율 변경

○ 2018년 5월 5일 러시아 연방 정부 행정명령 No.552를 통해 일부 수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18%에서 10%로 인하함(2018년 5월 15일 발효)

상품코드	품목
OK 034-2014 코드* 제품	
03,11,63,120	갈조류
03,21,43,000	양식 해조류
03,21,44	양식 생물, 신선 또는 냉장 연체동물 및 수생 무척추 동물
유라시아경제연합 통합 상품코드 제품	
1212 21 000 0	식용으로 적합한 해초류와 기타 조류

* 경제활동 유형에 따른 러시아 연방 분류 코드

특수식품목록 항목 추가

○ 2018년 9월 23일부터 특수 식품 목록에 다음 두 가지 항목을 추가함

통합 상품 코드	제품 유형 설명
2106 (식품, 다른 항목에 규정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식품)	비타민, 미량원소, 다량원소를 첨가한 아미노산 또는 식물 추출물 혼합물로 구성된 분말 또는 농축액 형태의 식품으로 인체에 균형 잡힌 영양 보충을 위한 보조물질을 함유하며, 추가적인 조리과정 (물에 희석)이 요구되는 식품
2202 (미네랄과 탄산을 포함하여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및 향료를 첨가한 물 또는 기타 무알콜 음료, 과일 또는 야채 주스 제외)	비타민, 미량원소, 다량원소를 첨가한 탄수화물, 식물성오일, 탄수화물 혼합물로 구성된 액체 형태의 식품으로 인체에 균형 잡힌 영양 보충을 위한 보조물질을 함유하여 음료수의 형태로 직접 응용되는 식품

- 2106 품목의 경우, 유지방 함량, 전분 함량, 반제품 함량, 설탕, 시럽 등의 첨가물 여부에 따라서 5-10%의 관세율이 적용됨
- 2202 품목의 경우, 알코올, 설탕, 향료 등 물질의 첨가여부와 그 함량에 따라 8~9%의 관세율이 적용됨
- 특수 식품으로 분류되면 10%와 18%의 부가가치세율 중 10%가 부과됨

나. 2019년도 수입 관세할당(Tariff quota)

2019년도 유라시아 경제연합 수입 관세할당

- 2018년 8월 28일 유라시아 경제위원회는 2019년 유라시아 경제연합 관세 영역에 반입되는 일부 농식품에 대한 관세할당량을 확정함
 - 독립국가연합(CIS) 회원국 생산 및 반입 상품은 제외됨
 - 적용대상 : 쇠고기, 돼지고기, 돼지잡육,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 일부 유청 및 조제유청

품명	EAEU HS코드	관세할당량 (단위 : 천 톤)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	0201 10 000 1, 0201 20 200 1, 0201 20 300 1, 0201 20 500 1, 0201 20 900 1, 0201 30 000 4	0,0	0,0	21,0	7	40,0
쇠고기(냉동)	0202 10 000 1, 0202 20 100 1, 0202 20 300 1, 0202 20 500 1, 0202 20 900 1, 0202 30 100 4, 0202 30 500 4, 0202 30 900 4					530,0

품명	EAEU HS코드	관세할당량 (단위 : 천 톤)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	0203 11 100 1, 0203 11 900 1, 0203 12 110 1, 0203 12 190 1, 0203 12 900 1, 0203 19 110 1, 0203 19 130 1, 0203 19 150 1, 0203 19 550 1, 0203 19 590 1, 0203 19 900 1, 0203 21 100 1, 0203 21 900 1, 0203 22 110 1, 0203 22 1 901, 0203 22 900 1, 0203 29 110 1, 0203 29 130 1, 0203 29 150 1, 0203 29 550 1, 0203 29 590 1, 0203 29 900 1	0.0	20.0	0.0	3.5	400.0
돼지 잡육 (trimming)	0203 29 550 2, 0203 29 900 2					30.0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						
냉동한 닭 도체의 절반 또는 사분도체로 안에 뼈있는 것, 냉동한 닭다리 및 그 절단육으로 안에 뼈있는 것	0207 14 200 1, 0207 14 600 1	0.0	0.0	128.0	56.0	250.0
닭의 뼈없는 육(신선 또는 냉장)	0207 13 100 1		10.0			0.0
닭의 뼈없는 육(냉동)	0207 14 100 1					100.0
칠면조의 뼈없는 육(신선 또는 냉장)	0207 26 100 1		0.9			0.0
칠면조의 뼈없는 육(냉동)	0207 27 100 1			12.0		14.0
칠면조 도체의 뼈있는 부분 (냉동)	0207 27 300 1, 0207 27 400 1, 0207 27 600 1, 0207 27 700 1		0.0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 (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0207 11 100 1, 0207 11 300 1, 0207 11 900 1, 0207 12 100 1, 0207 12 900 1, 0207 13 200 1, 0207 13 300 1, 0207 13 400 1, 0207 13 500 1, 0207 13 600 1,		0.0	0.0		

품명	EAEU HS코드	관세할당량 (단위 : 천 톤)				
		아르 메니아	벨라 루시	카자흐 스탄	키르기 스스탄	러시아
냉동한 것,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0207 13 700 1, 0207 13 910 1,					
	0207 13 990 1, 0207 14 300 1,					
	0207 14 400 1, 0207 14 500 1,					
	0207 14 700 1, 0207 14 910 1,					
	207 14 990 1, 0207 24 100 1,					
	0207 24 900 1, 0207 25 100 1,					
	0207 25 900 1, 0207 26 200 1,					
	0207 26 300 1, 0207 26 400 1,					
	0207 26 500 1, 0207 26 600 1,					
	0207 26 700 1, 0207 26 800 1,					
	0207 26 910 1, 0207 26 990 1,					
	0207 27 200 1, 0207 27 500 1,					
	0207 27 800 1, 0207 27 910 1,					
	0207 27 990 1, 0207 41 200 1,					
	0207 41 300 1, 0207 41 800 1,					
	0207 42 300 1, 0207 42 800 1,					
	0207 43 000 1, 0207 44 100 1,					
	0207 44 210 1, 0207 44 310 1,					
	0207 44 410 1, 0207 44 510 1,					
	0207 44 610 1, 0207 44 710 1,					
	0207 44 810 1, 0207 44 910 1,					
	0207 44 990 1, 0207 45 100 1,					
	0207 45 210 1, 0207 45 310 1,					
	0207 45 410 1, 0207 45 510 1,					
	0207 45 610 1, 0207 45 710 1,					
	0207 45 810 1, 0207 45 930 1,					
	0207 45 950 1, 0207 45 990 1,					
	0207 51 100 1, 0207 51 900 1,					
	0207 52 100 1, 0207 52 900 1,					
	0207 53 000 1, 0207 54 100 1,					
	0207 54 210 1, 0207 54 310 1,					
	0207 54 410 1, 0207 54 510 1,					
	0207 54 610 1, 0207 54 710 1,					
	0207 54 810 1, 0207 54 910 1,					
	0207 54 990 1, 0207 55 100 1,					
	0207 55 210 1, 0207 55 310 1,					
	0207 55 410 1, 0207 55 510 1,					
	0207 55 610 1, 0207 55 710 1,					
	0207 55 810 1, 0207 55 930 1,					
	0207 55 950 1, 0207 55 990 1,					
	0207 60 050 1, 0207 60 100 1,					
	0207 60 210 1, 0207 60 310 1,					

품명	EAEU HS코드	관세할당량 (단위 : 천 톤)				
		아르 메니아	벨라 루시	카자흐 스탄	키르기 스스탄	러시아
	0207 60 410 1, 0207 60 510 1, 0207 60 610 1, 0207 60 810 1, 0207 60 910 1, 0207 60 990 1					
유청과 조제유청의 일부 종류 (분말, 입자 또는 기타 고체상태)(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추가하지 않은 것)	0404 10 120 1, 0404 10 160 1	0.0	0.0	0.0	0.0	15.0

- 쿼터내(In-quota Rate), 쿼터밖(Out-of-quota Rate) 관세는 최대 65%의 차이를 보임
- 단,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는 쿼터 할당 목록에서
제외 될 예정임. 이후에는 모든 수입량에 동일하게 25%의 관세율이 적용됨

제1절 라벨링 제도 일반**1. 라벨링 및 제품표기사항****가. 식품표시제도**

- 러시아의 식품 표준규정은 소비자용 패키지에 포장되어 있는 자국 내 도소매 유통용 식품품과 수입상품에 적용이 되며, 사회 급식을 담당하는 기업, 학교, 유치원, 진료소, 그리고 소비자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업 등에도 적용됨
 - 모든 러시아 수입제품은 반드시 러시아어로 표기해야 함¹⁰⁾

나. 상품설명서

- 모든 소비재에 대해 러시아어 설명서 부착이 의무
 - 제품명, 원산지, 제조업체, 제품 용도, 주요 특징 및 제품 사용설명서를 러시아어로 첨부해야 함
 - 해당 표기는 포장지, 라벨 또는 별지에 할 수 있으며 제품과 함께 동봉해야 함
- 상품설명서에는 다음 8가지 정보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제품명, 제조업체, 상품의 기본용도, 사용범위, 안전한 보관·운송 및 사용 방법, 기본 소비특성 및 특징, 강제인증 정보,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의 법적 주소

다. 제품라벨

- 러시아는 소비자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엄격한 라벨링 요구조건을 제시함
 - 라벨링 요구조건은 제품에 따라 다르며, 제품에 맞는 특정한 라벨이 무엇인지, (식품 첨가물이나 다이어트 보조제, 그리고 모든 조제약품들의 경우에서처럼) 추가적인 문서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10) 국가표준위원회(GOSSTANDART)의 상품표기법(GOST R 51074-2003 '식품, 소비자를 위한 정보, 일반 요건', 2005.6.30)에 의거

- 러시아의 라벨링 관련 법규는 기존의 EU의 지침들을 따르고 있으며 기존의 유럽의 관습에서 크게 다르지 않음

□ 기본 기재사항

- 제품명
- 제조업체(업체 명, 국가, 법적 등록 주소)
- 제조업체의 상표(있을 시에)
- 순 중량 혹은 양 혹은 수량
- 구성 성분
- 영양성분(칼로리, 단백질·지방·탄수화물·비타민·다량 영양소·미량 원소 함량 등)
- 사용 용도와 방법(어린이식품, 다이어트식품, 생물학적 활성 첨가물의 경우)
- 즉석 섭취 식품 조리법에 대한 권고사항¹¹⁾
- 유통기한
- 식품의 보관 방법 및 보관기간
- 제조일과 포장일
- 제품 제조 시에 의거해서 만든 적용된 규범서류
- 적합성 인증 정보

□ 추가 기재 사항

- 냉장(냉동)된 육류, 가금류, 내장, 완제품 등의 모든 육류 제품은 냉동 또는 냉장 마크를 부착해야 함
- 진공포장 또는 가스충진포장의 경우에는 포장방식을 라벨로 부착해야 함
- 완제품 통조림의 경우 최종 조리방법에 대한 권고사항을 기재해야 함

□ 유기농 통합규정


- 2017년 1월 1일부터 국가기준 GOST R 57022-2016 ‘유기농제품. 자율인증 절차(Organic production. The procedure of voluntary certification of organic production)’ 도입
 - 현재 식품첨가물, 합성비료, GMO 미사용 제품 표시 라벨링 및 인증서가 통일 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킴

11) 농축 및 반가공품 식품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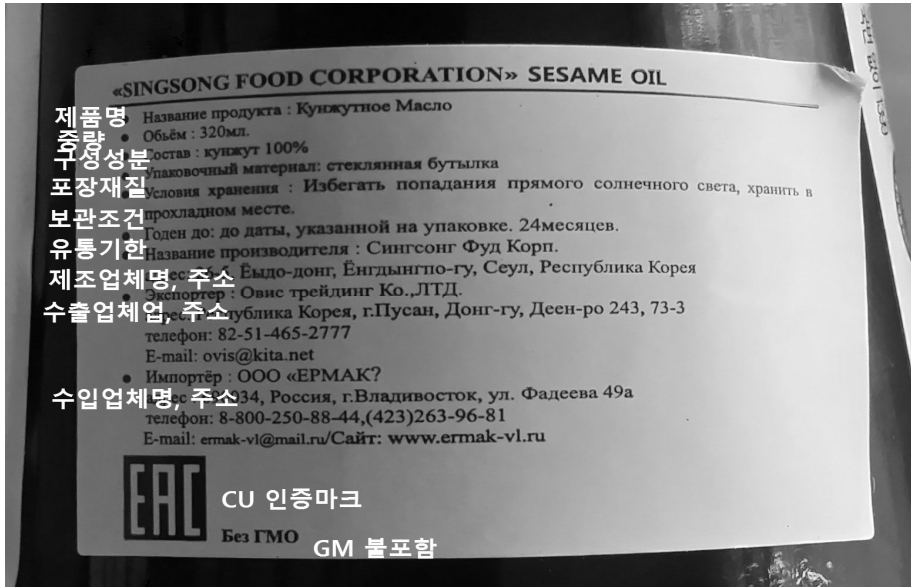
- GOST R 57022-2016 라벨링은 해당 제품이 안전성 및 모든 필수 검사항목 통과를 인증함
- 본 기준은 유기농 생산, 라벨링, 제품관리에 대한 유기농 제품 라벨링 및 유기농 생산에 관한 유럽연합이사회 규정 No.834/2007 이행절차 조항과 함께 2008년 9월 5일자 유럽연합위원회 규정 No.889/2008(2008년 9월 18일자 유럽연합 공식 통보문),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기준 ‘유기식품의 생산·가공·표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GL 32-1999, REV. 1-2001)’,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의 기본 기준에 따라 개발됨
- 본 기준은 이전에 승인된 국가기준 GOST R 56104-2014 ‘유기식품. 용어와 정의’, GOST R 56508-2015 ‘유기농제품. 생산·보관·운송 규정’과 상호 연관됨

[예시1. 구 라벨링]

제품명: наименование продукта : ЛАПША ХОЛОДНАЯ «СИНСОНГ»
 제조업체: наименование и адрес изготовителя: Корпорация «Синсонг фуд» 26-5, Ёидо-донг, Ингдынгиго-гу, Сеул, Корея
 공장: Завод - пров. Чхунчхон-Намдо, г. Чхонан, Собук-Гу, Сонго-ып, Самгок-ри, 137-5 Корея
 중량: нетто : 750гр.
 구성: состав : пшеничная мука 76%, пшеничный порошок, гречишная мука, желудевая мука, пищевая поваренная соль
 영양가: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ценность на 100гр. Продукта
 열량: Калорийность 373ккал
 단백질: Белки 107 г
 지방: Жиры 2,9 г
 탄수화물: Углеводы 75,3 г
 유효기간: сроки при хранении : 18месяцев
 포장: упаковка : полиэтилен
 보관방법: хранения : Избегать попадания прямого солнца. GOST R 품질인증마크
 수입업자: ООО «СИРИУС» г.Владивосток ул.Фадеева дом 49 к.2
 Tel: (4232)21-2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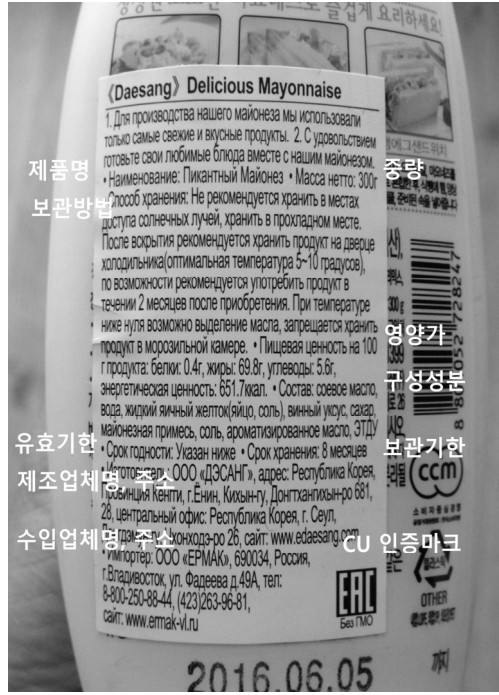
[예시2. 현 라벨링]



[예시3. 현 라벨링]



[예시4. 현 라벨링]



라. 영양성분표시

- GOST R 51074-2003은 국제표준을 준수하며 영양성분표시에 대한 모든 특별한 요구 사항을 포함함
- 제품에 들어있는 기본 미네랄과 비타민을 함량 표기 없이 나열할 수 있음
- 일일권장섭취량을 아래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함
 - 100g당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또는 칼로리가 일일권장섭취량의 2% 이상일 경우 표시해야 함
 - 100g당 미네랄, 비타민이 일일권장섭취량의 5% 이상일 경우 표시해야 함
- '신호등 표시제' 자율적 표시 시행
 - 식품 속 특정 성분을 함량에 따라 신호등의 세 가지 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자율적 '신호등 표시제'가 실시됨

- 신호등 표기는 나트륨, 설탕, 지방산의 함량을 일일권장소비량을 기준으로 %로 표시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초록, 노랑, 빨간색으로 구분하여 표시해줌

	초록색 /100g당	노란색 /100g당	빨간색
지방	3g 미만	3-17.5g	17.5g/100g 초과 혹은 21g /1인분
포화지방	1.5g 미만	1.5-5g	5g/100g 초과 혹은 6g /1인분
설탕	5g 미만	5-22.5g	22.5g/100g 초과 혹은 27g /1인분
나트륨	0.3g 미만	0.3-1.5g	1.5g/100g 초과 혹은 1.8g /1인분

- 표기 형식은 다음과 같음



* 사진 출처 : <http://news.21.by>

마. 변동사항 및 이슈

- 식품 포장 표시에 대한 기술규정 (TR TS 022/2011) 일부 개정

조항	항목	변경사항
제4.3절 제1항	제품명이 정해진 경우 그 명칭을 품목명 옆에 표기해야 함	추가
제4.8절 제1항	기준 : 식품 생산자의 소재는 관세동맹국 내 생산 혹은 제3국 생산과 관계없이 식품에 표시해야 함	소재물 이름과 소재물 수정
제4.12절 제1항	쉽게 읽을 수 있음의 기준은 포장에 사용된 글꼴의 명료함과 가독성임으로 각 글꼴의 크기는 본 항의 4호와 5호의 요건을 준수해야 함. 또한 배경색과 글자색간의 대조는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제외한 시력 교정 장치의 도움 없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명료함의 기준은 글이나 글·그림형태의 식품에 대한 정보가 내포한 의미전달의 유일성임	추가

조항	항목	변경사항
	제4.1절 제1항의 1, 3, 4호(생산일과 그 결정지에 대한 정보를 위해 사용된 글자를 제외)와 5호(유효기한과 그 결정지에 대한 정보를 위해 사용된 글자 제외)에서 규정한 정보는 글꼴의 높이가 2mm(소문자)보다 작아서는 안 됨	추가
	제4.1절 1항의 6, 7, 8호(이용의 제한사항이나 권고사항), 9호(특수 식품)에서 규정한 정보와 생산일, 유효기한과 그 결정지에 대한 정보는 글꼴의 높이가 0.8mm(소문자)보다 작아서는 안 됨	추가
제4.12절 제8항	기존 : 생산과정에 이용되지 않은 물질, 식품구성성분이 아닌 물질, 식품에 표현되지 않은 맛과 향은 식품의 포장에 이미지의 형태로 표현되어서는 안 됨. 단, 본 절의 9항에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함	이미지를 이미지와 글로 수정
제4.12절 제9항	기존 : 조리를 통해 나타날 해당 식품의 모습을 이미지의 형태로 표시할 경우 '조리 예' 혹은 유사한 의미의 설명을 첨부해야 함	이미지를 이미지와 글로 수정

□ 식품 포장 표시에 대한 기술규정(TR TS 022/2011) 중 표시 기준 개정

- 2018년 9월 14일 유라시아 경제연합 경제위원회 협의회 결정 No.75를 통해 식품포장에 관한 기술규정이 일부 수정되어 더욱 명확한 기준을 가짐
 - 제품 고유의 명칭이 있는 경우, 제품명을 겹면 포장에 표기해야 함
 - 제조일 및 만료일에 대한 정보는 소문자 기준 2mm 이상인 글꼴을 사용해야 함
 - 권장사항 및 사용제한에 대한 정보와 전문식품제품에 제공되는 정보, 즉, 제조일, 유통기한, 유효기간과 같은 정보는 소문자 기준 0.8mm 이상의 글꼴을 사용하여야 함
 - 가독성은 포장에 제품명과 제품 정보를 표기한 글자 및 글꼴의 명확성과 판독가능성 뿐만 아니라 글자색과 배경색간의 색상대비를 통해 그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제외한 특수광학장치를 이용하지 않고도 읽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함
 - 명료성은 글 또는 글과 그림의 형태로 제품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함
 - 실제 이용되었으나 식품 포장에 나타나지 않은 식품 구성 성분, 제조 시 사용되지 않았으나 포장에 표시된 식품 구성 성분, 제품의 성분을 통해 식품에 나타나지 않는 맛이나 향을 제품 포장에 표기한 경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 본 결정은 공표일로부터 180일 이후에 시행됨(2019년 4월 27일 발효 예정)

제2절 품목별 라벨링 표기방법

1. 주류

- 보드카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류가 적용대상임¹²⁾
- 모든 수입 제품의 대부분에 필요한 일반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특정 요구 사항이 필요함
 - 모든 주류제품은 식품첨가물, 향미증진제, 생물학적으로 활성화 된 식품첨가물, 비 전통적인 재료, 생명공학기술에서 파생 된 제품의 모든 구성요소, 건강에 좋지 않은 성분 등을 표기해야 함

종류	표기내용
맥주	맥주의 종류(light, semi-dark, dark), 알코올 % 함량(무알콜 맥주와 아로마와 맛이 첨가된 맥주는 제외), 에틸알코올의 최소 비율, 병입 날짜, 기본 원료, 영양 구성
와인	병입 시설, 병입날짜 또는 숙성날짜, 에틸알코올 비율, 당도(드라이와인 제외)
스파클링 와인	당도, 수확년도, 에틸알코올 함량 10% 미만인 와인의 유통기한, 영양성분
알코올 음료	에틸알코올 함량, 설탕 농도(설탕이 재료로 사용된 경우), 병입날짜, 구성(맛과 제품의 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성분의 목록 포함), 에틸알코올 함량 10% 미만인 제품의 유통기한

- 2007년 2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과도한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구를 라벨에 표시해야 함
- 2018년 10월 1일부터 주류 라벨링 규정이 변경되어 부착하는 인지에 제품 정보를 기재해야 함
 - 주류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알코올 제품의 표면에 특수 인지와 소비세 인지를 부착해야 함
 - 이 인지에는 EGAIS(러시아명 : Е Г А И С [에가이스])는 통합국가자동정보 시스템에서 식별이 가능한 2차원의 바코드로 구성된 식별코드가 표기되어 있고, 이를 통해 인지 자체와 인지가 사용된 알코올 제품에 대한 식별이 가능함
 -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인지에는 2차원 바코드와 함께 제품의 명칭과 유형, 원산지, 내용물에 대한 정보가 함께 표시되어야 함

12) 관련 법령 : 연방법 171, 국가 표준 GOST R 51074-2003, GOST R 52194-2003

- 또한 특수인지의 가격은 1,000개당 1,850루블(한화 31,376원)에서 1,690루블(한화 28,662원)로, 소비세 인지는 1,000개당 1,700루블(한화 28,832원)에서 1,690루블(한화 28,662원)로 인하됨
- 그러나 에틸 알코올류, 알코올 함유 제품, 맥주 및 저알코올 음료의 경우 EGAIS에 적용되지 않음
- 특수 인지와 소비세 인지는 다음과 같음 (사진)



* 출처 : <https://m.avtoradio.ru>

- 본 결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발효되며, 기존 인지는 2019년 1월 1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함

2. 육류 및 가금류

- 냉동 가금류 고기, 부산물, 소비자 편의 제품, 소시지 또는 육류 제품은 냉동 또는 냉장으로 표시해야 함
- 진공팩이나 MGM 가스팩 으로 포장된 경우 가금류 고기, 소비자편의제품, 요리 재료, 소시지, 고기 제품 등으로 표시해야 함
- 캔 제품은 고기, 지방, 부산물, 식물성 원료의 성분함량을 표시해야 함

3. 과채류 및 감자

- 포장된 모든 신선 과채류와 감자는 제품명, 제조업체(법적 등록주소, 국가), 상표(선택사항), 순 중량 혹은 양, 품종, 상품 품종(있을 시에), 제품 가공법(필요할 시에), 홍보적 성격의 정보(필요할 시에), 수확일과 포장일, 온실재배여부, 보관법(필요할 시에), 적용된 규범서류, 적합성 인증에 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함

- 베리류, 과일, 채소, 감자의 가공품(캔 제품 포함)은 일반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주된 제품의 비중(시럽, 마리네이드, 염수장으로 조리된 제품의 경우), 구성성분, 채소 혹은 과일의 비중(벡타 및 음료의 경우), 식품 첨가물, 향미증진제, 생물학적 활성 첨가물, 제품 영양가, 감미료 함량, 보관기간(건조된 베리, 과일, 채소, 감자의 경우) 등을 표시해야 함

4. 차, 커피, 차음료 및 커피음료

- 차와 커피의 명칭은 원산지로 보충될 수 있음
- 차, 커피, 차 및 커피제품 제조 시에 향미증진제가 사용된다면 향을 명칭할 수 있음(예를 들어, 레몬향의 홍차)
- 차, 차 음료, 커피음료의 경우 유효기간을 표시하고 커피의 경우 보관기간을 표시해야 함
- 진공포장일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함
- 일회용 티백, 커피백, 차음료 및 커피음료 백은 제조업체, 제조업체 상표(있을 시에), 제품명, 순 중량, 품종(있을 시에), 적용된 규범서류를 표시해야 함

5. 식용 소금

- 제조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제품명을 표시해야 함(증발 소금, 암염, 침전 소금 등)
- 제조업체(명칭, 국가, 법적등록주소), 제조일과 포장일, 품종, 순 중량, 제분방법, 식품 첨가물, 적용된 규범서류, 적합성 인증 정보를 표시해야 함
- 포대 혹은 포대에 붙은 라벨에는 제품명, 순 중량을 표시해야 함
- 요오드 첨가한 소금의 경우 첨가된 요오드의 형태, 요오드 함량, 일일권장량, 유효기간, 문구(유효기간이 지난 요오드 첨가한 소금은 일반식염으로 사용함이라는 문구) 등의 부가정보를 표시해야 함

6. 종자

- 소매유통 용도의 종자 패키지에 있는 라벨링에는 종자 판매자(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사용 허가된 품종개량성과 국가등록부에 입각한 식물명과 품종명, 품종품질과 파종품질에 대한 표준(기술요건) 표시, 로트 넘버, 패키지에 들어 있는 종자의 수량(개) 혹은 무게(그램), 판매기한 등을 표시해야 함

- 패키지(팩)에 명시되어 있는 로트 넘버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로트 넘버는 증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넘버와 일치해야 함
- 식물이 품종개량성과 국가등록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등록부는 러시아연방 영토에서 판매 및 사용이 허가된 품종에 관한 목록임. 품종개량업자들이 만들고 품종테스트구역에서 생산력, 질병 및 해충에 대한 저항성 등을 검증 받은 새로운 품종들이 매년 등록부에 올라가고 있음¹³⁾

7. 환원우유 및 우유음료

- 2015년 9월 21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우유 및 유제품 안전 기술규정(TR CU 033/2013)’에 명시되어있는 용어, 조항, 라벨링 요건에 관한 공식 해설 발표
- 환원 우유(환원유, reconstituted milk), 우유 음료(우유음료, milk beverage)에 대한 용어 설명은 아래와 같음
 - ‘환원우유’ 정의 : 농축유·응축유 또는 분유와 물로 제조된 소비자 용기에 중량 포장된 유제품 또는 우유가공품 생산을 위한 원료(마시는 우유 제외)
 - ‘우유음료’ 정의 : 우유 및(또는) 우유성분 및(또는) 유제품으로 제조된 유제품 또는 우유성분제품을 의미하며, 농축유 및(또는) 응축유 및(또는) 분유와 물로 제조된 것도 포함됨. 우유성분을 대체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 그 밖의 유제품 또는 우유가 아닌 성분을 첨가하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우유단백질 함량이 2.6% 이상, 탈지분유 함량이 7.4% 이상인 것(유제품의 경우)
 - ‘건조 우유 가공품’ 정의 : 건조물질의 질량 비중이 90%에 이를 때까지 우유에서 수분을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제조된 우유가공제품
- 라벨링 요건에 따르면, 환원우유의 명칭을 만들 때 제품 제조 시에 사용된 주원료를 직접적으로 명칭에 넣어줘야 함
 - ‘분유로 제조된 환원우유’, ‘분유 및 응축유로 제조된 환원우유’, ‘농축유로 제조된 환원우유’ 식으로 명명

13) 러시아 연방 국가 품종 개량 성과 테스트 및 보호위원회(<http://www.gossort.com>) 참조

- 러시아 연방세관 Federal Customs Service
 - www.russian-customs.org
- 블라디보스톡 항만공사 The Commercial Port of Vladivostok
 - www.vmtp.ru
- 보스토치니 항만공사 Vostochny Port
 - www.vpnet.ru
- 상트페테르부르크 항만공사 Port of St. Petersburg
 - www.pasp.ru
- 러시아 보건부 Ministry of Healthcare of the Russian Federation
 - <http://minzdrav.gov.ru>
- 러시아 농업부 The Russian Federation Ministry of Agriculture
 - www.mcx.ru
- 러시아 기술표준청 Federal Agency on Technical Regulating and Metrology; ROSSTANDART
 - <http://www.gost.ru/wps/portal/en>
 - 한국SGS : www.sgsgroup.kr
- 동식물검역국 Federal Service for Veterinary and Phytosanitary Surveillance; Rosselkhoz nadzor
 - http://www.fsvps.ru/fsvps/main.html?_language=en
- 소비자권익보호 및 복지 감독국 Federal Service for Surveillance on Consumer Rights Protection and Human Wellbeing; Rospotrebnadzor
 - <http://www.rospotrebnadzor.ru/en/>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 <http://www.eurasiancommission.org/en/Pages/default.aspx>
- USDA FAS GAIN Report
 - general requirements and standards for food and agricultural imports into Russia
 - <http://gain.fas.usda.gov>

- DHL Guide for DHL Express Dutiable Shipments to Moscow, Russia
 - http://www.dhl.com/en/express/shipping/customs_support
- 농림축산검역본부
 - www.qia.go.kr
-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www.kita.net, www.kotra.or.kr
- Kati 농식품수출정보
 - www.kati.net

제1절 식품금수조치 현황

1. 서방 식품 금수조치

- 자국 생산자 지원 및 서방 제재를 위해 2014년 8월 7일부터 도입된 미국, 캐나다, EU, 호주,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몬테네그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원산지의 식품 금수조치가 현재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상태임
- 그동안 매년 연장되면서 수입금지 식품 목록도 일부 변경됨. 최근 개정으로 2017년 11월 4일부터 다음 품목도 목록에 추가됨
 - 추가 금지 품목 : 살아있는 돼지(순종번식용 동물 제외), 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버새의 식용설육(신선, 냉장, 냉동),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 돼지의 지방(라드 포함)과 가금의 지방, 소·면양·산양의 지방, 라드스테아린, 라드유, 올레오스테아린, 올레오유, 동물유로서 유화·혼합 그 밖의 조제를 하지 않은 것

EAEU HS코드	품명***	비고
0103 (단, 0103 10 000 0 제외)	살아있는 돼지 (단, 순종번식용 동물 제외)	2017년 11월 4일부터 목록에 추가 포함
0201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	2014년 8월 7일 정부결의 붙임 목록 포함
0202*****	쇠고기(냉동)	2014년 8월 7일 정부결의 붙임 목록 포함, 2016년 6월 9일 개정
0203	돼지고기(신선, 냉장 또는 냉동)	2014년 8월 7일 정부결의 붙임 목록 포함
0206 (단, 0206 10 100 0, 0206 22 000 1, 0206 29 100 0, 0206 30 000 1, 0206 30 000 3, 0206 41 000 1, 0206 49 000 1, 0206 80 100 0, 0206 90 100 0***** 제외)	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버새의 식용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함) (단, 의약품 생산을 위한 상품은 제외함)	2017년 11월 4일부터 목록에 추가 포함

EAEU HS코드	품명***	비고
0207*****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 냉장 또는 냉동)	2014년 8월 7일 정부결의 붙임 목록 포함, 2016년 6월 9일 개정
0209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 (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함)	2017년 11월 4일부터 목록에 추가 포함
from 0210	염장, 염수장, 건조 또는 훈제한 육	2014년 8월 7일 정부결의 붙임 목록 포함
from 0301 (단, 030111000 0,030119 000 0 제외)	살아있는 어류 (단, 대서양연어(Salmo salar)의 치어, 브라운송어(Salmo trutta)의 치어, 무지개송어(Oncorhynchus mykiss)의 치어, 대문짝납치(Psetta maxima)의 치어, 유럽농어(Dicentrarchus labrax)의 치어, 살아 있는 관상어류는 제외함)	2014년 8월 7일 정부결의 붙임 목록 포함, 2016년 11월 2일 개정
0302, 0303, 0304, 0305, from 0306, from 0307, 0308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생무척추 동물 (단, 굴 치패, 홍합 치패, 흰다리새우 (Litopenaeus vannamei) 치비는 제외함)	2014년 8월 7일 정부결의 붙임 목록 포함, 2016년 11월 2일 개정
from 0401, from 0402, from 0403, from 0404, from 0405, 0406	우유와 유제품 (단, 치료용 식이식품 및 예방용 식이식품을 위한 특수무유당우유 및 특수무유당유제품은 제외함)	2014년 8월 7일 정부결의 붙임 목록 포함
0701 (단, 0701 10 000 0 제외), 0702 00 000, 0703 (단, 0703 10 110 0 제외), 0704, 0705, 0706, 0707 00, 0708, 0709, 0710****, 0711, 0712***** (단, 0712 90 110 0 제외), 0713 (단, 0713 10 100 0 제외), 0714	채소류, 식용의 뿌리와 괴경 (단, 씨감자, 씨양파, 파종용 잡종 단옥수수, 파종용 완두콩은 제외함)	2014년 8월 7일 정부결의 붙임 목록 포함, 2016년 6월 9일 개정
0801, 0802, 0803, 0804, 0805, 0806, 0807, 0808, 0809, 0810, 0811, 0813	과실류와 견과류	2014년 8월 7일 정부결의 붙임 목록 포함
1501	돼지의 지방(lard(포함)과 가금의 지방 (제0209호나 제1503호의 것은 제외함)	2017년 11월 4일부터 목록에 추가 포함
1502	소·면양·산양의 지방 (제1503호의 것은 제외함)	2017년 11월 4일부터 목록에 추가 포함

EAEU HS코드	품명***	비고
1503 00	라드스테아린(lardstearin), 라드유(lardoil), 올레오스테아린(oleostearin), 올레오유(oleo-oil), 동물유(animal oil)로서 유화·혼합 그 밖의 조제를 하지 않은 것	2017년 11월 4일부터 목록에 추가 포함
1601 00	소시지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 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에 한함)과 이들 물품을 기제로 한 조제식품	2014년 8월 7일 정부결의 붙임 목록 포함
from 1901 90 110 0, from 1901 90 910 0, from 2106 90 920 0, from 2106 90 980 4, from 2106 90 980 5, from 2106 90 980 9	조제식품(단, 생물학적 활성첨가제, 운동 선수의 영양을 위한 특수 식품****, 비타민-미네랄 복합제, 향미첨가제, 단백질 농축물(동물성 및 식물성) 및 그 혼합물, 식이 섬유, 식품 첨가물(복합제 포함)은 제외함)	2014년 8월 7일 정부결의 붙임 목록 포함, 2015년 9월 30일 개정
from 1901 90 990 0	치즈 생산기술로 제조되고 지방분이 전 중량의 1.5% 이상인 조제식품	
from 2501 00*****	소금(식탁염과 변성염 포함), 순염화나트륨(수용액인지 또는 고결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음)과 바닷물(단, 생물학적 활성첨가제는 제외함)	2016년 11월 1일부터 목록에 추가 포함, 2017년 5월 23일 개정

*** 어린이용 식품은 제외함

**** 러시아연방 국가대표팀을 위한 것으로 러시아연방체육부가 수입상품의 용도 확인

***** 어린이용 식품은 제외함. 러시아연방농업부에서 승인한 해당 상품의 수입허가량 내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농업부가 수입상품의 용도 확인

***** 의약품 및 생물학적 활성첨가제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은 제외함. 러시아연방산업통상부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입상품의 용도 확인

***** 의약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은 제외함. 러시아연방산업통상부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입상품의 용도 확인

- 제3국을 통한 제재제품 반입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2015년 8월 6일부터 러시아로 반입되는 제재국의 원료 및 식품을 폐기처분하기로 결정함. 현재 폐기 유효기간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폐기처분 대상 : 러시아 법인 및 개인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국가 혹은 이에 동조하는 국가의 원료 및 식품
- 담당기관 : 연방관세청, 동식물검역국, 소비자권익보호복지감독국
- 위반 시 법인은 행정처벌을 받으며 5만~30만 루블 상당의 벌금형 또는 압수

- 금수조치 도입 이후 러시아는 상품 부족과 가격 인상을 피하고자 수입금지제품 대체제품을 모색해왔으며, 외국 및 러시아생산자들이 유럽생산자의 빈자리에 들어와 러시아 시장에서 새로이 입지를 구축함
- 식품 금수조치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현시점에 한국도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러시아 시장 진출에 적극 노력해야 함

2. 터키 식품 금수조치

- 2015년 11월 24일 터키 군의 러시아 전투기 피격 사건이 발생하자 러시아 대통령은 국가안보 조치와 관련해 터키를 상대로 일련의 특별 경제제재조치를 적용한 칙령에 서명함
- 푸틴 대통령이 터키 상품 수입금지 및 제한조치를 명령한 가운데, 러시아정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터키산 채소류, 과일류, 가금육, 소금 등 수입금지 목록을 승인함
- 작년에 들어서 양국 관계가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제한조치도 하나씩 해제되는 중이며 몇 차례에 걸쳐 수입금지 목록도 개정됨

EAEU HS코드	품명	비고
0207 14	닭고기 이분도체 및 식용설육 (냉동)	2017년 6월 10일부터 수입제한조치 해제
0207 27	칠면조고기 이분도체 및 식용설육 (냉동)	2017년 6월 10일부터 수입제한조치 해제
0603 12	카네이션 (신선)	2017년 3월 18일부터 수입제한조치 해제
0702 00 000	토마토 (신선 또는 냉장)**	** 러시아 농업부에 의해 승인된 반입 허가량의 범위 내 수입상품은 예외로 함. 2017년 11월 1일부터 부분적 해제 (현재 3개 업체만 허가)
0703 10	양파, 샬롯양파 (신선 또는 냉장)	2017년 3월 18일부터 수입제한조치 해제
0704 10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신선 또는 냉장)	2017년 3월 18일부터 수입제한조치 해제
0707 00	오이 (신선 또는 냉장)	2017년 6월 10일부터 수입제한조치 해제
0805 10	오렌지 (신선 또는 건조)	2016년 10월 20일부터 수입제한조치 해제
0805 20	신선 또는 건조 귤(탄제린 및 운주밀감 포함), 클레멘타인, 윌킹 및 이와 유사한 감귤류 교잡종	2016년 10월 20일부터 수입제한조치 해제

EAEU HS코드	품명	비고
0806 10	포도 (신선)	2017년 6월 10일부터 수입제한조치 해제
0808 10	사과 (신선)	2017년 6월 10일부터 수입제한조치 해제
0808 30	배 (신선)	2017년 6월 10일부터 수입제한조치 해제
0809 10	살구 (신선)	2016년 10월 20일부터 수입제한조치 해제
0809 30	복숭아(넥타 포함) (신선)	2016년 10월 20일부터 수입제한조치 해제
0809 40	자두 및 가시자두 (신선)	2016년 10월 20일부터 수입제한조치 해제
0810 10	딸기 (신선)	2017년 6월 10일부터 수입제한조치 해제
1704 10	추잉껌(당을 도포하였는지에 상관없음)	2017년 3월 18일부터 수입제한조치 해제
2501 00	소금(식탁염과 변성염 포함), 순염화나트륨 (수용액인지 또는 고결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음)	2017년 3월 18일부터 수입제한조치 해제

- 2017년 11월 1일부터 동식물검역국은 이전에 동식물검역국의 검사를 통과한 3개 터키 업체(Özaltın, Agrobay, SÜRAL)에서의 토마토 수입을 허가함. 이 업체들은 완전 생산 사이클을 보유하며 수출업체이기도 함
- 러시아 업체들이 온실 건설에 많은 투자를 한 상황이라 러시아 생산자들에게 큰 피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토마토 공급 재개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것임
 - 첫 단계로 러시아는 연간 5만 톤의 터키산 토마토 수입을 허용함. 이는 금수 조치 도입 전보다 6배나 적은 물량으로 금수조치 전 터키산 토마토는 수입산 토마토 시장의 절반을 점유함

3. 특별식물위생체제 도입

- 2015년 12월 7일부터 동식물검역국은 특별식물위생체제를 도입함. 이는 벨라루시를 통한 반입을 포함하여 원산지 불명의 제품이 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 식품 금수조치에 해당되는 규제제품이 위조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한 채 루트를 변경하여 벨라루시를 통해 반입되는 상황이 심각해졌고 벨라루시에서의 공급 규모가 급증하는 추세임. 이에 러시아 당국은 벨라루시에서 발급된 식물위생 증명서의 진위를 엄격하게 확인할 예정임

- 사리에 맞지 않는 물류경로(이스라엘→체코→리투아니아→벨라루시→러시아, 브라질→에스토니아→슬로바키아→벨라루시→러시아)를 통해 러시아로 제품을 반입하는 수많은 차량 억류됨('15년 400대 이상)
- 중국산 제품을 먼저 리투아니아로 운송하고 그 다음에 벨라루시를 통해 러시아로 공급하기도 함
- 동식물 검역국은 터키산 금지제품이 벨라루시를 통해 반입될 가능성에 우려
- 동식물 검역국은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국가 및 제품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원산지 국가 제품의 공급을 특별히 통제할 예정

신고된 원산지 국가	통제 품목
모로코	신선 버섯, 사과, 배, 딸기, 당근, 감
터키	사과, 버섯, 배추, 키위, 오이, 토마토
이집트	가지,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허브
이스라엘	라스베리, 블루베리, 블랙베리
마케도니아	신선 버섯, 신선 파프리카, 배, 키위, 애호박
에콰도르	복숭아, 넥타, 배
남아프리카공화국	배, 사과, 무
중국	양상추, 배(콘페렌츠), 사과
브라질	배, 가지, 커런트, 딸기, 블랙베리, 라스베리
스위스	사과, 라디키오(Radicchio)
멕시코	배, 사과

4. 낙농 보호주의 대두

- 러시아 농업부는 국내 낙농업자를 보호를 위한 '낙농 보호주의'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을 제안함
- 러시아 농업부에 따르면, 2018년 4월 19일에는 원유 가격이 20루블 밑으로 떨어져 2018년 한해 840억 루블 이상의 손실이 예상됨
- 지속적인 우유 가격 하락으로 생존을 위협받은 러시아 낙농업자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추구하고 있음
- 러시아 유제품 시장 안정화를 위해 유제품 라벨링 의무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제품 내 원유 함량, 식물성 오일 함량 등 구체적인 성분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 또한 전자 수의학증명서 도입으로 유제품의 이동과정과 유통망에 대한 정부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임
- 현재 상황은 국내 생산량 증가와 효과적인 유제품 수입 관리 메커니즘이 부재에 기인함
 - 유제품 가공업자는 원유의 원산지보다 가격요소를 중시하여 식물성 유지를 이용한 생산을 위한 원료를 덤핑가격으로 수입하고 있음
 - 관세 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에 172톤의 가루우유가 수입되었고, 이의 20%에 해당하는 양이 밀수로 반입됐을 것으로 추정됨
 - 러시아 농업부는 가루우유 수입량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벨라루스와 우유 공급에 대해 논의 중이며, 단일 유제품 시장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유제품 시장 안정화의 일환으로 치즈유사제품(Cheese-like Products)에 대한 규제가 요구됨
 - 2017년에 반입된 치즈유사제품은 15만 톤에 이르며, 이는 일반원유 수요를 감소시켜 겨울철 원유 가격을 20% 감소시킴
 - 법률상 치즈유사제품에 대한 정의가 없어 소비자보호국이나 동식물검역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수의학적 모니터링 도입, '우유와 유제품의 안전에 대한' 기술규정에 부합하는 가루우유 이용 제한 규정(버터 및 치즈 가공 시 가루우유 이용 제한 규정, 특정 유형의 유제품 생산에서의 식물성 유지 사용 제한) 형성과 기술규정 위반 시의 책임강화가 요구됨
- 러시아 낮은 원유가격과 정부차원의 낙농업 보호주의 정책은 수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러시아 국내 원유가격 하락으로 수출 원유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여 수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5. 팜유 수입 증가에 따른 규제 요구 증가

- 유제품 가공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팜유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음
 - 2018년 1월-2월간 팜유 수입량은 전년대비 36.7% 증가하여 17만 톤에 달함. 올 2월에만 9만7천 톤에 달하는 팜유가 수입됨
 - 팜유 수입 증가는 유제품 가공에 첨가되는 팜유의 양이 증가가 원인임
 - 해바라기유, 홍화유 혹은 목화유의 수입은 해당기간 전년대비 2.5배 증가하여 4만4천 톤에 이룸

- 농업부는 팜유 수입 쿼터를 설정과 팜유를 비롯한 비유지방 함유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 성분정보표기를 의무화를 제안함
 - 팜유 이용 제한이 기타 동물성 지방을 이용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됨
 - 기타 첨가물로 가공한 유제품에 대한 수입 쿼터 설정 혹은 수입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천연 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임
 - 유제품 가공 성분 표기로 인해 비유지방으로 가공한 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 천연 유제품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6. 벨라루스 및 카자흐스탄 축산 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

- 벨라루스의 4개 육가공품 제조업체에 대한 수입이 일시적으로 제한됨
 - 가금류 소시지에서 항콕시딴증 제제(coccidiostatic), 쇠고기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어 9월 20일부터 해당 기업들의 제품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함
 - 해당 조치에 이어 벨라루스 기업에 대한 검역 조치를 강화하여 규정 위반 5개 업체를 추가 적발함
 - 추가 적발 업체의 적발 사항은 가금류 고기에서 항콕시딴증 검출, 쇠고기에서 테트라사이클린 검출, 가금류 고기 섭취자에게서 호기성, 선택적 혐기성 미생물수 과다로 밝혀짐
 - 육가공품을 수출 시에는 사료 첨가물의 완제품 잔류여부를 정확히 감독해야 함
- 10월부터 카자흐스탄 축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할 계획
 - 2015년 카자흐스탄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러시아의 통합자동관리 시스템 ‘Vetis’와 카자흐스탄의 통합자동관리시스템 통합에 동의했으나 시행 기한을 준수하지 않음
 - 러시아 동식물검역국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시스템의 경우 축산물 유통 추적은 가능하지만, 축산물 제품에 대해 발행된 수의학증명서에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원료가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원산지 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또한 카자흐스탄 북부에 위치한 뉴카슬 지역에서 발생한 가축 질병과 관련하여 살아있는 가금류와 달걀, 열처리를 거치지 않은 모든 유형의 가금류의 러시아 반입을 금지함
 - 이에 따라 러시아로 수입되는 동물 제품에 발행되는 수의학증명서에는 ‘카자흐스탄 북부 지역을 제외하고’라는 문구를 넣은 제품만 통관이 가능함

2018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V

인도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제2장 통관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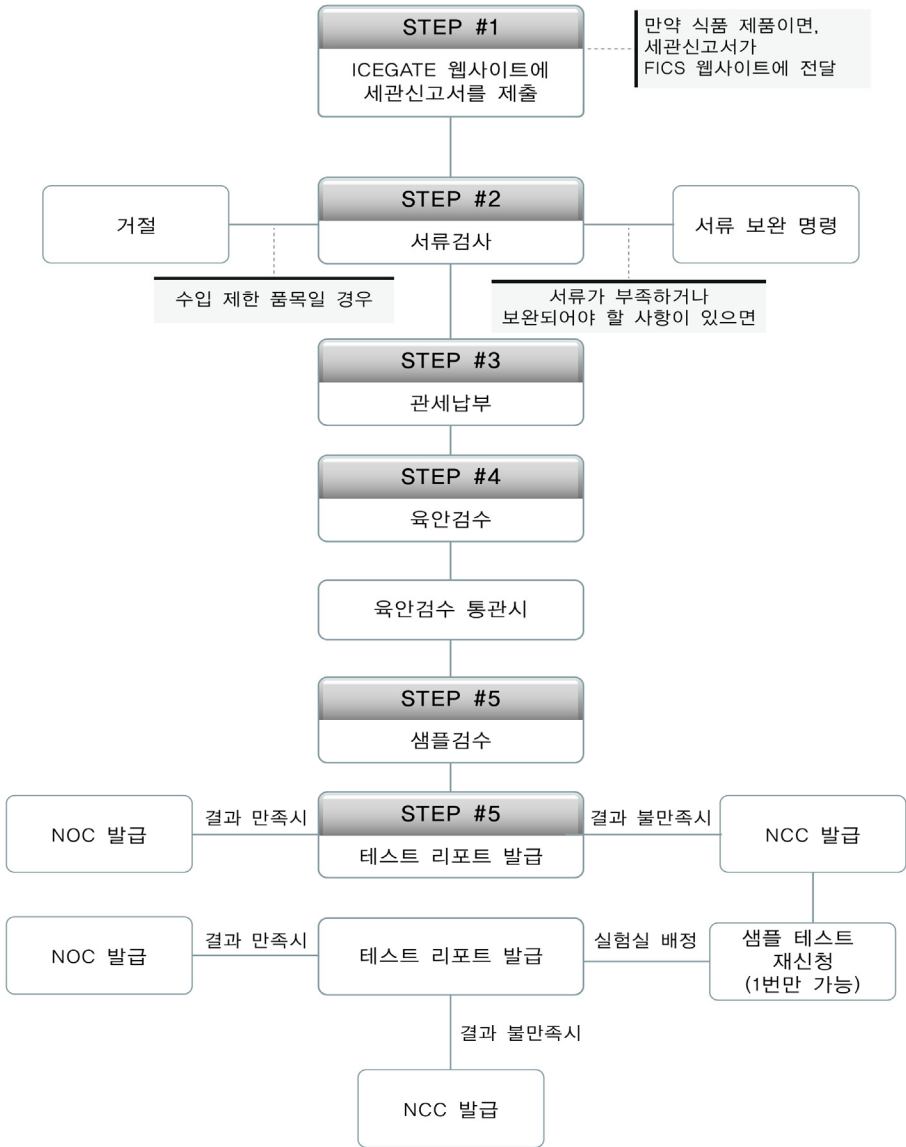
제3장 검역제도

제4장 FSSAI 라이선스

제5장 라벨링 제도

목 차		
	제1장 농식품 수출프로세스	153
	제2장 통관제도	154
	1. 관리·법률체계	154
	2. 통관절차	154
	3. 제출서류	165
	4. 관세제도	166
	제3장 검역제도	177
	1. 관리·법률체계	177
	2. 품목별 검역절차	177
	3. 식물검역	180
	제4장 FSSAI 라이선스	189
	1. 개요	189
	2. 식품 사업 라이선스	190
	제5장 라벨링 제도	197
	1. 관리·법률체계	197
	2. 식품 포장 및 라벨링	197
	3. 표시사항	199
	4. 라벨링 샘플	213

제 1 장 |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1. 관리 · 법률체계

□ 관리체계¹⁾

- DGFT (Director General of Foreign Trade)는 인도 정부의 통상산업부 산하 기관으로, 인도의 수출입 정책을 집행함
- CBEC(Central Board of Excise and Customs)는 인도 재무부 산하 세수국의 독립적 책임행정기관으로 1명의 위원장과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관세, 서비스세, 소비세 등을 담당함
- 18년 3월 CBEC(Central Board of Excise and Customs)가 CBIC(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로 변경됨

2. 통관절차

□ 물품신고 전 단계

- 수출입자코드 (IEC; Importer - Exporter Code) 발급
 - 수입자는 수입신고 전 필수적으로 인도상공부 무역국(DGFT; Director General of Foreign Trade)으로부터 수출입자코드를 발급받아야 함(단, 상업 목적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발급 면제)²⁾
 - 수출입자 코드를 발급받기 위한 필요서류 목록
 - ✓ 은행증명서(Bank of Certificate)
 - ✓ PAN(Permanent Account Number)³⁾
 - ✓ 회사주소 증명서⁴⁾
- 적하목록(IGM; Import General Manifest) 제출
 - 제출기한

1) <http://www.cbic.gov.in/htdocs-cbec/customs/cs-acts-botm> 및 Customs Tariff Act, 1975 참조

2) 발급처 : <http://164.100.78.104:8080/dgttic/panSearch.jsp>

3) 소득세를 내는 개인, 회사 가족만 받을 수 있는 10자리 숫자의 ID카드

4) 회사 주소 증명서로 인정되는 서류 : 판매증서, 임대계약서, 최근 회사에서 쓴 전기료, 통신료 등

- √ 해상/항공 운송 : 선박 또는 항공기가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
- √ 육상운송 : 도착지에 도착 후 12시간 이내
- 제재사항
 - √ 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화물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할 수 없음
 - √ 제출 지연 시 50,000 루피 이하의 페널티가 부과됨
- 유효한 FSSAI(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Import License 발급
- 제품 승인(수입되는 제품이 표준화되지 않은 경우 즉, FSS 법과 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 제품 승인 절차
 - √ FORM 1과 FORM 1에서 요구하는 정보 및 자료들을 FSSAI 당국에 제출
 - √ FSSAI 당국은 신청서를 검토 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수입업자에게 요청
 - √ 신청서 및 자료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FSSAI 당국에서 승인을 해 주고, 이상이 있으면, 승인을 거절할 수 있음
- BO(Food Business Operators)는 CHA(Customs Handling Agent)를 통해 수입품을 취급하기로 선택한 경우, FSSAI 담당 공무원에게 CHA에 대한 Authorization Letter를 제출

□ 수입신고 및 가격신고

- 세관신고서(BoE, Bill of Entry) 제출
 - 수입자는 적하목록 제출 후, 관할 세관에 Bill of Entry와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⁵⁾
 - EDI를 통한 신고
 - ICE GATE⁶⁾를 통하여 전자신고

5) Bill of Entry: <https://www.indiafilings.com/learn/gst-bill-of-entry/>

6) <https://enquiry.icegate.gov.in/enquiryatices/beTrackIces>

- EDI를 통하지 아니한 신고
- 수입자는 Bill of Entry 4부를 준비하여 2부는 세관에 제출하고, 1부는 거래 은행에 제출하고, 1부는 수입자가 보관
- Bill of Entry는 다음의 서류를 수반하여야 함
 - ✓ 서명된 송장(Signed invoice)
 - ✓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 ✓ 선하증권 또는 화물인도지시서/항공화물운송장(Bill of Lading or Delivery Order/Airway Bill)
 - ✓ 필요한 경우 물품 관련 수입 라이선스(ISI, CDSCO)
 - ✓ 필요한 경우 신용장/환어음
 - ✓ 보험서류
 - ✓ 화학 물질의 경우 검사보고서
 - ✓ 특혜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등
- 식품의 판매 및 유통이 목적인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제품 성분 목록
 - ✓ 라벨링 샘플
 - ✓ 식품 시험 순서
 - ✓ FSSAI LICENSE
- 수입화물이 식품일 경우, 필요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유통기한이 7일 미만인 식품 수입제품의 임시 NOC 발행에 대한 수입업자의 동의서
- √ 냉동 및 냉장용 식품의 임시 NOC 발행에 대한 수입업자의 동의서
- √ 수입한 식품이 디스플레이를 위한 목적임을 명시한 수입업자의 동의서
- √ 수입한 식품이 무역 박람회 또는 전시 목적임을 명시한 수입업자의 동의서
- √ 수입한 식품이 개인의 사용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한 수입업자의 동의서
- √ 수입한 식품이 연구/개발 목적이라는 것을 명시한 수입업자의 동의서
- √ 수입한 식품이 스포츠/이벤트 목적이라는 것을 명시한 수입업자의 동의서
- √ 수입한 식품이 100% 수출 혹은 재수출 목적이라는 것을 명시한 수입업자의 동의서
- √ FSS Rule 2011에 표준화되지 않은 식품(Proprietary Food)에 한해 원산지 국가의 안전 기준을 포함한 분석증명서(Complete Certificate of Analysis)
 - ▶ 신소재 식품, 신소재성분 또는 신소재 과학기술을 사용하여 가공한 식품
 - ▶ 새로운 첨가물
 - ▶ 효소를 포함한 새로운 가공 보조제
 - ▶ 미생물, 박테리아, 효모, 진균으로 구성되거나 분리된 식품 및 식품 성분의 제품
- √ 환적을 할 경우, 환적이 되는 국가리스트
- 사전 제출
 - 수입자는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Bill of Entry를 제출할 수 있음
 - 사전 제출 후 30일 이내 선박 또는 항공기가 도착하여야 유효함
- Bill of Entry for warehousing/Ex-Bond
 - 물품을 도착 즉시 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창고에 일정 기간 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Bill of Entry for warehousing을 제출함으로써 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음
 - 보세 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Ex-Bond Bill of Entry를 제출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물품을 반출함
- 가격 신고
 - 2011년부터,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신고·납부 후 세관 당국에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는 ‘Self-assessment’를 관세에도 도입함
- 신고 내용
 - 수입 신고를 하는 자는 Bill of Entry를 제출하는 때에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 분류/적용 관세율/과세표준/관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가격 신고함

□ 심사 및 물품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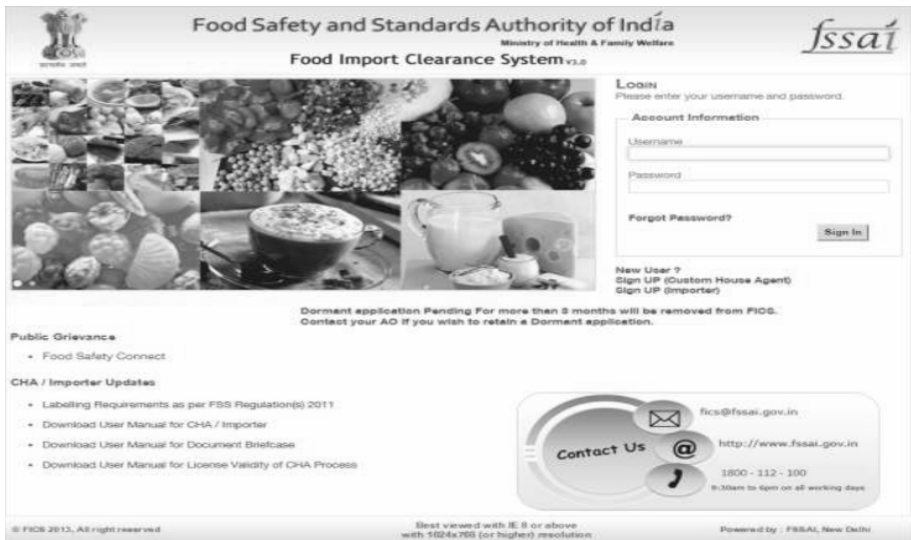
○ 서류심사

- 온라인으로 제출된 세관신고서와 서류들은 자동으로 위험관리시스템(RMS, Risk Management System)으로 전송되어 심사함
- 수입 신고된 물품이 수입금지품 또는 제한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운송인이 제출한 적하목록과 수입 신고인이 제출한 Bill of Entry 상의 상세 품목 내역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
- 신고된 가격이 적절한 방법으로 결정되었는지 여부
- 세관 당국은 심사 후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 받은 Bill of Entry 중 1부를 수입 신고인에게 반송함
- 식품의 경우, RMS에서 High Risk Food Items와 Low Risk Food Items를 구분이 되어 심사를 진행
- 수입업자 혹은 통관사가 인도 식품안전표준국(FSSAI, 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에서 운영하는 식품수입 통관시스템(FICS, Food Import Clearance System)에, NOC(No Objection Certificate)를 받기 위해 허가 받은 세관신고서와 함께 다른 필요 서류들을 함께 제출⁷⁾
- FSSAI의 CEO가 임명한 담당 공무원(AO, Authorized Officer)은 수입업자가 제출한 서류 및 제품이 수입 금지 또는 제한된 식품인지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한 서류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 진행
- ✓ 유아 영양 식품, 유아용 우유 식품, 유아용 조제식, 우유 시리얼 보조 식품, 가공 시리얼 기반 보완 식품 및 포장 식수 및 미네랄워터 제품은 샘플 당 12,000루피
- ✓ 기타 모든 식품은 샘플당 5,000루피

〈High Risk Food Items〉

Meat & Meat Products	Condensed Milk	Fats in any form except edible vegetable fat
Fish & Fish products	Milk Cereal base weaning Foods	Cocoa Butter Equivalent or substitutes
Egg & Egg Products	Infant Milk food	Milk Powders
Infant Formulae		

7) 수입업자/통관사(CHA, Customs House Agent) 또는 에이전트사는 반드시 FICS(fics@fssai.gov.in.)에 사전 등록이 요구됨



* Food Import Clearance System Web Page: <https://fics.fssai.gov.in/AOLogin.aspx>

○ 육안 검수 및 샘플링

- 담당 공무원은 수화물 검수 및 샘플링 날짜와 시간을 공지
- 통관사와 수입업자는 검수 및 샘플링 날짜와 시간에 대한 확정 메시지를 담당공무원에게 전달
- 수화물의 육안 검수는 아래 과정을 포함
 - ✓ 곤충 침투 및 곰팡이 감염에 대한 수화물의 물리적 상태 확인
 - ✓ 수입 통관 시 제품의 유통기한이 전체 유통기한의 60% 이상인지 확인
 - ✓ FOOD SAFETY AND STANDARDS(PACKAGING AND LABELLING) REGULATIONS, 2011에 따른 제품별 라벨링 요구사항 준수 여부 확인
- 하기의 4가지 정보들에 대해서는 라벨링에 표시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보세창고에서 4가지 정보를 기입한 비 착탈식 스티커 혹은 다른 비 착탈식 수단을 통해 정정 가능

1	수입업자 이름 및 주소
2	FSSAI 로고 및 라이선스 번호
3	Veg/Non-Veg 로고
4	Proprietary Food의 이름, 특징, 구성성분을 포함한 제품 카테고리

- 라벨 표시상에 결함이 있다면, 담당 공무원은 수입업자 또는 통관사에게 허용된 라벨 정정사항을 지시하는 명령을 전달하며, 수입업자 또는 통관사는 세관 구역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원본 라벨링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에서 라벨링을 정해진 시간 내에 수정해야 함
- 담당 공무원은 수정된 라벨링을 확인하기 위해 수화물에 대해 육안 검사를 재 실시 할 수 있음
- Visual Inspection 후에, 담당 공무원은 수입업자 또는 그의 대리인 앞에서 각 제품별로 두 개의 샘플을 추출
- 식품 분석가에게 보내지는 샘플의 양은 FSS 규칙 및 2011년 실험 및 시료 채취 분석 규정(FSS Rules and the Laboratory and Sampling Analysis Regulations, 2011)에 따름

1	Milk	500ml
2	SterilizedMilk/UHTMilk	500ml
3	Malai/Dahi	200gms
4	Yoghurt/SweetenedDahi	500gms
5	Chhana/Paneer/Khoya/Shrikhand	250gms
6	Cheese/Cheesespread	200gms
7	Evaporated Milk/CondensedMilk	200gms
8	Ice-Cream/Softy/Kulfi/Icecandy/Icelolly	300gms
9	MilkPowder/Skimmed MilkPowder	250gms
10	InfantFood/WeaningFood	500gms
11	MaltFood/MaltedMilkFood	300gms
12	Butter/ButterOil/Ghee/Margarine/Cream/BakeryShortening	200gms
13	Vanaspati EdibleOils/Fats	400gms
14	CarbonatedWater	3litre
15	Baking Powder	100gms

16	Arrowroot/Sago	250gms
17	Cornflakes/MacaroniProducts/CornFlour/CustardPowder	200gms
18	Spices CondimentsandMixed Masala(Whole)	500gms
19	Spices CondimentsandMixedMasala (Powder)	500gms
20	Nutmeg/Mace	250gms
22	CompoundedAsafoetida	150gms,
23	Saffron	20gms.
24	Gur/jaggery, IcingSugar, Honey, SyntheticSyrupBura	250gms
25	CaneSugar/RefinedSugar/CubeSugar, Dextrose, Misri/DriedGlucoseSyrup,	200gms
26	ArtificialSweetener	100gm,
27	FruitJuice/FruitDrink/FruitSquash	1ltr
28	TomatoSauce/Ketchup/TomatoPaste Jam/Jelly/Marmalade/ TomatoPuree/VegetableSauce	300gms
29	Non-Fruitjellies	200gms
30	PicklesandChutneys	250gms
31	Oilseeds/Nuts/DryFruits	250gms
32	Tea/Roasted Coffee/RoastedChicory	500gms
33	InstantTea/InstantCoffee/InstantCoffee-ChicoryMixture	100gms
34	SugarConfectionery/ChewingGum/BubbleGum	200gms
35	Chocolates	200gms
36	EdibleSalt	200gms
37	IodisedSalt/IronFortifiedSalt	200gms
38	FoodGrainsandPulses(WholeandSplit)	1kg

39	Atta/Maida/Suji/Besan/OtherMilledProduct/PaushtikFortifiedAtta/Maida	500gms
40	BiscuitsandRusk	200gms
41	Bread/Cakes/Pasties	250gms
42	Gelatin	150gms
43	Catechu	150gms
44	Vinegar/SyntheticVinegar	300gms
45	Food Color	25gms
46	Food color preparation(Solid/Liquid)	25gmSolid/100
47	NaturalMineralWater/PackagedDrinkingWater	4000mlinthreeminimumoriginalesealedpacks
48	SilverLeafs	2gm
49	PreparedFood	500gms
50	ProprietaryFood(Non-Standardized Foods)	500gms
51	CannedFoods	6sealedcans
52	Foodnotspecified	500gms

- 밀폐된 수입 식품 샘플은 라벨에 아래 정보를 포함해야 함
 - ✓ 샘플 코드 번호
 - ✓ 샘플 수집 일자 및 장소
 - ✓ 샘플의 양
 - ✓ 음식의 이름
 - ✓ 샘플을 수집하는 동안 첨가된 방부제의 이름과 양(있는 경우)
 - ✓ 샘플을 보낸 발송인의 서명 및 날인
- 밀폐되고 라벨이 붙은 식품 샘플 중 하나는 공인시험기관(Notified Laboratory)에 보내지며, 두번째 식품 샘플은 재검사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알맞은 조건에 따라 보관됨
- 밀폐된 벌크 용기의 경우, 무균 또는 흡습성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수입업자는 FSSAI에서 규정한 Annexure-1과 함께 2개의 대표 샘플을 제공해야 함

Tender Form

To,

The Asstt Dir (GA)
Food Safety and Standard Authority of India
Ministry of Health & Family Welfare,
FDA Bhawan, Kotla Road,
New Delhi-110002

Ref. Your Tender No. _____ dated

We, the undersigned have examined the above Tender Document, No. _____, dated _____ (if any), *description of the goods and services*) in conformity with your above referred document.

If our Tender is accepted, we undertake to perform the services as mentioned above.

We agree to keep our tender valid for acceptance as required in the Tender document or for subsequently extended period, if any agreed to by us. We also accordingly confirm to abide by this Tender up to the aforesaid period and this Tender may be accepted any time before the expiry of the aforesaid period. We further confirm that, until a formal contract is executed, this Tender read with your written acceptance thereof within the aforesaid period shall constitute a binding contract between us.

We further understand that you are not bound to accept the lowest or any tender you may receive against your above-referred Tender enquiry.

We confirm that we do not stand deregistered/banned/blacklisted by any Central/State Government

Brief of court/legal cases pending, if any, are following:

We confirm that we fully agree to the terms and conditions specified in above mentioned Tender documents, including amendment/ corrigendum if any.

(Signature with date)

(Name and designation) Duly authorised to sign Tender for and on behalf of
bidder with company seal

○ 샘플 테스트

- 수입 식품의 샘플은 평가증명서(CoA, Certificate of Analysis)와 함께 식품 수입 통관 시스템에 의해 무작위로 선정된 공인 시험 기관에 송부됨
- 담당 공무원이 보낸 수입 식품 샘플은 FSS Rule 2011에 정의된 기준과 척도에 따라 분석되며, 5일 이내에 해당 샘플이 식품 안전 표준법 및 그 규정에 적합한지에 대한 견해와 함께 샘플 테스트 보고서가 담당공무원에게 전달
- 수입업자가 샘플 테스트 보고서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시험 기관에서 샘플 테스트를 재신청을 할 수 있음. 담당 공무원은 재시험을 위해 두 번째 샘플을 지정된 실험실에 보내야함. 해당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샘플 테스트 보고서는 최종 보고서이며, 두 번째 테스트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더 이상의 샘플 테스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

□ 관세 납부 및 통관완료

○ 관세 납부

- 관세는 세관이 서류 심사 후 Bill of Entry 1부를 수입 신고인에게 반송한 날로부터 5일 이내(휴일 제외)에 납부하여야 함
- 납부 절차
 - ✓ 납세자는 TR-6 Challan 서식⁸⁾을 이용하여 지정된 은행에 관세를 납부
 - ✓ 납세자는 세관에서 반송 받은 Bill of Entry를 은행에 제시하고 은행은 배서하여 관세를 납부하였음을 증명
 - ✓ 인도는 관할 세관마다 지정한 은행의 이름과 지점명이 다르므로 납부 시 유의하여야 함
 - ✓ EDI를 통한 수입 신고와 연계하여 e-payment system을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주요 세관에서만 이용 가능함

□ 통관 완료

- 수입 신고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관세가 올바른 방법으로 결정되어 납부되면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이 완료됨

8) TR-6 Challan : <https://www.allindiantaxes.com/pdf/e13b04d1.pdf>

□ 통관 절차별 유의사항

단계	유의사항
수입 신고 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신고 서류상에 오류 발생 시 정보 수정이 어려우므로 서류 작성에 유의 컨테이너 별로 포장명세서와 인보이스를 작성함에 주의 인도 정부는 신용장 방식으로 수입할 경우, 보험 가입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는 항만, 도로 등의 인프라 부족과 운송수단 노후로 내륙 운송 과정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내륙 운송보험 가입이 필수 인도에서는 CIF 조건 수입이 허용되지만 C&F 조건 수입 시에는 문제가 발생 소지가 많음 첫 거래는 L/C 조건으로 시작해야 향후 대금 결제에 문제가 없음
수입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인도 CEPA 협정은 HS 코드에 따라 특혜관세, 원산지 결정기준이 결정되므로 품목 번호 확인에 유의 물품 검사, 물품인도시기 외 세관 전자자료공유(EDI) 시스템을 통해 수입 신고 가능
물품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 공인 프로그램(ACP)제도 및 수출입 안전 관리 우수공인업체(AEO) 활용/ACP 및 AEO 인증 업체는 통관을 위한 별도의 저장 공간, 처리 시설 등을 제공받으며 신속 통관이 가능 송장의 가격 과소평가(Under value)를 문제 삼아 상품 가격을 높여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발생 관세 혜택이 적용되는 수입물품의 경우 증빙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통관을 거부하는 사례 발생
세금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관별로 관세 납부은행이 다르므로 납부 전에 은행 이름과 지점 확인 필수 관세 확정 이후 8일을 초과하면 관세 납부 연체료를 연간 20% 복리로 부과함에 주의. 관세를 즉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관세사를 통해 관세확정을 지연시키면 연체료 절감이 가능 운송(해상 및 항공)시 CFS 및 공항 도착 후 3일 이후부터는 체화료 부과에 주의
물품 반출 및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과 정박 시 국제 판례와 다르게 내용물도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초과 정박비용을 컨테이너 소유주에게 부과함에 유의 수입한 화주가 나타나지 않아 항만 당국이 컨테이너를 1년 이상 묶어둔 사례도 발생

3. 제출서류

- 서명된 송장(Signed invoice)
 -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을 뜻하며 판매의 전체 세부 사항을 포함하는 주요 판매 문서 역할을 함. 수출 또는 수입 상품의 가치 평가 내용이 들어감
-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이나 수입품을 조사하여 관세 및 수량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것을 명시함

- 선하증권 또는 화물인도지시서/항공화물운송장(Bill of Lading or Delivery Order/Airway Bill)
- 필요한 경우 물품 관련 수입 라이선스(ISI(BIS), CDSCO)
 - BIS(ISI LICENSE) : 제품의 품질, 안전성, 신뢰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품 위에 부착되는 표준마크
 - CDSCO : 의료 장비 규제 담당 기관으로서 규정과 표준을 정하고 약품, 진단법, 장비 및 화장품의 수입 및 생산 허가를 내리는 역할
- 신용장
 - 판매자가, 기저가 되는 계약(예컨대, 물품판매계약)에 의해 특정된 의무를 이행하였고, 물품·용역이 계약된 대로 제공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 특혜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 특혜세율을 받기 위해서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원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4. 관세제도

관리체계⁹⁾

- 재정수입국(Department of Revenue) 산하의 간접세위원회(CBIC : Central Board of Indirect and Customs)에서 담당함

수입관세 및 GST

- 수입관세
 - 최종 수입 관세 : HS COD를 바탕으로 추정하며, 이 외 반덤핑관세라든지 추가로 인도 정부에서 불규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니 유의해야 함

인도 정부의 GST 시행에 따른 수입관세구조 및 요율 변동사항 요약

- 2017년 7월 1일자로 인도 정부에서 여러 가지 간접세를 통합하는 GST세제 개편을 실시함에 따라 기존 수입 시 납부하던 세금의 구조 및 요율이 변경됨

9) <http://www.cbic.gov.in/htdocs-cbec/customs/cs-acts-botm> 및 Customs Act, 1962 참조

- 통합간접세(GST, Goods and Service Tax)란?
 - 통합간접세(Goods and Service Tax) 제도는 기존에 중앙정부·주정부에 난립해 있는 10여 가지의 간접세 항목을 CGST, SGST, IGST의 세 가지 항목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함
 - 복잡한 세제로 인해 한 국가임에도 인도는 29개 주별로 상이한 사업 여건을 지니고 있었으며, 때로 상품을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보다 인도 내 지방과 지방 간에 거래하는 것이 더 까다롭다고 할 정도로 기업환경에 악영향을 끼쳐왔음
- 통합 간접세의 내용
 - GST는 품목군을 세율에 따라 5가지로 나누고 있음. 생필품에는 낮은 세율, 사치품에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임. 상품마다 영세율, 5%, 12%, 18%, 28%의 세율을 차등으로 적용함
 - GST는 기존에 난립돼 있던 간접세를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GST 제도 내에서 포섭이 되지 않는 기존 간접세 중 7개의 항목(Cesses)는 남아있게 됨
- IGST 관련 정보
 - GST 제도하에서 수입관세는 IGST로 간주됨. 현재 상계관세(CVD, Countervailing Duty)와 특별추가관세(SAD, Special Additional Duty)가 IGST로 대체됨
 - 세율은 기존보다 다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거 관세 체계에서 기본 관세율을 10%라고 가정했을 때, 전체 관세율은 29.4% 수준이었음. 그러나 현 제도 하에서 GST의 기준세율인 18%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전체 관세율은 30.69%로 이전보다 다소 증가하게 됨
 - 물론 제품마다 적용되는 GST세율(0%, 5%, 12%, 18%, 28%)이 다르기 때문에 품목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주의할 점은 기존에 존재했던 Education Cess가 유지된다는 것임. 따라서 기본관세(Basic Duty) + Education Cess + IGST + GST Compensation Cess로 부과된다고 생각하면 됨
 - GST Compensation Cess는 담배, 고급자동차 등 일부 럭셔리 품목에 부과되는 추가 관세임. 한국산 제품의 대다수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나, 인도 정부의 이 세목 관련 공고문이 서로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는 등 혼선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수입 세금구조 및 요율 변경 전후 비교표

1) 기존 수입 세금구조 및 요율

DESCRIPTION	RATE	세율고정여부
Customs Basic Duty	HS CODE별로 요율 적용	
Customs Educational CESS	2.00%	고정세율
Customs Sec & High Educational, CESS	1.00%	고정세율
IGST Duty	HS CODE 별로 요율적용	
GST Compensation Cess	HS CODE 별로 요율적용	

2) 변경된 수입 세금구조 및 요율

DESCRIPTION	RATE	세율고정여부
Customs Basic Duty (①)	HS CODE 별로 요율적용	
Social Welfare Surcharge (②)	10%	고정세율
IGST Duty(③)	HS CODE 별로 요율적용	
GST Compensation Cess(④)	HS CODE 별로 요율적용	

○ 수입 세금구조 및 요율 변경 전후 계산방식 비교표

(1) 변경 전 수입세금 계산방식

DESCRIPTION	계산방식
Customs Basic Duty (①)	ASSESSABLE VALUE x DUTY RATE(해당 아이TEM 요율)
Customs Educational CESS (②)	① x 2.0%
Customs Sec & High Educational, CESS (③)	① x 1.0%
IGST Duty(④)	(ASSESSABLE VALUE+①+②+③) x 제품별 IGST 요율
GST Compensation Cess(⑤)	제품별 GST Compensation 요율*

* Assessable value: CIF value + (CIF value x 1%)

(2) 변경 후 수입세금 계산방식(총 수입세금 : 각 항목별 산출된 세액 합산)

DESCRIPTION	계산방식
Customs Basic Duty (①)	ASSESSABLE VALUE x DUTY RATE(해당 아이템 요율)
Social Welfare Surcharge (②)	① x 10%
IGST Duty(③)	(ASSESSABLE VALUE+①+②) x제품별 IGST 요율
GST Compensation Cess(④)	제품별 GST Compensation 요율*

* Assessable value: CIF value + (CIF value x 1%)

* GST Compensation Cess의 경우 대부분 0%이며 특정 제품에 부과됨.

HS CODE별 관세 확인 방법

- 먼저, 10자리의 HS CODE를 가진 한국과 달리, 인도 HS CODE는 8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HS CODE와 대응되는 인도 HS CODE를 확인해야 함
- 관세법령정보포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¹⁰⁾¹¹⁾

세계HS

☰ ☆

HS정보

- 속건표
- HS해설서
- 관세율표
- HS비교
- 세계HS개정표
- HS협약 개정자료
- 월간 품목분류 동향
- HS길라잡이

HS 가이드

품목분류 국내사례

품목분류 외국사례

FAQ

HS비교(UI-ULS-0201-011Q)

검색어 | 0101 Q 조회

한국(2018년)		인도	
품목번호	품명(2018년)	품목번호	품명(2018년)
0101	살아 있는 말·당나귀·노새·버새	0101	말, 당나귀, 노새와 버새
0101 2	말		- 말
0101 21	번식용	0101 21 00	- - 번식용
0101 21 1000	농가 사육용	0101 29	- - 기타
0101 21 9000	기타	0101 29 10	- - - 품로를 위한 말
0101 29	기타	0101 29 90	- - - 기타
0101 29 1000	경주말	0101 30	- 당나귀
0101 29 9000	기타	0101 30 10	- - - 번식용
0101 30	당나귀	0101 30 20	- - - 가축
0101 30 1000	번식용	0101 30 90	- - - 기타
		0101 90	- - 기타

10)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11) 법적인 효력을 가진 HS CODE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 문의

- 인도 HS CODE를 확인한 후, 해당 HS CODE의 관세율은 인도 관세청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www.cbic.gov.in/>). 우측 하단 메뉴의 CUSTOMS DUTY CALCULATOR를 클릭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 Customs
Department of Revenue, Ministry of Finance, Government of India

News Flash: Weekly newsletter from Chairman, CBIC dated 02/11/2018 Click View all

VIGILANCE
AWARENESS
29th October
Eradicate
Build

Congratulations to all the officers and stake holders of CBIC... India's World Bank ranking on Trading across Borders and Ease of doing Business jumps by 66 and 23 positions respectively.

www.cbic.gov.in

Chairman's Desk Taxpayer Assistance Departmental Officers Swachhata Action Plan Indian AEO Programme Public Information Stakeholder Consultation Legal Affairs AAR/ D.G. Audit

Citizen's Corner
Improving Ease of Doing Business
Performance Indicators
ROSL: Rebate of State Levies (ROSL) Scheme
Important! Weekly Development Report
Related Sites
Customs Traveller Guide & Mobile App
Citizen Charter
Dwell Time

Highlights
12th Joint Group of Customs Meeting between India & Bangladesh

Useful Links
Customs Duty Calculator
GST Application
ICEGATE Application
ACES Application
Login to Antarang
NACEN - e learning Portal
सहायता (हिन्दी)

- Trade Guide on Imports를 클릭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 Customs
Department of Revenue, Ministry of Finance, Government of India

INDIAN CUSTOMS EDI SYSTEM
I4C (Indian Customs Compendium on Codes & Compliance)

Home
Feedback
EDI-Locations
Non-EDI-Locations
Exit

Trade Guide on Imports **Trade Guide on Exports** **CODES** **GSTIN Enquiry**

Information

* GSTIN Enquiry
*Features
(a) Option provided to search GSTIN if available in ICES Application
Take mouse on text to Stop for reading

Number of Visitors: 4944448

- HS CODE를 입력하고, Country of Origin을 Korea, Republic of로 선택.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 Customs

Department of Revenue, Ministry of Finance, Government of India

INDIAN CUSTOMS EDI SYSTEM Trade Guide on Imports

Provide Tariff head and/or Description and/or Country of Origin

CTH	Description
04011000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Country of Origin	KOREA, REPUBLIC OF ▼
<input type="button" value="Search"/> <input type="button" value="Reset"/>	

You can enter...

- CTH only (Min 2 digit Max 8), Description only (Max 30 Character)
- CTH and Description
- Country of Origin is optional (for preferential duty or Antidumping duty)

- 자신의 품목에 해당하는 HS CODE를 선택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 Customs

Department of Revenue, Ministry of Finance, Government of India

Description and Tariff head details [Select your specific Tariff head] ITC(HS)= 04011000 Country Code=KR

Tariff Head	Description of Tariff
0401	MILK AND CREAM, NOT CONCENTRATED NOR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04011000	Of a fat content, by weight, not exceeding 1%
04012000	Of a fat content, by weight, exceeding 1% but not exceeding 6%
040140	of a fat content, by weight
04014000	Of a fat content, by weight, exceeding 6% but not exceeding 10%
040150	of a fact content
04015000	Of a fat content, by weight, exceeding 10%

○ 관세율 확인

Customs Tariff Head (44113000) Country of Origin: KR		DESCRIPTION FOR CTR : MILK AND CREAM, NOT CONCENTRATED NOR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OF a fat content, by weight, not exceeding 1%						
Customs Duties	Rate of Duty (Tariff) %	Spec. Duty	Unit	Notification -S/no	Rate of Duty (Effective) %	Spec. Duty	Unit	Duty Amount
Basic Customs Duty	30			Select Exemption Note. (if any ▼)	30			30000
Additional Duty Of customs	0			Select Exemption Note. (if any ▼)	0			0
Other Duties								
Social Welfare Surcharge	10			Select Exemption Note. (if any ▼)	10			3000
Additional CVD	0			Select Exemption Note. (if any ▼)	0			0
Antidumping Duty								0
Tariff Duty								0
Safeguard Duty								0
Countervailing Duty	0							0
IGST Duty								
IGST Levy	5			001/2017-17 Select Exemption Note. (if any ▼)	5			6650
Compensation Cess	0			Select Exemption Note. (if any ▼)	0			0
Duty Calculator								
Total Duty	39.65				39.65			39650
Simple calculation for Assessable value Rs. 100000	39650			Enter your Assessable value and press Enter	39650			Enter Qty if Applicable
Enter your Assessable value in INR				100000	39650			100
								-> Show Duty Breakdown
IGST Duty Calculations :	Intending Safeguard/Tariff Duty are not considered for IGST Duty calculation. For IGST Duty, these duties may be added if applicable							
Compulsory compliance Requirements (CCRs)	MILK/LIVE STOCK PRODUCTS SUBJECT TO BARRIERY IMPORT PERMIT & NOC OF ANIMAL HEALTH/DAIRY AUTHORITY REQUIRE TEST REPORT NOC BY FSSAI/ING. RELATED CONDITIONS & SHELF LIFE REQUIRE CONDITION OF HOLD, PHYSICAL APPEARANCE & LABELING REQUIREMENTS * IMPORT OF MILK AND MILK BASED PRODUCTS INCLUDING CHOCOLATES AND CHOCOLATE PRODUCTS AND CANDIES/CONFECTIONERIES/FOOD PREPARATIONS WITH MILK OR MILK SOLIDS AS AN INGREDIENT FROM CHINA PROHIBITED TILL 22/10/19 OR FURTHER EXTENSION IF ANY* DGFT MTF 14/15-20 DT 22.04.15;-MTC- HS CODE 3 4 1 TO CH-4 & BEN NOTE 7 OF POLICY *FOOD SAFETY & STANDARDS ACT 2016 & CECR CIR 311 & PARA 2.1 OF 38/14 * DGFT MTF 10/15-20 DT 22.06.17							
SWIFT PCA Filing	PGA Cd	PGA Name	Info Cd	Info Desc	QFR Cd	QFR Desc	REQ	Man Opt
	AQCS	Animal Quarantine Insps. Service	PNM	Product Name	COM	Common Name	Text	Mandatory
	AQCS	Animal Quarantine Insps. Service	CHR	Item Characteristics	BRO	Breed	Text	Optional
	AQCS	Animal Quarantine Insps. Service	CHR	Item Characteristics	CLR	Colour	Text	Optional
	AQCS	Animal Quarantine Insps. Service	CHR	Item Characteristics	SEX	Sex	Code	Optional
	AQCS	Animal Quarantine Insps. Service	CTG	Item Category	GRA	Grade of the Product	Code	Optional
	AQCS	Animal Quarantine Insps. Service	IDT	Item Identification	MIC	Microchips numbers inserted into animals for identification purposes	Text	Optional
	AQCS	Animal Quarantine Insps. Service	IDT	Item Identification	PAS	Animal Passport Number	Text	Optional
	AQCS	Animal Quarantine Insps. Service	PNM	Product Name	PEI	Pet Name	Text	Optional
	AQCS	Animal Quarantine Insps. Service	PNM	Product Name	SCI	Scientific Name	Text	Optional
	FSSAI	Foods Safety & Standards Authority	CHR	Item Characteristics	STC	Storage Condition	Code	Mandatory
	FSSAI	Foods Safety & Standards Authority	CTG	Item Category	FSP	Foods & Supplement Propriety Status	Code	Mandatory
	FSSAI	Foods Safety & Standards Authority	CHR	Item Characteristics	STT	Storage Temperature	UQC	Optional
	FSSAI	Foods Safety & Standards Authority	CTG	Item Category	GRA	Grade of the Product	Code	Optional
	FSSAI	Foods Safety & Standards Authority	CTG	Item Category	IFC	Indian Food Code	Text	Optional
	FSSAI	Foods Safety & Standards Authority	IDT	Item Identification	GTI	Global Trade Item Number	Text	Optional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 한-인도 CEPA는 대한민국과 인도 간에 체결한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임. 상품 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함
- 한-인도 CEPA 양허 유형 종류
 - 한국과 인도가 체결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FTA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 협정임 양허 유형의 종류로 E-0, E-5, E-8, RED, SEN, EXC가 있으며, 적용되는 유형에 따라 품목들의 관세율이 상이함
 - 한-인도 CEPA 협정문을 통해 HS CODE별 CEPA 양허유형 확인가능¹²⁾

12) 한-인도 CEPA 협정문 : <http://www.tradenavi.or.kr/CmsWeb/tools/board/downloadAttachFile.req?fileId=F10000000398>

〈CEPA 양허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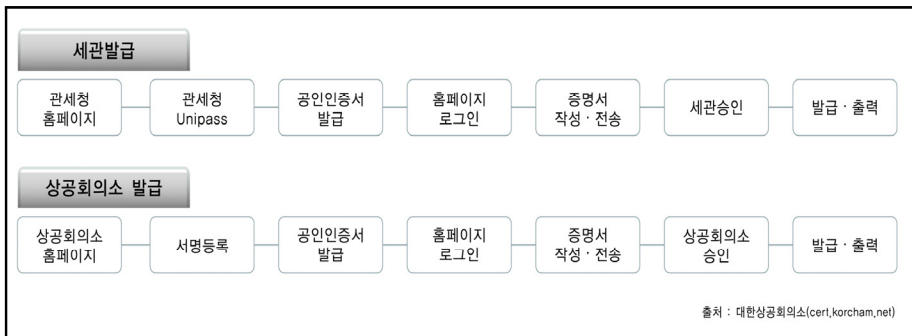
양허유형	설명
E-0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며, 협정 발효일에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됨
E-5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4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됨
E-8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7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됨
RED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기준세율로부터 1%부터 5% 범위 내로 인하되어, 이행 7년차 1월 1일에는 그 상품에 대하여 1%부터 5% 범위 내의 관세가 적용됨
SEN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기준세율의 50%까지 인하되어, 이행 7년차 1월 1일에는 그 상품에 대하여 기준세율의 50%의 관세가 적용됨
EXC	인도에 대해서는,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기준 세율의 50%까지 인하되어, 이행 9년차 1월 1일에는 그 상품에 대하여 기준 세율의 50%의 관세가 적용됨

CEPA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 발급 기관 :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 신청자
 - 생산자 또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를 포함)
- 신청서류
 -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다음 서류를 첨부해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 ✓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또는 이를 갈음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음
 - ✓ 영수증, 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계약상대국으로 수출했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우편물, 위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 한함)

- ✓ 송장 또는 거래계약서
- ✓ 원산지확인서(최종 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 ✓ 원산지소명서(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그 수출자를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원산지증명서의 효력
 -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당사국에서 발급한 날부터 12개월간 효력이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대우를 신청할 수 있음
 - C/O가 아닌 CEPA C/O를 발급받아야 함
- 원산지증명서의 면제
 - 개인 간에 송부된 소포 또는 여행자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상품

〈원산지증명서 온라인 발급 절차〉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등록을 하고 상공회의소의 사이트¹³⁾에서 신청서를 입력 하면 대개 1시간 내에 발급받을 수 있음

13)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 서비스 센터(<http://cert.korcham.net>)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⁸⁾

Certificate of Origin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Original (Duplicate/Triplicate/Quadruplicate)

1. Exporter (name, address, country, e-mail address, telephone number, fax number)		Reference No.:		
2. Producer (name, address, country) (optional)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 align="center">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p> <p align="center">(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p>		
3. Importer (name, address, country) (optional)		Issued in _____(Country) _____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optional)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5. For Official Use		
6. Remarks				
7. HS Code (6 digit)	8.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9. Gross weight and value (FOB)	10. Origin criterion	11. Number and date of Invoices
<p>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p> <p>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p> <p align="center">..... (Country) ...</p> <p>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p> <p align="center">..... (Importing Country).....</p> <p align="center">.....</p> <p align="center">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p>		<p>13. Certification</p> <p>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p> <p align="center">.....</p> <p align="center">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issuing authority</p>		
14. <input type="checkbox"/> Third country invoicing(name, address, country)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모든 물품은 각 해당 물품별로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나. 인도와의 협정 제3.15조에 따른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다. 인도와의 협정 제3장의 원산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 주소, 수출국,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3. 제2란에는 생산자의 성명, 주소, 수출국을 적습니다.
4. 제3란에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 수입국을 적습니다.
5. 제4란에는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륙항 등 운송수단 및 운송 경로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6. 제5란에는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 표시한 후 서명합니다.
7. 제6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소급발급한 경우에는 "소급발급", 재발급한 경우에는 "진정등본" 표시를 합니다.
8. 제7란에는 품목번호는 수입당사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9. 제8란의 품명은 그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습니다.
10. 제9란에는 해당 물품의 총중량 및 본선인도가격을 적습니다.
11. 제10란에는 수출자(제조사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WO
나. 인도와의 협정 제3.4제1항제나호를 충족하는 물품	CTSH + RVC 35%
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1)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3)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4) 세번변경기준과 역내부가가치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 (5)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 (6) 기타	CC, CTH, CTSH RVC % CC, CTH, CTSH 또는 RVC % CC, CTH, CTSH + RVC % SP Others
라. 인도와의 협정 3.14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OP

12. 제11란에는 송장의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를 적습니다.
13. 제12란에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수출국, 수입국, 신청일자, 장소를 적은 후 서명합니다.
14. 제13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를 적고, 서명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15. 제14란에는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제3국 송품장(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주소 및 국가명을 적습니다.

1. 관리 · 법률체계

관리 · 법률체계¹⁴⁾

- 적합성 평가
 - 품질관리위원회(QCI; Quality Council of India)
 - 인증기관국가인정위원회(NABCB; National Accreditation Board for Certification Bodies)
 - 축산·농수산업부(Department of Animal Husbandry, Dairying and Fisheries)
 - 동물검역 및 인증센터(Animal Quarantine and Certification Service)
 - Ministry of Agriculture & Farmers' Welfare

2. 품목별 검역절차

축산 제품 검역 대상 및 유의사항

- The Livestock Importation Act, 1898
 - 인도 농축수산업부에서 2014년 10월 “live-stock products”에 포함되는 제품군을 확장하는 새로운 공고문을 발표함
 - “live-stock products”에 포함되는 제품은 총 30가지 항목임¹⁵⁾

- (i) 가금류, 양, 염소 및 돼지의 신선육냉장육 및 냉동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육류 제품
- (ii) 가금류, 양, 염소 및 돼지의 조직 또는 기관
- (iii) 계란과 계란 분말
- (iv) 우유 및 유제품
- (v) 소, 양 및 두피 배아, 난자 또는 정액
- (vi) 동물 기원의 애완동물 사료
- (vii) 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을 포함한 모든 수생 동물의 난과 씨앗
- (viii) 돼지의 털과 머리카락 돼지 또는 멧돼지 강모 및 털 야크 머리 고래 머리뼈 및 뼈 제품
- (ix) 생가죽 및 새의 다른 부분으로서 깃털 또는 깃털부분 (가장자리를 자르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4) <http://www.cbic.gov.in/htdocs-cbec/customs/cs-acts-botm>, Foreign Trade(Development & Regulation) Act, 1992 , The Livestock Importation Act, 1898 참조

15) Import of livestock and livestock products : <https://bit.ly/2pROCJT>

- (x) 소의 원피 및 가죽(버팔로 포함) 또는 말, 동물, 양 또는 새끼 양고기 또는 양모로 쪼개지 아니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양고기, 양피, 염소, 돼지의 가죽 건조, 석회, 절인 것 또는 기타 보존 처리를 하고 있으나 무두질, 양피지 또는 추가 가공된 양고기, 양피, 염소, 돼지의 가죽
- (xi) 모피 (머리, 꼬리, 발 및 기타 조각 또는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
- (xii) 배드민턴 셔틀콕, 새털 날개로 만든 분말
- (xiii) 혈청 소, 염소, 양, 말, 가금류, 돼지, 토끼, 생쥐, 쥐, 개 및 고양이와 혈청
- (xiv) 소 및 양의 우유 및 유제품을 함유한 사료 및 어류 사료, 육류 및 육류 제품, 가금류의 조직 및 기관, 돼지, 양, 염소, 생선 및 생선 제품
- (xv) 말 털, 머리
- (xvi) 산호 및 이와 유사한 재료
- (xvii) 의약품(소 알부민 및 시험 관내 적용을 위해 혈액 또는 혈청 분획 함유한 제품)
- (xviii) 젤라틴(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의 젤라틴 포함)
- (xix) 머리카락이 없는 소(버팔로를 포함한다) 또는 말 동물의 무두질 또는 커스트 가죽과 껍질(또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xx) 양털이 없는 무두질 또는 커스트 가죽 또는 가죽
- (xxi) 가죽
- (xxii) Chamois 가죽, 특허 가죽, 적층 가죽, 금속 피혁
- (xxiii) 가죽 또는 가죽 섬유에 기초를 가진 가죽 제품
- (xxiv) 무두질 또는 모피
- (xxv) 양털로 짠 것 또는 빗질을 하지 않은 동물의 머리,
- (xxvi) 동물로 만든 트렁크, 여행 가방, 케이스, 가방, 향주머니, 파우치, 핸드백 등.
- (xxvii) 가죽 제품 및 가죽 제품의 의류 및 의복용 제품
- (xxviii) 기타의 가죽 제품 또는 합성 피혁 (근, 가죽, 덮개) 제품, 의류, 의류 부속품 및 기타 모피 제품
- (xxix) 금박의 피부, 방광, 힘줄로 만든 의복 제품, 의류용 모피 및 인조 모피 및 그것으로 만든 제품
- (xxx) 양모 또는 벌금 또는 굵은 동물의 모발로 만든 제품

- (i)에서 (xiv)까지의 항목에 해당되는 제품들을 인도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축산·농수산업부에서 발급한 위생 수입 허가(SIP, Sanitary Import Permit)¹⁶⁾를 받아야 하며, 검역 절차를 진행해야 함
- (xv)에서 (xxiv)까지 열거된 제품들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제품 검수 후에, 농축수산업부에서 정식으로 허가한 수의 공무원 또는 델리, 첸나이, 뭄바이, 콜카타에 위치한 검역센터에서 발급한 NOC를 받아야 함
- (XXV)에서 (XXX)까지 해당하는 제품들은 위생 검역관의 SIP나 NOC가 따로 필요하지 않음
- SIP (Sanitary Import Permit)
 - 육로, 항공 또는 해상으로 수입되는 모든 검역 대상의 화물들은 양식 A(개인 소비목적) 또는 양식 B(판매목적) 중 어느 것이든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작성하여, 3부를 농축수산업부, 농업부, 무역부의 상무관에게 제출해야 함

16) SIP는 라이선스가 아닌 위생 조건을 만족한다는 증명서이며, 유효기간은 제품 특성에 따라 6개월에서 1년이며, 다수의 수화물에 사용될 수 있음

- 위생 수입허가는 면허가 아니라 인도의 위생 요건을 증명하는 증명서임¹⁷⁾
- 철저한 수입 위험 분석(Import Risk Analysis) 후 수입 화물이 해당 국가의 동물 및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관계 당국이 만족하는 경우 농축수산업부에서 위생 수입 허가를 발급함
- Import risk analysis 과정은 총 3단계로 나누어짐
 - ✓ Risk Context : 위험의 기준과 범위를 결정
 - ✓ Risk Assessment : 수입제품의 위험 등급 결정
 - ✓ Risk Management : 위험을 없애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및 계획 작성
- 수입 위험 분석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위해성 분석의 과학적 원칙을 토대로 해당 부서의 관계자가 수행하며, 위험 분석은 수출국의 특정 제품 및 질병 상황과 관련하여 수행됨
- 수입 위험 분석의 결과가 특정 제품이 특정 질병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그 국가의 인간, 동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SIP 발급이 거절됨
- SIP는 선적 전 증명서 및 격리 검사를 포함하여 수입화물에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특정 조건을 규정해야 함
- SIP는 검역 검사, 샘플 채취 및 시험과 관련하여 수입 후 요구 사항을 명시해야 함
- 수입 검역 절차
 - 검역대상의 축산식품들은 동물 검역 및 인증 사무실 (Animal Quarantine and Certification Services Station)이 있는 델리, 뭄바이, 콜카타, 첸나이, 방갈로르 및 하이데라바드에 위치한 항구 또는 공항을 통해 인도로 수입되어야 함
 - ✓ 물고기, 갑각류, 연체동물을 포함한 모든 수산물의 달걀, 종자 및 수산물의 수입은 Visakhapatnam 및 Kochi에 위치한 항구 또는 공항을 통하여 수입 허용
 - ✓ 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종자 재료를 제외하는 경우, 소비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패하기 쉬운 어류 항목의 수입은, 서벵골 북쪽 Parrapanas의 Petrapole 육로로의 수입 허용
 - 도착 항 혹은 공항에 도착하면 축산식품들은 동물 검역 및 인증 사무실의 장교 또는 농축수산업부가 정식으로 허가한 수의사의 검사를 받아야 함
 - 위생수입허가서에 명시된 특정 조건 및 농축수산업부가 수시로 발행하는 일반 지침을 준수해야 함

17) 열처리된 우유 및 유제품, 수산물, 가금류 육류 제품, 돼지, 양 및 염소, 애완동물 사료, 가공 돼지고기 같은 제품에 대해서 위생 수입 허가는 1년 동안 유효

- 검사 및 시험 후 필요에 따라 해당 검역 기관 또는 수의 당국은 축산식품의 인도 수입을 허가하거나 공공의 이익이 필요한 경우 파기 명령 또는 원산지 국으로의 반납을 명령할 수 있음
- 축산식품과 관련하여 소독이나 다른 취급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수입업자는 농축수산업부가 인증한 대행사를 통해 자신의 비용으로 적법하게 허가된 검역사 또는 수의사의 감독 하에 소독 또는 다른 방안을 준비해야 함
- 수입자의 책임은
 - √ 축산식품을 동물 검역 및 인증 사무실 또는 검사, 소독 또는 검역관 혹은 수의사가 지시한 치료 또는 테스트 장소로 가져오는 것
 - √ 검역소 내에서 제품을 개봉하고, 재포장하고, 봉인하는 것
 - √ 검역 또는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 및 치료 또는 검사 후 샘플을 제거하는 것
- 중앙 정부는 공공의 이익으로 모든 생존 제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허가에 관한 조건을 완화할 수 있음

3. 식물검역

□ 대상 품목

- 인도로 수출하는 모든 식품들이 다 식물 검역 대상은 아니지만 특정 품목은 식물검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인도 Ministry of Agriculture & Farmers' Welfare에서 지정한 PLANT QUARANTINE(REGULATION OF IMPORT INTO INDIA) ORDER, 2003에 명시되어 있는 제품들은 반드시 식물 검역을 받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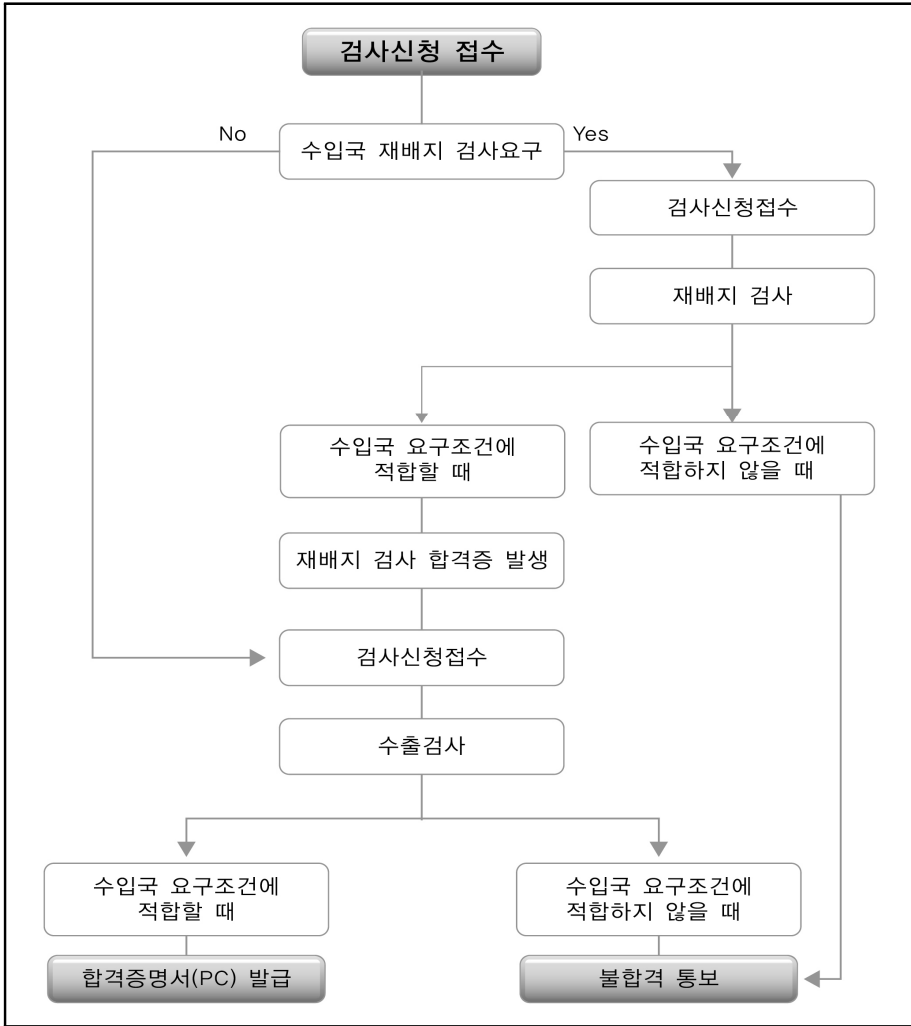
□ 사전 준비 사항

- 식물검역증(Phytosanitary Certificate) : 원산지국 식물검역소에서 발급
- Post Entry Quarantine¹⁸⁾
- Pest Risk Analysis¹⁹⁾
- Import permit : Schedule-X에 명시된 권위 당국 담당자가 발급

18) Schedule-V, Schedule-VI에서 PEQ가 필요하다고 명시한 제품들에 한함

19) 단, Schedule-V, Schedule-VI, Schedule-VII명시된 제품들은 제외

〈식물검역증 발급〉



○ Post Entry Quarantine 발급절차

- 수입업자는 2003년 식물 검역(인도 수입 규제) 제4장의 규정에 따라 PEQ를 필요로 하는 식물 및 식물 재료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PPA(Plant Protection Adviser)가 정한 지침에 따라, Schedule-XI Part-I and Part-II²⁰)에 명시된 검사당국(IA, Inspection Authority)에 의해 정식으로 인증되고 허가된 isolated

field/nursery/glass house/screen house/poly house 등과 같은 PEQ 검역 시설을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해야 함

- 수입업자는 PEQ 검역시설 승인 인증서 발급을 위해 PQ Form-18²¹⁾을 검사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검사당국이 충분한 검수 및 확인 작업을 거친 후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면, 검사당국은 PEQ 검역시설 승인 인증서를 PQ Form-19²²⁾로 발행해야 함
- 식물 보호 검역 및 저장 담당국(Directorate of Plant Protection Quarantine and Storage, DPPQ & S)은 검역시설 승인 인증서 발급을 위해 검사당국과 공동으로 PEQ 검역시설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게 됨
- 수화물이 도착했을 때, 수입업자는 PQ Form-20동의서²³⁾와 함께 수입 항 혹은 항구에 위치한 식물검역 당국의 책임자에게 PQ Form-19를 제출해야 함
- 수입 지역 식물 검역소 담당자는 수화물 검사를 완료하고 이상이 없으면, 담당자는 검역시설 승인 인증서에 명시된 조건으로 수입업자가 설치한 PEQ 검역시설에 수입 식물을 생산하도록 임시 허가를 부여함. PQ명령에 명시된 기간 동안 PEQ 검역시설에서 식물을 재배할 수 있음
- 입국 항 또는 공항의 식물 검역국 책임자는 임시 허가를 받은 제품에 한해서, 수입자의 검역시설 지역을 관할하는 검사당국에 그러한 임시허가 부여 사실을 통보해야 함
- 수화물 또는 그 일부는 PPA 또는 PPA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Final Clearance를 받기 전까지는 기부/배포/판매 등의 방식으로 지정된 PEQ 시설에서 이동되어서는 안 됨
- PEQ시설의 검사는 DPPQS의 지명된 임원과 검사당국이 함께 빈번한 간격으로 수행되어야함. 검사의 빈도는 최소 2회 검사가 요구되는 식물 제품의 재배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그 중 1회 검사는 해당 식물의 PEQ 기간이 끝날 때, PPA의 지침에 따라, 모든 해충을 탐지하고 해충을 포획하기 위해 필요한 식물 위생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 지정된 기간 동안 PEQ 시설 내의 식물이 해충 및 질병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지면 검사 당국은

20) <http://plantquarantineindia.nic.in/PQISPub/docfiles/Schedule-XI.htm>

21) <http://plantquarantineindia.nic.in/PQISPub/docfiles/PQForm-18.htm>

22) <http://plantquarantineindia.nic.in/PQISPub/docfiles/PQForm-19.htm>

23) <http://plantquarantineindia.nic.in/PQISPub/docfiles/PQForm-20.htm>

- √ 병해충 또는 질병이 외래종인 경우 PEQ에 식물 개체 전체 또는 일부의 영향을 받은 수화물의 파기를 명령하거나
- √ 해충이나 질병이 외래종이 아니면, 필요한 정도까지 치료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수입업자에게 권고해야 하며, 치료적 조치가 성공적으로 수행된 후에만 PEQ에서 영향을 받는 제품이 PEQ 검역시설 밖으로 내보내지는 것이 허가될 수 있음. 그렇지 않으면, 식물은 파기해야 함
- 검사 기관이 식물종의 파괴를 명령한 경우, 수입업자는 검사당국이 지시하는 방식으로 감독 하에 파기해야 함
- 최종 검사가 끝나면 검사 당국은 관련 PQ 검역소의 책임자에게 직접 통보 하에, 날인된 PEQ 검사 보고서 사본을 PPA에게 전달해야 함
- PEQ 검역시설내의 수화물 방출에 관한 최종 결정은 검사 보고서를 고려하여 PPA 또는 그가 승인한 임원에 의해서만 부여됨
- 각 검사 방문에 대한 적절한 기록은 검사당국에 의해 보관되어야 함
- 수입업자는 Schedule-IX²⁴⁾에 명시된 PEQ 시설에서 식물 검역을 위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 PRA(Pest Risk Analysis)
 - Schedule-V, Schedule-VI, Schedule-VII에 명시된 제품들 이외에 모든 제품들은 PRA를 신청해야 함
 - 수입업자 혹은 수출국의 National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는 반드시 PQ 23²⁵⁾ 신청서와 함께 PQ 24²⁶⁾를 PPA에 제출해야 함
 - Technical Information은 반드시 수출국의 NPPO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최근 정보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함
 - PRA 프로세스
 - √ 상품과 관련된 해충을 검역 해충으로 분류
 - √ 식품 도입 가능성 평가
 - √ 식품 도입 및 확산의 경제적 및 환경적 영향에 대한 평가
 - √ 식품 도입에 대한 리스크 감소 조치의 명시
 - √ 선적 전 검사를 수행하고 수확 후 처리 기술을 평가하고 검역 검사 및 인증 시설을 평가하기 위해 식물 위생 전문가가 수출국에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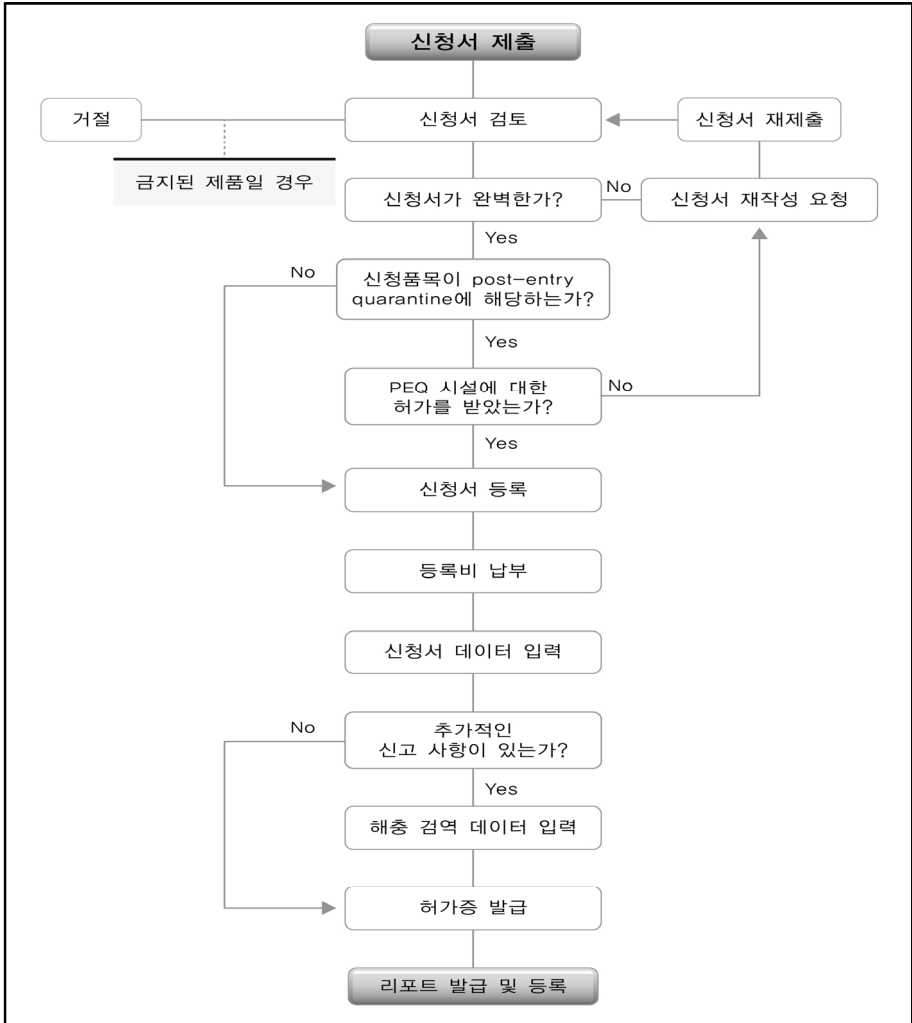
24) <http://plantquarantineindia.nic.in/PQISPub/pdf/Schedule-IX-ason-4th-Oct2007.pdf>

25) <http://plantquarantineindia.nic.in/PQISPub/pdf/Appendix-9.pdf>

26) <http://plantquarantineindia.nic.in/pqispub/pdf/pqform24.pdf>

- 수입화물에서 검역 해충을 발견되는 경우, 사전 PRA가 진행되고 위험 완화 조치가 평가될 때까지 해당 수입화물의 추가 수입이 정지됨
- 2018년 6월 공지된 S.O.2286(E)에 따르면, 상품이 검역 해충(가공된 품목)으로 감염되지 않는 지점까지 식물 검역 위험이 가장 적은 상품에는 PRA가 필요하지 않음

〈Import Permit 발급〉



-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
 - 수입업자 혹은 그의 대리인이 PQ Form-01²⁷⁾을 반드시 수입 통관 7일 전에 Schedule-X에 명시된 수입하려는 항구, 공항의 권위 당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함
 - 담당 공무원의 서류 검토
 - 이상이 없으면, Post-Entry Quarantine 조건에 속하는지 확인
 - 서류 등록 및 150루피의 신청비를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Co-operation의 회계담당관에게 지불
 - 이후 신청서 서류에 있는 정보들을 시스템에 기록. 담당 공무원이 추가적인 정보 요청 시, 추가 정보 제출
 - 모든 정보가 기입되면, PQ-FORM-03²⁸⁾에 import Permit이 발급됨
 - 발행된 수입허가는 발행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함
 - 적절한 이유가 있을 경우, 만료기간 이전에 12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음
 - 모든 수화물에 대해, 수입업자, 수출업자 그리고 원산지가 동일할 경우, 여러 항구에서 import permit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분선적에도 사용할 수 있음.
 - 발급된 수입허가서는 양도가 불가능하며, 입국지점을 변경하는 것 외에 수입 허가서 수정은 불가능함
- 재배 및 연구 목적을 위한 수입
 - Schedule-V, Schedule-VI, Schedule-XII에 명시된 제품들에 한해서만 IMPORT PERMIT이 발급됨
 - PQ FORM-08²⁹⁾ 양식에 신청서 2부를 작성하고, The Director, National Bureau of Plant Genetic Resources(NBPGR)에게 제출해야 함
- 살아있는 곤충, 조류, 버섯, 생물 조정제 및 미생물 양식 수입
 - 최소 수입 1개월 전에, 200루피와 PQ FORM-12³⁰⁾ 2부를 PPA에 제출해야 함
 - PPA가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PQ FORM 13³¹⁾을 발급함
- 토양 및 이탄(이끼) 등의 수입
 - 원예, 미생물 및 광물학 조사를 위해 토양, 흙, 점토, 이탄, 이끼류 및 유사 물질의 수입을 위해서 최소 수입 1개월 전에, 200루피와 PQ FORM-6³²⁾ 2부를 PPA에 제출해야 함

27) <http://plantquarantineindia.nic.in/pqispub/pdf/PQ%20Form%2001.pdf>

28) <http://plantquarantineindia.nic.in/pqispub/docfiles/PQForm-03.htm>

29) <http://plantquarantineindia.nic.in/PQISPub/docfiles/PQForm-08.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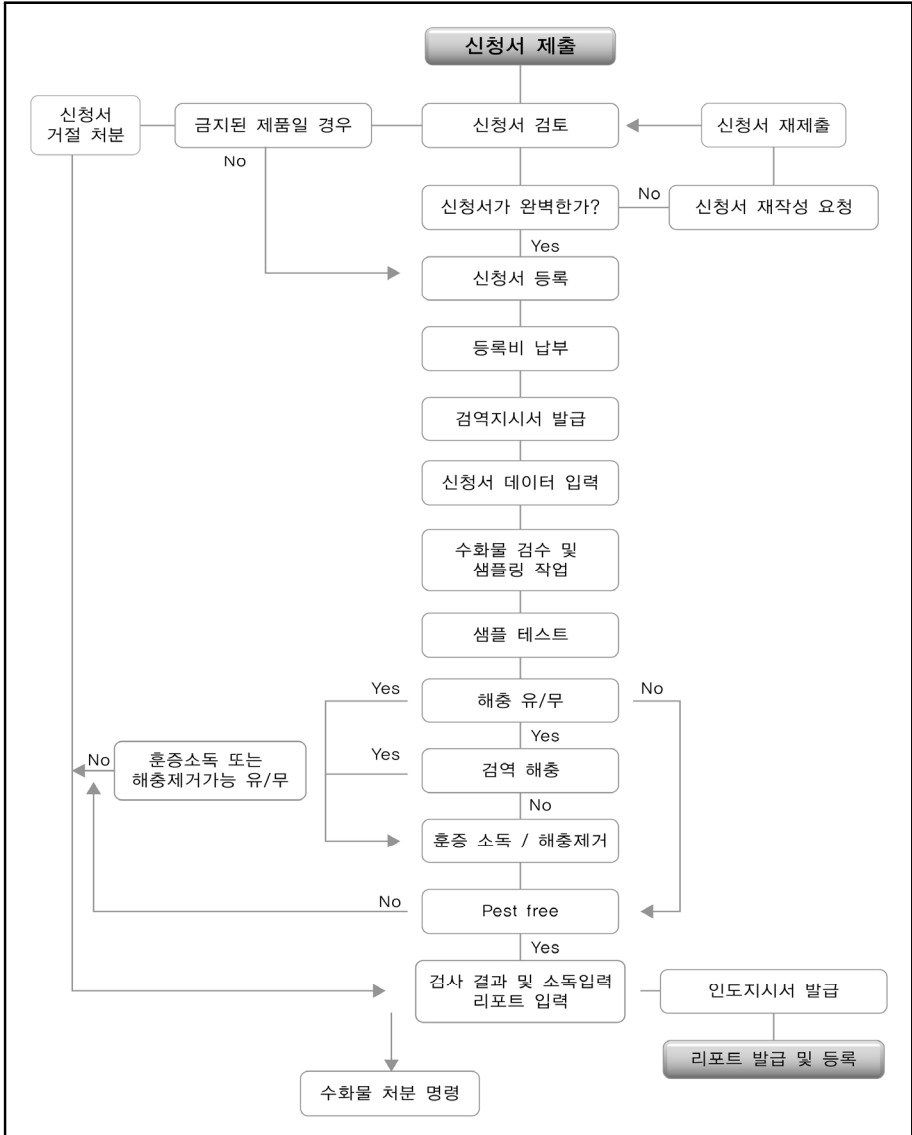
30) PQ FORM-12 : <http://plantquarantineindia.nic.in/PQISPub/docfiles/PQForm-12.htm>

31) PQ FORM-13 : <http://plantquarantineindia.nic.in/PQISPub/docfiles/PQForm-13.htm>

32) PQ FORM-06 : <http://plantquarantineindia.nic.in/PQISPub/docfiles/PQForm-06.htm>

- PPA가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PQ FORM 7³³⁾을 발급함

〈수입 검역 절차〉



33) PQ FORM-07 : <http://plantquarantineindia.nic.in/PQISPub/docfiles/PQForm-07.htm>

- 수입업자는 PLANT QUARANTINE(REGULATION OF IMPORT INTO INDIA) ORDER)의 Schedule-I³⁴⁾에 명시한 항구, 공항 그리고 ICD(Inland Container Depot)외에 통관을 하지 못함
- 수입업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제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식물검역소에 즉시 아래의 서류와 함께 PQ Form-15³⁵⁾를 제출해야 함. 단, 제품이 부패하기 쉬운 화물일 경우, 도착 이전에 서류를 제출해야 함
 - ✓ Import permit original(Importer's copy)
 - ✓ 수출국에서 발급받은 식물위생증명서
 - ✓ Customs bill of entry(duly endorsed)
 - ✓ shipping/airway bill
 - ✓ Invoice and Packing list
 - ✓ 훈증인증서(필요 시)
 - ✓ Certificate of Origin
 - ✓ Bill of lading
- 신청서 수령 후, 식물검역소 담당자는 신청서를 검토하며, 서류가 이상이 없을 경우, Schedule - IX (A), (B)에 규정된 요금에 따라 수입업자는 수수료를 검역소에 지불해야 함
- 수입업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지정된 검역 명령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이 정한 장소, 날짜 및 시간에 수입화물의 검사/샘플링을 준비해야 함
- 수입업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검사를 수행하는 동안 검사관에 협조해야 함. 검사를 위해 선임된 검역소검사관은 자세한 실험실 테스트를 위해 적절한 크기의 표본을 채취해야 함. 다만, 신선식품의 경우, 샘플테스트를 진행하지 않고, visual inspection만을 진행함
- 살아있는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수입업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검역관의 감독 하에 자신의 비용으로 승인된 해충 방제 요원이 수화물의 훈증 소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수입업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Schedule-IX(B)에 규정된 요금에 따라 훈증 소독 및 감독 비용 송금과 함께 undertaking 서류를 제출해야 함

34) Schedule-I : <http://plantquarantineindia.nic.in/PQISPub/pdf/Schedule-I-ason-4th-Oct2007.pdf>

35) PQ FORM-15 : <http://plantquarantineindia.nic.in/PQISPub/docfiles/PQForm-15.htm>

- 검사 위탁 물품에 수출국의 병해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PQ form-16이 세관으로 발급됨. 그러나 살아있는 병해충이 발견된 수입화물의 경우에는 훈증 및 재검사 후에만 PQ form-16³⁶⁾, NOC를 받을 수 있음
- PQ Form-17³⁷⁾은 검역 후, 병해충에 감염되거나 병해충으로 들끓는 것으로 확인된 수하물 또는 PQ 규정에 위배된 수하물과 관련하여 수입자의 비용으로 파기되는 수하물에 발급
- 신선 식품의 경우 빨리 상하기 때문에, 제품 수입 후 PQ 기관으로부터 수입 당일 Provisional NOC가 발급되며, 해당 제품을 자신의 시설이나 공장으로 운송하여 보관할 수 있음

□ 통관 및 검역 유의사항

- 인도 통관, 사전 준비가 관건
 - 인도의 통관은 수입 통관 및 검역을 위한 사전 준비 절차가 중요함
 -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할 시 서류의 기재 오류나 서류 상호간 불일치를 수정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이로 인해 통관 절차가 2~3주씩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 철저한 서류 작성이 필수적임
 - 또한 인도로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포장명세서(P/L)와 상업송장(C/I)을 컨테이너별로 철저히 작성해야 함. 인도 세관은 실물 검사결과서류와 화물 불일치할 경우 통관이 불가능함
 - 특히 인도는 도로와 항만 등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고 운송수단도 노후하기 때문에 내륙운송 과정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내륙 운송보험에 가입해야 함

36) PQ Form 16 : <http://plantquarantineindia.nic.in/pqispub/docfiles/PQForm-16.htm>

37) PQ Form 17 : <http://plantquarantineindia.nic.in/pqispub/docfiles/PQForm-17.htm>

1. 개요

- 인도 내에서 식품 수입부터 시작하여 식품에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은 FSSAI 수입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야 함
 -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창고업자
 - 도매업자
 - 소매업자
 - 유통업자
 - 공급업자
 - 출장 요식업자
 - 호텔 식당 운영업자
 - 식품 운송업자
 - 식품 매장 운영업자
-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인도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이미 인도에 FSSAI 라이선스를 보유한 인도 현지 업체들에게 제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따로 FSSAI 라이선스를 신청할 필요가 없음
 - 다만, 인도에 법인을 설립하여 직접 인도 내에서 식품 사업을 영위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FSSAI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함
- FSSAI 라이선스는 사업체당 발급되는 것이며, 식품에 따라 발급되지 않음. FSSAI 라이선스를 보유한 사업체는 사업 영역에 따라 어떤 식품이든 취급할 수 있음
- 다만, FSS Rule 2011에 표준화되지 않은 식품(Proprietary Food)에 한해 원산지 국가의 안전 기준을 포함한 분석증명서(Complete Certificate of Analysis)를 제출해야 함. 표준화되지 않은 식품은 아래와 같음
 - 신소재 식품, 신소재성분 또는 신소재 과학기술을 사용하여 가공한 식품
 - 새로운 첨가물
 - 효소를 포함한 새로운 가공 보조제
 - 미생물, 박테리아, 효모, 진균으로 구성되거나 분리된 식품 및 식품 성분의 제품

2. 식품 사업 라이선스

□ FSSAI 라이선스 발급절차

- 신청서류 (FORM B)와 신청한 식품 사업 분야에 맞게 하기에 명시한 서류들을 선택하여 FSSAI 웹사이트³⁸⁾에 제출해야 함
 - 각 작업영역마다 할당된 크기를 보여주는 제조공장의 청사진
 - 전체 주소 및 연락처 세부 사항이 있는 이사 목록
 - 사용되는 설비의 명칭 및 목록, 수량, 용량 및 마력
 - 사진 I.D 및 정부 기관에서 발급한 주소등록증
 - 제조하고 있는 식품 카테고리 목록
 - 견본 수집, 포장 및 검수를 도와줄 수 있는 제조사가 지명한 수입업자 혹은 유통업자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는 Authority Letter
 - 공인된 보건 연구소에서 식품의 성분으로 사용된 수질 분석보고서
 - 제조시설 소유 증명서(임대 계약/전기요금서 등)
 - 파트너십 회사의 헌법에 대한 증서/진술서/각서 및 정관
 - 협동조합의 경우 Coop Act - 1861/Multi State Coop Act - 2002에 따라 획득한 인증서 사본
 - Re-labellers의 경우 제조업체의 NOC
 -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 계획 또는 인증서 (있는 경우)
 - 우유 및 우유 제품 제조업자의 경우 우유 조달 센터 위치를 포함한 우유 조달처 또는 조달 계획서
 - 리콜 계획서
 -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받은 Non-Objection Certificate(Optional)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 FSSAI에서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면밀히 조사
 - 신청서를 제출한 뒤 15일 내에 FSSAI는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신청서가 불완전한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정보 및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그러한 고지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는 추가 정보 및 서류를 제공. 신청자가 30일의 규정된 시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라이선스 신청이 거부됨

38) FSSAI 사이트(<https://foodlicensing.fssai.gov.in/index.aspx>)

- FSSAI에서 신청서 및 추가로 제공한 정보가 이상이 없으며, FSSAI는 신청자에게 고유의 신청서 번호를 발급
- * FSSAI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NBCC PLACE 라이선스 발급 담당부서³⁹⁾에 찾아가면, 모든 절차 및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해줌
- 제조시설 시찰(Licensing Regulations 2.1.4 (4)에 명시)
 - ID 발행 후 허가 당국은 식품 안전 책임자 또는 그러한 기능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모든 사람 또는 기관에 인도 규정에 따라 인도의 식품 안전 및 표준 기관이 정한 방식으로 해당 시설을 검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 검사관은 시설 시찰 후,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필요한 변경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행
 - 신청자는 FSSAI가 허용한 30일 또는 그 기간 이내에 필요한 변경 조치를 수행해야 함
 - FSSAI에서 최종 실사 보고서를 수령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라이선스 부여 혹은 거절을 통보해야 함
 - 라이선스 발급을 거절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청문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거절 사유는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함
- FSSAI 라이선스 발급
 - FSSAI는 신청자에게 FORM C양식⁴⁰⁾의 라이선스를 발급해야 하며, 신청자는 식품 사업을 영위하는 곳에 면허증 사본을 전시해야 함
 -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되지 않거나 FSSAI로부터 결함을 나타내는 어떤 실사 보고서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청자는 식품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음

□ 라이선스의 유효 기간 및 갱신

- FSS 2011법에 따라,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라이선스는 1년 내지 5년 동안 유효하며, 해당 기간 동안 적용되는 수수료의 송금 및 모든 면허 조건의 준수를 조건으로 발행됨
- 면허증에 명시된 만료일 30일 이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함
- 언급된 기간 내에 갱신이 적용되지 않은 등록 또는 면허는 만료되며 식품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 활동을 중단해야 함

39) 주소 : First Floor, NBCC Place, Bhisham Pitamah Marg, Pragati Vihar, New Delhi, Delhi 110003
연락처 : +91 98894 80290

40) FORM C : <https://bit.ly/2A7XP6R>

- 사업의 종류를 확장하고 싶다면, 라이선스 변경을 신청해야 되며,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라이선스 종류

- 아래 조건에 따라 중앙정부 라이선스 또는 주정부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함
 - 중앙정부 라이선스

Crone : 10,000,000

사업 성격	조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1. 연간 5만 리터의 액상유/하루 또는 2500 MT의 우유 고체를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우유 냉각 장치가 설치된 낙농시설을 보유한 자 2. 식물성 오일 처리 장치 및 용제 추출 공정을 거쳐서 식물성 기름을 생산하는 장치 및 1일 2MT 이상의 용량을 가진 착유기를 보유한 자 3. 1~2에서 명시한 식품을 제외하고, 재라벨링과 재패킹 작업을 포함하여 곡물, 시리얼, 콩류 제품 등 하루에 2MT 이상의 모든 식품 생산의 공정을 진행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을 보유한 자 4. 100% 수출을 위해 식품을 제조하는 자 5. 상업용으로 식품 및 식품첨가제를 수입하는 자 6. FSS 2011법에 제품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안전한 사용 이력이 없는 기술, 또는 공정, 또는 이들의 조합을 통해 식품을 제조하는 자, 또는 그러한 식품을 인도로 처음 수입하는 경우 7. 2개 이상의 주에서 운영되는 식품 사업자
창고업자	1. 창고업(냉동고, CA저장을 제외한) 50,000MT 이상의 저장공간을 보유한 창고업자 2. 창고업(냉동창고) 10,000MT 이상의 저장공간을 보유한 창고업자 3. 창고업(CA저장) 1,000MT 이상의 저장공간을 보유한 창고업자
도매업자	연간 매출액이 30Crone 이상인 도매업자
소매업자	연간 매출액이 20Crone 이상인 소매업자
유통업자	연간 매출액이 20Crone 이상인 소매업자
공급업자	연간 매출액이 20Crone 이상인 공급업자
출장 요식업자	연간 매출액이 20Crone 이상인 출장 요식업자
호텔	5성급 혹은 그 이상의 호텔
식당	연간 매출액이 20Crone 이상인 레스토랑
운송업자	100대의 자동차 혹은 화물기차를 보유하거나, 연간 매출액이 30Crone 이상인 운송업자
매장 운영업자	연간매출액이 20Crone 이상인 매장 운영업자

- 주정부 라이선스

사업 성격	조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루에 501~50,000리터 혹은 연간 2.5MT에서 2,500MT의 우유 고형분을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우유 냉각 장치가 설치된 낙농시설을 보유한 자 연간 매출액이 12랙 이상이며, 하루에 최대 2MT의 식물성 기름을 가공하고 용제 추출 공정을 거쳐 식물성 기름을 생산하는 시설을 보유한 자 재라벨링과 재패킹 작업을 포함하여 곡물, 시리얼, 공류 제품 등 하루에 100KG 또는 100LT에서 2MT이하의 모든 식품 생산의 공정을 진행할 수 있는 자
창고업자	창고업(냉동고, CA저장을 제외한) 50,000MT 이상의 저장공간을 보유한 창고업자 창고업(냉동창고) 10,000MT 미만의 저장공간을 보유한 창고업자 창고업(CA저장) 1,000MT미만의 저장공간을 보유한 창고업자
도매업자	연간 매출액이 30Crore 미만인 도매업자
소매업자	연간 매출액이 20Crore 미만인 소매업자
유통업자	연간 매출액이 20Crore 미만인 소매업자
공급업자	연간 매출액이 20Crore 미만인 공급업자
출장 요식업자	연간 매출액이 20Crore 미만인 공급업자
호텔	3성급 이상 혹은 5성급 이하의 호텔 혹은 3성급이면서, 매출액이 12랙 이상인 호텔
운송업자	100대의 자동차 혹은 화물기차를 보유하거나, 연간 매출액이 30Crore 이상인 운송업자
레스토랑	연간 매출액이 최대 20Crore인 식당
매장 운영업자	연간 매출액이 최대 20Crore인 매장 운영업자

□ 라이선스 조건

- 라이선스 발급 이후, 모든 식품 사업자는 식품 사업 과정에서 항상 다음 조건을 준수해야 함
 - 라이선스를 사업장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전시해야 함
 - 허가 당국 또는 허가 당국에서 승인한 직원에게 필요한 시설 접근 권한을 부여해야 함
 - 라이선스 내용의 변경 또는 수정에 대해 FSSAI 당국에 보고해야 함

- 적어도 한 명의 기술자를 고용하여 생산 과정을 감독하게 해야 함. 생산 공정을 감독하는 사람은 바이오 화학/식품영양학/미생물학 또는 식품 기술/유제품기술/유제품미생물학/유제품화학/유제품 엔지니어링 분야의 학위 또는 수의학과 대학원 이상 학위/호텔 관리 및 취사 기술 또는 인정된 대학, 연구소 또는 동등한 기관의 특정 비즈니스 요구 사항과 관련된 분야의 학위 또는 졸업 증서가 있는 사람이어야 함
- 매년 5월 31일까지 연간 수익(4월 1일 ~ 3월 31일)을 FORM D-1 양식⁴¹⁾에 맞춰 제출해야 함. 우유 및 유제품의 조달/취급/제조업자의 경우 위해 매년 반기마다 연간 수익을 FORM D-2⁴²⁾에 맞게 제출해야 함(4월 1일 ~ 9월 31일, 10월 1일 ~ 3월 31일)
- 라이선스/등록에 표시된 제품 이외의 다른 제품이 시설 내에서 생산되지 않아야 함
- 식품 사업의 범주에 따라 Schedule-4에 명시된 대로 공장의 위생 및 위생 기준 및 근로자 위생을 유지해야 함
- 생산, 원재료 사용 및 판매에 대한 일일 기록을 별도로 보관해야 함
- 사용된 원재료의 출처 및 표준이 최적의 품질인지 확인해야 함
- 식품 사업자는 사유지, 소변기, 흡수창, 배수구 또는 저장 장소로부터 면허 기관이 만족할 만큼 효과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모든 장소에서 식품을 제조, 저장 또는 노출시키거나 판매를 허용해서는 안 됨
- 장비 및 장비를 정기적으로 청소할 때 필요한 장소에 설치 (Clean-In-Place) 시스템이 존재해야 함
- 안전한 식품의 공급 및 운송을 보장하기 위해 이전 기록 데이터와 위험 평가를 기초로 필요한 만큼 자주 FSS 규정에 따라 적어도 6개월 안에 한 번 FSSAI가 지정한 연구소 혹은 공인된 NABL(National Accreditation Board for Testing and Calibration Laboratories)에서 화학 물질 및 식품의 미생물 오염 물질의 테스트를 진행해야 함
- 조달, 운송, 보관 등을 포함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조달 또는 소싱 장소에서 공급 체인 전체에 가능한 한 제품에 알맞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야 함

41) FORM D-1 : <https://bit.ly/2A7N4kN>

42) FORM D-2 : <https://bit.ly/2A7ZKbz>

- 제조자/수입자/유통업자는 허가 및 등록된 판매업체에게만 식품을 사고 팔아야 하며, 판매기록을 보관해야 함

□ 등록증 또는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 당국은 관련 식품 사업자에게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한 후, 해당 식품 사업자의 모든 또는 모든 활동에 관한 등록 또는 면허를 정지할 수 있음
- 식품 사업자가 제공된 개선 통지서에 언급된 기간 내에 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한 사유에 대한 간략한 진술을 기록한 후 정지된 등록/면허에 기록되어야 함
- 경우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 당국은 정식 명령일로부터 14일보다 적어서는 안 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식품 사업자의 사업장 검수를 지시할 수 있음
- 등록 또는 허가 당국이 검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식품 사업자가 결함이나 누락을 시정하지 않았다면, 당국은 식품 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취소 전에, 허가 당국은 법 제32조 (3)항에 규정된 대로 그 이유를 제시할 기회를 식품사업자에게 부여해야 함
- 등록 또는 허가 당국은 이 규정에 포함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기록해야 하는 이유로 공중 보건의 이익을 위해 등록 또는 면허를 즉시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음
- 이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는 식품 사업자가 등록증 또는 면허 또는 갱신에 관하여 지불한 수수료의 보상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없음
- 상기 규정에 의거한 취소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식품 사업자는 개선 고지에 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관계 당국에 대한 등록 또는 면허를 새로 신청할 수 있음

□ 면허 또는 등록 허가 후 변경

- 식품 사업자는 등록 또는 허가 당국이 항상 식품 사업장에 관한 최신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품 범주, 배치, 확장, 폐쇄 및 변경에 대한 모든 수정 또는 추가 또는 변경 사항을 관련 당국에 통보해야 함. 그러한 정보는 변경이 발생하기 전에 FSSAI에 전달되어야 함
- 라이선스 인증서에 포함된 정보를 변경할 경우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라이선스에 대한 승인 또는 보증을 신청해야 함. 식품 사업자는 필요한 변경을 위해 1년의 라이선스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함께 원래의 라이선스를 허가 당국에 제출해야 함

- 허가 당국은 그러한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된 라이선스를 승인하고 발급할 수 있음. 앞서 언급한 변경 사항을 승인하기 전에 허가 당국은 사업 수행의 가능성과 사업 활동의 적합성 또는 변경에 대한 법적 및 기타 관련 측면을 고려해야 함

□ 사망한 경우의 등록 증명서 또는 면허증의 이전

- 등록증이나 면허증 소지자가 사망한 경우, 그러한 증명서 또는 면허증은 법정 대리인 또는 사망한 가족 구성원을 위해 또는 다음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지됨
 - 등록증 또는 면허 소지자의 사망일로부터 90일의 기간; 또는 지정 관청이 허용할 수 있는 기간. 사유는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함
 - 등록증 또는 면허증의 사망자의 법정 대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은 관계 당국에 대하여 그러한 증명서 또는 면허의 양도를 신청할 수 있음
 - 경우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 당국은 적합하다고 판단한 후 신청인이 법정 대리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등록증 또는 면허증의 양도를 승인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음. 단, 등록 또는 면허 당국은 신청자에게 청취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서면으로 기록해야 하는 이유 없이 요청을 거절해서는 안 됨
 - 양도 신청을 하고 당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등록 또는 면허는 계속 유효함

1. 관리 · 법률체계

관리 · 법률체계⁴³⁾

- 인도는 인도에서 유통되는 국내/수입 식품과 관련하여 식품안전기준청(FSSAI)을 통해 ‘Food Safety and Standards(Packing and Labelling) Regulations’에 따라 라벨링 요건을 지킬 것을 강조함
-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식품의 수/출입 및 유통, 보관, 습득 등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하고 규제함
- 식품과 관련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납품 업체와 도, 소매 업체들의 규제를 수행함

2. 식품 포장 및 라벨링

포장

- 식품의 준비, 포장 및 저장에 사용되는 하기에 명시된 물질 또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용기는 사람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됨
 - 녹슨 용기
 - 부서지거나 녹슬어진 에나멜 처리된 용기
 - 제대로 주석 처리되지 않은 구리 또는 황동 용기
 - IS : 20규격에 적합한 화학 조성을 따르지 않는 알루미늄제의 용기 또는 기구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 식품 품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장하거나 보관하기 위해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료로 만들어진 용기는 다음의 인도 표준 규격을 준수해야 함
 - IS : 10146(식품과 접촉하는 Polyethylene에 대한 규격)
 - IS : 10142(식품과 접촉하는 Styrene Polymers에 대한 규격)
 - IS : 10151(식품과 접촉하는 Polyvinyl Chloride (PVC)에 대한 규격)
 - IS : 10910(식품과 접촉하는 Polypropylene의 규격)

43) Food Safety and Standards (Packing and Labelling) 2018년 2월 20 개정 참조(웹사이트 주소 : https://www.fssai.gov.in/dam/jcr:753042db-53b7-4985-9bc0-efb9180083cd/Direction_FSS_Packaging_Labelling_20_02_2018.pdf)

- IS : 11434(식품과 접촉하는 Ionomer Resins의 규격)
- IS : 11704(Ethylene Acrylic Acid (EAA) copolymer의 규격)
- IS : 12252(Poly alkylene terephthalates (PET)의 규격)
- IS : 12247(Nylon 6 Polymer의 규격)
- IS : 13601(Ethylene Vinyl Acetate (EVA))
- IS : 13576(Ethylene Metha Acrylic Acid (EMAA))
- 신선 식품의 목재 포장 요건
 - 목재 포장재가 ISPM-15 국제표준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되었다고 표시되거나 취급방식이 명기된 식물 위생 증명서가 없으면 원목/단단한 목재로 포장된 물품은 세관에 반입이 금지됨
 - 수출 이전의 원목/단단한 목재 포장재는 210℃ 이상에서 16시간 동안 48g/m³ 만큼의 메틸브로마이드 훈증 소독 처리를 해야 하고, 또는 560℃에서 30분 동안 고온 열처리(HT) 또는 가마 건조(KD, Kiln Drying) 또는 화학적 압력 함침(CPI, Chemical Pressure Impregnation) 또는 기타 소독 처리(ISPM-15의 HT규격을 충족하는 경우)를 해야 함
 - 상기 조건은 접착제, 열 및 압력 또는 이들의 조합을 사용하여 가공된 플라이 우드, 파티클 보드, 오리엔탈 스트랜드 보드 또는 베니어와 같은 가공목재 포장재에는 적용되지 않음. 또한 위의 조건은 규정된 병해충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베니어 필러 코어, 톱밥, 목재 울 및 부스러기 및 얇은 나무 조각(두께가 6mm 미만)과 같은 목재 포장재에도 적용되지 않음
- 품목별 포장요건

품목	포장요건
우유 및 유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기에 열처리된 우유 및 유제품을 병에 담거나 채우는 것은 기계를 이용해야 하며, 용기의 밀봉은 자동화 장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 포장은 철저한 세척 및 소독 후에 재사용 할 수 있는 유형의 경우를 제외하고 유제품에 대해서는 재사용 할 수 없음 ◆ 우유 또는 우유 제품의 마지막 열처리가 완료되는 즉시 밀폐 장치를 통해 밀폐되어야 하며, 밀봉 장치는 일단 용기가 개방되면 개봉 증거가 명확하고 쉽게 확인되도록 포장 되어야 함 ◆ 포장 직후, 유제품은 보관을 위해 알맞은 저장시설에 보관해야 함
과일 및 채소 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uits and Vegetable 제품은 또한 BIS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우수한 품질의 무균 포장재로 포장 가능함 ◆ 용기의 윗면 또는 목에 표시되는 라이선스 번호와 제조사의 고유 식별 코드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밀봉 포장되어야 함

품목	포장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조림 과일, 주스 및 채소에는 위생적으로 깨끗한 적당한 종류의 황동판으로 만든 깡통을 사용해야 함 ♦ 병에 든 과일, 주스 및 채소의 경우 밀폐 및 밀봉이 가능한 병/단지만을 사용해야 함
음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스, 과즙, 웨이크, 시럽, 보리물 및 기타 음료는 밀봉된 깨끗한 병에 포장되어야 함 ♦ 냉동·얼음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은 적절한 상자에 포장해야 함
보존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잼, 젤리 및 마멀레이드 등 보존식품은 새로운 캔, 깨끗한 단지, 새 용기, 병, 도자기 용기, 알루미늄 용기가 사용될 수 있으며 안전하게 밀봉되어야 함 ♦ 설탕에 절인 과일과 껍질이 벗겨진 말린 과일과 채소는 종이 봉투, 골판지 또는 나무 상자, 새 통, 병, 알루미늄 및 기타 적합한 승인된 용기에 포함할 수 있음
토마토 케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마토케첩과 소스에는 깨끗한 병을 사용해야 한다. 아세트산으로서 산도가 0.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위에서 개봉되는 위생 캔을 사용할 수 있음
통조림 육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맞은 종류의 주석판으로 만든 위생적으로 깨끗한 새 캔을 사용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캔은 내부적으로 라커칠이 되어야 하며, 내용물을 채운 후에 완전 밀폐되어야 함. 사용된 라커는 내유성이어야 하며, 지방 또는 염수에 용해되지 않아야 함 ♦ 돼지고기를 포장하는 데 사용되는 캔 내부는, 내용물이 채워지기 전에 식용 젤라틴, 라드 또는 식물용 양피지로 함께 코팅되어야 함 ♦ 밀폐 용기에 포장된 육류 제품은 상업적 보관 및 운송 조건 하에서 부패에 견딜 수 있도록 가공되어야 함
식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 10146기준에 부합하는 폴리에틸렌(PE)/IS 10151기준에 부합하는 폴리 염화 비닐(PVC)/IS 12252기준에 부합하는 폴리 알킬렌 테레프탈레이트(PET 및 PBT), 또는 IS10910기준에 부합하는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무색 투명한 용기/병 또는 물의 혼탁이나 오염을 방지하기에 적합한 식품용 폴리 카보네이트 또는 멸균 유리병에 포장되어야 함

3. 표시사항

기본 표시사항

○ FSSAI요구 사항(빨간색)

- 모든 식품 포장에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하기에 명시한 정보가 포함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함

구 분	필수/선택
1) 식품의 이름	필수
2) 성분 목록	필수
3) 영양 정보	필수
4) NON-VEG 또는 VEG 스티커	필수

구분	필수/선택
5) 식품 첨가물에 관한 선언	필수
6) 제조업체 또는 포장 업체의 이름 및 전체 주소	필수
7) 순 수량	필수
8) 코드 번호/롯데번호/배치 번호	필수
9) 제조 일자 또는 포장 날짜	필수
10) 날짜별 베스트 및 사용 날짜	필수
11) 수입 식품의 원산지	일부 유형 생략 가능
12) 사용 지침	일부 유형 생략 가능
13) License No	필수

○ 상업 목적용 요구 사항(초록색)

구분	필수/선택
1) 인도 내 수입업자 이름 및 주소	국내 제조된 제품의 경우 생략 가능
2) 포장된 제품의 이름	필수
3) 순 수량	필수
4) 제조일자 또는 수입일자	필수
5) Maximum retail price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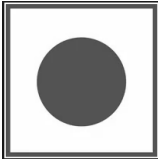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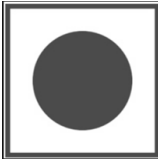
□ 용어정의 및 표기방식



① Importer information is not applicable to domestically produced products.

- 제품명
- 성분 목록(List of Ingredients)
 - 성분 목록은 “성분”과 같은 알맞은 이름이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함
 - 제품에 사용된 성분은 제조 당시의 중량 또는 부피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기재되어야 함
 - 제품 자체가 두 가지 이상의 재료의 복합물인 경우, 그러한 재료는 성분 목록에 표시되어야 하며, 괄호 안에 각 재료의 중량 또는 부피가 큰 순서대로 표기되어야 함
 - 식품 첨가물 이외의 복합 재료들이 식품의 5%를 차지하지 않을 경우, 성분 목록에 작성할 필요가 없음
 - 물이 소금물, 시럽 또는 국물과 같은 성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복합 식품에 사용되는 물은 성분 목록에 표기되어야 함
 - 제조 과정에서 증발된 물 또는 기타 휘발성 성분은 표기할 필요가 없음
 - 또한 물을 첨가하여 복원시키려는 건조된 또는 압축된 식품의 경우, 그러한 복원 식품의 사용된 재료들은 중량 또는 부피 순으로 내림차순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문구를 표시할 수 있음. “ingredients of the product when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ions on the label” (“라벨의 지시 사항에 따라 제조될 때 사용된 제품의 성분”)
 - 혼합물 또는 결합물로 판매되는 모든 식품 포장에는:
 - ▶ 만약 단어나 그림, 또는 도표를 통해 성분이 표시된다면, 식품 제조 시 사용된 성분의 백분율을 표시해야 함
 - ▶ 식품의 명칭 내에 있지는 않지만, 식품의 특성을 결정하는 데 필수적이며, 소비자가 음식에 넣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성분의 정량 표시를 생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경우, 식품 제조 시 사용된 성분의 백분율을 표시해야 함
- 영양 정보(Nutritional information)
 - 100gm, 100ml당 또는 1회 섭취량 영양정보를 라벨에 표시해야 함
 - ✓ kcal 단위의 에너지 값
 - ✓ 단백질, 탄수화물(설탕의 양을 명시) 및 지방의 양(gm 또는 ml)
 - ✓ 영양 또는 건강 강조 표시가 있는 다른 영양분의 양

- ✓ 비타민 및 무기질에 관한 수치 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미터법 단위로 표기해야 함
 - ✓ 1회 섭취량에 대해 영양분 표시를 하는 경우 그램(g) 또는 밀리리터(ml)로 표시한 양을 Serving 단위를 이용하여 표시해야 함
 - ✓ 미네랄, 단백질, 비타민 또는 그 화합물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은 아미노산 또는 효소가 첨가된 영양소의 양을 라벨에 표시해야 함
- VEG 또는 NON-VEG 표시(Declaration regarding Veg or Non veg)

	Veg 종류	세부내용
Non - Ve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N-VEG” 식품의 모든 포장에는 제품이 “NON-VEG 식품임을 나타내기 위해 좌측에 명시된 기호 및 색상 코드로 라벨에 표기해야 함 ◆ “NON-VEG” 심벌은 갈색의 원과 원 직경의 두 배 크기인 갈색 윤곽이 있는 사각형이어야 하며, 아래에 명시된 최소 크기보다 작지 않은 직경을 가져야 함 ◆ 식품 중 어느 하나라도 “NON-VEG” 성분으로 계란만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 제조자 또는 포장업자 또는 판매자는 상기 기호 이외 상기 내용을 언급할 수 있음
Ve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EG” 식품의 모든 포장에는 좌측에 명시된 기호 및 색상 코드로 라벨에 표기해야 함. ◆ “VEG” 심벌은 녹색깔의 원과 원의 직경의 두 배 크기인 녹색 윤곽이 있는 사각형이어야 하며, 원은 아래에 명시된 최소 크기보다 작지 않은 직경을 가져야 함
공통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호가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벌과 대비되는 색깔의 배경을 갖는 패키지 배경에 표시 - 제품의 이름 또는 브랜드 이름과 아주 근접한 곳 등 - 모든 매체의 라벨, 용기, 팜플렛, 전단지, 광고 등 ◆ 예외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네랄워터, 포장된 음용수, 탄산수, 알코올음료 또는 액체 우유 및 분유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 로고 사이즈

SR No.	겉면면적	원의 최소 지름 (mm)
1	Up to 100cms, Square,	3
2	Above 100cms, square up to 500cms square, Above 500cms	4
3	square up to 2500cms square, Above 2500 cms,	6
4	Square	8

○ 식품 첨가물 표시(Declaration regarding Food Additives)

- 각 분류에 속하며 식품에 사용하도록 허용된 식품 첨가물의 목록에 있는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는 다음의 분류명을 구체적인 명칭 또는 인정된 국제 식별 번호와 함께 사용해야 함

Acidity Regulator, Acids, Anti-caking Agent, Antifoaming Agent, Antioxidant, Bulking Agent, Colour, Colour Retention Agent, Emulsifier, Emulsifying Salt, Firming Agent, Flour Treatment Agent, Flavour Enhancer, Foaming Agent, Gelling Agent, Glazing Agent, Humectant, Preservative, Propellant, Raising Agent, Stabilizer, Sweetener, Thickener

- 추가적인 색소가 첨가될 경우, 식품 라벨에 아래 문구 중 하나가 대문자로 제품 성분 바로 아래에 표기되어야 함

CONTAINS PERMITTED NATURAL COLOUR(S)
OR
CONTAINS PERMITTED SYNTHETIC FOOD COLOUR(S)
OR
* 식품 색소의 이름 또는 INS 번호와 함께 표시되는 경우, 제품에 사용된 색소는 성분 목록에 언급될 필요가 없음

- 추가적인 향미료가 첨가될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제품 성분 바로 아래에 표기되어야 함

(Regulation 3.1.10(1) of Food Safety and Standards (Food product standards and food additive) Regulation, 2011에 따라 향료의 종류를 명기)

- 향미료와 색깔이 첨가될 경우, 식품 라벨에 아래 문구 중 하나가 대문자로 제품 성분 바로 아래에 표기되어야 함

CONTAINS PERMITTED NATURAL COLOUR(S) AND ADDED FLAVOUR(S)
OR
CONTAINS PERMITTED SYNTHETIC FOOD COLOUR(S) AND ADDED FLAVOUR(S)
OR
CONTAINS PERMITTED NATURAL AND SYNTHETIC FOOD COLOUR(S) AND ADDED FLAVOUR(S)

-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Name and complete address of the manufacturer)
 - 제조사와 제조시설이 다른 위치에 있으면, 제조사 및 제조시설 주소와 이름을 모두 명시해야 하며, 제조자가 포장을 하지 않는 경우, 모든 음식 포장에 포장 시설 및 보틀링 시설의 이름과 주소 모두 표시해야 함
 - 식품이 인도로 수입되는 경우, 인도 수입업자의 이름과 주소를 라벨에 표기해야 함
 - ✓ 인도 밖에서 제조된 식품 물품이 인도에서 포장되거나 병에 담은 작업을 할 경우, 식품 라벨에는 식품의 원산지, 인도 수입업자뿐만 아니라 포장 시설(작업장)의 이름 및 주소를 표기해야 함
- 순 수량(Net Quantity)
 - 중량, 부피 또는 수량에 따른 순 수량은 경우에 따라 모든 식품 포장에 기재
 - 순 수량 표시 이외에, 액체형 매질(물, 설탕 또는 소금용해액, 과일 및 야채 주스, 식초)에 포장된 식품은 수분 중량이 제외된 무게의 표시가 있어야 함
 - 포장에 들어있는 상품의 순 수량을 표기할 때 포장지와 포장재의 무게는 제외함
- 로트/코드/배치식별번호(Lot/Code/Batch identification)
 - 식품에 제조 과정에서 추적이 가능하고 유통 과정에서 식별될 수 있는 식별 마크인 배치 번호, 코드 번호 또는 로트 번호는 라벨에 표기되어야 함
 - 단, 멸균된 우유를 포함한 빵과 우유가 들어있는 포장의 경우, 로트/코드/배치 식별번호를 라벨에 표기할 필요가 없음
- 제조일 또는 포장일(Date of manufacture or packing)
 - 상품이 제조, 포장 또는 사전 포장된 년, 월, 일 이 라벨에 표시되어야 함. 단, 제품의 유통기한 (“Best Before Date”)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조, 포장 또는 사전포장 된 년, 월 만을 라벨에 표기함. 단, 포장에 3개월 미만의 짧은 유통기한을 가진 상품이 들어있는 경우, 상품이 제조 또는 준비되거나 사전 포장된 년, 월, 일을 라벨에 기재해야 함
- 유통기한 (Best Before and Use By Date)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품 유통기한을 **대문자로** 표시해야 함.

“BEST BEFORE MONTHS AND YEAR
 OR
 “BEST BEFORE MONTHS FROM PACKAGING
 OR
 “BEST BEFOREMONTHS FROM MANUFACTURE

- 멸균 또는 초고온으로 처리된 우유, 두유, 가당 우유, 빵, dhokla, bhelpuri, 피자, 도넛, 코코아, 파니르 또는 캔에 포장되지 않은 과일, 채소, 육류, 생선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함

“BEST BEFORE MONTHS AND YEAR
 OR
 “BEST BEFORE MONTHS FROM PACKAGING
 OR
 “BEST BEFOREMONTHS FROM MANUFACTURE

- * 공란을 채워야 함
- * 숫자로 월과 연도를 작성
- * 연도는 두 자리 숫자 작성

- 무균 포장에는 Best Date 대신에, Use by Date/Recommended Last Consumption/Expiry 날짜가 표기되어야 하며, 포장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아야 함
- 유아용 우유 대체품 및 유아용 식품의 경우, Use by Date/Recommended Last Consumption/Expiry 날짜를 표기해야 함
- 와인과 술, 알코올 함량이 10% 이상인 알코올성 음료에는 유통기한이 적용되지 않음
- 수입 식품의 원산지 (Country of origin for imported food)
 - 인도로 수입된 식품 라벨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함
 - 제2국에서 식품이 특성을 바꾸는 가공을 진행할 때, 라벨에 가공 처리를 진행하는 국가가 원산지로 표기되어야 함
- 사용 지침 (Instructions for use)
 - 필요할 경우 복원 과정을 포함한 사용 지침이 식품의 올바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라벨에 표기되어야 함

□ 라벨링 방식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

- 연유 또는 분유/우유제품에 관한 라벨링 규정
 - 연유 또는 분유가 들어있는 모든 포장에는 다음 문구 중 적용되는 하나의 문구 또는 주 정부에서 허용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라벨이 있어야 함

	특징	문구
연유	무설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DENSED MILK UNSWEETENED(Evaporated Milk) - This tin contains the equivalent of (x)..... liters of toned milk
	감미료 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DENSED MILK SWEETENED - This tin contains the equivalent of (x)..... liters of toned milk with sugar added
	가당, 맛첨가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is has been flavoured with..... - NOT TO BE USED FOR INFANTS BELOW SIX MONTHS
탈지 연유	무설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DENSED SKIMMED MILK UNSWEETENED - Evaporated Skimmed Milk) This tin contains the equivalent of (x)..... liters of skimmed milk
	감미료 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DENSED SKIMMED MILK UNSWEETENED - Evaporated Skimmed Milk) This tin contains the equivalent of (x)..... liters of skimmed milk
고열살균처리 연유/탈지분유 (무설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is has been sterilized by UHT Process
분유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LK POWDER - This tin contains the equivalent of (x)....liters of toned milk
	레시틴 함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LK POWDER IN THIS PACKAGE CONTAINS LECITHIN
	부분 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TLY SKIMMED MILK POWDER - This tin contains the equivalent of (x)..... liters of partly skimmed milk having..... per cent milk fat
	탈지 분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IMMED MILK POWDER - This tin contains the equivalent of (x)..... liters of skimmed milk

- 라벨 표시는 (x)의 알맞은 숫자와 단어를 함께 표기하면 됨. 예를 들어, “one and a half (1½)”과 같이 표시함
- 가당 연유 및 유아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유사한 제품에는 유아용 음식으로 조리하기 위한 지침이 포함되어서는 안 됨
- 내용물에 대한 설명이나 설명의 일부로 탈지연유 또는 탈지분유 포장 라벨에 “우유”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경우, 그 단어의 바로 앞에 또는 그 뒤에 “machine skimmed” 또는 “partly skimmed”으로 표시해야 함

○ 왁스로 코팅 한 경우 신선한 과일에 대한 라벨링 규정

Coated with wax (give name of wax)

○ 유아용 우유 대체 식품 및 제품에 대한 라벨링 규정

- 이 규정에 포함된 라벨 표시 요건은 다른 조항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유아용 우유 대체 식품 또는 유아용 식품의 모든 포장은 “IMPORTANCE NOTICE”라는 단어를 명확하고 눈에 잘 띄고 쉽게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며, “IMPORTANCE NOTICE” 아래에 하기에 명시한 조건에 따라 대문자로 표기해야 함
- ✓ “MOTHER’S MILK IS BEST FOR YOUR BABY” 문구가 대문자로 표기되어야 함. 사용된 문자의 종류는 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모든 포장의 중앙 패널에 있어야 함. 유아용 우유 대체품 또는 유아용 식품에 부착 또는 인쇄된 텍스트의 색상은 라벨의 배경색과 대조되어야 함
- ✓ 영유아 대체 식품 또는 유아용 식품의 사용에 대한 필요성과 적절한 사용 방법에 관해 보건 의료인의 조언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야한다는 문구
- ✓ 유아용 우유 대체 식품 또는 유아용 식품이 유아의 유일한 영양 공급원이 아니라는 경고
- ✓ 유아 식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조 공정 (예 : 분무 건조)을 나타내는 진술, 기구, 병 및 젓꼭지의 청소를 포함하는 적절하고 위생적인 준비에 대한 지시 및 부적절한 준비로 인해 생기는 건강 위협에 대한 경고

“Warning/ caution—Careful and hygienic preparation of infant foods/infant milk substitute is most essential for health. Do not use fewer scoops than directed since diluted feeding will not provide adequate nutrients needed by your infant. Do not use more scoops than directed since concentrated feed will not provide the water needed by your infant”.

- ✓ Kilo 칼로리/Joules 단위의 에너지 값을 포함한 제품의 100gms 당 영양소의 대략적인 구성
- ✓ “store in a cool and dry place in an air tight container” 등 (after opening use the contents within the period mentioned or the expiry date whichever is earlier)과 같이 저장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 √ 사용 지침과 남은 식품에 대한 처리 방법
- √ 스푼 사용법 및 (스푼 또는 첩기) 및 한 스푼의 양
- √ 제조일 및 유효 일자를 나타내는 배치번호, 월, 연도
- 영유아 우유 대체 식품 또는 유아용 식품과 관련한 용기 또는 라벨에는 영유아 또는 여성의 사진이 있어서는 안 됨. 유아용 우유 대체품이나 유아용 식품의 판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그림, 기타 그래픽 자료나 문구가 없어야 함
- “Humanized” 또는 “Materialized” 또는 기타 유사한 단어는 사용되어서는 안 됨. 유아용 우유 대체 식품 또는 유아용 식품의 포장 및 라벨에는 “Full Protein Food”, “energy Food”, “Health Food”, “Complete food” 또는 기타 유사한 표현이 없어야 함
- 조산아(37주 이전)/저체중아(2500gm 미만)를 위한 유아용 우유 대체 식품 용기에는 상기에 명시한 내용 외에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를 표시해야 함
 - √ 제품 중심부에 이름과 함께 “PREMATURE BABY(BORN BEFORE 37 WEEKS)”/“LOW BIRTH WEIGHT (LESS THAN 2.5 KG)”을 대문자로 표기
 - √ “the low birth weight infant milk substitute shall be withdrawn under medical advice as soon as the mother’s milk is sufficiently available” 표기
 - √ “TO BE TAKEN UNDER MEDICAL ADVICE” 표기
- 우유 또는 유가 유도체를 함유하지 아니한 제품은 “contains no milk or milk product” 문구가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함
- 유당 불내성 또는 유당 및 수크로오스 불내성 유아를 위한 유아용 대체 우유 제품의 용기 라벨은 성분에 따라 “LACTOSE-FREE/SUCROSE-FREE/LACTOSE and SUCROSE-FREE”와 “TO BE TAKEN UNDER MEDICAL ADVICE”을 분명히 표시해야 함. 또한 다음에 명시하는 문구를 추가적으로 표기해야 함
 - “Lactose free Infant Milk Substitute should only be used in case of diarrhea due to lactose intolerance. The lactose free/sucrose free Infant Milk Substitute should be withdrawn if there is no improvement in symptoms of intolerance”
- 젓소/버팔로 우유 및 콩 단백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유아를 위한 유아용 우유 대체 식품 용기의 라벨에는 “HYPOALLERGENIC FORMULA”와 “TO BE TAKEN UNDER MEDICAL ADVICE”을 분명히 표시해야 함
- 식용 유지 제품에 대한 라벨링 규정
 - 식용 유지 제품의 패키지, 라벨 또는 광고는 다음 문구를 사용할 수 없음

“Super-Refined”, “Extra-Refined”, “Micro Refined”, “Double-Refined”, “Ultra Refined”, “Anti-Cholesterol”, “Cholesterol Fighter”, “Soothing to Heart”, “Cholesterol Friendly”, “Saturated Fat Free” 또는 제품의 품질을 과장하는 기타 표현

- 판매용 용제 추출 오일, 탈지유 가루 또는 식용 밀가루의 포장 용기에는 영어 또는 힌디어로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함
 - ✓ 용제 추출 오일 또는 탈지유 가루 또는 식용 밀가루의 이름, 상표명 또는 설명
 - ✓ 식물성 기름/Vanaspati에 대하여, 2011년 식품 안전 기준 (식품 제품 표준 및 식품 첨가물) 규정 2.2.6 (1)에 명시된 “정제된” 등급 용제 추출 오일의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50mm 이상의 크기로 라벨에 표시해야 함
 - ✓ 생산자의 명칭 및 사업 내용
 - ✓ 용기 내의 내용물 순 중량
 - ✓ 제조의 배치 번호, 월 및 연도
- 용제가 함께 포장된 모든 제품의 용기에는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 시점에 IS 인증 마크가 표기되어야 함
- Vanaspati, 마가린, 베이커리 쇼트닝, 블렌딩 식용 식물성 유지 및 정제 식물성 기름이 포장된 모든 제품의 포장에는 이 규정에 명시된 라벨링 요구 사항과 함께 영어 또는 힌두어로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을 명시해야 함
 - ✓ 내용물의 명칭/설명, “free from Argemone Oil”
 - ✓ 내용물의 질량/부피
- 정제된 식물성 기름 제품의 모든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라벨을 부착해야 함.

Refined (name of the Oil) Oil

Note : 수입 식용유의 용기에 접두사로 "Imported"라는 단어를 붙여야 함.

- 팔레 올린과 땅콩 기름의 혼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모든 제품의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라벨을 부착해야 함

BLEND OF PALMOLEIN AND GROUNDNUT OIL
 Palmolein.....per cent
 Groundnut oil.... per cent

- 겨자 기름과 함께 수입된 유채 종자유를 함유한 모든 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라벨을 부착해야 함

BLEND OF IMPORTED RAPE-SEED OIL AND MUSTARD OIL
 Imported rape-seed oil,... per cent
 Mustard oil,.....per cent

- 쌀 눈 기름의 30% 이상을 원료로 한 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라벨을 부착해야 함

This package of Vanaspati is made from more than
 30 per cent Rice bran oil by weight

- Fat Spread가 포함된 모든 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라벨을 부착해야 함

Milk Fat Spread
 Use before
 Date of packing
 Total Milk Fat Content Per cent by weight.....
 Mixed Fat Spread
 Use before
 Date of packing
 Per cent by weight.....
 Milk Fat Content,.....
 Total Milk Fat Content Percent by weight,.....
 Vegetable Fat Spread
 Use before
 Date of packing
 Total Fat Content Per cent by weight

- 식물성 기름에 아나토 색소를 함유한 모든 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라벨을 부착해야 함

Annatto color in oil (Name of oil/oils) used

- 식용유가 함유된 모든 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라벨이 부착되어야 함

“This blended edible vegetable oil contains an admixture of:”
 (i)% by Weight
 (ii)% by Weight
 (Name and nature of edible vegetable oils i.e. in raw or refined form)
 (iii) Date of Packing.....
 전면/중앙 패널의 제품명과 함께 대문자로 다음과 같은 문구를 작성해야 함.
 NOT TO BE SOLD LOOSE

□ 유의사항

○ 특정 제한 사항

- 라벨링 규정에 따라 라벨에 명시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힌두어 또는 영어로 표기
- 사전 포장된 식품(Pre-packaged food)에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속임수 이거나, 또는 제품의 성격과 관련하여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문구가 라벨에 표기되어서는 안 됨
- 사전 포장 식품의 라벨은 용기와 분리되지 않는 방식으로 붙여져야 함
- 라벨의 내용물은 정상적인 구매 및 사용 조건 하에서 소비자가 명확하고 눈에 잘 띄고 지울 수 없으며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함
- 용기가 포장지로 덮여 있는 경우, 포장지는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함. 또는 용기의 라벨은 외부 포장지를 통해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하며, 포장지에 의해 가려지지 않아야 함
- 라벨에는 본 법규 또는 이러한 규정에 대한 언급이나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서는 안 됨
- “recommended by the medical profession”라는 문구가 라벨링에 명시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의료계가 권장, 승인 또는 처방한 제품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를 패키지의 라벨링에 표기되어서는 안 됨
- 모방을 금지하는 단어의 무단 사용
 - ✓ 모든 식품의 포장 라벨에 ‘imitation’이라는 단어 또는 어떤 식품의 대체물임을 암시하는 단어를 쓰지 않아야 한다. 패키징 및 라벨링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된 용어는 허용됨
 - ✓ 2011년 식품 안전 표준 규격(식품 제품 기준 및 식품 첨가물) 규정에 따라 명시된 양의 과일 주스, 과일 펄프 또는 과일 첨가물을 함유하지 않은 fruit syrup, fruit juice, fruit squash, fruit beverages, cordial, crush 또는 기타 과일 제품들은 라벨링에 fruit syrup, fruit juice, fruit squash, fruit beverages, cordial, crush라고 표기되어서는 안 됨
 - ✓ 과일의 구체적인 양이 포함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상 또는 정보를 줄 수 있는 식품의 경우 반드시 라벨링에 ‘ADDED(NAME OF THE FRUIT) FLAVOUR’을 표기해야 됨
 - ✓ 단순히 천연 향료 및 천연 향료 재료 또는 인공 향료가 단독으로 또는 함께 사용된 식품은 과일 제품으로 기재하지 않으며, “ADDED”(NAME OF FRUIT) “FLAVOUR”과 같은 문구를 라벨에 표기해야 함

- √ 과일 주스 또는 과일 펄프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 탄산수에는 소비자가 과일 제품임을 믿게 하는 라벨 표시가 없어야 함
- √ 비타민 C가 함유된 과일 및 채소 제품에는 제품의 100gm당 아스코르빈산 함량이 40mg 이상이어야 함
- 모조식품의 경우 'PURE'라는 용어를 라벨에 표기해서는 안 됨
- 식수에 대한 표시 금지(포장 및 미네랄워터 제품)
- √ 기준에 포함되는 제품의 특성과 관련하여 의약 적(예방적, 완화적 또는 치유적) 효과에 관한 어떠한 주장도 제기되지 않아야 함. 소비자의 건강과 관련된 기타 유익한 효과에 대한 강조 표시가 되어서는 안 됨
- √ 대중의 마음에 혼란을 주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대중에게 판매되는 물의 성질, 원천, 구성 및 특성에 대해 오도하는 진술 또는 그림의 사용은 금지됨
- 라벨링 요구 사항 면제
 - 개별 제품 포장지의 표면적이 100제곱 센티미터 이하인 경우, 그러한 포장의 라벨 로트 번호 또는 배치 번호, 코드 번호, 영양 정보 및 사용 지침의 표기가 면제되지만, 경우에 따라 이러한 정보는 도매용 제품 또는 다량 제품의 포장지에 표기되어야 함
 - 표면적이 30평방 센티미터 미만인 포장지에는 '제조일' 또는 '유통 기한' 또는 '만료일'을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 이러한 정보는 도매용 제품 또는 다량 제품의 포장지에 표기되어야 함
 - 병으로 판매되는 액체 제품의 경우, 그러한 병이 재사용되도록 만들어 진 경우, 성분 목록의 표기가 면제되나, 패키징 및 라벨링 규정의 2.2.2 (4) 항목에 명시된 사항들은 라벨에 표기되어야함. 단, 2009년 3월 19일 이후에 제조된 유리병의 경우, 병에 영양 성분 및 영양 정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함
 - 7일 이하의 유효 기간을 가진 식품의 경우, 포장된 식품의 라벨에 '제조일'을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유효기간'은 제조자 또는 포장업자에 의해 라벨에 표기되어야 함
 - 도매 포장의 경우 성분 목록과 관련된 세부 사항, 제조일자/포장일, 유전자 변형식품의 만료일 표기

4. 라벨링 샘플


표 기 항 목	표 기 내 용
1) 식품의 이름	HERSHEY'S MILK SHAKE STRAWBERRY FLAVOUR
2) 성분 목록	WATER, MILK SOLIDS (10%), SUGAR, EMULSIFIER (460(i), (471)), MINERAL (Calcium carbonate), Sequestrant (339(ii)), Thickening agent (415), Edible common salt, Mineral (Zinc sulphate), Vitamin E(Acetate), Vitamin A(Acetate), Vitamin D2(Ergocalciferol), Vitamin B1 (Thiamine chloride hydrochloride) and Vitamin B2(Riboflavin)
3) 영양 정보	Energy Kcal 158.62, Protein 4g Carbohydrates 28.14g, Sugar 20g Fat 3.34g, Calcium 322.76mg Phosphorus 160mg, Vitamin A 113ug Vitamin D2 2ug, Vitamin E 1IU Vitamin B1 0.4mg, Vitamin B2 0.4g Zinc 4mg
4) NON-VEG 또는 VEG 스티커	 Veg
5) 식품 첨가물에 관한 선언	CONTAINS PERMITTED SYNTHETIC FOOD COLOUR (127) AND NATURE IDENTICAL FLAVOURING SUBSTANCES.
6) 제조업체 또는 포장 업체의 이름 및 전체 주소	Hershey India Private Limited, Plot No.5, New Industrial Area No.1, Mandideep, Dist: Raisen - 462046, MP, India.
7) 순 수량	200ml
8) 코드 번호/롯데번호/배치 번호	HM02308
9) 제조 일자 또는 포장 날짜	18 AUG 18
10) 날짜별 베스트 및 사용 날짜	BEST BEFORE 270 DAYS FROM MANUFACTURES.
11) 수입 식품의 원산지	India
12) 사용 지침	SHAKE WELL BEFORE USE, DO NOT BUY/CONSUME LEAKED OR PUFFED PACKS, TASTES BEST WHEN CHILLED.
13) License No	10012026000226

표 기 항 목	표 기 내 용
---------	---------

라벨링 사진



표 기 항 목	표 기 내 용
---------	---------

1) 식품의 이름	Aadvik Camel Milk Powder
-----------	--------------------------

2) 성분 목록	Freeze dried camel milk powder
----------	--------------------------------

3) 영양 정보	Energy kcal/100g result 526,00 Protein 21,36% Carbohydrates 35,79% Fat 33,07% Vitamin-C mg/100g result 29,18 Iron mg/100g result 1,22 Calcium mg/100 result 1099,00
----------	---

4) NON-VEG 또는 VEG 스티커	 Veg
-----------------------	--

표 기 항 목	표 기 내 용
5) 식품 첨가물에 관한 선언	THIS PACKET CONTAINS EQUIVALENT OF 5 LITERS OF MILK,
6) 제조업체 또는 포장 업체의 이름 및 전체 주소	Aadvik Foods&Products Pvt, Ltd, Marothi chowk, Nokha, Bikaner - 334803, Rajasthan
7) 순 수량	500gms
8) 코드 번호/롯데번호/배치 번호	826204517A
9) 제조 일자 또는 포장 날짜	18 SEP 18
10) 날짜 별 베스트 및 사용 날짜	Best before 9 months from date of manufacturing when stored in a dry and cool place
11) 수입 식품의 원산지	India
12) 사용 지침	Store in a cool, dry and hygienic place,
13) License No	13316003000301

라벨링 사진



표 기 항 목	표 기 내 용
1) 식품의 이름	HIDE & SEEK
2) 성분 목록	WHEAT FLOUR, CHOCOLATE (23%) {SUGAR, COCOA SOLIDS, COCOA BUTTER, DEXTROSE, EMULSIFIER (LECITHIN OF SOYA ORIGIN) AND ADDED FLAVOUR (ARTIFICIAL FLAVOURING SUBSTANCES-VANILLA)}, SUGAR, EDIBLE VEGETABLE OIL (PALM OIL) INVERT SUGAR SYRUP, RAISING AGENTS {503(ii),500(ii)}, COCOA SOLIDS, IODISED SALT AND EMULSIFIER
3) 영양 정보	Energy(kcal) 479, Protein(q) 5.9, Carbohydrate(g) 73.3, -OF WHICH SUGARS 32.2g Fat (g) 18 -SATURATED FAT 9.3g -TRANS FAT 9.1g
4) NON-VEG 또는 VEG 스티커	 Veg
5) 식품 첨가물에 관한 선언	CONTAINS ADDED FLAVOURS (ARTIFICIAL FLAVOURING SUBSTANCES-VANILLA)
6) 제조업체 또는 포장 업체의 이름 및 전체 주소	PARLE PRODUCTS PVT LTD.
7) 순 수량	150
8) 코드 번호/롯데번호/배치 번호	138AB
9) 제조 일자 또는 포장 날짜	8/8/18
10) 날짜 별 베스트 및 사용 날짜	BEST BEFORE SIX MONTHS FROM PACKAGING,
11) 수입 식품의 원산지	India
12) 사용 지침	STORAGE CONDITIONS: STORE IN A COOL, HYGIENIC AND DRY PLACE: TEMPERATURE AND HUMIDITY CHANGES MAY CAUSE PRODUCT TO DEVELOP A WHITISH LAYER, WITHOUT AFFECTING ITS FITNESS FOR CONSUMPTION.
13) License No	10018026001188


표 기 항 목	표 기 내 용
---------	---------

라벨링 사진



표 기 항 목	표 기 내 용
---------	---------

1) 식품의 이름	MAGGY
2) 성분 목록	<p>NOODLES: Refined Wheat flour (Maida), Palm oil, Salt, Wheat gluten, Mineral (Calcium car-bonate), Thickeners (508&412), Acidity regulators(501(i)&500(i)) and Humectant(451(i)).</p> <p>MASALA TASTEMAKER, Hydrolysed groundnut (peanut)protein, Mixed spices{(23.6%)(Dehydrated onion, Coriander powder, Red chilli powder(3%), Turmeric powder, Dried garlic (2,5%), Cumin powder, Aniseed powder, Fenugreek powder, Ginger powder, Black pepper powder (0.4%), Clove powder(0.1%), Green cardamom powder(0.1%) & Nutmeg powder)}, Noodle powder{Refined Wheat flour(Maida), Palm oil, Salt, Wheat gluten, Mineral (Calcium carbonate), Thickeners(508&412), Acidity regulator(501 (i)&500(i)&Humectant(451(i)), Sugar, Edible starch, Palm oil, Thickener(508), Caramel salt mix{Salt, Colour(150d)&Palm oil}, Acidity regulators (330 & 500(ii)), Salt, Flavour enhancer (635) and Mineral(Ferric pyrophosphate)~</p>
3) 영양 정보	<p>Energy(kal)427, Protein(g) 8,0 Carbohydrate(g) 63,5, -Total Sugars(g) 2,2 -Sugar (Sucrose)(g), Fiber(g) 3,6, Total Fat(g) 15,7 -Saturated Fat(g) 6,8, Transe Fat(g) 0,24 Sodium(mg) 1232,2, Iron(mg) 3,7</p>

표 기 항 목	표 기 내 용
4) NON-VEG 또는 VEG 스티커	 Veg
5) 식품 첨가물에 관한 선언	CONTAINS PERMITTED NATURAL COLOUR, MAY CONTAIN MILK SOLIDS, MUSTARD AND SOYA.
6) 제조업체 또는 포장 업체의 이름 및 전체 주소	Nestle India Limited, 100/101, World Trade Centre, Barakhamba Lane, New Delhi-110001
7) 순 수량	140g
8) 코드 번호/롯데번호/배치 번호	W382430455TA
9) 제조 일자 또는 포장 날짜	AUG 18
10) 날짜 별 베스트 및 사용 날짜	BEST BEFORE NINE MONTHS FROM MANUFACTURE
11) 수입 식품의 원산지	India
12) 사용 지침	STORE IN A COOL, DRY & HYGIENIC PLACE TO PROTECT FROM INSECTS, PESTS & STRONG ODOURS.
13) License No	10012011000168

라벨링 사진




표 기 항 목	표 기 내 용
1) 식품의 이름	VEEBA MARINARA PIZZA & PASTA SAUCE (CULINARY SAUCE)
2) 성분 목록	TOMATOES (70.0%), TOMATO PASTE, SUGAR, LIQUID GLUCOSE, LODISED SALT, SPICES AND CONDIMENTS.
3) 영양 정보	Per serve(10g) ENERGY (kcal) 70,57 PROTEIN (g) 1,58 CARBOHYDRATE (g) 15,50 SUGARS (g) 11,07 FAT (g) 25 -SATURATED FAT(g) <0,10 TRANS FAT(g) <0,10 Cholesterol(mg) <1,00
4) NON-VEG 또는 VEG 스티커	 Veg
5) 식품 첨가물에 관한 선언	PERMITTED ACIDITY REGULATOR (INS260), HERBS, PERMITTED STABILIZER(IN3415), PERMITTED PRESERVATIVE(INS211)
6) 제조업체 또는 포장 업체의 이름 및 전체 주소	VEEBA FOOD SERVICES PRIVATE LIMITED S,P-17, RIICO Industrial Area, Neemrana District - Alwar, Rajasthan- 301705(INDIA)
7) 순 수량	310g
8) 코드 번호/롯데번호/배치 번호	D043
9) 제조 일자 또는 포장 날짜	11,09,18
10) 날짜 별 베스트 및 사용 날짜	BEST BEFORE SIX MONTHS FROM MANUFACTURE
11) 수입 식품의 원산지	India
12) 사용 지침	STORE IN COOL & DRY PLACE, REFRIGERATE AFTER OPENING, DO NOT FREEZE,
13) License No	10013013000578

표 기 항 목	표 기 내 용
---------	---------

라벨링 사진



표 기 항 목	표 기 내 용
1) 식품의 이름	Olive Oil CLASSIC
2) 성분 목록	Olive Oil
3) 영양 정보	Energy 900 kcal, Protein 0g Carbohydrates 0g, Sugar 0g Fat 100g, –Saturated Fat 15g –Monounsaturated 75g, –Polyunsaturated 10g, Trans Fat 0g, Cholesterol 0mg
4) NON-VEG 또는 VEG 스티커	 Veg
5) 식품 첨가물에 관한 선언	
6) 제조업체 또는 포장 업체의 이름 및 전체 주소	Borges Agricultural & Industrial Edible Oils, S,A,U, Avda. Josep Trepal, s/n - 25300
7) 순 수량	250ml(229g)
8) 코드 번호/롯데번호/배치 번호	183008017
9) 제조 일자 또는 포장 날짜	01,2018
10) 날짜 별 베스트 및 사용 날짜	BEST BEFORE THIRD SIX MONTHS FROM MANUFACTURE

표 기 항 목	표 기 내 용
11) 수입 식품의 원산지	India
12) 사용 지침	RECAP AFTER EACH USE, When the temperature drops below approx. 12 (53,6) some solid clouds may form in the olive oil, this is a natural process due to it, containing fatty acids, Once the bottle has returned to room temperature it will return to its usual appearance and maintain all olive oil properties.
13) License No	10012011000492

라벨링 사진




표 기 항 목	표 기 내 용
1) 식품의 이름	ROSTED & SALTED ALMONDS
2) 성분 목록	Roasted Almonds & Low Dosium Fat,
3) 영양 정보	Total fat 15g, Saturated Fat 1g, Trans Fat Cholesterol 0mg,Sodium 5%,Total Carboydrate 2% – Dietary Fiber 13% / – Sugars 1g Protein 6g, Vitamin A 0%, Vitamin C 0% Calcium 8%, Iron 7%
4) NON-VEG 또는 VEG 스티커	 Veg
5) 식품 첨가물에 관한 선언	

표 기 항 목	표 기 내 용
6) 제조업체 또는 포장 업체의 이름 및 전체 주소	A,P Esteve Sales, Inc. 1920 Tienda Drive Suite 291, Lodi, CA—USA
7) 순 수량	200g
8) 코드 번호/롯데번호/배치 번호	0610189
9) 제조 일자 또는 포장 날짜	16.10.18
10) 날짜 별 베스트 및 사용 날짜	05.10.19
11) 수입 식품의 원산지	USA
12) 사용 지침	STORE IN COOL & DRY PLACE.
13) License No	1001150022003677

라벨링 사진




표 기 항 목	표 기 내 용
1) 식품의 이름	MOUNTAIN DEW
2) 성분 목록	CARBONATED WATER, SUGAR, ACIDITY REGULATORS (330,331), PRESERVATIVE (211), CAFFEIN, STABILIZER (445).
3) 영양 정보	Energy 49kcal, Total Carbohydrate: 12.3g of which Sugars: 12.3g, Total Fat: 0g, Saturated Fat: 0g, Trans Fat: 0g, Protein 0g, Sodium: 16mg.
4) NON-VEG 또는 VEG 스티커	 Veg

표 기 항 목	표 기 내 용
5) 식품 첨가물에 관한 선언	COTAINS PERMITTED SYNTHETIC FOOD COLOUR (102) AND ADDED FLAVOUR (NATURAL FLAVOURING SUBSTANCES), CONTAINS CAFFEINE
6) 제조업체 또는 포장 업체의 이름 및 전체 주소	VARUN BEVERAGES LIMITED, SP - 290-299, RIICO INDUSTRIAL AREA, PHASE - VII, CHOPANKI, BHIWADI DISTT., ALWAR-301019, RAJASTHAN, INDIA
7) 순 수량	250ml
8) 코드 번호/롯데번호/배치 번호	6N6540C27118
9) 제조 일자 또는 포장 날짜	27/09/18
10) 날짜 별 베스트 및 사용 날짜	BEST BEFORE NINE MONTHS FROM MANUFACTURE
11) 수입 식품의 원산지 및 사용 지침	India
12) 사용 지침	CRUSH THE CAN AFTER USE
13) License No	10012013000203

라벨링 사진




표 기 항 목	표 기 내 용
1) 식품의 이름	SNICKERS
2) 성분 목록	Milk Chocolate Coating (35%): Sugar, Milk Solids, Cocoa Butter, Cocoa Solids, Dextrose, Ethyl Vanillin; Centre Filling (65%): Glucose Syrup, Peanuts, Sugar, Palm Fat, Milk Solids, Salt, Cocoa Butter, Cocoa Solids, Dextrose, Ethyl Vanillin
3) 영양 정보	Energy 495kcal Protein 9.0g Carbohydrate 58.8g of which Sugar 50.0g Fat 24.9g of which Saturated Fat 10.3g and Trans Fat 0.1g, Fibre 2.8g, Sodium 0.22g
4) NON-VEG 또는 VEG 스티커	 Veg
5) 식품 첨가물에 관한 선언	Emulsifier (Soy Lecithin INS 322) CONTAINS ADDED FLAVOUR (Artificial (Ethylvanillin) Flavouring Substance, Contains Peanuts and product thereof, Milk and Milk Products, soybeans and Product Thereof,
6) 제조업체 또는 포장 업체의 이름 및 전체 주소	Mars International India Pvt.Ltd., 4658 A, No21, Ansari Road, Darya Ganj, New Delhi-110002
7) 순 수량	50g
8) 코드 번호/롯데번호/배치 번호	837E1PUN01
9) 제조 일자 또는 포장 날짜	14.09.18
10) 날짜 별 베스트 및 사용 날짜	13.09.19
11) 수입 식품의 원산지 및 사용 지침	India
12) 사용 지침	STORE IN A COOL DRY PLACE
13) License No	10016022004739

표 기 항 목	표 기 내 용
---------	---------

라벨링 사진





표 기 항 목	표 기 내 용
1) 식품의 이름	TWIX
2) 성분 목록	SUGAR, GLUCOSE SYRUP, WHEAT FLOUR (17%), PALM FAT, COCOABUTTER, SKIMMED MILK POWDER, COCOAMASS, LACTOSE, MILK FAT, WHEY POWDER, FAT REDUCED COCOA, SALT, NATURAL VANILA EXTRACT.
3) 영양 정보	Energy 123kcal, of which sugars 24%, Fat 5,9g, of which saturates 18%, Sodium 2%
4) NON-VEG 또는 VEG 스티커	 Veg
5) 식품 첨가물에 관한 선언	Emulsifier (soya lecithin(E322)), sodium carbonates (E500) CONTAINS ADDED FLAVOUR (Natural flavouring substance)
6) 제조업체 또는 포장 업체의 이름 및 전체 주소	Mars Nederland B.V.,Postbus 81, 5460 AB Veghel
7) 순 수량	50g

표 기 항 목	표 기 내 용
8) 코드 번호/롯데번호/배치 번호	825E1
9) 제조 일자 또는 포장 날짜	18-06-18
10) 날짜 별 베스트 및 사용 날짜	17-03-19
11) 수입 식품의 원산지	Netherland
12) 사용 지침	STORE IN A COOL, DRY PLACE
13) License No	10012011000434

라벨링 사진



표 기 항 목	표 기 내 용
1) 식품의 이름	DORITOS NACHO CHEESE FLAVOUR
2) 성분 목록	Corn(77%), Edible Vegetable Oil(Palmolein Oil), Milk Solids (3,1%)(Whey Powder, Cheese Powder, Skimmed Milk Powder), Wheat Flour, Salt, *Spices & Condiments(Onion Poswer, Spice Extract, Pepper Powder, Chilli Powder, Garlic Powder), Tomato Powder, Sugar, Citric Acid(330).
3) 영양 정보	Energy 505kcal, Protein 6,4g, Total Carbohydrate 63,8g, Of which Sugar 4,3g Total Fat 24,9g, Saturated Fat 11,6g Trans Fat 0,1g, Sodium 748mg

표 기 항 목	표 기 내 용
4) NON-VEG 또는 VEG 스티커	 Veg
5) 식품 첨가물에 관한 선언	CONTAINS ADDED FLAVOURS (NATURAL AND ARTIFICIAL (BUTTER) FLAVOURING SUBSTANCES)
6) 제조업체 또는 포장 업체의 이름 및 전체 주소	PepsiCo India Holdings Pvt.Ltd., JL No. 2&4 (Kendua Panchayat), MoujaJaladhalagori via AndulMouri, P.O. Dhulagarh, P.S Sankrail, Dist, Howrah, Pin-711302, West Bengal
7) 순 수량	250ml
8) 코드 번호/롯데번호/배치 번호	N3270818
9) 제조 일자 또는 포장 날짜	27/08/18
10) 날짜 별 베스트 및 사용 날짜	BEST BEFORE SIX MONTHS FROM MANUFACTURE
11) 수입 식품의 원산지	India
12) 사용 지침	생략
13) License No	100146064000435

라벨링 사진



2018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V

카자흐스탄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제2장 통관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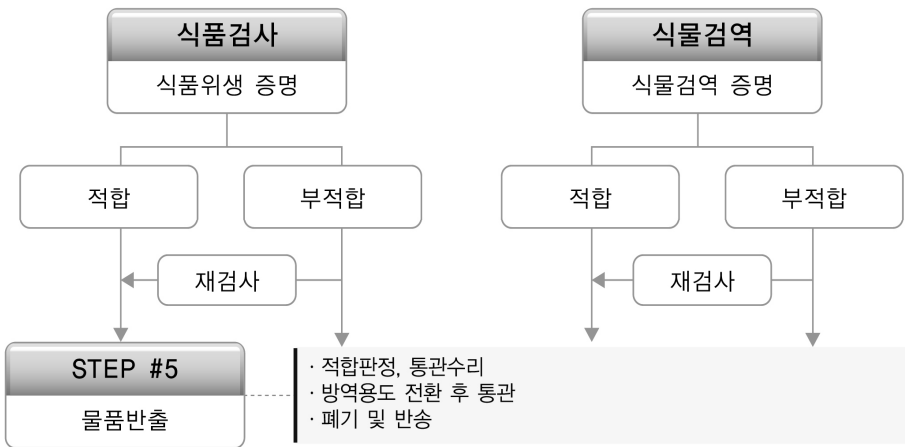
제3장 인증제도

제4장 검역제도

제5장 라벨링 제도

목 차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233
	제2장 통관제도	234
	1. 관리·법률체계	234
	2. 통관절차	236
	3. 제출서류	241
	4. 관세제도	242
	제3장 인증제도	244
	1. 관리·법률체계	244
	2. 인증절차	246
	제4장 검역제도	248
	1. 관리·법률체계	248
	2. 품목별 검역절차	251
	제5장 라벨링 제도	262
	1. 관리·법률체계	262
	2. 표시사항	262
	3. 라벨링 샘플	267

제 1 장 |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제 2 장 | 통관제도

1. 관리·법률체계

가. 관리체계

수입식품에 대한 카자흐스탄 규제기구

규제기구	주요업무
The Committee of Veterinary Control and Surveill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카자흐스탄 내의 수의 현황을 감독하고, 동물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법적 요건을 집행함
The Agricultural State Inspection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카자흐스탄 내의 식물 위생 현황을 감독하고, 식물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법적 요건을 집행함
The Committee for Public Health Protection of the Ministry of Health	식품 안전 담당. 법규에 위배되는 식품의 판매를 금지함
The Committee on Technical Regulation and Metrology	투자 발전국 소속. 제품 평가, 공정, 서비스 등을 관리하며 해당 물품이 카자흐스탄의 국가 기준, 인증 표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함
The Committee of State Revenue	재무부에 속하며, 관세 시스템 등을 통해 외국 기업의 영리활동을 규제하며 세관 업무를 담당함
The Ministry of National Economy	대외 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비관세 규정을 담당하며 수입 라이선스, 수입 할당량 등을 결정함

* 출처 : 미국 농무부,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2017.12.29.)

수입세관

- 카자흐스탄은 16개의 지방세관과 103개의 관할세관이 있음
 - 그 중 국경세관은 러시아, 중국,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접한 13개 국제세관의 38개의 관할세관, 카스피해에 2개의 항구세관, 11개의 공항세관이 있음

나. 법률체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단일 통관시스템 구축

-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회원국으로서 러시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와 정책통합을 진행하면서 식품무역 규정 개혁 중

- 카자흐스탄은 2010년 러시아, 벨라루스와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발족하여 통합관세, 회원국간 무관세 적용
- 2015년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을 포함하여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으로 정식출범하여 역내 시장통합을 진행하고 역외 시장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
-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들은 2017.4.11. “EAEU 세관법에 관한 협정 (Treaty on the Customs Code of EAEU)”에 서명하였으며, 유라시아경제연합 영토 내에 통합 통관 규정이 2018.1.1부터 발효

EAEU 5개 회원국 통합 세관법 개요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AEU의 새 세관법은 기존 관세동맹(Customs Union)의 세관법을 대체
- EAEU 세관법의 주요 특징
 - 기존에 회원국 간 통용되던 세관법의 21개 항목 중 16개를 그대로 적용
 - 각국의 세관 규제를 최대한 축소하고 초국가적인 제도 마련
 - 모든 통관 과정에서 정보시스템 도입 확대
 - WTO의 틀에서 국제적인 조건을 최대한 수용
- 세관법 주요 변경사항
 - (세관조항) 각국의 세관규제를 최대한 축소하고 EEC(유라시아경제위원회) 규정을 우선시함
 - (세관신고 전산화) 전산화 세관신고서 제출을 기본양식으로 변경, 서면 세관신고는 경우에 따라 허용
 - (물품정보증명서 제출) 세관신고 물품 정보에 관한 증명없이 세관신고서 제출 가능
 - (제품반출, 세관신고등록 자동화) 자동 제품반출 및 자동 세관신고등록 가능
 - (통관단일창구) 통관단일창구 도입으로 제품반출을 위한 필수정보 제공 용이
 - (화물정보사전고지) 화물 사전신고를 강제신고와 자진신고로 세부 분류
 - (제품반출 시간단축) 제품반출은 세관신고 이후 기존 1근무일에서 4시간으로 단축
 - (세관법 규정 통관절차) 기존 14가지 통관절차에 추가로 국제협약에 따라 규정되던 보세구역, 무료 창고와 회원국 별로 규정되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규정 3가지가 EAEU 세관법에 통합됨
 - (AEO) 관세당국에 의해 등록된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
 - (관세지연지불) 관세지연지불이 허용되는 경우와 기간, 과세가격결정 명시

*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유라시아경제연합 통합 세관법 2018년 1월부터 발효 등 (2017.12.06.)

카자흐스탄은 2015년 말 WTO에 가입한 이후 국제기준에 따른 정책변화 진행 중

-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OIE(국제수역사무국), IPPC(국제식물보호협약), Codex(국제식품규격)와 상충되지 않도록 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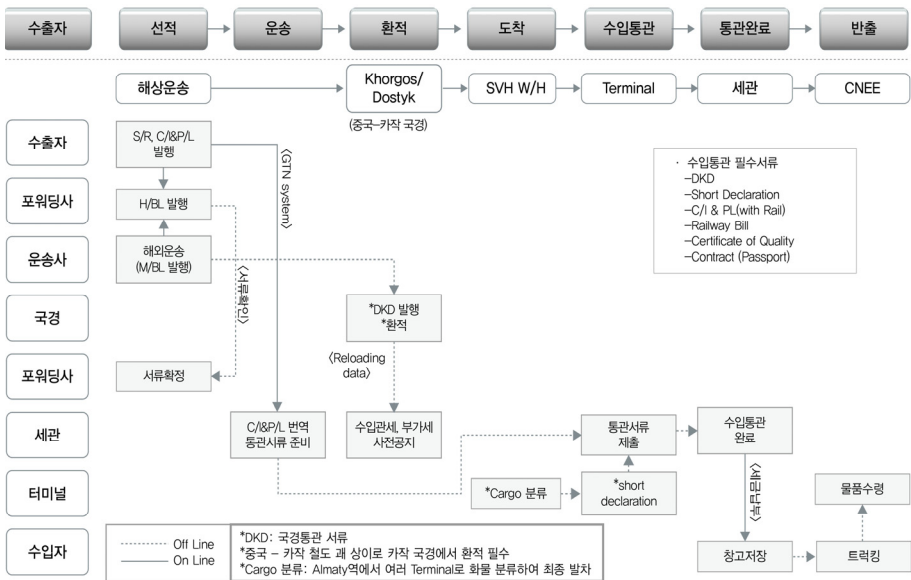
카자흐스탄의 식품 수입 관련 법률은 (1) 유라시아경제연합 문서, (2) 카자흐스탄 법률, (3) 카자흐스탄 정부 법령, (4) 카자흐스탄 행정기관의 규제에 구성됨

2. 통관절차

□ 수입통관절차

- 지리학상 해상운송 경로가 없는 내륙국가로서 한국에서 중국, 혹은 러시아 까지 해상운송을 이용하여 이동한 후에 내륙운송이나 항공운송으로 환적하여 카자흐스탄까지 이동하는 복합운송 이용
- 카자흐스탄의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상품 및 차량은 검사가 필수적이며, 통관 업무는 카자흐스탄에 등록되어 있고 수입업체나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통관 중개사가 수입 제품과 차량의 통관을 대리할 수 있음
- 수입업체는 카자흐스탄 국경에 도착하기 전 관할세관에 수입신고서와 수입신고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통관은 일반적으로 2~4일 정도 소요되고, 수입물품은 세관신고 다음날 반출 가능

(카자흐스탄 수입통관절차)



* 출처 : ㈜태웅로지스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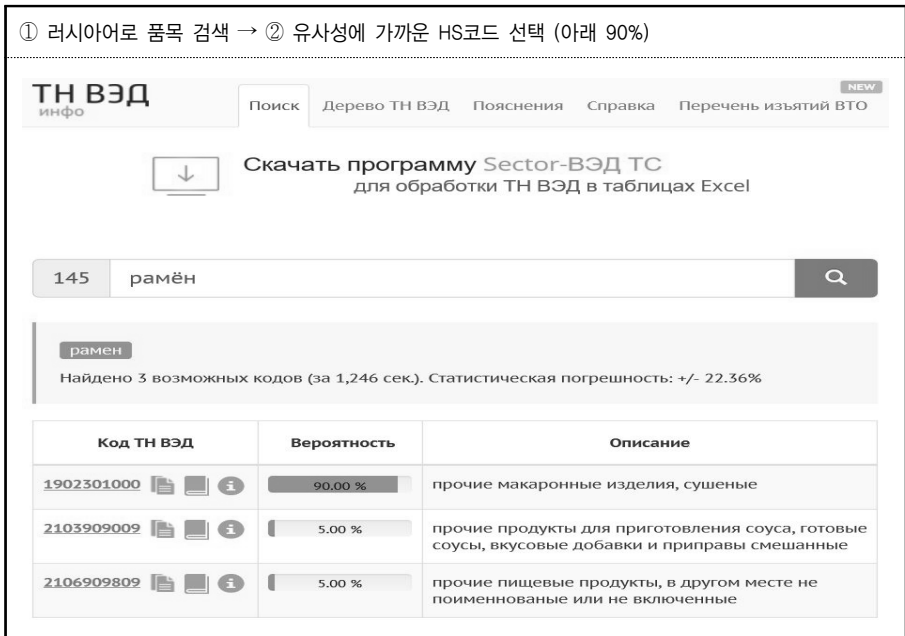
□ 단계별 수입통관 절차

Step 1 수출 전 절차

- HS코드 및 관세율 확인
 -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경제연합 대외 경제 상품코드를 사용¹⁾
- 수출업체 필요서류
 - (필수) C/L, P/L, Price List, 원산지증명서(C/O), Non-GMO증명서류
 - (품목) 식물검역증(Phytosanitary certificate), 수의검역증(Veterinary certificate),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 국가등록(State registration), 생산시설 국가등록(State Registration of Production Facilities), 위생검역(Veterinary-sanitary examination) 대상품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수입자와 협의하여 사전준비 필요²⁾

〈사이트 활용 예시 (라면)〉

① 러시아어로 품목 검색 → ② 유사성에 가까운 HS코드 선택 (아래 90%)



ТН ВЭД инфо

Поиск Дерево ТН ВЭД Пояснения Справка Перечень изъятий ВТО

Скачать программу Sector-ВЭД ТС для обработки ТН ВЭД в таблицах Excel

145 рамен

рамен

Найдено 3 возможных кодов (за 1,246 сек.). Статистическая погрешность: +/- 22.36%

Код ТН ВЭД	Вероятность	Описание
1902301000	90.00 %	прочие макаронные изделия, сушеные
2103909009	5.00 %	прочие продукты для приготовления соуса, готовые соусы, вкусовые добавки и приправы смешанные
2106909809	5.00 %	прочие пищевые продукты, в другом месте не поименованные или не включенные

1) 코드별 관세율은 eurasiancommission.org/en/Pages/default.aspx에서 확인 가능

2) <https://tnved.info/>에서 품목별 상세 관세·비관세 수입규정 확인 가능

③ 해당 코드에 대해 자세한 정보 확인 가능

Тарифное регулирование

Импортная пошлина

Ставка	Действует с	Действует до
0%	05.10.2016 36 Решение Коллегии ЕЭК от 19.04.2016	36 Решение Коллегии ЕЭК от 19.04.2016
	0% только для товаров ввозимых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Соглашением о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е с Вьетнамом	
0%	01.01.2017 101 Решение Совета ЕЭК от 18.10.2016	
	Тарифная преференция в виде освобождения от уплаты таможенной пошлины в отношении товаров, происходящих и ввозимых из государств, образующих вместе с РК зону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и	
13%, но не менее 0.05 ЕВРО за кг	01.01.2017 101 Решение Совета ЕЭК от 18.10.2016	

НДС

Ставка налога на добавленную стоимость составляет 12 процентов и применяется к размеру облагаемого импорта
Статья 268 Налогового Кодекс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Таможенные сборы за таможенное декларирование товаров

20000 тенге за декларацию на товары
[774 ПП РК от 16.11.2018](#)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я в ПП РК от 05.04.2018 г. № 171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Меры нетариф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К №61 от 20.01.2003](#)

- Обязательно наличие подтверждения осуществления санитарного контроля
 - Только макаронные изделия, варенные или неваренные, с начинкой или без начинки

[Решение Комиссии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299 от 28.05.2010](#)

- Входит в перечень продукции (товаров), подлежаще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у санитарно-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му надзору (контролю)
 - Пищевые продукты (продукты в натуральном или переработанном виде, употребляемые человеком в пищу), в том числе полученные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генно-инженерно-модифицированных (трансгенных) организмов

[Решение КТС №880 от 09.12.2011](#)

- Возможно попадает под действие тех.регламента "О безопасности пищевой продукции". Требуется подтверждение (декларирование) соответствия пищевой продук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регистрация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й пищевой продукции или продукции нового вида, ветеринарно-санитарная экспертиза

[Решение Коллегии ЕЭК №166 от 16.10.2018](#)

- Входит в перечень продукции, в отношении которой подача ДТ должна сопровождаться представлением там. органу свидетельства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или сведения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в едином реестре. Прим.: Представление декларации о соответствии не требуется. Пункт 2 примечания см. в Перечне утвержденном Решением КЕАЭС от 16.10.2018 г. № 166
 - Пищевая продукция для диетического лечебного и диетического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ого питания, в том числе для детского питания: только низкобелковая продукция (крахмалы, крупы и макаронные изделия и другая продукция)

관세규정

수입관세

- 0% - 2016.10.5.부터. 베트남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만 적용
- 0% - 2017.1.1.부터. 카자흐스탄과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생산되고 반입되는 제품에 대해 관세 면제 형태의 특혜관세 적용
- 13% 또는 kg당 0.05 유로 이상 - 2017.1.1.부터.

부가세

- 상품가액의 12% 적용

세관신고비용

- 신고제품에 대해 20,000 텡게

비관세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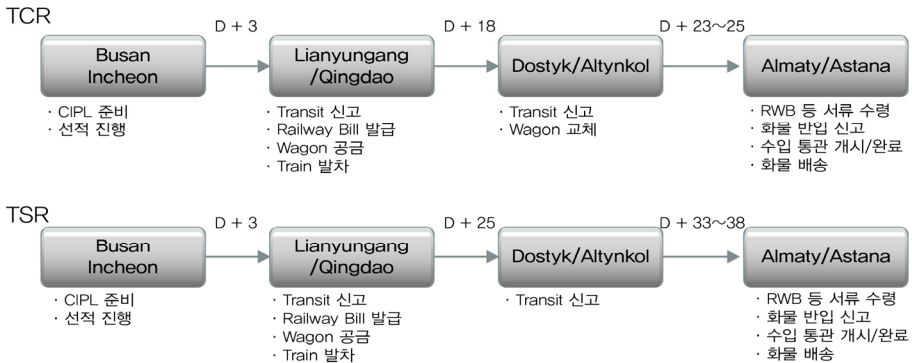
- 반드시 위생검역 이행 확인 필요
- 국가 위생검역 대상 품목에 포함됨
- 현행 '식품안전에 관한' 기술규정에 따라 식품의 적합성확인, 특수식품 또는 신소재식품의 국가등록, 수의위생검역이 요구될 수 있음

Step 2

선적 / 운송 / 환적

-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화물 주요 노선 대부분은 해운으로 출발하여 철도를 이용하는 TCR(중국 경유), TSR(러시아 경유) 노선을 주로 이용
 - (선적) 중국 또는 러시아를 경유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 및 러시아 국경에서 환적통관이 이루어지며, 한국의 경우 시마다 T/S면장, 검역, 환적이 필요하며, B/L 건당 통관비 증가
 - (운송) 운송업자가 선하증권상 목적지까지 책임지며, 인코텀스2010(INCOTERMS) 조건에 따라 수출자나 수입자가 포워딩 업체를 지정하고, 운송을 의뢰받은 포워딩 업체는 해상운송 및 내륙운송을 통해 목적지까지 운송 전 과정, 혹은 일부 과정을 책임짐
 - (환적) TCR 이용 시 철도의 레일 폭이 표준궤(중국)와 광궤(CIS)로 달라 환적이 반드시 필요하며, 환적 통관절차가 진행되어, 한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수출 시 2번의 통관절차를 거치게 됨

〈한국→카자흐스탄(알마티/아스타나) 운송루트〉



* 출처 : ㈜태웅로지스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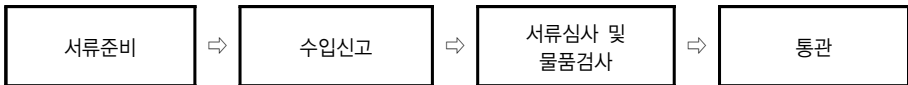
- 2018년 11월 기준 인천-알마티 항공편은 총 6회(아시아나 3회, 에어아스타나 3회), 인천-아스타나는 총 2회(아시아나 1회, 에어아스타나 1회) 운영 중임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결정 158호(2015.12.1.) ‘항공운송 반입 상품에 대한 의무적인 사전통지’에 따라, 2017년 4월 1일부터 항공운송 반입 상품에 대한 사전 통지가 의무화되어 상품 반입을 이행하는 운송인, 혹은 운송인의 대리인이 상품 도착지 관할세관에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야 함

Step 3

수입식품신고 / 통관

- 2004년부터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해 세관신고 검사 기간을 3일로 줄이고 물품에 대한 사전 세관 신고 후 나중에 해당 물품을 들여올 수 있도록 변경
- 2012년 6월 17일부터 관세동맹의 관세영역으로 반입되는 상품들에 대해 ‘의무적인 사전통지’ 제도를 도입
- 세관신고의 전산화를 지향하고는 있으나 아직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아 세관원을 직접 접촉해야 하며, 뇌물 발생비율이 높음
- 통관 시 필요한 증명서(적합성증명서, 일반적으로 Certificate로 표현) 발급 기간은 약 20일이 소요되어 창고료 발생 및 분실 위험이 있으므로 선 통관 및 화물픽업 가능
 - 단, 30일 이내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그 전에는 제품의 사용과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사전 발급 권유
- 통관 관련비용은 ① 관세, ②부가가치세(12%), ③ 소비세, ④ 세관수속비가 있음
- 수입신고 검역절차, 세금납부 등이 모두 완료되면 모든 서류 사본은 카자흐스탄 관세청으로 송부되고 최종 승인을 받으면 물품이 반출되고 통관이 완료됨

〈수입식품신고 및 통관 절차〉



서류준비	- (필수) C/L, P/L, 계약서, 제품설명서, 원산지증명서, Non-GMO증명서, 보험증서, 수출신고필증, 운송장(B/L, RWB, AWB), 통관계약서, 외환거래허가증(Passport deal), 위임장(통관업무 위임), Packing detail list, 적합성증명서(Certificate / Declaration of conformity), DTS(Declaration of customs price), 예치금승금확인서 - (필요시) Price List, 식물검역증, 수의검역증, 위생증명서 등 * HS code 확정을 위해 사진자료를 포함 제품설명서 준비 필수 (Certificate 발급여부 판단)
수입신고	- 준비서류 제출 - 보건부 위생 및 전염병 검사국에 식품검사신청서 제출 * 적합성인증서는 물건 도착 시 발급받거나 사전에 발급받아 제출 * 세관 기준보다 신고단가가 낮을 경우 가격 증빙서류 제출 필요 (Price List 등)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 보건부 위생 및 전염병 검사국은 수입신고서류 등 제출서류가 기재사항의 HS code 규정상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적합성인증을 확인하고 물품이 신고서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샘플을 추출하여 검사함
	* 무게정보가 매우 중요하며, Packing List와 실무계 간 차이가 나는 경우 화물 검사 * 신규 화물 혹은 서류 문제 발생 시 화물검사가 필히 진행되며, 검사비용 발생 및 통관 일수 2일 이상 추가
통관	- 적합 판정을 증명하는 검사증명서 발급 후 관세 입금을 증명하는 은행서류를 확인하고 통관되며, 수입식품이 부적합 판정된 경우에는 반송, 폐기, 재처리 등의 조치를 취함

3.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목록

주체	No	서류명	작성/발급자	제출사유	표기언어
수출자	1	C/I (Commercial Invoice)	수출자	견적서 확인	영어
	2	P/L (Packing List)	수출자	물량 확인	러시아어/ 영어
	3	제품설명서	수출자	HS code 및 Certificate 발급여부 결정	러시아어
	4	Price List	수출자	제품단가 확인 (요구 시)	영어
	5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수출국 발급기관	원산지 및 관세율 확인	러시아어/ 영어
	6	Non-GMO증명서류	수출자	수출자 양식으로 작성	러시아어/ 영어
	7	수출신고필증	수출국 발급기관	수출입정보 확인	러시아어/ 영어
	8	식물검역증 (Phytosanitary certificate)	수출국 발급기관	신선농산물	영어
	9	위생검역증 (Health certificate)	수출국 발급기관	경우에 따라 요구	영어
수입자	10	Bank Slip (관세, 부가세, 수입인지세 예치금 송금장 확인서)	은행	세관과 연결된 은행계좌로 통관자금 송금 증명서, 통관과 함께 통관금액이 차감됨	러시아어

주체	No	서류명	작성/발급자	제출사유	표기언어
	11	증명서 (Certificate)	수입자/ 발급기관	역내 유통, 판매 허가	러시아어
	13	외환거래허가증	은행	50,000불 이상 송금시 필요	러시아어
	12	계약서 (Contract)	수출자 수입자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계약서	러시아어/ 영어
	13	위임장	수입자	통관업무 위임 증명	러시아어
관세사	14	통관신고서 (GTD)	관세사	통관서류	러시아어
	15	DTS (Declaration of customs price)	관세사	관세율 산출 근거, GTD 첨부서류	러시아어
	16	운송장 (B/L)	선사		러시아어/ 영어

4. 관세제도

가. 관리체계

- 카자흐스탄은 세계 경제에 편입하기 위해 관세법 개정절차를 거쳐 대외경제 상품코드를 세계표준인 HS코드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맞춰 모든 상품은 97개 카테고리 중 하나에 포함됨
- 카자흐스탄은 2010년 1월 1일부터 관세동맹 대외경제 상품코드(CU HS코드) 및 공통 관세율을 적용하였으며, 2015년 1월부터는 유라시아경제연합 대외경제 상품코드(EAEU HS코드) 및 공통 관세율 적용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간에는 무관세가 형성되어 있으며, 제3국에서의 수입에 대해서는 동일 관세 적용
 - 유라시아경제연합은 2015년 5월 베트남과 FTA를 체결해 2016년 10월 5일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FTA 관세율을 적용함
-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간의 무관세와는 별도로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협약에 따라 CIS 회원국(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에 대해 자유 무역협정이 체결되었으며 다자간무역지대가 형성됨

- 유라시아 경제연합 HS코드 및 통합관세율 개정
 - 2015년 7월 15일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이사회는 WTO 양허세율 범위 내 일부 품목에 대한 유라시아 경제연합 통합관세율 및 통합 대외경제 상품코드(EAEU HS코드)를 개정
 - * 유라시아 경제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 EEC)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 관세동맹 체결 이후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EU)으로의 확대 추진을 위해 설립된 위원회. 2015년 1월 EAEU 출범 이후 EAEU에 적용되는 관세율 등 조정 역할 수행. 회원국 관련 기관은 EEC를 통해 반덤핑, 상계관계, 수출입금지조치, 세이프가드 등 규제 공동 시행
 - 2015년 9월 1일부터 HS코드 10자리로 이루어져있는 세부품목 4,061개에 대해 관세율 인하(평균관세율 5%~5.3%, 식품 13.28%)

나. 식품수입관세

- 수입 관세는 종가세, 종량세, 종가-종량 혼합형으로 부과
- 품목별 관세율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commission.org/en/Pages/default.aspx)
 - 카자흐스탄 재정부 국가수입위원회 (kgd.gov.kz/tnved)

〈주요 품목별 수입관세율〉

품목		HS코드	관세율	비고
감귤류	Mandarin(Tangerine, Satsuma 포함), 신선, 건조한 것	0805210000	5%, 또는 kg당 0.015유로 이상	WTO 세율 5% CIS국가 관세 면제 베트남 수입관세 0%
	Wilking, Hybrid citrus, 신선, 건조한 것	0805290000	5%, 또는 kg당 0.015유로 이상	
유자차	과실가공품 기타 : Citrus : 당분 첨가 열가공된 잼, 젤리, 페이스트 등	2007919000	10%	CIS국가 관세 면제 베트남 수입관세 9.5%
라면	기타 마카로니 제품, 건조된 것	1902301000	13%, 또는 kg당 0.05유로 이상	CIS국가 관세 면제 베트남 수입관세 0%
과자류	기타 과자류	1905319900	12%, 또는 kg당 0.1유로 이상	CIS국가 관세 면제
김	해조류	1212210000	3%	CIS국가 관세 면제 베트남 수입관세 0%

1. 관리·법률체계

가. 관리체계

- 카자흐스탄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공동기술규정(TR-CU, Technical Regulation of Customs Union) 적용
 - 카자흐스탄은 구소련 시절 제정된 강제인증으로 GOST-K(Gosstandard of Kazakhstan)를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관세동맹이 출범하면서 러시아의 GOST-R, 벨라루스의 STB와 통합하여 2013년부터 TR-CU로 변경
 - 2015년 1월 1일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정식 출범한 이후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이 가입하여 공동 기술규정 도입
 - 카자흐스탄은 투자발전국에 속한 기술개발위원회(The Committee on Technical Regulation and Metrology)에서 공동 기술규정에 따라 관리
- 유라시아경제연합 영토 내로 제품이 반입, 유통, 판매되기 위해서는 공동기술규정에 따라 모든 신선 및 가공식품은 생산, 저장, 운송, 판매, 처리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함
- 적합성이 인증된 제품은 유라시아 경제연합 공동인증마크인 EAC(Eurasian Conformity) 표기
 - 해당인증은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에서 모두 사용 가능

나. 법률체계

- 2018년 11월 말 기준, 총 40개의 관세동맹 기술규정이 발효되어 시행 중
 - 식품 관련 기술규정으로는 곡물 안전, 식품 안전, 식품 라벨링, 과실류와 채소류로 만든 주스제품 기술규정, 유제품 기술규정, 전문화된 식품(식이치료용 및 식이예방식품 포함) 안전, 식품첨가물과 향미증진제 안전요건, 우유 및 유제품 안전, 육류 및 육류제품 안전, 담배제품에 관한 기술규정, 어류 및 어류제품 안전, 생수에 관한 기술규정 등이 있음
 - 그 외에도 현재 개발 중인 식품 관련 기술규정으로는 알코올제품, 가공육 및 그 가공제품에 관한 기술규정이 있음³⁾

3) 유라시아 경제연합 사이트(<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eknreg/deptekreg/tr/Pages/default.aspx>) 참조

〈식품관련 기술규정 현황〉


EAEU 규정	
CU Commission Decision No. 319 of June 18, 2010(as amended through April 9, 2013)	On Technical Regulation in the Customs Union
CU Commission Decision No. 526 of January 28, 2011(as amended through November 23, 2012)	Common List of Products which shall be Subject to Mandatory Requirements within the Customs Union
CU Commission Decision No. 620 of April 7, 2011 (as amended through October 18, 2016)	Common List of Products, Subject to Mandatory Evaluation (Confirmation) of Compliance within the Customs Union with the Issuance of Common Documents
CU Commission Decision No. 621 of April 7, 2011	On the Regulation on Application of Standard Schemes for Evaluation (Confirmation) of Compliance with Technical Regulations of the Customs Union
CU Commission Decision No. 711 of July 15, 2011 (as amended through March 17, 2016)	On the Common Sign of Circulation of Products on the Market of the Member States of the Customs Union
EEC Collegium Decision No. 293 of December 25, 2012(as amended through November 11, 2016)	On the Unified Forms of a Certificate of Conformity and a Declaration of Conformity with the Technical Regulations of the Customs Union and the Rules of their Execution
CU Technical Regulation TR TS 005/2011 (as amended through November 15, 2016)	On Safety of Packaging
CU Technical Regulation TR TS 015/2011 (as amended through May 16, 2016)	On Safety of Grain
CU Technical Regulation TR TS 024/2011 (as amended through May 10, 2016)	Technical Regulation on Oils and Fats
CU Technical Regulation TR TS 021/2011 (as amended through June 10, 2014)	On Food Safety
CU Technical Regulation TR TS 022/2011	On Food Labeling
CU Technical Regulation TR TS 023/2011 (as amended through December 12, 2015)	Technical Regulation on Juice Products from Fruits and Vegetables
CU Technical Regulation TR TS 027/2012	On Safety of Certain Types of Specialized Food Products, Including Dietary Therapeutic and Dietary Prophylactic Nutrition
CU Technical Regulation TR TS 029/2012 (as amended through September 18, 2014)	Safety Requirements for Food Additives, Flavorings, and Technological Aids

EAEU 규정	
CU Technical Regulation TR TS 033/2013	On Safety of Milk and Dairy Products
CU Technical Regulation TR TS 034/2013	On Safety of Meat and Meat Products
EAEU Technical Regulation TR EAEU 040/2016	On Safety of Fish and Fish Products
EAEU Technical Regulation TR EAEU 044/2017	On Safety of Packaged Potable Water, Including Natural Mineral Water
카자흐스탄 규정	
No 603-II dated November 9, 2004(as amended through June 13,2017)	Law on Technical Regulation
No 380 of April 23, 2008	Requirement to drugs and biological preparations used in animal health safety
February 4, 2008 No 90(as amended through January 1,2013)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dated
May 19, 2009 No 743(as amended through December 18,2011)	Requirements for fish and fishery products safety
May 28, 2010 No 491(as amended through September 19,2013)	Requirements for fertilizer safety
September 21, 2010 No 969	Requirements for the safety of food, derived from genetically-engineered plants and/or animals
October 20, 2010 No 1081	Requirements for the safety of alcohol products
November 15, 2010 No 1201(as amended through January 30,2017)	Requirement for canned food
February 24, 2011 No 179	Requirements for Bioethanol safety
February 10, 2011 No 116	Requirements for biodiesel safety

2. 인증절차

- 적합성 인증의 종류는 제품의 용도, 환경, 사양, 위험성에 따라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과 적합성 인증(Certification of Conformity)으로 분류되며, 모든 식품 및 비식품에 적용
- 식품은 일반적으로 적합성 선언에 해당
- EAC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는 제품이 유라시아경제연합 기술규정의 요구사항을 최소한으로 충족하고 사람과 환경에 안전하다는 증명임
- 품목에 따라 적합성 인증 시 국가등록, 수의위생검역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적합성 선언 세부내용>

인증내용	제품이 유라시아경제연합 공동기술규정에 부합함을 증명	
신청자	제조사, 수입자, 권한대표 * EAEU 내 법인(수입자)이 역내에서 신청	
인증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용 기술규정 확인 2. 적합성 평가절차 선택 3. 제품 테스트 및 분석(자체 실험실 또는 EAEU 공인 시험기관) 4. 신청서류 준비(테스트 결과가 기준에 적합할 경우) 5. 적합성 선언서 작성(신청자가 작성) 6. EAEU 내 공인된 인증기관에 적합성 선언서 및 신청 서류 발송 7. 인증기관 신청내용 검토 및 EAEU 적합성 선언서 등록 	<p>* 적합성 선언 신청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 제품 관련 자료(성분표, 기술 인증, 품질인증, 국제인증 등) - 시험성적서 - 인증 신청회사 설립서류 - 대행사의 경우 위임장
관리기관	카자흐스탄 투자발전국 기술계량위원회	
소요기간	20일 내외	
인증비용	품목 및 평가절차, 유효기간 등에 따라 상이 * 유효기간 1년 기준 한 품목당 50\$~	
유효기간	일회 / 1년 / 3년 / 5년	
인증서 샘플 및 포함내용		<p>* 양식은 일반 A4지에 필요내용 기재</p> <p>* 포함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정보 - 제조자 정보 - 품목 리스트 및 HS코드 - 적용 기술규정 - 테스트기관 정보 - 유효기간 - 등록번호 - 적합성 선언 등록일자

* 적합성 인증(Certification of conformity)은 기계·설비, 차량, 가구, 섬유, 아동용품 등 비식품에 적용되며, 인증의 전과정을 공인된 인증기관이 진행하고 책임을 짐

제 4 장 검역제도

1. 관리·법률체계

가. 관리체계

- 카자흐스탄 농업부 산하 농업검역위원회(The Agricultural State Inspection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에서 카자흐스탄 내의 식물 위생 현황을 감독하고 식물 건강상태와 관련된 법적 요건 집행
 - 카자흐스탄은 수출국의 수출 식물 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며 수입된 식품은 카자흐스탄 식물위생검역소, 또는 차량 국경교차점에서 검역 시행
- 카자흐스탄 농업부 산하 수의 통제 및 감시위원회(The Committee of Veterinary Control and Surveill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에서 카자흐스탄 내의 수의현황을 감독하고, 동물의 건강상태와 관련된 법적 요건을 집행
 - 수입쿼터제를 적용받는 육류 및 가공류를 수입할 경우 수입업체들이 수의인 증서를 제출해야 함
- 카자흐스탄 보건부 위생 및 전염병감독위원회(The Committee of Veterinary Control and Surveill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에서 식품위생을 담당하며, 법규에 위배되는 식품의 판매 금지

나. 법률체계

구분	제정	관련법률	
위생 검역	EAEU	CU Commission Decision No. 625 of April 7, 2011 (as amended through June 22, 2011)	On Harmonization of CU Legal Acts in the Field of Sanitary, Veterin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CU Commission Decision No. 721 of June 22, 2011	On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Recommendations, and Guidelines
		EEC Collegium Decision No. 212 of November 6, 2012	On Regulation on the Uniform Procedure of Carrying Out Examination of Legal Acts in the Sphere of Implementation of Sanitary, Veterin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구분	제정	관련법률	
		CU Commission Decision No. 835 of October 18, 2011(as amended through February 11, 2014)	On Equivalence of Sanitary, Veterin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and Conduct of Risk Assessment
		CU Commission Decision No. 299 of May 28, 2010(as amended through August 29, 2017)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Measures in the Customs Union
	카자흐스탄	No 301 July 21, 2007 (as amended through June 1,2016)	Law on Food Safety
식물 검역	EAEU	CU Commission Decision No. 318 of June 18, 2010 (as amended through March 17, 2017)	On Assurance of Plant Quarantine in the Customs Union
	카자흐스탄	February 11, 1999 (as amended through April 9,2016)	Law on Plant Quarantine No 344
		No 331 July 3, 2002 (as amended through June 15,2017)	Law on Plant Protection
		No 15-08/590 June 29, 2015 (as amended through June 26,2016)	Rules on keeping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rom quarantine objects and foreign species
		No 4-4/66 January 30, 2015	Phytosanitary requirements to imported products of quarantine concern
		No 4-4/282 March 30, 2015 (as amended through June 6,2017)	List of quarantine objects and foreign species, subject to quarantine measures and list of very dangerous organisms
		February 11, 1999 No 344 (as amended through April 9,2016)	Law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plant quarantine"
		May 29, 2008 No 515	Requirements on pesticides safety
	수의 검역	EAEU	CU Commission Decision No. 317 of June 18, 2010(as amended through May 30, 2017)
CU Commission Decision No. 455 of November 18, 2010			The Unified List of Dangerous and Quarantine Diseases of Animals of the Customs Union
CU Commission Decision No. 607 of April 7, 2011(as amended through May 30, 2017)			On Common Forms of Veterinary Certificates on Imported Goods Subject to Veterinary Control into the Customs Union Territory

구분	제정	관련법률	
		CU Commission Decision No. 624 of April 7, 2011	On the Regulation on the Procedure of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the Register of Companies and Persons which Carry out Production, Reprocessing and(or) Storing Products Subject to Veterinary Control (Surveillance) and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the Custom Union
		CU Commission Decision No. 810 of September 23, 2011 (as amended through May 16, 2013)	On Exemptions from the Application of the Veterinary Measures in Respect of Goods Included in the Unified List of Goods Subject to Veterinary Control(Surveillance)
		CU Commission Decision No. 834 of October 18, 2011(as amended through October 9, 2014)	On Regulation on Common System of Joint Inspections of Objects and Sampling of Goods(Products), Subject to Veterinary Control(Surveillance)
		EEC Council Decision No. 94 of October 9, 2014	On Regulation on Common System of Joint Inspections of Objects and Sampling of Goods(Products), Subject to Veterinary Control(Surveillance)
	카자흐스탄	No 339 dated July 10, 2002 (as amended thorough March 29,2016)	Law on Animal Health
		October 30, 2014 of No. 7-1/559	Legal acts on veterinary science
		No 7-1/370 dated April 2, 2015	Rules for slaughterhouses of agricultural animals intended for subsequent sale
		No 7-1/68 dated January 30, 2015	Agricultural animals identification Rules
		No. 16-04/647 dated December 9, 2014 (as amended through June 9,2017)	Rules of Issuance of Permits for Exportation, Importation and Transit of goods, with account of Epizootic Situation in the Relevant territory
		April 23, 2008 No 380 (as amended through April 23,2008)	Requirements on drug and veterinary preparations safety, used for animal health
		Ministry of Agriculture order No 7-1/587 dated June 29, 2015(as amended through March 24,2017)	Veterinary(veterinary-sanitary) rules

2. 품목별 검역절차

가. 농산물

□ 검역규제 품목

- 관세동맹위원회 결정 318호(2010.6.18. / 2017.3.17.수정)는 관세동맹 국경 세관에서 식물검역 규제 절차에 대한 규정과 식물검역 규제 대상 품목(물질, 상품) 규정
 - 검역규제 품목은 식물위생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두 가지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구근, 산 식물, 신선 화훼·채소·과일, 종자 등은 고위험군으로, 건조 및 반가공된 농산물은 저위험군으로 분류

□ 유라시아경제연합 통합검역식물 위생요건

- 2016년 말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EAEU 통합 검역해충 목록(Unified EAEU List of Quarantine Pest),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관세국경과 관세영역에서 규제 제품 및 규제대상에 제기되는 통합검역식물 위생요건(Unified Rules and Norms to Ensure Plant Quarantine on the EAEU Territory) 채택
 - 그러나 카자흐스탄은 농업부 명령 4-4/282호(2015.3.30.)에 따른 자체 검역 해충 목록과 고위험 해충 목록 유지
 - 카자흐스탄 농업부 명령 4-4/66호(2015.1.30.)는 EAEU와 국제요건에 맞추어 수입식품 검역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음
- EAEU 통합검역대상목록에 포함된 검역대상에 감염된 규제제품은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 및 연합의 관세영역 내에서 이동 금지
-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되고 연합의 관세영역 내에서 이동하는 규제물품에서 통합목록에 포함되어있는 검역대상이 검출될 경우, 가공, 소독처리, 반송 또는 폐기(용기 포함)에 처함
- 식물위생 고위험군에 속함 물품은 수출국 및 재수출국의 식물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 가능하며, 식물위생 저위험군에 속한 물품은 식물위생증명서 첨부 없이도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 및 연합의 관세영역 내에서 이동 가능
-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승객, 선박·항공기·열차 승무원, 자동차 운전자의 핸드캐리, 동반 및 동반하지 않은 수하물로 연합의 관세국경을 통해 이동하는 꽃다발 3개 이하의 화훼류, 총중량 5kg 이하의 식물위생 위험이 높은 규제 제품을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은 식물위생증명서 첨부 없이 허가됨

□ 검역절차

- 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식물 검역 후 검사합격증(식물위생증명서, Phytosanitary Certificate)을 발급받아 카자흐스탄 세관당국에 사전 제출해야 함
 - * 2013년 8월 16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는 관세동맹(CU)의 국경 식물 위생 통제 관련 규정을 수정하여 수출국의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안전을 보증하고 관세동맹 영토내로 반입하여 하차하는 순간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수출국의 식물위생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수정
- 검역 대상 식품은 식물위생검역소 또는 카자흐스탄의 차량 국경교차점을 통해서만 수입되어야 하며, 식물위생검역소에서 첫 번째 검역이, 목적지 도착 시 두 번째 검역이 이루어짐
 - 검역은 서류검토, 운송수단 검사, 검역대상품목 검사로 진행되며, 수출국의 식물위생 특성에 따라 필요시 샘플링, 실험실 테스트 진행
 - 검역을 위한 수입식품은 콜드차량, 등온차량, 봉인된 컨테이너, 밀봉 포장된 상태 등으로 수송해야 함
- 카자흐스탄에 도착된 식품은 식물위생검역소에서 검역 후 통과 시 검역확인서 (Act of quarantine phytosanitary control) 발행

나. 축산물

□ 검역규제 품목

- 유라시아경제연합 수의위생조치의 적용에 대한 관세동맹 위원회 결정 317호 (2010.6.18.)에서 수의규제 대상 품목을 규정
 - 산 동물(농업용, 가정용, 야생, 동물원, 바다, 상업용 모피, 서커스, 실험용 등을 포함한 모든 동물), 산 새(가정용, 야생, 장식용 등을 포함한 모든 새)
 - 모든 종류의 육류 및 육류제품 : 가공류 포함
 - 우유 및 유제품
 - 조란 제품
 - 동물을 원료로 하는 물질
 - 동물사료 및 사료 첨가물 : 애완용 식품 포함

□ 검역기준

- 관세동맹 위원회 결정 317호(2010.6.18.)는 유라시아경제연합 통합 검역기준 · 검사 · 절차 · 양식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품목별로 우유 및 유제품 안전에 관한 기술규정(TR CU 033/2013), 육류 및 육류제품의 안전에 관한 기술규정(TR CU 034/2013)의 적용을 받음
- TR CU 021/2011 식품안전규정(2011.12.9.)은 동물을 원료로 하는 비가공 식품에 대해 제품과 해당 제품의 생산, 저장, 운반, 판매, 처리과정의 현 기술 규정을 준수하고, 수의학적으로 동물의 원산지(생산시설)가 안전하다는 확인을 위해 수의위생검역(Veterinary -Sanitary Inspection)을 요구
 - 대상품목 : 비가공 육류, 우유, 생크림, 양봉제품, 계란
- 카자흐스탄으로 수입 쿼터제를 적용받는 육류 및 가공육류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자들은 경제부(MNE)에서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함
 - 라이선스는 1년 단위로 계약 건별로 발급
- 일반적으로 수의규제 대상품목은 승인받은 공급자의 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함
- 농업부는 수의위생 안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병명, 지역, 내용) 게시
 - 2018년 10월 말 기준 카자흐스탄의 한국산 수입제한 품목은 다음과 같음

병명	지역	제한내용
조류독감	전라북도	2014.1.22.부터 남한 전라북도로부터 산 새, 인큐베이션 조란, 깃털, 가공육류 및 70℃이상의 열처리 가공이 되지 않은 모든 형태의 가공품, 조류 사료 및 사료 첨가물, 사육, 도살, 절단 시 사용한 기구의 카자흐스탄 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함
조류독감 H5N8	전라남도	2014.9.26.부터 남한 전라남도로부터 산 새, 인큐베이션 조란, 깃털, 가공육류 및 70℃이상의 열처리 가공이 되지 않은 모든 형태의 가공품, 조류 사료 및 사료 첨가물, 사육, 도살, 절단 시 사용한 기구의 카자흐스탄 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함

* 출처 : 카자흐스탄 농업부, 반출 · 반입의 임시적 제한

□ 검역절차

- 검역대상 품목의 관세동맹 영토 내로의 반입을 위해서는 회원국의 반입허가가 필요하며, 해당 허가는 연간 반입물량을 정함
- 관세동맹 영토 내로 반입되는 검역대상 물품은 반입 시마다 반입허가서와 수출국의 권한 기관에서 발급한 수의위생증명서(Veterinary Certificate)를 제출해야 함

- 검역대상 물품에 대한 검사는 국경 통과소에서 서류검토와 컨테이너 검사로 진행
 - 검사결과에 따라 수입서류에 반입허가, 수의관리, 반입금지 또는 반송조치 함
- 국경 통과소 통과 물품은 목적지에서 완전한 수의위생 관리가 이루어짐
 - 수출국 수의위생증명서는 연합 수의위생증명서로 재작성 되며, 수입서류에 반출 허가 또는 반출금지 함

다. 수산물

□ 검역규제 품목

- 유라시아경제연합 수의위생조치의 적용에 대한 관세동맹 위원회 결정 317호 (2010.6.18.)에 따라 어류·수산물 및 그 가공품도 수의규제 대상에 해당

□ 검역기준

- 관세동맹 위원회 결정 317호(2010.6.18.)는 유라시아경제연합 통합 검역기준·검사·절차·양식을 규정하고 있음
- 2017년 9월1일부터 어류 및 어류제품 안전에 관한 기술규정(TR EAEC 040/2016)이 발효되었으며, 식용 어류제품의 안전 요건과 생산, 보관, 운송, 판매 및 폐기, 라벨링 및 포장에 대한 필수 요건을 확립
 - 식용 어류제품이 기술규정을 준수하고 적합성 평가를 통과하면 유라시아경제연합에서 유통이 가능하며, 단일유통마크가 표시되어야 함
 - 양식 제품에는 천연 또는 합성 호르몬 물질 및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동물용 의약품, 성장 촉진제, 의약품의 잔류 최대 허용 기준은 정해진 허용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됨
 - 동 기술규정 발효일 이전에 발행되거나 채택된 적합성 평가서는 2019년 9월 1일 이전까지만 유효하고, 회원국의 법률에 따라 강제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는 제품의 경우 2019년 3월 1일까지만 제품의 생산 및 영토 내 유통 가능
- TR CU 021/2011 식품안전규정(2011.12.9.)은 동물을 원료로 하는 비가공 식품에 대해 수의위생검역(Veterinary-Sanitary Inspection)을 요구
 - 대상품목 : 비가공 수산자원, 양식물
- 일반적으로 수의규제 대상품목은 승인받은 공급자의 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함

□ 검역절차


- 검역대상 품목의 관세동맹국 영토 내로의 반입을 위해서는 회원국의 반입허가가 필요하며, 해당 허가는 연간 반입물량을 정함
- 관세동맹국 영토 내로 반입되는 검역대상 물품은 반입 시마다 반입허가서와 수출국의 권한 기관에서 발급한 수의위생증명서(Veterinary Certificate)를 제출해야 함
- 검역대상 물품에 대한 검사는 국경 통과소에서 서류검토와 컨테이너 검사로 진행
 - 검사결과에 따라 수입서류에 반입허가, 수의관리, 반입금지 또는 반송조치 함
- 국경 통과소를 통과된 물품은 목적지에서 완전한 수의위생 관리가 이루어짐
 - 수출국 수의위생증명서는 연합 수의위생증명서로 제작성되며, 수입서류에 반출 허가 또는 반출금지 또는 반송조치 함

라. 가공식품

□ 국가등록(State Registration)

- 국가등록증명서(State Registration Certificate)는 제품이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위생규정을 따른다는 확인서로 2010년 6월 1일 도입되었으며 기존의 국가별 위생증명서(Hygienic Certificate)를 통합·대체함
-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는 EAEU 결정 299호(2010.5.28.)의 위생기준 및 TR CU 021/2011 식품안전규정(2011.12.9.)에 따라 국가등록 대상품목을 규정
 - (식품) 미네랄워터, 전문식품, 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식품, 신소재식품
 - 미네랄워터(내추럴 테이블워터, 메디컬 테이블워터, 메디컬워터), 병에 든 식수(용기 포장; 어린이용 식품에 이용되는 것 포함), 토닉음료, 알코올제품(저알코올제품, 맥주 포함)
 - 전문식품(유아식품, 임산부 및 모유수유 여성용 식품) 식이요법 제품(치료 및 예방, 운동선수를 위한 식품)
 - 생물학적 활성 식품첨가물, 생물학적 활성 식품첨가물 생산을 위한 원료
 -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제조된 식품(유전자변형미생물체 포함), 신소재식품
 - (비식품) 화장품, 살균제, 세제, 위험물질, 식품용기 등

〈국가등록 세부내용〉

인증내용	제품이 사람이 직접 섭취하거나 접촉하는 제품이 인체에 무해함을 증명
신청자	제조사, 수입자 ⇨ EAEU 공인 기관(국가등록절차는 EAEU 회원국에 의해 공인된 기관이 시행)
발급기관	카자흐스탄 보건부 위생 및 전염병 감독 위원회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서 2. 제품설명서, 성분분석표 등 3. 제품 관련 인증서(국제규격, 외국규격 인증서 등) 4. 제조사 정보 5. 소비자를 위한 정보가 포함된 라벨 사본 6. EAEU 공인 시험기관의 샘플 시험 및 분석결과 7. 제품 샘플
소요기간	제출서류를 포함한 신청완료 시점부터 1~2개월
인증비용	제품별 USD1,000 ~ (카자흐스탄)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없으며, 발급일부터 제품공급 또는 생산중단일까지 사용 가능
인증서 샘플 및 포함내용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AEU 단일양식 * 포함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일자 및 번호 - 제품명 및 카테고리 - 제조사 정보 - 관련 규정 - 감정기관 정보 </div> </div>

□ 생산시설 국가등록 (State Registration of Production Facilities)

- TR CU 021/2011 식품안전규정(2011.12.9.)에 따라 동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 생산하는 시설은 국가등록 필요

- 대상시설 : 아래 식품생산이 계획된 장소의 시설
 - 가축 및 가금류 도축, 가축 및 가금류 도축물의 식품생산을 위한 가공
 - 원유, 생크림, 탈지유 생산 및 유제품 생산을 위한 가공
 - 조란 및 조란 가공품 생산 및 가공
 - 해조류를 제외한 양식 수산물 및 해양 어획물 생산 및 가공
- 생산시설 국가등록은 관세동맹 국가의 공인을 받은 기관이 경제활동 참여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시행
- 신청서류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 법인 이름과 주소, 사업자 등록정보, 실제 생산시설 주소, 생산공정 목록 등
 - 신청서에는 생산시설이 TR CU의 기술규정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신청자는 신청서류에 포함된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 신청양식은 신청 진행기관의 양식으로 작성
- 생산시설 국가등록 시행기관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생산시설의 TR CU 기술규정 준수여부 결정을 위해 검사를 실행해야 함
 - 생산시설 검사결과에 따라 등록기관은 해당 생산시설의 국가등록을 결정하여 인증번호를 배정하고 국가등록 식품생산시설 등록명부에 포함하거나 위반 사항의 수정지시서를 발행함
- 생산시설 국가등록 인증번호가 배정되면 국가등록을 인정함
 - 생산시설 국가등록 정보는 공공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공식적으로 게시
- 생산시설 국가등록의 유효기간은 없음
- 신청자는 변경사항 발생 시 생산시설 등록 시행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함
 - 법인주소, 이름, 등록주소, 사업자등록정보 변경 및 법인 변경 시 14일 내 통보
 - 등록된 생산공정이 확대·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정으로 생산하기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변경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함
- 생산시설 등록 시행기관은 신청자의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규정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검사를 시행할 수 있음
- 생산시설 등록 시행기관은 신청자의 통보를 근거로 30일 내에 식품생산시설 등록에 변경사항을 입력해야 하며, 기술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 변경이 거부될 수 있음

□ 식품첨가물 규정

- 카자흐스탄의 식품첨가물 규정은 관세동맹 기술규정 TR CU 029/2012 식품첨가물, 향미증진제 및 가공보조제의 안전 요구(Safety Requirements for Food Additives, Flavorings, and Technological Aids)를 따름
- 본 기술규정 요건과 부합하는 식품첨가물, 향료 및 가공보조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품에 마크를 부착할 수 없고, 관세동맹 회원국들은 해당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킬 수 없음
- 관세동맹의 단일 관세 영역에서 유통되는 식품첨가물, 향료 및 가공보조제에는 안전성을 확인해주는 서류와 출처를 추적 가능한 정보, 그리고 보관조건과 유통 기한에 관한 정보가 첨부되어야 함

〈색소가 허용되지 않는 식품〉

1. 미가공식품	11. 포도당, 과락, 락토스
2. 우유, 멸균 또는 살균 밀크 초콜릿 착향	12. 꿀
3. 착향 되지 않은 유제품, 버터밀크	13. 코코아 제품, 초콜릿성분 및 기타 제품
4. 착향 되지 않은 보존 또는 농축우유, 크림	14. 파스타
5. 신선, 건조, 또는 캔입 야채(올리브제외), 과일, 버섯, 생선(튀레와 페이스트 포함)	15. 볶은 커피, 치커리, 차 엑기스; 수용성 차, 과일차 및 약물,
6. 달걀 및 달걀제품 (부활절 계란 착색의 경우 본 기술규정 부록 11에 수록된 색소로만 겹질 착색 가능)	16. 맥아 및 맥아음료
7. 다른 양념을 첨가하지 않은 원상태의 육류, 가금류, 생선, 갑각류 또는 그 일부	17. 고추 및 고추 혼합물
8. 밀가루, 곡물, 전분	18. 소금, 소금 대체물
9. 신선, 건조, 또는 통조림 야채, 과일, 버섯, 생선 (튀레와 페이스트포함); 즈 제품(주스, 드링크제 외), 파스타, 으깬 감자	19. 생수
10. 토마토 페이스트와 소스, 통조림 감자	20. 와인, 과일주, 식초
	21. 오일과 동물지방, 식물성 기름 및 냉동압착식품
	22. 숙성 및 미숙성 치즈향착
	23. 빵
	24. 3세 미만의 유아에게 공급하기 위한 특별식

〈허용되는 향료〉

-
- 1) 본 기술규정의 부록 19에 의거한 착향물질로 이루어질 것
 - 2) 천연원료로 생산된 착색제 및 착색물질로 이루어질 것
 - 3) 혼연향
 - 4) 열처리 착향
 - 5) 향전구물질로 구성
 - 6) 본 부속항의 기타 향(상기 부속절 1), 2), 3), 4), 5)에 추가로 구성요소 포함
 - 7) 상기 향의 혼합물
-

〈허용된 식품첨가제 (일부)〉

식품첨가물 명칭	식품첨가물 기능	사용 가능한 식품	최대 허용 수치
Amorphous silicon dioxide (E551)	응고방지제, 운반체	초콜릿 제품 (표면처리한)을 제외한 사탕과자, 츄잉껌 (E553iii 만) 등	in accordance with technical documentation
aluminum silicate (E559, kaolin)	응고방지제, 운반체		
potassium aluminum silicate(E555),	응고방지제		
calcium aluminum silicate (E556)	응고방지제		
sodium aluminum silicate (E554)	응고방지제		
bentonite(E558)	응고방지제, 운반체		
calcium silicate(E552)	응고방지제, 운반체		
magnesium silicates (E553 i ,E553 ii ,E553iii) - separate or combined	응고방지제		
Castor oil (E1503)	광택제, 안정제	코코아 제품, 초콜릿 제품	350mg/kg
		사탕 과자	500mg/kg
		츄잉껌	2.1g/kg
Polydimethylsiloxane(E900)	소포제	츄잉껌	100mg/kg
		압축기술로 생산한 곡물제품	10mg/kg
Butyl hydroxy anisole (E320, BHA)	산화방지제	양념 및 향신료	BHA-200mg/kg, Gallates-200mg/kg (per product fat)
Buthyl hydroxytoluene (E321, Ionol, BHT)	산화방지제		
tert-Butylhydroquinone (E319, TBHQ)	산화방지제		
Guaiaic resin(E314)	산화방지제	츄잉껌	1.5g/kg
Quercetin, dihydroquercetin -separate or combined	산화방지제	농축크림, 분유, 가공치즈, 초콜릿	200mg/kg per product fat
Rosemary extracts (E392), in terms of the total of carnosol and carnosic acid	산화방지제	양념과 향신료, 가공된 견과류	200mg/kg (per product fat)

〈금지되어 있는 착향 물질〉

아가리산산(agaric acid), 베타아사론(beta-asarone), 하이퍼리신(hypericin), 캡사이신(capsaicin), 바신, 쿠와 신(quassin), 쿠마린(coumarine), 멘토포란(menthofuran), 메틸오이 게놀(4-allyl-1, 2-dimethoxybenzene), 풀레곤(pulegone), 사프롤(1-allyl-3, 4-methylenedioxybenzene), 청산(hydrocyanic acid), 투우존 (alpha& beta), teukrin A, 에스트라골(1-allyl-4-methoxybenzene)

〈판매 가능한 보충제〉

산 및 산도조절제	탄산수소나트륨(E500ii, 베이킹소다), 구연산(E330), 이산화탄소(E290)
이스터에그를 포함한 색소	azorubin(E122), anthocyanins(E163), yellow "sunset" FCF(E110), quinoline yellow (E104), Green S(E142), indigo car mine(E132), carmine(E120), carotene, tsderivatives(E160), Ponce4R(E124), brilliantblueFCF (E133), atentedblueV(E131), tartrazine(E102)
감미료	aspartame(E951), acesulfame potassium(E950), aspartame, acesulfame-salt (E962), isomalt(E953), xylitol(E967), lactitol(E966), maltitol(E965), mannitol(E421), neogisperidin dihydrochalcone(E959), saccharin, its sodium, potassium, calcium(E950), sorbitol(E420), stevia, stevioside(E960), sucralose (E955), thaumatin(E957), cyclamic acid, its sodium salt, calcium(E952) erythritol (E968)

〈음료류 주요 식품첨가물 기준치〉

분류	성분	기준
방부제	이소프로필 구연산염 (Isopbopyl citrates)	200mg/kg
	EDTA 칼슘2나트륨 (Calcium disodium ethylenediamine tetraacetate)	200mg/ L
광택제	백색 및 황색 밀랍 (White and yellow beeswax)	0.2g/kg
	셀락 (shellac)	0.2g/kg
보존제	소르빈산 (Sorbic acid)	150mg/kg
	벤조산 (Benzoic acid)	150mg/kg
	벤조산 칼륨 (Potassium benzoate)	100mg/ L
	포름산 (Formic acid)	300mg/ L

□ 유해물질 규정

- 카자흐스탄의 유해물질 규정은 관세동맹 기술규정 TR CU 029/2012 식품첨가물, 향미증진제 및 가공보조제의 안전 요구(Safety Requirements for Food Additives, Flavorings, and Technological Aids)를 따름
 - 식물성 원료에는 작농 및 방역을 하거나 유해 성분으로부터 해당 원료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충제 및 농약에 대한 정보(혹은 살충제 및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정보) 필요
 - 동물성 원료에는 가축 및 조류의 체외 기생충이나 질병 퇴치, 가축 및 조류 사육 공간, 물고기를 양식하는 공간에 사용되는 살충제 및 농약과 가축, 조류의 질병 예방, 치료 및 동물성 의약품으로 기재된 조류의 먹이, 양식장 내의 물고기의 질병 예방,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
 - 살충제 및 농약, 혹은 동물성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정보(혹은 미사용에 대해 기재된 정보)가 없는 식물성 및 동물성 원료의 수입 및 유통 금지

(라면류 유해물질 기준치)

번호	물질명	함량 정보
1	aflatoxin b1	0,005mg/kg
2	arsenic(as)	0,2mg/kg
3	cadmium	0,1mg/kg
4	coliforms	0,001g
5	deoxynivalenol	0,7mg/kg(밀),1,0mg/kg(보리)
6	lead(pb)	0,5mg/kg
7	mercury(hg)	0,02mg/kg
8	mold(곰팡이)	100cfu/g(식물성 기반), 200 cfu/g(무단백질)
9	radioactivity 137cs(cesium 137)	60Bq/kg
10	salmonella spp.	25g
11	staphylococcus aureus	0,1g
12	strontium-90	금지
13	t-2 독소	0,1mg/kg
14	yeast	100g
15	zearalenone	0,2mg/kg(밀, 옥수수, 보리)

제 5 장 라벨링 제도

1. 관리·법률체계

- 2013년 7월 1일 식품 라벨링(Food Products Labeling)에 대한 관세동맹 기술 규정(TR TS 022/2011)이 발효되었으며,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에 통합 적용

2. 표시사항

가. 기본표시사항

구 분	필수 / 선택	샘플 사진
1) 제품명	필수	
2) 식품성분	필수	
3) 식품용량	일부 유형 생략 가능	
4) 제조일자	필수	
5) 유통기한	필수	
6) 보관방법	필수	
7) 제조자/전권대표/수입자	필수	
8) 권고사항/제한사항	필수	
9) 영양정보	필수	
10) GMO 정보	일부 유형 필수	
11) EAC 마크	필수	

나. 표기방식

① 제품명

- 제품의 원료와 관계가 있고 제품의 특성이 명확히 드러나며 다른 식품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수가공(훈제, 절임, 분쇄, 동결건조 등)한 식품의 경우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해당 정보를 제품명에 포함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해야 함
- 식품에 향미증진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맛(with the flavor of)’, ‘~ 향(with the aroma of)’과 같이 표기하여 향미증진제가 포함되었음을 표시

② 식품성분

- 식품 성분 기재 시 질량의 비율에 따라 가장 많은 양부터 순서대로 기재
- 복합성분이 포함되었을 경우, 복합되어 있는 모든 성분은 괄호 안에 기재해야 함.
단, 복합성분이 2% 이하일 경우, 식품첨가물, 향미증진제, 생물학적 활성 첨가물, 약초, GMO 원료에서 나온 성분을 제외하고는 명시하지 않아도 됨
- 식품첨가물이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경우 그 기능(산도조절, 유화제 등)과 명칭을 기재해야 함
- 다음과 관련하여 식품 성분 목록을 표기할 필요가 없음
 - 딸기를 포함한 신선과일과 감자를 포함한 채소
 - 다른 재료 첨가 없이 하나의 식품에서 얻은 식초
 - 단일 성분으로 구성된 식품
-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 정보를 표기할 필요는 없지만, 아스파탐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페닐알라닌의 원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표기해야 함

③ 식품용량

- 식품용량은 용량(밀리리터, 센티리터, 리터), 중량(그램, 킬로그램) 또는 개수 단위로 표기하며, 약어로 표기 가능
 - 계란, 과일, 채소 등 개수 단위로 판매되는 제품은 용량을 표기할 필요 없음
- 용량 표기는 개수 단위로 판매되는 제품을 제외하고는 다음으로 표기
 - 액체인 경우 용량을 표기
 - 파스타, 점성이 있고 끈적이는 식품의 경우 용량, 또는 중량으로 표기
 - 고체 및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일 경우 중량을 표기
 - 두 가지 용량표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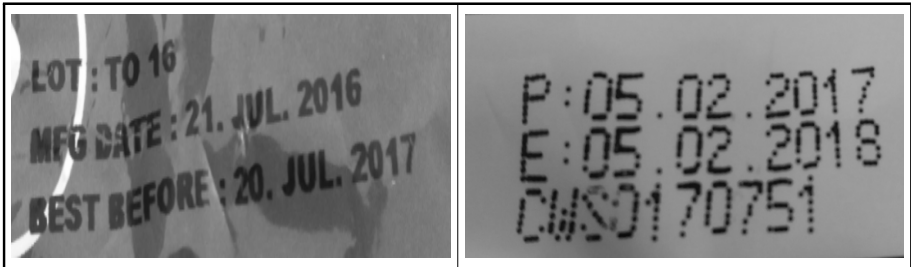
④ 제조일자

- 유통기한에 따라 제조일자 표기
 - 유통기한이 72시간 미만인 경우, Manufacture date : 시간, 일, 월
 - 유통기한이 72시간에서 3개월일 경우, Manufacture date : 일, 월, 연도
 -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일 경우 Manufacture date : 월, 년 또는 일, 월, 연도
 - 설탕일 경우에는 제조년도만 표기
- 제조일자는 생산일자(Production date), 또는 유사한 단어로 대체 가능

⑤ 유통기한

- 식품 유통기한은 다음과 같이 표기
 - 유통기한이 72시간 미만인 경우, Best before : 시간, 일, 월
 - 유통기한이 72시간에서 3개월 미만일 경우, Best before : 일, 월, 연도
 -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일 경우, Best before : 일, 월, 연도 또는 Best before the end of : 월, 연도
- Best before이나 Best before the end of는 Shelf life, Consume before 또는 유사한 단어로 대체 가능
 - *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은 함께 표기되어야 함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이 함께 표기된 라벨링〉



⑥ 보관방법

- 모든 특수한 보관 조건, 또는 사용 조건을 표기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사용 설명서를 제공해야 함

⑦ 제조자 / 전권대표 / 수입자 정보

- 제조업체의 공식 상호와 주소를 기재해야 하며, 제3국에서 제공되는 식품일 경우 수입업체의 상호와 주소를 역시 기재해야 함

⑧ 권고사항 / 제한사항

- 권고사항이나 제한사항이 없을 경우 섭취가 어렵거나 소비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식품의 성분이 손상될 수 있는 경우 권고사항이나 제한사항을 표기해야 함
- 150mg/L를 초과하는 양의 카페인을 함유한 무알코올 음료나 약용 식물 및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충분한 양에 해당하는 성분은 “1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권장하지 않으며 임신 및 수유중인 사람에게서는 권장하지 않음”이라고 표기해야 함

⑨ 영양정보

- 열량(칼로리),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양의 정보를 표기해야 함
- 관세동맹의 품목별 규정에서 별도로 규제하지 않으면 향미증진제, 껌, 커피, 천연 미네랄워터, 병포장 생수, 식품첨가물, 신선농수산물, 맛소금, 향료, 양념, 식초, 차 등은 표기하지 않아도 됨
- 식품의 영양값은 100g, 100ml 또는 1인분 기준으로 표기해야 함

⑩ GMO 정보

- GMO 함유량이 0.9% 이상인 식품은 ‘유전자변형식품(Genetically modified products)’, ‘유전자변형물질에서 나온 식품(Products obtained from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유전자변형물질을 포함하고 있다(The product contains components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는 문구를 기재해야 함

⑪ EAC마크

〈 EAC 인증마크 〉



- 사각형의 형태로 밝거나 대조가 뚜렷한 배경에 3개의 철자 ‘E’, ‘A’, ‘C’를 합하여 ‘EAC’로 표시
 - ‘유라시아 적합성(Eurasian Conformity)’을 의미
 - 제품이 관세동맹국 기술규정의 안전요건에 적합하다는 검증 절차를 통과했을 경우에만 사용가능

라. 유의사항

- 라벨은 러시아어와 카자흐스탄어로 표기하여야 함
 - * 유라시아경제연합 다른 회원국가와 유통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 언어도 표기하여야 함
- 식품 유형의 이름으로 대체될 수 있는 식품 성분

성분 유형	식품 유형의 이름
Refined oils of fats	Oil or fat with indication of origin : vegetable or animal
Compressed, extracted or refined cacao butter	Cacao butter
Fruit mixture whose mass fraction constitutes not more than 10% of food products	Fruits
Berries mixture constituting not more than 10% of the mass fraction of food products	Ber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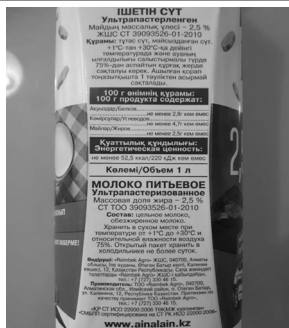
성분 유형	식품 유형의 이름
Candied fruits constituting not more than 10% of the mass fraction of food products	Succade
Vegetables mixture constituting nor more than 10% of the mass fraction of food products	Vegetables
Natural honey of any kind	Honey
Flour mixture of two or more grain types	Flour with the indication of grain types of which it is produced, depending on the mass fraction thereof, highest to lowest
Starch and starch modified by physical aids or ferments	Starch*
Fish of any type	Fish
Edible cooking salt(sodium chloride)	Salt
Cheese or cheese mixture	Cheese
Milk protein, caseins, caseinates, whey protein and their mixtures	Milk protein
Vegetable herbs constituting nor more than 2% of the mass fraction of food products	Vegetable herbs or vegetable herbs
Spices constituting not more than 2% of the mass fraction of food products	Spices or mixtures of spices
Source substances used for the production of chewing gum	Rubber basis
Sucrose of any type	Sugar
Anhydrous glucose or glucose monohydrate	Glucose
Treacle of any type	Treacle or glucose syrup
Grape wines	Wine
Cereal of any type	Cereal
Soya protein(isolate, concentrates)	Soya protein
Egg products of any type	Egg products

* 성분의 특별한 출처를 추가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문구를 이용 - example, - from potato

3. 라벨링 샘플

표기항목	표기내용	제품사진
제품명	Drinking Milk Ultrapasteurized Fat content 2,5%	
원료	whole milk, skimmed milk	
용량	1L	
제조일자	2018.10.04	
유통기한	2019.07.04	
보관방법	Store in a dry place at a temperature from +1°C to +30°C and relative humidity of 75%. Store open package in the refrigerator no more than a day.	
제조사	TOO <Raimbek Agro>, 040700, Almaty region, Ilniski district, p. Otengen Batyr, Kalinina str, 12, Republic of Kazakhstan. Quality claim to TOO <Raimbek Agro>, tel : +7 (727) 330 4615	
권고사항/제한사항	-	
영양정보	100g of product contain	
	Protein	not less than 2,8g
	Carbohydrate	not less than 4,7g
	fat	not less than 2,5g
	Energy value	
	not less than 52,5kcal	not less than 220kj
GMO 정보	-	
EAC마크	표기	

라벨링 사진



일반정보



EAC마크




제조일자, 유통기한

표기항목	표기내용
제품명	Biscuit roll <Yashkino> Cherry
원료	wheat flour, sugar, water, cherry jam(sugar, syrup, water, applesauce, cherry sauce, stabilizers : pectin, calcium citrate, acidity regulators : citric acid, sodium citrate, natural flavor, natural dye : carmine, preservatives : potassium sorbate, sodium benzoate, antioxidant : sodium isoascorbate), confectionary fat(refined deodorized vegetable oils (palm, modified palm, sunflower)), condensed milk with sugar(skim milk, sugar(sucrose, lactose)), dried egg products : chalk w(chicken egg food, salt, anti-caking agent : silicon deoksid Neosil), dry dairy whey, confectionery coating(sugar, cocoa butter substitute, non-temper non-lauric type (Refined deodorized vegetable oil in natural and modified form(sunflower, palm) emulsifiers : sorbitan tristearate, soy lecithin, an antioxidant : tocopherols mixture of concentrate), cocoa powder, emulsifier(E322, E476), flavor : vanillin), chicken egg, cocoa powder, ethyl alcohol, sunflower oil, refined, deodorized, disintegrating agents(ammonium bicarbonate, E450, sodium bicarbonate)
용량	200g
제조일자	2018.10.28
유통기한	2019.04.28
보관방법	Store at a temperature of 18±3℃ and relative humidity not more than 75%. Do not expose to direct sunlight.
제조사	TOO <KDB Minusinsk>, 662605, Krasnoyarskiy kraj, Minusinsk city, Krekernaya str. 8
수입자/전권대표	TOO <KDB Kazakhstan>, 140000, Pavlodar city, Promyshlennaya zona Cevernaya 46, tel : (7182)730-471, 730-472
권고사항/제한사항	-
영양정보	per 120g : protein 5g, fat 13g, Carbohydrate 57g, energy value 1550kj/370kcal
GMO 정보	-
EAC마크	표기

라 벨 링 사 진

일반정보 EAC마크	
제조일자 유통기한	

표기항목	표기내용	제품 사진
제품명	"Ottogi" Instant noodles "Yel Ramen"	
원료	Noodles : Wheat flour, potato starch, Palm oil, salt / Seasoning broth : salt, ground red pepper, dry onion, beef extract	
용량	120g	
제조일자	2018.07.17	
유통기한	2019.07.04	
보관방법	Store in a dry and cool place	
제조사	Ottogi Ramen Co., Ltd, 423, Deogu-ro, Anjung-eup, Pyeongtaek-si, Gyunggi-do, Republic of Korea	
수입자/전권대표	TOO "VCA" Almaty city, Zheltoksan str. 5B, office 19, Tel/Fax : 8(727)246-856	
권고사항/제한사항	-	
영양정보	Product contain for 120g : protein 11g, fat 17g, Carbohydrate79g / Energy value for 120g : 515kcal(2156kj)	
GMO 정보	Dose not contain GMO	
EAC마크	표기	

라벨링 사진



일반정보 / EAC마크



제조사, 유통기한